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12호

2017. 6. 1.(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356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
제3561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2
제3562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18
제3563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1
제3564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4
제3565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35
제3566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78
제3567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97
제3568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7

[입법예고]

제2017-1292호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18
제2017-1297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20
제2017-1298호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120
제2017-1305호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21
제2017-1307호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 입법예고	122
제2017-131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23

◆ 고 시

제2017-184호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염리3) 및 지형 도면 고시	125
제2017-185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흑석9)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134
제2017-18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대학교)	161
제2017-187호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68
제2017-188호 서울특별시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186
제2017-189호 이문·회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87
제2017-190호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99
제2017-191호 하수처리 재이용수 급수공사비 고시	210

제2017-192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210
제2017-193호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227
제2017-1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230
제2017-195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238
제2017-196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40
제2017-197호 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제정 고시	265
제2017-198호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265
제2017-199호 2017년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272
제2017-202호 양동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82

◆ 공 고

제2017-1258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286
제2017-1264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286
제2017-1275호 환경건설탕회사 신규 등록 공고	287
제2017-127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287
제2017-1281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288
제2017-1291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89
제2017-1296호 환경건설탕회사 신규 등록 공고	290
제2017-1317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291

◆ 서울특별시의회공고

제2017-106호 주식매각신고사항 공고	293

◆ 구 고 시

제2017-42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중구)	294
제2017-67호 성동구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성동구) ...	296
제2017-4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동대문구)	305
제2017-66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도봉구)	308
제2017-5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노원구)	311
제2017-5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노원구)	315
제2017-5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노원구)	319
제2017-50호 도시관리계획(불광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324
제2017-7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마포구) ...	325
제2017-78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마포구)	330
제2017-3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동작구)	331

제2017-3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관악구)	332
제2017-36호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관악구)	335
제2017-5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초구)	337
제2017-52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서초구)	339

◆ 구 공 고

제2017-498호 응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성동구)	347
제2017-518호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광진구)	348
제2017-57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열람공고(강북구)	350
제2017-50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수락골전망쉼터) 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노원구)	351
제2017-70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은평구)	352
제2017-5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하수도)사업 공사완료 공고(마포구)	365
제2017-83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365
제2017-83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367
제2017-83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370

◆ 사업소고시

제2017-1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75
제2017-12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75
제2017-12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76
제2017-1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76
제2017-1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77
제2017-1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77

◆ 기 타

제2017-9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378
제2017-100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378
제2017-10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379

자 치 법 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356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4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기획관·교통정책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도시교통본부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교통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자전거정책과장·교통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를 “도시교통본부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교통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자전거정책과장·교통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로 한다.

제13조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통기획관은 교통정책, 버스정책, 물류행정, 주차계획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보좌한다.

제14조제11항제4호 중 “설립 지원”을 “설립 및 운영 지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녹색에너지과·기후변화대응과·대기관리과”를 “대기정책과·기후대기과·녹색에너지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녹색에너지과장·기후변화대응과장·대기관리과장”을 “대기정책과장·기후대기

과장·녹색에너지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와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와 제18호 및 제1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제15조제5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와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신설하여 같은 항을 제7항으로 한다.

16.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17. 건물에너지효율화에 관한 사항

18. LED조명 보급기준 및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

19. 녹색 중소기업 해외통상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변화대응과장”을 “기후대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대응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개정 및 운영

3.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탄소배출권 거래 추진에 관한 사항

5. 청정개발체제 사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 및 시행,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현상 관련 각종 통계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행사 시행에 관한 사항

10.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고속버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11.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석면함유 가능 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13. 건축물 석면 관리 및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4. 석면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15. 보건환경연구원 석면·실내공기 관련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서울 차 없는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7. 승용차요일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 시스템 운영 및 전자태그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19. 승용차마일리지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관리시스템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0.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배출총량제 시행에 관한 사항

21.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2.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23.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배출가스 및 공회전단속, 광역단속반 운영 및 배출가스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5.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
26. 자치구 대기관리 지도점검 및 실적통계 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27. 도시관측시스템, 기후정보포털 구축·운영 등

제1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관리과장”을 “대기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대기질개선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대기오염 예·경보제(먼지, 오존, 황사)에 관한 사항
5.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7.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
8.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특정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제작차·운행차 저공해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2.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및 제작 관련 사항
13.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부착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14. 저공해조치차량 보조금 집행 및 저공해미이행경유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5. 압축천연가스 차량보급 및 관련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16. 저공해차량 사후관리 계획수립·관리에 관한 사항
17.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 운행차 저공해연료 공급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0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에코마일리지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평생교육국에 두는 과) ① 평생교육국에 교육정책과·평생교육과·청소년정책과·친환경급식과를 둔다.

② 평생교육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교육정책과장·평생교육과장·청소년정책과장·친환경급식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친환경급식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④ 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도시종합계획 수립·조정
 2.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8. 특성화고 지원에 관한 사항
 9.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0.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2. 서울형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14. 교육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5.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및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16.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17. 교육지원사업 학부모 점검단 운영
 18.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9. 교육격차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20. 사교육 부담 경감 추진에 관한 사항
 21.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및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22. 학교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
 23. 대학생 자원봉사 추진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진흥원 지도·감독·평가에 관한 사항
 6.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주시민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문해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학교평생교육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3. 서울자유시민대학 분교캠퍼스 운영 총괄

14. 대학 및 기관단체 연계 시민대학 운영 총괄
 15.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⑥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의 설치·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프로그램 운영
 4.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의 허가·등록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육성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및 참여위원회 운영
 10. 방과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지역교류·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 ⑦ 친환경급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급식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2.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3. 도농상생 공공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4. 공공급식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업무 총괄
 6.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공급 등 유통, 안전성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청 급식업무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자치구 급식지원센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등 대외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무상급식 실태조사
 11. 모니터링단 운영 및 급식 만족도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12.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 현장 소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제17조의4(중전의 제17조의3)제1항 중 “식품안전과”를 “식품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안전과장”을 “식품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안전과장”을 “식품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나트륨”을 “나트륨·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제9호 중 “가축방역”을 “가축 등 동물 질병 방역대책 수립·시행”으로 한다.
18. 먹거리 종합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19. 먹거리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식품정책에 관한 사항

제18조제4항제6호 중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를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
15.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항 중 “교량안전과·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을 둔다”를 “교량안전과를 둔다”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를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20조제1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2제9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재생지원센터(근린재생일반형)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10항에 제26호 및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 관련 지도·감독
27. 정비사업 관련 갈등 조정 및 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제4항제12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13.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

제23조제1항 중 “산지방재과를 둔다”를 “산지방재과·서울로운영단을 둔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조경과장·산지방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조경과장·산지방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서울로운영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23조제3항제9호 중 “어린이대공원”을 “어린이대공원, 서울식물원”으로 한다.

제23조제6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1. 서울대공원 및 어린이대공원 동물원과 공원녹지사업소 내 야생동물 질병 방역 대책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제2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서울로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서울로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서울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4. 서울로 관리·운영사무 위임 및 시설설치·유지보수·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5. 서울로 관련 사업의 설계·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6. 서울로 내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의 보호 및 관리
7. 재산관리·보상·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8. 서울로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서울로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0. 상용·일용인부 및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제41조제1항 중 “축산물부”를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축산물부장”을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축산물부)”를 “(동물위생시험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부장”을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13호) 중 “이력추적제 검사”를 “이력추적 검사 등”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도시농업과·농업기술과”를 “농업교육과·기술보급과”로, “도시농업과장”을 “농업교육과장”으로, “농업기술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도시농업과장”을 “농업교육과장”으로 한다.

제54조제4항 중 “농업기술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제21절을 제22절로 하고, 제130조부터 제136조까지를 각각 제132조부터 제138조까지로 하며, 제21절(제130조부터 제13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절 서울식물원

제130조(원장) ① 서울식물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식물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1조(하부조직) ① 서울식물원에 기획운영과, 식물연구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식물연구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원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2. 조직·인사·예산·회계·직원관리 등 식물원 운영 총괄
3. 식물원 시설, 장비, 재산관리
4. 매표 및 관람객 현황 관리, 주차장 등 운영수익 관리
5.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식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 연구·수집 계획 수립 및 운영
2. 야외정원 및 온실 등 식물 관리
3. 식물 번식·파종 및 식재 계획 수립 및 운영
4. 식물연구 관련 기관 등 협력 추진
5. 식물 DB 구축 및 전산화

별표2 광진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진소방서	구 의 119안전센터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광진구중 : 구의동(구의동중 3~9, 15~58, 549, 551, 552, 554~556, 558~560번지 제외), 광장동, 자양동(자양1·2동)
	능 동 119안전센터	광진구 능동로 242 (능동)	광진구중 : 능동, 군자동, 화양동, 모진동, 노유동, 자양동(자양3동)
	중 곡 119안전센터	광진구 용마산로 150 (중곡동)	광진구중 : 중곡동, 구의동중 3~9, 15~58, 549, 551, 552, 554~556, 558~560번지

같은 표 광진소방서란 다음에 성동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성동소방서	행 당 119안전센터	성동구 행당동 92-6번지	성동구중 : 행당동, 사근동, 응봉동, 성수동1가
	성 수 119안전센터	성동구 독섬로 452 (성수동2가)	성동구중 : 성수동2가, 송정동
	왕십리 119안전센터	성동구 고산자로 249 (도선동)	성동구중 : 하왕십리동, 상왕십리동, 마장동, 홍익동, 도선동, 용답동
	금 호 119안전센터	성동구 난계로 19 (금호동1가)	성동구중 : 옥수동, 금호동1~4가

별표3 광진소방서 119구조대란 다음에 성동소방서 119구조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성동소방서 119구조대	성동구 행당동 92-6번지	성동소방서 관할구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진흥본부·복지본부·도시교통본부·문화본부·기후환경본부·행정국·재무국·평생교육국·관광체육국·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일자리노동정책관·비상기획관·정보기획관·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사항

제3조제1호 중 “물순환안전국·소방재난본부”를 “물순환안전국·지역발전본부·소방재난본부”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정역량 강화 및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을 위한 기구 수 확대, 소속기관 신설 및 부서간 사무조정 등 기구개편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본청 기구 및 소속기관 신설 등 기구 개편

- 기구 수 확대에 따른 평생교육국 신설(안 제17조의2)
- 신설기관 개관을 위한 서울식물원·성동소방서 신설(안 제130조, 별표2)
- 7017 소관변경(안전총괄본부→푸른도시국)에 따른 서울로운영단 신설(안 제23조)

나. 행정환경·수요변화 반영을 위한 부서명·직제변경 및 사무조정

다.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부서간 소관업무 이관

◆ 서울특별시규칙 제3561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계	17,603	4,037	300	7,902	5,214	150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9,787	3,869	294	401	5,073	150

같은 표 2·3급 소계란, 이사관또는부이사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3급 소계	23	18		1	3	1
이사관또는부이사관	22	17		1	3	1

같은 표 3급 소계란, 부이사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급 소계	17	7		1	9	
부이사관	17	7		1	9	

같은 표 4급 소계란, 기술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소계	227	136	16	7	64	4
기술서기관	57	19			38	

같은 표 4·5급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또는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란을 삭제한다.

서기관또는행정 사무관	6	6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녹지란, 수의란, 행정또는녹지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공업또는
시설란, 행정·녹지또는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249	780	44	53	344	28
행정	547	369	42	22	91	23
녹지	21	12			9	
수의	6	5			1	
행정또는녹지	13	7			6	
행정또는시설	63	53			7	3
행정·공업또는시설	74	65		1	8	
행정·녹지또는시설	3	2			1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 녹지란, 시설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녹
지또는시설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104	1,572	89	102	1,261	80
행정	1,132	724	67	39	249	53
공업	322	95	6	4	215	2
녹지	58	28			30	

시설	492	250	1	2	222	17
행정또는시설	38	35			3	
행정·공업또는시설	76	71			5	
녹지또는시설	3	1			2	
전기운영	52			1	51	
기계운영	79				79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녹지란, 시설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080	1,066	88	145	1,745	36
행정	1,101	532	62	57	425	25
녹지	75	12		2	61	
시설	449	159	1	4	279	6
행정·공업또는시설	37	36		1		

전기운영	57	3			54	
기계운영	86	5	1		80	

같은 표 8급 소계란, 공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772	234	48	84	1,405	1

공업	75	8	1	3	63	

같은 표 9급 소계란, 공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196	7	4	4	181	

공업	13				13	

같은 표 연구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직 계	342	15		186	141	

같은 표 연구관 소계란, 학예연구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관 소계	54	2		32	20	
학예연구	18	2			16	

같은 표 연구사 소계란, 학예연구관, 기록연구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사 소계	288	13		154	121	
학예연구	72	8		2	62	
기록연구	5	5				

같은 표 소방공무원 계란, 소방정란, 소방령란, 소방경란, 소방위란, 소방장란, 소방교란, 소방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 계	6,921	128		6,793		
소방정	29	2		27		
소방령	139	22		117		
소방경	388	21		367		
소방위	350	33		317		
소방장	734	35		699		
소방교	1,637	3		1,634		
소방사	3,638	8		3,630		

같은 표 교육공무원 계란, 교수·부교수·조교수또는전임강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공무원 계	498			498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전임강사	435			435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기구조정에 따른 인력 배정 및 행정수요 증가 대응을 위해 총 정원을 17,521명에서 17,603명으로 82명 증원

2. 주요내용

가. 신설기관(성동소방서·서울식물원) 인력 배치 및 박물관 건립, 시립대학교 교육수준 향상 등 시정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총 정원 82명 증원

- 일반직 +15, 연구직 +4, 소방공무원 +56, 교육공무원 +7

나.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한 직급·직렬 조정 및 관리기관간 정원 이체

- 기구조정에 따른 적정 인력운용을 위한 일반직 정원 조정

-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정원 조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3562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6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휴관)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휴관(이하 “임시휴관”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시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시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관람시간)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10월)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 09:00 ~ 19:00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평일 09:00 ~ 17:00

토요일, 공휴일 : 09:00 ~ 18:00

제4조(대표) ① 과학관의 관람권 대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폐관시간 60분 전까지로 하고, 관장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매표담당공무원은 일일매표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과학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과학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따라 과학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⑥ 관람자가 과학관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과학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이 별도로 정한 교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권)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여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 대관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범위) 조례 제10조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과학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전시실
2. 부속시설 : 강당, 교육실, 세미나실, 옥내·외 그 밖의 공간 등

제8조(대관허가 신청) ① 관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과학관 시설 등의 대관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에는 전시 목적, 참여작가 소개(주요경력 등 포함), 공간연출, 홍보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서(또는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제1항에 의한 대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관자가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2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장은 대관허가신청 및 허가내용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관 사용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대관시간 연장) ①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대관자가 제1항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대관료 감면범위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과학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서울특별시 또는 과학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관허가 제한 및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는 자에게는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조건 등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② 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매표 일일결산 보고서

20 . . . ()

결 재	담 당	과 장

구 분		일 계		누 계	
		인원	총액	인원	총액
개 인	청소년 및 어린이				
	어 른				
	무 료				
단 체	청소년 및 어린이				
	어 른				
	무 료				
총 계					

[별지 제2호서식]

관람권 검인신청서

- 단 체 명 : (대표자:)
- 주 소 :
- 전화번호 :
- 전 시 명 :
- 장 소 :
- 판매기간 : 20 . . . ~ 20 . . .
- 관람권 판매 검인 신청내역

관람권 / 구 분	검 인 요 청		비 고
	금 액	수 량	
청소년 및 어린이 (7세~19세)			
어 른 (20세~64세)			
초 대 권	-		
기 타			

※ 무료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붙임 : 관람권 종별 각 1부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관람권 검인대장

전시 일자	전시명 (단체명)	신청내역			검토결과	검인자	
		관람권 종 류	금 액	수 량		담당	과장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립과학관 대관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	성명 (단체명칭)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FAX)		휴대전화		E-mail	
	주소 (단체 소재지)					
전시(행사)명						
전시(행사)내용						
참가예정인원						
대관기간	20 . . . ~ 20 . . . (총 일간)		전시품(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시(행사) 기간			
			반출기간			
대관장소 및 면적						
관람요금	무료 (), 유료 ()		유료일 경 우	구분	개인	단체
				어른	원	원
				청소년 및 어린이	원	원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수수료
첨부 : 전시(행사)기본계획서 1부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립과학관 대관허가서

대관받는자	단 체 명 (성명)			
	주 소			
전시(행사)명		전시(행사) 부문작품수		
대관장소				
대관기간				
대관료	무 료 () 유 료 ()			
관람료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관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대관 허가조건 1부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립과학관 대관허가내용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대관받으자	성명 (단체명칭)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FAX)		휴대전화		E-mail		
	주소 (단체 소재지)						
전시(행사)명							
전시(행사)내용							
변경 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전시(행사)명						
	대관기간						
	대관장소						
	기 타						
변 경 사 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내용을 변경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

[illegible]

[별지 제8호서식]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 접수대장

[illegible]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서울특별시립과학관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대관받은자	성명 (단체명칭)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FAX)		휴대전화		E-mail		
	주소 (단체 소재지)						
전시(행사)명							
전시(행사)내용							
대관장소							
변경 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시간						
	기 타						
변 경 사 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사용시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 접수대장

연번	접수일자	신 청 인		변경신청내용		변경사유	결재	
		주소 (전화)	성명 (단체명)	당 초	변 경		담당	과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 개관에 따라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휴관일은 10일 전까지 시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함.(안 제2조)

나. 관람 및 관람권에 관한 사항

1) 관람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 평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3조)

2)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별하여 발행함.(안 제5조)

다. 대관에 관한 사항

1)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정함.(안 제7조)

2) 대관허가 신청 및 변경(안 제8조)

· 전시목적 등 대관 기본계획을 첨부하여 대관 신청함.

· 허가내용 변경은 20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함.

3) 대관 사용시간 및 연장

· 대관 사용시간은 안 제3조의 관람시간내로 하며,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일 사용으로 간주함.(안 제9조)

·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은 2일 전까지 함.(안 제10조)

4) 대관료 감면 등(안 제11조)

·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하며, 후원하는 행사는 반액 감면함.

· 대관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관료를 반환함.

5) 대관의 제한 및 취소(안 제12조)

·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 서류의 허위작성, 대관조건 위반으로 대관 취소 등의 사실이 있으면 허가 제한 및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시 제한 및 취소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규칙 제3563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6조제2항 본문 중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별표 10”을 “별표 10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의 한도는 별표 11”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제59조 관련)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품 목				징수 한도				
양배추, 총각무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무, 배추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양배추, 총각무, 무, 배추를 제외한 전 품목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일정액으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품목	규격 및 중량	징수한도(원)	품목	규격 및 중량	징수한도(원)	품목	규격 및 중량	징수한도(원)
참외	1~2kg	68	깎마늘	10kg	224	생강	10kg	187
	3kg	113		20kg	253		20kg	239
	4~5kg	140	마늘종	1kg	21	고추, 파리, 청초, 홍초, 피망, 파프리카	4kg	88
	10kg	285		2kg	30		5kg	98
	15kg	310		4kg	88		8kg	140
블루베리, 딸기, 오디(박스), 살구, 버찌	1kg미만	44		8kg	140		10~12kg	224
	1~2kg	68		12kg	224		13~16kg	253
	3~4kg	140		16kg	264	17~20kg	278	
사과, 감, 자두, 귤, 토마토, 참다래	1~3kg	88		20kg	278	물냉이	4kg	88
	5kg	113	10kg	128	8kg		140	
	10kg	224	11~12kg	140	12kg		224	
	15kg	253	13kg	154	2kg		52	
방울토마토	1~3kg	68	망마늘	14kg	186	느타리, 표고, 양송이, 새송이	4kg	88
	4~5kg	113		15kg	199		5kg	110
배	7.5kg	174		16kg	214		8kg	140
	15kg	253		17kg	224		10kg	224
포도(거봉)	1~2kg	88		18kg	239	표고	16~20kg	423
	4kg	113	19~20kg	253	팽이		0.2kg	8
	5kg	140	10kg	224		5kg	110	
	10kg	253	15kg이상	264	배추	10kg	81	
메론	4~5kg	113	감자, 당근	10kg	224	양배추	10kg	81
	6~9kg	174		20kg	264		10kg	107
	10kg	253		40kg(마대)	377	무	20kg	177
키위	5kg	113		1~4kg	88		옥수수	8kg
	10kg	224	5kg	98	10kg	199		
밤	20kg 이하	285	호박, 오이, 가지	8kg	140	연근	20kg	264
	30kg 미만	568		10~12kg	224		30kg	423
	30kg 이상	844		13~15kg	233		4kg	88
호도, 땅콩	15kg	423		16~20kg	264	양상추, 샐러리, 칼리폴라워, 파세리, 브로콜리	8kg	140
	20kg	568		21kg이상	351		10~12kg	214
곶감, 감말랭이	1kg미만	44		우거지(무청), 깻잎, 상추, 시금치, 근대, 아욱, 열무, 콩, 봄동, 갓, 열가리, 치커리, 취나물, 미나리	2kg		52	단호박
	1~3kg	88	3kg		69	10kg	224	
	4~6kg	113	4kg		88	2~5kg	81	
	10kg	224	8kg		140	6~7kg	97	
	15kg	253	10~12kg		224	8~9kg	125	
복수박	4~5kg	199	13~16kg		264	10~13kg	140	
수박	8kg미만	199	17~20kg		278	14~17kg	203	
	8kg이상	272	25kg		403	18~20kg	219	
대파, 쪽파	10kg	224		20kg 초과		247		

※ 팻릿 단위 거래품 팻릿 1매당 7,000원

비고

1. 품목별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을 따름
2. 위탁수수료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품종)은 유사 품목(품종) 및 규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준용
3.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와 일정액으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를 합하여 부과할 수 있고, 위탁수수료 총액의 최고한도는 1천분의 70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01년 농안법 개정에 따른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 이후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 인상분을 위탁수수료에 자동 연계하여 인상시키는 관행을 근절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차원의 하역체계 개선(하역 기계화)을 통한 물류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별도 설정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단서 조항 추가 / 별표 11 신설 추가)

◆ **서울특별시규칙 제3564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제8호”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자”를 각각 “제9호”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자”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기준 중위소득 75%”를 “기준 중위소득 85%”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꿈나래 통장의 가입대상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꿈나래통장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4호가목)

◆ 서울특별시규칙 제3565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7일”을 “3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기시험위원을”을 “필기시험위원은 매”로, “위원을”을 “위원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 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9항 중 “별표 9의3과”를 “별표 9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9의 4와”로 한다.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 9, 별표9의2, 별표 9의 4, 별표10, 별표15 및 별지 1 및 별지1의1호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8조제5항 및 제22조 관련)

직렬	제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 상 졸업자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 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 한 자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 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 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주 1.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주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자는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단서조항은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함>

[별표 5]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7조제1항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전문경력관 다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다 군	컴퓨터활용능력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비고1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비고2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기존 자격증과 통합되거나 단순히 명칭이 변경되어 신설된 자격증은 기존 자격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이하 자격증 관련 별표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 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7조제2항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자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농업기계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공 업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블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포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 자,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방 사성동위원소취 급자(특수, 일 반),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 조종사, 핵연료 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능 장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 기 사 : 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 사 기 능 사 :	
	야 금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기 능 사 :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학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기 능 사 :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 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잡업	기사 :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 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농화학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 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 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기능사 :	
	축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취 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 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능사 :	기사 자격증 가 산 비율적용 : 방 사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 방사 선취급감독자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 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 산비용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 산 물 검 사	산업기사 :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 표시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기 능 사 :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 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기 능 사 :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용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보건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임 상병리사, 의무기 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 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 급 구 조 사 2 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 비용 적용: 보건교육 사3급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의 사, 수의사, 약 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 적 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간 호사, 위생사, 응 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방사선관리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의 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한약 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 수,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 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 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 기 사 : 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 분류,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 산업기사 : 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 능 사 :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의 사, 약사, 수의 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 적 용 : 위생사

환경수질	기술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환경측정분석사 (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대기	기술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환경측정분석사 (대기)
	기능장: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위생사
	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위생사
폐기물	기술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위생사
	기능장:	산림,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시설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건축사
	기능장: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u>방수</u>,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경,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측지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설계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술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산업기사: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능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기술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촌지도	농업기계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자	기술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전기 기사: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업연구	금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 : 섬유 , 생사,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 : 염색 기사 : 섬유 ,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공	기술사 : 화공 ,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 가스	
	화학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공 ,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 포장	
	물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능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지도	농업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농촌지도	원 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 술 사 : 생사	
농촌지도	잠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회 급감독자
		기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평생교 육사 1급, 사회조 사분석사 1급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 사 : 섬유 ,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평 생교육사 2급, 사 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평생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 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지도	축 산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정, 종자, 산림, 농화학	
	조 경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농촌지도	임 업	산업기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기 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수산자원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7]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7 및 제19조 관련)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u>정보보안</u>)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u>정보보안</u>)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u>정보보안</u>)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u>정보보안</u>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계급 직렬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렬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9]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비고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 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9의 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정	운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산	전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u>정보보안</u>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u>정보보안</u>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u>판금제관</u> ,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포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u>판금제관</u> ,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선	기술사 :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기능사 :
	원 자 력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 금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기능사 :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농 업	자 원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산업기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기능사 :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잠 업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식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기능사 :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잠수
해양수산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수산물검사	산업기사 :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산업기사 :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기능장: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능사: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산업기사 : 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능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환경 기능사: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기 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조정, 산림, 환경 기능사 :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정,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 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조정, 산림, 환경 기능사 :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계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기 능 장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교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정,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정, 지적 산업기사 : 기능사 :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기 사 :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산업기사 :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기능사 :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u>콘크리트</u>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기 사 : 교통 건설재료시험, <u>콘크리트</u>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기능사 :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능 장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u>방수</u> ,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 기능사 : 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u>콘크리트</u> ,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u>콘크리트</u> ,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산업기사 :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
	전자통신 기 술	기능사 : 처리
조리	조리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기능사 :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감정평가사(7)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 (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 (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 관리자(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 관리자(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 관리자(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 자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변호사				
사 회 복 지	사 회 복 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7)	사회복지사 1급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 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 (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 (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illegible]

비 고 : 1. (삭제)〈2014.7.31.〉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 숫자는 해당계급에 경력경쟁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별표 9의4] 신설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8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0]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제3항, 제6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 계급 직렬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화 학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기상예보)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약사, 위생사(5)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렬	직류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캐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 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 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제6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행정	운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교통)	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금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업가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농업	자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스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화학	기술사(농화학)			
녹지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수의	조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의	수의사			
	해양수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해양교통시설	어로				
	수산물검사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1·2급 향해사 1·2급 기관사	3·4급 기관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	방 역		<u>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u>	<u>간호사</u>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계급 직렬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직류			
	수도토목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 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 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 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 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 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 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 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 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 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 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 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 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설계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 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 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 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 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 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 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 보처리)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 식, 복어)	
			기능장(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	

직렬 \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15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____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기적 감재 정용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 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관 정	우 수	
			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 수			미 흡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1호서식)

____년도 제 ____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기적 감재 정용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불합격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6.6.30)에 따른 후속조치 및 시험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됨에 따라, 방역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자격요건 신설,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대상 추가, 전문임기제 도입관련 응시자격 요건 신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안 자격증 추가, 자격증 정비 등에 따른 인사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역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자격요건 신설(별표6, 별표9의2, 별표15)

-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보건직렬에 방역직류가 신설('16.6월)됨에 따라 신규임용시험가산대상 자격증(별표6),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별표9의 2),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별표15) 등 자격요건을 신설

나. 전문임기제 도입관련 응시자격 요건 신설 (안 제18조, 별표9의 4)

- 정책결정 보좌업무 수행 등을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16.12월)됨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근거조항(안 18조) 및 자격·경력·학위요건(별표 9의 4) 신설

다. 신규임용시험 원서접수 취소기간 단축 (안 제8조)

- 신속한 시험절차 진행을 위해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가 응시의사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급하는 기간을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라. 서류전형 시험위원 구성 예외 (안 14조)

-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경우 효율적 시험운영을 위해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 신설

마. 전문자격증 추가·정비 등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9의2, 별표15, 별지1, 별지1의1)

-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전산직렬의 신규임용시험(특수직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에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를 추가 및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에 추가하고, 자격증 명칭변경 및 통합 등에 따라 정비함

◆ 서울특별시규칙 제3566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 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구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고액체납액의 인계인수)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처분·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제12조(체납처분 절차) ① 시장은 인계받은 고액체납액 중에서 인계일 현재 구청장이 이미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기일 전까지 관할법원 등에 그 권리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매가 진행 중인 압류재산인 경우에는 배분기일 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매대행기관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고액채납액에 따르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에 대한 부과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후에 발생하는 증가산금에 대한 부과결정은 시장이 행한다.

③ 재산압류 등 채납자에 대한 채납처분은 고액채납액을 인계·인수한 날부터 시장이 행하고, 압류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장이 압류하였거나 고액채납액만 있는 자의 재산 등에 대한 압류해제: 시장
2. 구청장이 압류한 경우로서 고액채납액과 고액채납액 이외의 시세 또는 구세가 동시에 채납되어 있는 자의 재산 등에 대한 압류해제: 시장 또는 구청장

제13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①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건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법원에 소장 또는 상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동일 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제6항”을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10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장”을 “「지방세기본법」 제8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1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한다.

제37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illegible]

※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송달부(교부)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illegible]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년도 기분 세(서류명 기재) 송달불능부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이
의
의

결 재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부과취소(경정) 내역

[illegible]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시세는 구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연도 월 일 연 월 일	지방세환급 내역										결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재			지급필통지사항							
	연도	책호	기분	세목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납 연월일	사유	담당자	팀장	과장	조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가산금			계좌 명칭	계좌 번호	지급 명령액	담당자	팀장	과장	일차	수령 자	대조자 인					
					계	본세 금	가산 금	성명							주소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계				

구분	지방세 환급금 결의액	총당액	계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송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 및 통지액 ④	차감미지급액 ③ - ④	결재		
전월까지 누계									담당자	팀장	과장
당월계											
연도계											
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결재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과 장		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		년 월 일			(인)			
팀 장		총당통지서발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지서번호		년 월 일			(인)			
총당금액 (금 원) (\)										
세입항목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당내역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총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 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고액채납액 인계인수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액채납액을 년 월 일자로 인계인수함.

○ 채납자 내역 및 채납액 정리표 (총괄)

채납건수	총 채납액			채납액 정리표	비 고
	계	본세	가산금		
건	원	원	원	매(명)	세부내역 붙임

○ 송달근거 확보 (총괄)

합계	배달증명			직접송달	기타
	소계	최초고지	독촉고지		
매	매	매	매	매.	세부내역 붙임

○ 채납처분 관련내역

부동산 압류	금융자산 압류	급여 압류	자동차 압류
건	건	건	건
기타자산 압류	공매의뢰	교부금 청구	결손
건	건	건	건
불복청구 진행	신용정보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및 검찰고발
건	건	건	출국금지 건 검찰고발 건

- 붙임자료: 1. 고액채납자 내역서 1부.
 2. 채납액 정리표(징수결정서 사본, 송달근거 포함) 1부.
 3. 공매물건관리대장 사본(공매대행의뢰서 및 부속서류 포함) 1부.
 4. 불납결손관리대장 사본(결손결정결의서 및 부속서류 포함) 1부.
 5. 관허사업제한대장 사본(관허사업제한서류 포함) 1부.
 6. 고발자관리대장 사본(고발관련서류 포함) 1부.
 7. 회사정리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 새로 채납이 발생된 경우 관련서류 사본 1부.

년 월 일

인계자 서울특별시 ○○구청장
 인수자 서울특별시장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고액채납자 내역서

연번	채 납자②		세 목	납기	채 납액	송달근거 확보여부	압류사항	공매 의뢰여부	결손여부	불복절차 진행여부	교부금청구 진행여부	신용정보 제공여부	관허사업 제한여부	검찰 고발여부	기타 (연락처)
	성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①															

※ 작성요령

1. 내역서는 전체를 A4형으로 작성하고, 각 면마다 쪽번호 기입
2. ③세목은 세목코드가 아닌 "세목명" 기재, ④납기는 "부과 연/월" 기재
3. ⑤채납액은 병기세목을 제외한 부과 당시의 시세 및 (중)가산금을 "원"단위로 기재
4. ⑥송달근거확보여부는 "배달증명 ○매", "직접송달서류 ○매" 기재
5. ⑦압류사항은 압류일자 및 압류물건을 "00년 00월 00일 부동산", "00년 00월 00일 금융자산(제3채무자)" 등으로 기재
6. ⑧공매의뢰여부는 "공매의뢰일자"를 기재, ⑨결손여부는 결손일자 및 결손구분을 "00년 00월 00일 불납" 등으로 기재
7. ⑩불복절차 진행여부는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대상으로 하고 "00년 00월 00일 이의신청" 등으로 기재
8. ⑪교부금청구진행여부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배당기일통지 등에 따른 최종 교부금청구일자를 기준으로 "배당 00년 00월 00일 청구금액" 등으로 기재
9. ⑫신용정보제공여부는 "제공일자(제공기관)"를 기재하고, ⑬관허사업제한여부는 "조치일자, 해당기관, 부서, 업종"을 기재
10. ⑭검찰고발여부는 "제공일자" 또는 "조치일자" 및 "결과"를 기재
11. ⑮기타 사항에는 연락처(전화, 팩스, 휴대전화 등) 및 특이사항 기재

297mm×210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처리 결과보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제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청 구 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장								
	상호								
연도 기분	세목	당초 결정		취소(경정)결정		차감액		감액 결정일	비고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붙임 : 조치사항 관계서류 사본 1부. 끝.

행 정 기 관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의결정 처리 결과보고

(심사청구, 이의신청)결정서 제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연도 기분	세목	당초 결정		취소(경정)결정		차감액		감액 결정일	비고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끝.

행 정 기 관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조세심판원
☐ 법원 **에 의한 지방세구제청구사항보고**

당사자	청구인			처분청				
	주소	법인명 또는 상호	성명					
불복경위	제출 연월일	제출기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					
			청구구분	결정연월일	각하	기각	경정	
		1. 조세심판원 2. 법원	1. 이의신청	년 월 일				
			2. 심사청구	년 월 일				
			3. 소송제기	년 월 일				
처분내용	세목	과표	세액	연도(기)분	체납여부	고지연월일		
	처분 사유							
불복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 중 시세의 징수 및 채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이관하는 한편,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류의 송달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 나. 부과와 취소 및 변경, 시세환급금의 처리·지급대상자·충당, 납세담보의 범위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제10조)
- 다. 고액채납액의 인계·인수, 채납처분 절차,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각종 통지의 전산처리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5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3567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6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

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로부터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과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와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 시세에 대하여 체납부를 작성하고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시장 및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정리표에 체납처분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구청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세의 세입징수 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시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마감) ① 시장 등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부과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기는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세 체납액의 이월) ① 시장 등은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절차) ① 시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의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 명단공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으로 선정된 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을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공개일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동일 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7조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통지 제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목		세액			
			가산세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 구 외 명 번길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내역서

[illegible]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의일 : 2024년 11월 15일

세입징수관 (인)

세 목 []세 / 세목구분 [] / 시·구 []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
속
파
나

과세번호 과세물건 주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수납구분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파
사
코

하	나		파
세	도		야
연	도		
노			
오			
행			
이			
노			
예	머		
수			
서			
오			

[illegible]297mm×210mm(백상지 80g/m²)

사무처별 업무정리부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illegible]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도 ○○기(하반기)

$$\begin{pmatrix} \text{NH}_2 \\ \text{O} \\ \text{O} \end{pmatrix}$$
[illegible]

이
영
사
홍
여
사
이
강
대
면
충
경
만
이
진
진
예
아
경
기
하
리
진
진
※

257mm×364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명											
상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팀장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u>주거 확인</u>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u>재산 확인</u>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u>생활상태 확인</u>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u>재조사 확인</u>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결 손 처 분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결손처분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회 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ON
OPI
FPI

서울특별시시장 (인)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년 월 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결손처분된 지방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년 월까지 증가산금을 가산한 체납액이,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는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1. 개인 공개 대상자

년 공개대상자 명단(개인)

(단위 : 백만원)

번호	성명	연령	상호	직업 (업종)	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요지

2. 법인 공개 대상자

년 공개대상자 명단(법인)

(단위 : 백만원)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소재지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요지

210mm×297mm(백상지 80g/㎡)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 이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채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이 규칙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각종 대장의 작성·비치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4조)

나. 시세의 보통징수 방법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다.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납기마감 처리, 체납액정리표 관리를 규정함 (안 제7조~제10조)

라. 세입징수 결과제출, 세입마감, 체납액의 이월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마. 결손처분의 결정·취소·사후관리를 규정함 (안 제14조~제16조)

바. 고액·상습채납자 명단 공개 절차와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를 규정함 (안 제17조, 제18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3568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박 위 순 인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하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7. 공유평의시설(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원편의시설(주차장)

구 분	기 준 및 이용료			이용시간	비 고
주차요금	1회주차(1구획)		1일주차 최고한도	월정기관	◦4월~10월 : 오전9시 ~오후11시 ◦11월~다음해3월 : 오전9시 ~ 오후9시
	기본요금	초과 10분당			
여의도 한강공원	최초30분 2,000원	300원	15,000원	여의도샹강쪽 80,000원 한강본류호안쪽 100,000원	
광나루·잠실·뚝섬·잠원· 반포·이촌·양화·망원·난 지·강서·한강공원	최초30분 1,000원	200원	10,000원	50,000원	

부 칙

이 규칙 개정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한강공원 주차장의 주차질서 확립 및 시민이용편의 증대를 위한 ‘공휴일 유료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표 중 ‘공휴일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내용을 삭제함 (안 별표1, 7호)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292호****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국민안전처 훈령 제232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전부개정에 따라 본 규칙을 상위 법규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장 및 부기장의 권한과 책임의 근거 마련

항공기 운항과 관련 기장의 권한과 책임 및 부기장의 임무수행 근거 마련(안 제6조)

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 개정에 따른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명칭 변경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119항공기사고조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 및 보고기한 기준 마련 (안 제7조, 제9조)

다. 조종·정비사 자격을 심의하여 보직 변경 근거 마련

1) 비행규정 위반 및 성격결함 등으로 인하여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는 조종·정비사를 자격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11조)

- 2)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격자는 비행을 정지하고 일정기간 보직 변경 (안 제12, 제13조)
- 라. 항공기의 긴급운항에 대한 구체적 근거 마련(안 제17조)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운항 시 구두지시에 따라 비행 및 출동지령 후 비행지시서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마. 공중지휘통제관의 지정 및 역할(안 제18조)
소속 항공대, 타 항공대 또는 타 기관 등의 항공기가 다수 출동한 경우 공중지휘통제관의 지정 및 역할 근거 마련
- 바. 비행제한 기상 기준의 정비(안 제21조)
국가기관별로 상이한 비행제한 기상기준을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고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
- 사. 특수한 조건에서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 및 기준 명시(안 제22조)
1) 야간 산악수색구조임무 수행에 대비하여 야간 비행보조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2) 해상 및 담수지 운항 항공기에 부유장치 장착, 구명장비 비치 및 착용과 생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아. 운항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용기준 마련(안 제32조)
항공기의 위치 모니터링 등 운항관리를 위하여 신규 도입된 운항정보시스템 및 단말기에 대한 운용 기준을 마련
- 자. 항공안전 의무보고, 자율보고 등 근거 마련
1)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와(안 제47조)
2) 1)외에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 할때의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근거 마련(안 제48조)
- 차. 항공대의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근거 마련(안 제48조, 제50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대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1일까지 서울특별시(참조 : 119특수구조단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전화 : 02-3706-1911, FAX:02-3706-1919, E-mail: hk1968@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297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5.7.1.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으로 여성관련시설 근거규정 변동함(안 제1조, 제11조, 제19조)

나. 여성관련시설 사용 및 이용의 개념 구분하여 신규 장을 편성하고 각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함 (안 제3장, 제4장)

다.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함(안 제7조,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정책담당관 (전화: 02)2133-5029, FAX: 02)2133-0729, E-mail: kgy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298호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와 주요내용이 중첩되는 등 규칙의 기능을 상실하여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7.5.18.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민관협력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6557, Fax : 02-2133-0860

- E-mail : dow0719@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05호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기관 공통사무의 부서 협조결재를 신설하여 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칙개정임

2. 주요내용

- 가.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정책과 사전 검토를 통해 행정정보 공개율 제고
- 나.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시 국제교류담당관의 사전검토를 통해 다양한 해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2133-6753, FAX:2133-0822, E-mail:gogolady@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07호**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1. 제정이유**

근현대 서울의 문화자원을 보존·관리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5. 7.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인증, 취소 등에 관련한 각종 서식 규정 등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안 제2조 및 제4조)

- 선정·취소 절차 및 형식, 위원회 취소 의결로 인한 효력에 대해 규정함

나. 서울 미래유산의 인증 및 표시(안 제3조)

-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및 미래유산에 표시하는 도안을 서울특별시장에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다. 각종 신청서식(안 제2조~제4조)

- 서울 미래유산 선정 동의서, 서울 미래유산 인증서, 취소 요청서 등 각종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문화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정책과(전화: 02-2133-2547, 팩스: 02-2133-1059, 전자우편: hun199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14호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시 국제교류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교류의 내실화 추진 및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여행방침 수립시 국제교류부서의 장 사전협의 제도화(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인력개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력개발과(전화: 02-2133-5755, 팩스: 02-2133-0775, e-메일: iriswh@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4호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염리3)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3호(2010.8.19.)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7호(2011.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1호(2011.9.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39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7호(2011.11.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89호(2012.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7호(2012.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98호(2013.6.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4호(2013.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4호(2013.1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5호(2014.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0호(2014.5.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5호(2014.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33호(2014.6.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5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52호(2014.7.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24호(2014.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4호(2015.5.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호(2016.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3호(2017.5.2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아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아현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원	768,628.5	증)33.4	768,661.9	염리3구역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준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총 계				768,628.5	증)33.4	768,661.9	
촉진 구역	소 계			471,982.6	증)33.4	472,016.0	
	주택 재개발사업	아현3구역	아현동 635번지 일원	207,420.8	-	207,420.8	
		공덕5구역	공덕동 175번지 일원	42,713.0	-	42,713.0	
		염리2구역	염리동 45번지 일원	51,748.3	-	51,748.3	
		염리3구역	염리동 507번지 일원	87,952.2	증)33.4	87,985.6	
	도시환경정비사업	마포로6구역	공덕동 385번지 일원	16,594.8	-	16,594.8	
	주택 재건축사업	아현2구역	아현동 662번지 일원	65,553.5	-	65,553.5	
준치 구역	준치구역 등		대흥동 28번지 일원	296,645.9	-	296,645.9	

※ 염리3구역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3.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염리3구역 외 변경없음)

4. 염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염리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마포구 염리동 507번지 일원	87,952.2	증)33.4	87,985.6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나. 정비계획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도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주거 지역	소계	87,952.2	증)33.4	87,985.6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87,952.2	증)33.4	87,985.6	100.0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87,952.2	증) 33.4	87,985.6	100.0
택 지 (획 지)	소 계	67,030.2	감) 444.1	66,586.1	75.7
	획지 1	51,603.4	감) 388.4	51,215.0	58.2
	획지 2	8,201.3	증) 18.1	8,219.4	9.3
	획지 3	3,805.8	감) 56.6	3,749.2	4.3
	획지 4	549.6	감) 34.6	515.0	0.6
	획지 5	2,140.6	증) 21.1	2,161.7	2.5
	획지 5-1	729.5	감) 3.7	725.8	0.8
정 비 기 반 시 설 등	소 계	20,922.0	증) 477.5	21,399.5	24.3
	도 로	13,506.5	증) 484.0	13,990.5	15.9
	공 원	5,050.0	증) 33.8	5,083.8	5.8
	사회복지시설	2,365.5	감) 40.3	2,325.2	2.6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427	18~22	국지 도로	623(296)	아현동 666-6	대흥동 2-57	일반 도로	-	서고 제2007-448호 (2007.12.6.)	
기정	중로	2	439	16	집산 도로	620	염리동 81-13	염리동 14-181	일반 도로	-		
변경	중로	2	439	16	집산 도로	620	염리동 81-13	염리동 14-18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17	11	국지 도로	614(486)	염리동 509-1	아현동 645-13	일반 도로	-	(2005.12.29.)	
변경	소로	1	17	11	국지 도로	614(486)	염리동 509-1	아현동 645-13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90	염리동 24-71	염리동 24	일반 도로	-	(97.03.04.)	
변경	소로	3	-	6	국지 도로	90	염리동 24-71	염리동 24	일반 도로	-		

※ ()는 축진구역내 수치임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439	-	경계부 선형정형화	◦ 경계부 형상일부 변경으로 도로선형 정형화 및 측량성과반영
소로 1-17	-	경계부 선형정형화	◦ 경계부 형상일부 변경으로 도로선형 정형화 및 측량성과반영
소로 3	-	경계부 선형정형화	◦ 경계부 형상일부 변경으로 도로선형 정형화 및 측량성과반영

나) 공원·녹지 등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	공원 (하늘마당)	근린공원	염리동 24-128일원	3,878.0	감) 12.1	3,865.9	2005. 12.29.	
변경	-	공원	소공원	염리동 3-58일원	1,172.0	증) 45.9	1,217.9	2012. 6. 7.	

■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하늘마당)	경계부 선형변경	◦ 소로3호선 경계부 연계 선형정형화 및 측량성과반영
-	소공원	면적변경	◦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원 추가 확보 및 측량성과반영

다)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	사회복지시설	염리동 14-11일원	2,365.5	감) 40.3	2,325.2	2007. 12. 6.	

■ 사회복지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사회복지시설	면적변경	◦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관리사무소	염리동 507번지 일원	641.99	감) 83.28	558.71	
변경	주민운동시설	"	1,202.82	증) 158.18	1,361.00	
변경	주민공동시설	"	3,960.52	감) 62.14	3,898.38	
변경	경 로 당	"	520.99	증) 183.10	704.09	
변경	어린이놀이터	"	1,878.80	증) 41.20	1,920.00	
변경	근린생활시설	"	2,759.72	증) 4,263.95	7,023.67	
변경	작은도서관	"	653.84	감) 200.37	453.47	
변경	어린이집	"	444.24	증) 366.18	810.42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염리3재정비 촉진구역	87,952.2	증)33.4	87,985.6	염리동 507번지 일원	664	1	-	663 (신축19동)	-	-

나)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높이, 층수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평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여리3 재정비 촉진구역	87,952.2	획지1	51,603.4	여리동 23-78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51.12 이하 (적용 251.11)	27층이하 (평균21층 이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80m이하	
			획지2	8,201.3	여리동 8-142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3	3,805.8	대흥동 3-59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4	549.6	여리동 28-45일원	종교시설	관계법규에 의함			
			획지5	2,140.6	여리동 14-21일원	존치 (종교시설)				
			획지5-1	729.5	여리동 14-23일원	신설 (종교시설)				
변경	여리3 재정비 촉진구역	87,985.6 (증33.4)	획지1	51,215.0	여리동 23-78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53.46 이하 (적용 251.71)	27층이하 (평균21층 이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80m이하	
			획지2	8,219.4	여리동 8-142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3	3,749.2	대흥동 3-59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4	515.0	여리동 28-45일원	종교시설	관계법규에 의함			
			획지5	2,161.7	여리동 14-21일원	존치 (종교시설)				
			획지5-1	725.8	여리동 14-23일원	신설 (종교시설)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예정세대수 : 1,683세대 (임대주택 : 287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122세대(7.25%) [임대 : 122세대] - 전용면적 40~50㎡ : 115세대(6.83%) [임대 : 115세대] - 전용면적 50~60㎡ : 679세대(40.35%) [임대 : 50세대] - 전용면적 60~85㎡ : 757세대(44.98%) - 전용면적 85㎡이상 : 10세대(0.59%)							
			● 건립예정세대수 : 1,694세대 (임대주택 : 295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128세대(7.56%) [임대 : 128세대] - 전용면적 40~50㎡ : 119세대(7.02%) [임대 : 119세대] - 전용면적 50~60㎡ : 726세대(42.86%) [임대 : 48세대] - 전용면적 60~85㎡ : 620세대(36.60%) - 전용면적 85㎡이상 : 101세대(5.9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16, 18~22m 순환생활가로변 - 6m ● 이면 도로부 - 3m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 행 방 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방식에 의함)	구역지정 고시 일부 4년 이내	여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기정 : 1,683세대 변경 : 1,694세대 (증11세대)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기 정	증·감	변 경	비 고
세 대 수	40㎡ 이하	122	증) 6	128	
	40 ~ 50㎡ 이하	115	증) 4	119	
	50 ~ 60㎡ 이하	50	감) 2	48	
	계	287	증) 8	295	
	비 율	17.1	-	17.4	전체세대수의 17%이상
연 면 적		17,476.35㎡	증) 36.11	17,512.46㎡	

5.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된 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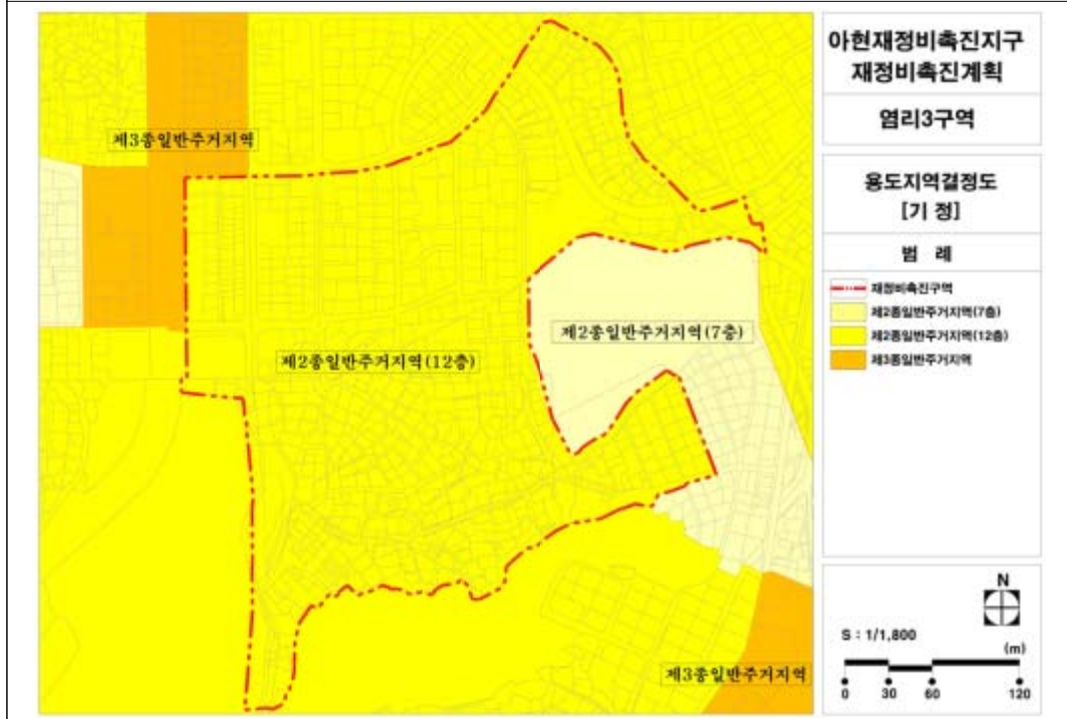
6.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2133-7228) 및 마포구 주택과 (☎3153-9335)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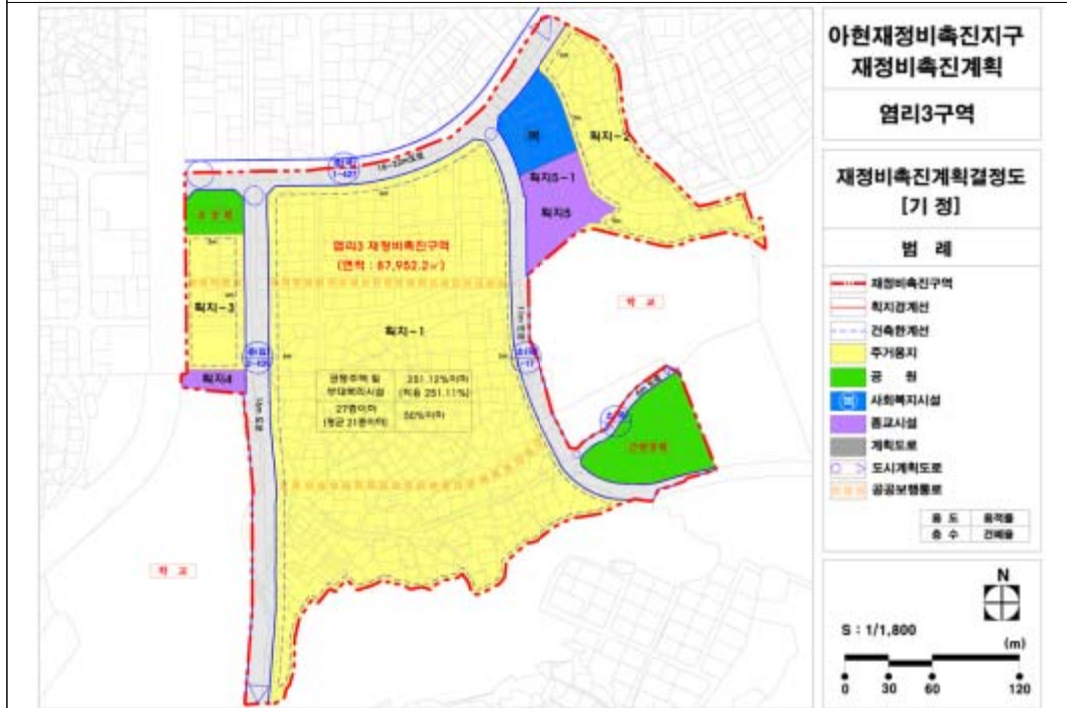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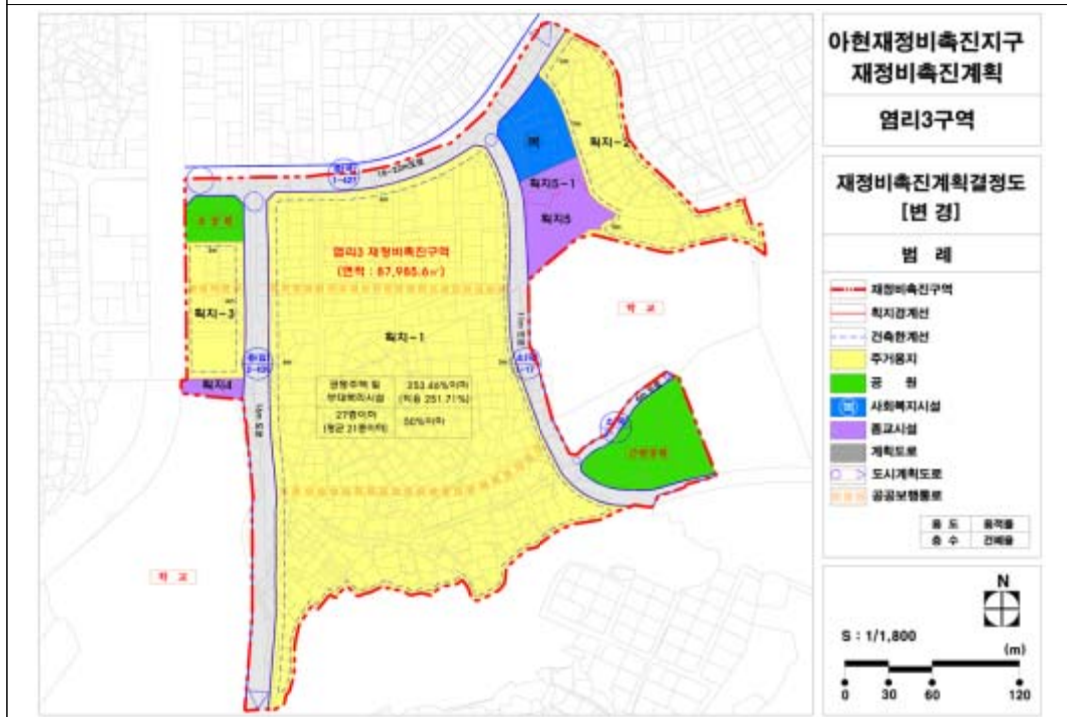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염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정)도



염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5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흑석9)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2008.9.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1호(2009.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5호(2009.7.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8호(2009.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67호(2010.5.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2호(201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6호(2011.6.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호(2012.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호(2012.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8호(2012.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80호(2012.7.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6호(2012.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92호(2012.1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1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6호(2012.12.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5호(2013.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9호(2013.8.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8호(2013.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7호(2013.1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61호(2014.4.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07호(2014.6.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8호(2014.10.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호(2015.1.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22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55호(2016.6.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2호(2016.7.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 정	변 경	변경 후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 형	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원	898,252.6	감) 452.8	897.799.8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흑석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 목표연도 : 2025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 서울 서남생활권의 주거중심지로 개발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며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주거 유형을 도입하여 자연 친화적인 주거단지를 계획함으로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휴먼 빌리지를 조성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총 계		898,252.6	감) 452.8	897,799.8	100.0	
주거용지	소 계	520,765.4	-	520,765.4	58.0	
	공동주택	468,685.2	-	468,685.2	52.2	
	주상복합	52,080.2	-	52,080.2	5.8	
계획기반시설 용지	소 계	301,869.9	감) 434.3	301,435.6	33.6	
	도 로	103,385.1	증) 272.0	103,657.1	11.5	
	공공청사	4,750.6	-	4,750.6	0.5	
	문화시설	750.0	-	750.0	0.1	
	복합커뮤니티시설	2,373.0	-	2,373.0	0.3	
	사회복지시설	3,511.2	증) 10.1	3,521.3	0.4	
	대학교(의료시설)	24,175.3	-	24,175.3	2.7	
	학 교	64,793.0	감) 131.2	64,661.8	7.2	
	공 원	80,083.0	감) 585.2	79,497.8	8.9	
	녹 지	11,612.2	-	11,612.2	1.3	
	공공공지	6,436.5	-	6,436.5	0.7	
	기 타	75,617.3	감) 18.5	75,598.8	8.4	
기 타	현황녹지	20,792.9	-	20,792.9	2.3	
	근린생활시설	9,806.0	감) 8.0	9,798.0	1.1	
	종교시설	18,715.4	감) 10.5	18,704.9	2.1	
	지구단위계획	26,303.0	-	26,303.0	2.9	

※ 측량결과, 도로폭원확장 및 공동주택부지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구 분		계획세대(세대)		인구수(인)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0,947 (12,336)	10,954 (12,343)	26,746 (28,135)	26,763 (28,152)	
촉진구역	소 계	8,810	8,817	21,144	21,161	
	40㎡	583	583	1,399	1,399	
	40~60㎡	2,620	2,650	6,288	6,360	
	60~85㎡	4,668	4,645	11,203	11,148	
	85㎡초과	939	939	2,254	2,254	
준치지역		2,137	2,137	5,602	5,602	

주) ()는 부분임대 포함시 세대수 및 인구수이며, 부분임대는 인구수 산출시 세대당 1명을 적용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개 소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1	21	100,353.1	감) 121.1	100,232.0	
교육시설	5	5	88,968.3	감) 131.2	88,837.1	
사회복지시설	5	5	3,511.2	증) 10.1	3,521.3	
복합커뮤니티시설	3	3	2,373.0	-	2,373.0	
문화시설	2	2	750.0	-	750.0	
공공청사	6	6	4,750.6	-	4,750.6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분	명칭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8	98,131.7	감) 585.2	97,546.5	
공원	소계	17	80,083.0	감) 585.2	79,497.8	
	문화공원	2	17,757.0	－	17,757.0	
	근린공원	6	52,620.5	감) 585.2	52,035.3	
	어린이공원	2	2,163.5	－	2,163.5	
	소공원	7	7,542.0	－	7,542.0	
녹지	소계	4	11,612.2	－	11,612.2	
	연결녹지	1	3,011.2	－	3,011.2	
	완충녹지	2	5,126.7	－	5,126.7	
	경관녹지	1	3,474.3	－	3,474.3	
기타	공공공지	7	6,436.5	－	6,436.5	

※ 측량결과 및 공동주택부지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1) 흑석1구역(주택재개발사업)

(2) 흑석3구역(주택재개발사업) ~ (10) 흑석11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1) 흑석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사항(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1) 흑석1구역(주택재개발사업) ~ (8) 흑석8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9) 흑석9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94,094.0	감) 452.8	93,641.2	100.0
주거지역	소계	94,094.0	감) 452.8	93,641.2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3,982.0	감) 585.2	33,396.8	35.7
	제2종일반주거지역	60,112.0	증) 132.4	60,244.4	64.3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	-	-	-

※ 측량결과 및 공동주택부지 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10) 흑석10구역(주택재개발사업) ~ (11) 흑석11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가) 재정비촉진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산정(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기반시설면적(㎡)					순부담률 (%)
			계획 기반시설	계획기반시 설내 국공유지	기존기반시 설내 국공유지	유상 매입시설	순부담 면적	
			A	B	C	D	A-B-C-D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35,303.0	14,704.0	3,225.0	1,875.0	-	9,604.0	27.2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45,229.0	19,504.0	9,313.0	2,649.0	-	7,542.0	16.7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103,497.4	31,616.0	9,496.0	5,069.1	-	17,050.9	16.5
흑석4재정비촉진구역		56,622.8	15,510.6	2,561.0	1,252.0	-	11,697.6	20.7
흑석5재정비촉진구역		40,940.8	8,475.2	1,324.0	822.0	-	6,329.2	15.5
흑석6재정비촉진구역		64,016.3	15,824.8	4,741.0	3,237.6	-	7,846.2	12.3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74,477.0	19,147.9	7,284.0	3,441.0	-	8,422.9	11.3
흑석8재정비촉진구역		34,597.1	12,520.7	4,842.2	4,156.8	-	3,521.7	10.2
흑석9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94,094.0	32,824.7	15,423.0	3,279.6	-	14,838.1	15.8
	변경	93,641.2	32,390.4	15,493.0	3,209.6	-	13,687.8	14.6
흑석10재정비촉진구역		32,952.0	6,707.0	1,066.0	850.0	-	4,791.0	14.5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86,529.1	29,546.9	1,369.1	16,823.1	-	11,354.7	13.1

※ 측량결과, 도로폭원확장 및 공동주택부지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나) 재정비촉진구역별 흑석9구역내 신설학교 공동부담에 관한 사항(변경)

구역명	신설학교면적(㎡)		공동부담률(%)	비고
	기정	변경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128.0	124.0	1.0	· 재정비촉진구역별 공동부담에 따라 신설학교 부지의1% 부담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1,515.0	1,503.0	12.1	· 용도지역 2단계 상향에 따라 순부담률을 15%이상 확보가 필요함으로 12.1% 부담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224.0	224.0	1.8	· 용도지역 2단계 상향에 따라 순부담률을 15% 이상 확보가 필요함으로 18.1% 부담 · 기반시설(도시계획도로) 시공분담 면적 조정에 의한 부담 면적 감소(감 2,035㎡, 1.8%부담)
흑석4재정비촉진구역	1,171.0	1,167.0	9.4	· 순부담률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및 추가 학교부지 확보에 따라 9.4% 부담 · 학교면적 113.3㎡ 증가 = 4구역부담면적 113.3㎡감소
흑석5재정비촉진구역	128.0	124.0	1.0	· 재정비촉진구역별 공동부담에 따라 신설학교 부지의1% 부담
흑석6재정비촉진구역	1,819.0	1,801.0	14.5	· 사업시행인가 구역으로 신설학교 부지의 14.5% 부담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128.0	124.0	1.0	· 재정비촉진구역별 공동부담에 따라 신설학교 부지의 1% 부담
흑석8재정비촉진구역	3,058.0	3,030.0	24.4	· 용도지역 1단계 상향에 따라 순부담률 10%이상 확보가 필요함으로 24.4% 부담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4,344.0	4,310.0	34.7	· 재정비촉진구역별 공동부담에 따라 18.5% 부담 · 기반시설(도시계획도로) 시공분담 면적 조정에 의한 부담 면적 증가(증 2,035㎡, 34.7%부담)
소계	12,515.0	12,419.8	100.0	
국공유지	667.2	667.2	-	· 흑석4,9구역의 도시계획시설 도로(20m) 선형변경 (시설물 포함 감 14.8㎡)
총계	13,182.2	13,087.0	-	

※측량결과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임

13)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계획(해당없음)

14)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역명		임대				부분임대
		소계	40㎡이하	40~50㎡이하	50~60㎡이하	
흑석1		86	34	34	18	157
흑석2		101	－	80	21	196
흑석3		338	156	136	46	320
흑석4		147	62	62	23	－
흑석5		114	46	51	17	－
흑석6		165	70	68	27	34
흑석7		162	65	75	22	322
흑석8		94	40	44	10	77
흑석9	기정	261	110	106	45	283
	변경	262	110	106	46	283
흑석10		－	－	－	－	－
흑석11		－	－	－	－	－
소계	기정	1,468	583	656	229	1,389
	변경	1,469	583	656	230	1,389

- 15)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6) 기타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 (변경없음)
 17)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8)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9)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흑석1구역(주택재개발사업) ~ (8) 흑석8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9) 흑석9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재정비촉진사업명칭	위치	면적(㎡)			비고
변경	주택재개발사업	흑석동 90번지 일대	기정	증감	변경후	-
			94,094.0	감) 452.8	93,641.2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합계		94,094.0	감) 452.8	93,641.2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32,824.7	감) 434.3	32,390.4	34.6	
	도로	4,359.5	증) 272.0	4,631.5	4.9	
	공원	12,251.0	감) 585.2	11,665.8	12.5	
	사회복지시설	1,000.0	증) 10.1	1,010.1	1.1	노인복지시설
	공공공지	-	-	-	-	
	신설학교	13,182.2	감) 95.2	13,087.0	14.0	
	중대부중	2,000.0	감) 36.0	1,964.0	2.1	
	은로초교	32.0	-	32.0	0.0	
택지 (획지)	소계	61,269.3	감) 18.5	61,250.8	65.4	
	택지9-1	57,298.3	-	57,298.3	61.2	공동주택
	택지9-2	1,833.0	증) 31.0	1,864.0	2.0	근생시설
	택지9-3	527.0	감) 39.0	488.0	0.5	근생시설
	택지9-4	873.0	감) 8.5	864.5	0.9	종교시설
	택지9-5	738.0	감) 2.0	736.0	0.8	종교시설

※ 측량결과, 도로폭원확장 및 공동주택부지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1	20~23 (5)	집산 도로	996 (219)	흑석동 25-21	흑석동 산63-100	일반 도로	-	서고제2008-439호 (03.12.30)	
기정	중로	1	30	20	집산 도로	488 (91)	흑석동 100-8	흑석동 79-162	일반 도로	-	서고제2008-307호 (08.09.11)	
기정	소로	3	2	6~12	국지 도로	130 (52)	흑석동 86-1	흑석동 95-36	일반 도로	-	서고제2008-307호 (08.09.11)	
변경	소로	3	2	6	국지 도로	152 (74)	흑석동 86-1	흑석동 93-203	일반 도로	-	서고제2008-307호 (08.09.11)	도로 연장확대
신설	소로	3	4	4	국지 도로	55	흑석동 332-1	흑석동 225-35	일반 도로	-		4m 도로확폭
신설	소로	3	5	4	국지 도로	36	흑석동 332-3	흑석동 97-22	일반 도로	-		4m 도로확폭

()는 흑석9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함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2	소로3-2	○도로 연장 확대 - L=130m → L=152m - B=6m	·공원과 연계를 위한 도로 연장
-	소로3-4	○도로 신설 - L=55m - B=4m	· 기존 계획을 유지할 경우 막다른도로가 형성되어 4m도로를 계획
-	소로3-5	○도로 신설 - L=36m - B=4m	· 사회복지시설 진출입시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 공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변경	①	-	근린공원	흑석동 58-11 번지일대	14,372.9 (12,251)	감) 585.2	13,787.7 (11,665.8)	서고 제2008-307호 (08.09.11)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	근린공원	· 공원 면적 축소 - 면적 : 감) 585.2㎡	· 도시계획도로와 공원연계를 위해 도로연장을 확대하였으며, 공동주택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공원면적 축소

□ 학교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①	학교	초등 학교	흑석동 245-1번지일대	21,378 (32)	-	21,378 (32)	서고178 (78.4.26)	은로초교
변경	②	학교	중학교	흑석동 86번지일대	16,372 (2,000)	감) 36	16,336 (1,964)	서고193 (73.12.20)	중대부중
변경	⑤	학교	-	흑석동 60번지일대	14,142.7 (13,182.2)	감) 95.2	14,047.5 (13,087.0)	서고 제2008-307호 (03.12.30)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학교	중학교	· 면적 감소 - 면적 : 감) 36.0㎡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감소
⑤	학교	-	· 면적 감소 - 면적 : 감) 95.2㎡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감소

□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④	사회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흑석동 95-167 번지일대	1,000	증) 10.1	1,010.1		노인복지관 치매지원센터 데이케어센터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④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증가 및 선형 변경 - 면적 : 증) 10.1㎡	· 서측 4m도로 확폭으로 인해 선형 변경 및 면적증가

(다) 공동이용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흑석9재정비 촉진구역내	800.0	증) 338.9	1,138.9	
	관리사무소		233.9	감) 137.5	96.4	
	주민공동시설		300.0	증) 1484.7	1,784.7	
	경로당		200.0	증) 306.2	506.2	
	경비실		-	증) 54.6	54.6	
	보육시설		300.0	증) 528.3	828.3	
	문고		150.0	증) 103.9	253.9	
	주민운동시설		1,121.7	증) 5.3	1,127.0	
	어린이놀이터		1,829.0	감) 153.8	1,675.2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	흑석9 재정비 촉진구역	94,094.0	-	-	흑석동 90번지 일대	665	-	-	665	-	
변경		93,641.2	-	-	흑석동 90번지 일대	665	-	-	665	-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발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기정	흑석9 재정비 촉진 구역	94,094.0	택지9-1	57,298.3	흑석동90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3%	254.8%	25
			택지9-2	1,833.0	흑석동86-50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200% 이하	-
			택지9-3	527.0	흑석동86-81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200% 이하	-
			택지9-4	873.0	흑석동95-37번지 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택지9-5	738.0	흑석동228-2번지 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미만 : 60%이상 (80%이상 권장) - 85㎡초과 20%이상 계획시 : 초과세대수 만큼의 부분임대 설치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0%이상 · 건립예정세대수 : 1,529 세대 (임대 261세대) - 임대주택 건립시 전용면적 38㎡이상 () :부분임대						
			구분(전용면적)	총세대수	분양세대	임대세대	비 율		
			40㎡이하	110		110	7.2%		
			40~50㎡이하	106		106	6.9%		
			50~60㎡이하	645	600	45	42.2%		
			60~85㎡이하	599(255)	599(255)		39.2%		
			85㎡ 초과	69(28)	69(28)		4.5%		
			합 계	1,529(283)	1,268(283)	261	10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규에 의함 흑석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지침도에 따름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흑석9 재정비 촉진 구역	93,641.2	택지9-1	57,298.3	흑석동90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3%	254.8%	25																																			
			택지9-2	1,864.0	흑석동86-50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200% 이하	-																																			
			택지9-3	488.0	흑석동86-81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200% 이하	-																																			
			택지9-4	864.5	흑석동95-37번지 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택지9-5	736.0	흑석동228-2번지 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건설비용 - 세대당 전용면적 85㎡미만 : 60%이상 (80%이상 권장) - 85㎡초과 20%이상 계획시 : 초과세대수 만큼의 부분임대 설치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0%이상 · 건립예정세대수 : 1,536 세대 (임대 262세대) - 임대주택 건립시 전용면적 38㎡이상 ():부분임대 <table><tr><th>구분(전용면적)</th><th>총세대수</th><th>분양세대</th><th>임대세대</th><th>비 율</th></tr><tr><td>40㎡이하</td><td>110</td><td></td><td>110</td><td>7.2%</td></tr><tr><td>40~50㎡이하</td><td>106</td><td></td><td>106</td><td>6.9%</td></tr><tr><td>50~60㎡이하</td><td>675</td><td>629</td><td>46</td><td>43.9%</td></tr><tr><td>60~85㎡이하</td><td>576(255)</td><td>576(255)</td><td></td><td>37.5%</td></tr><tr><td>85㎡초과</td><td>69(28)</td><td>69(28)</td><td></td><td>4.5%</td></tr><tr><td>합 계</td><td>1,536(283)</td><td>1,274(283)</td><td>262</td><td>100.0%</td></tr></table>								구분(전용면적)	총세대수	분양세대	임대세대	비 율	40㎡이하	110		110	7.2%	40~50㎡이하	106		106	6.9%	50~60㎡이하	675	629	46	43.9%	60~85㎡이하	576(255)	576(255)		37.5%	85㎡초과	69(28)	69(28)		4.5%	합 계	1,536(283)	1,274(283)	262	100.0%
		구분(전용면적)	총세대수	분양세대	임대세대	비 율																																						
		40㎡이하	110		110	7.2%																																						
		40~50㎡이하	106		106	6.9%																																						
		50~60㎡이하	675	629	46	43.9%																																						
		60~85㎡이하	576(255)	576(255)		37.5%																																						
85㎡초과		69(28)	69(28)		4.5%																																							
합 계		1,536(283)	1,274(283)	262	10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규에 의함 흑석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지침도에 따름																																											

(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사)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아) 생태면적률(변경없음)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흑석9 재정비 촉진구역	9	61,269.3	61,250.8	9-1	흑석동90번지일대	57,298.3	57,298.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9-2	흑석동86-50번지일대	1,833.0	1,864.0	근생시설
				9-3	흑석동86-81번지일대	527.0	488.0	근생시설
				9-4	흑석동95-37번지일대	873.0	864.5	종교시설
				9-5	흑석동228-2번지일대	738.0	736.0	종교시설

(차)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건립위치		부지면적(㎡)	세대규모(전용)	세대수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흑석9 재정비 촉진구역내	변경	57,298.3	40㎡ 미만	110(7.2%)	-	110(7.2%)	
			40~50㎡ 미만	106(6.9%)	-	106(6.9%)	
			50~60㎡ 미만	45(2.9%)	증) 1세대	46(2.8%)	
			소계	261(17.0%)	증) 1세대	262(17.0%)	

주) 임대주택 건립비율 : 17.0%(전체세대수의 17.0%이상 확보)

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구역내 혼재되어 있어 부지면적은 공동주택용지 면적임

(카) 건축계획(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기 정	변경후	
구역면적(㎡)		94,094.0	93,641.2	
대지면적(㎡)		57,298.3	57,298.3	
용적률산정용면적(㎡)		145,987.3	145,890.3	
건축면적(㎡)		11,030.0	10,653.5	
용적률(%)		254.8	254.6	
건폐율(%)		19.3	18.6	
주차대수	지상	7대(근생)	13대(근생)	
	지하	1,911대	1,900대	
	계	1,918대	1,913대	

(10) 흑석10구역(주택재개발사업) ~ (11) 흑석11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20)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변경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동작구흑석동 84-10번지일대	898,252.6	감) 452.8	897,799.8	· 흑석9구역 측량 결과 반영

(2)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총 계			898,252.6	감) 452.8	897,799.8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853,020.6	감) 452.8	852,567.8	95.0	
		제1종일반주거지역	162,749.4	－	162,749.4	18.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13,210.9	감) 585.2	212,625.7	23.7	
		제2종일반주거지역	457,493.8	증) 132.4	457,361.4	50.9	
		제3종일반주거지역	19,566.5	－	19,566.5	2.2	
	준주거지역		43,286.2	－	43,286.2	4.8	
자연녹지지역			1,945.8	－	1,945.8	0.2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흑석9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감)585.2㎡ 제2종일반주거지역 증)132.4㎡	공원, 종교용지, 기반시설 변경 및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3)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미관지구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흑석동	26,437	1,356	20	66.12.26	현충로

나) 경관지구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	흑석동 186-19번지일대	106,157 (88,308)	41.3.25	흑석7구역 흑석10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흑석1준치관리구역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43	35	주간선 도로	2,000 (-)	한강대교남단	이수교	일반 도로	-	건고14 (77.1.31)	흑석1,2,7 구역
기정	중로	1	1	20~23	집산 도로	996	흑석동 25-21	흑석동 산63-100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3,4,5,6, 9 구역
기정	중로	1	2	20~23	집산 도로	251	흑석동 130-3	흑석동 183-10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2,7구역
기정	중로	1	30	20	집산 도로	488	흑석동 100-8	흑석동 79-162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2,3,8,9 구역
기정	중로	2	1	15~18	집산 도로	532	흑석동 183-17	흑석동 41-15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1,2,5 구역
기정	중로	2	2	15~21	집산 도로	234	흑석동 143-57	흑석동 186-147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7구역
기정	중로	2	3	15~18	집산 도로	152	흑석동 130-6	흑석동 163-3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7구역
기정	중로	2	4	15	집산 도로	104	흑석동 8-32	흑석동 50-11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1구역
기정	중로	2	5	15~20	집산 도로	483	흑석동 272	흑석동 38-28	일반 도로	-	서고 196호 (12.7.26)	흑석11구역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37	흑석동 38-28	흑석동 39-15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5구역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135	흑석동 68-4	흑석동 67-207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4구역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110	흑석동 200-8	흑석동 204-126	일반 도로	-	서고 196호 (12.7.26)	흑석10구역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31	12	국지 도로	821 (228)	흑석동 (흑석동 산63-100)	상도동 (흑석동 257-129)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3구역
기정	중로	3	32	12~15	집산 도로	559 (-)	흑석동 (흑석동 183-6)	상도동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1존치 관리구역, 흑석10구역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78	흑석동 76-171	흑석동 257-58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3구역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212 (77)	흑석동 252-53 (흑석동 67-207)	흑석동 67-54 (흑석동 327-2)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4구역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08	흑석동 67-207	흑석동 75-33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3,4구역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06	흑석동 173-12	흑석동 173-79	일반 도로	-	서고 346호 (12.12.30)	흑석7구역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60	흑석동 198-90	흑석동 198-90	일반 도로	-	서고 346호 (12.12.30)	흑석7구역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9	흑석동4	흑석동 54-8	일반 도로	-	서고 439호 (03.12.30)	흑석5구역
기정	소로	3	2	6~12	국지 도로	130 (52)	흑석동 86-1	흑석동 95-36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9구역
변경	소로	3	2	6~12	국지 도로	152 (74)	흑석동 86-1	흑석동 95-36	일반 도로	-	서고 307호 (08.9.11)	흑석9구역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76	흑석동 38-26	흑석동 38-58	일반 도로	-	서고 196호 (12.7.26)	흑석11구역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241	흑석동 198-90	흑석동 204-171	일반 도로	-	서고 196호 (12.7.26)	흑석10구역
기정	소로	3	180	6	국지 도로	147 (85)	흑석동 중로3-31	흑석동 239-65 (흑석동 239-40)	일반 도로	-	서고 제425호 (84.7.25)	흑석6구역
기정	소로	3	49	6~8	국지 도로	80	흑석동 143-122	흑석동 143-118	일반 도로	-	-	흑석7구역
기정	소로	1	3	6	국지 도로	73	흑석동 소로1-1	흑석동 76-73	일반 도로	-	서고 제407호 (13.12.5)	흑석3구역
신설	소로	3	4	4	국지 도로	55 (26)	흑석동 332-1	흑석동 225-35	일반 도로	-	-	흑석9구역
신설	소로	3	5	4	국지 도로	36 (30)	흑석동 332-3	흑석동 97-22	일반 도로	-	-	흑석9구역

주) ()는 흑석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2	소로3-2	· 도로 연장 확대 - L=130m → L=152m - B=6m	· 공원과 연계를 위한 도로 연장
-	소로3-4	· 도로 신설 - L=55m - B=4m	· 기존 계획을 유지할 경우 막다른 도로가 형성됨에 따라 4m도로를 계획
-	소로3-5	· 도로 신설 - L=36m - B=4m	· 사회복지시설 진출입시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 철도(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철도	도시철도 (흑석역)	흑석동4 번지일대	7,304 (168)	서고 제5호 (02. 1. 9)	

주) ()는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을 의미

나) 공간시설(변경)

□ 공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①	-	문화 공원	흑석동 105번지일대	12,209	-	12,209	서고제307호 (08.9.11)	흑석1,2구역
변경	①	-	근린 공원	흑석동 58-11번지일대	14,372.9 (12,251.0)	감) 585.2	13,787.7 (11,665.8)	"	흑석1,2,4,5,9 구역
기정	②	-	근린 공원	흑석동 69-163번지일대	10,240.9	-	10,240.9	"	흑석3,4구역
기정	②	-	어린이 공원	흑석동 54-28번지일대	2,163.5	-	2,163.5	"	흑석1,5구역
기정	①	-	소공원	흑석동 231-31번지일대	1,420.1	-	1,420.1	"	흑석8구역
기정	②	-	소공원	흑석동 38-2번지일대	301.3	-	301.3	"	흑석4,5구역
기정	③	-	소공원	흑석동 339-4번지	254.8	-	254.8	"	흑석6구역
기정	⑥	-	소공원	흑석동 234-7번지일대	299.8	-	299.8	"	흑석8구역
기정	⑦	-	소공원	흑석동 186-135번지일대	442.0	-	442.0	서고제128호 (12.5.17)	지구단위계획 구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㉔	-	소공원	흑석동 198-90번지일대	114	-	114	서고제196호 (12.7.26)	흑석10구역
기정	㉓	노량진 근린공원	근린 공원	대방동,본동 노량진동, 일대	415,610 (1,542)	-	415,610 (1,542)	총독부고시 제208호(40.3.12)	흑석10구역
기정	-	현충 근린공원	근린 공원	동작동 산30-7일대	1,106,365.7 (21,970.5)	-	1,106,365.7 (21,970.5)	서고제321호 (09.8.27)	흑석 3,4,6,11구역
기정	-	옹봉정 근린공원	근린 공원	흑석동 본동 일대	80,804.2 (4,494.2)	-	80,804.2 (4,494.2)	총독부고시 제208호(40.3.12)	흑석7구역

주) ()는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을 의미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근린공원	· 공원 면적 축소 - 면적 : 감) 585.2㎡	· 도시계획도로와 공원연계를 위해 도로연장을 확대함에 따라 공원면적 축소 · 측량결과 부지면적 감소에 따라 공동주택부지 선형 조정에 따른 면적 감소

□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흑석동 225-44번지일대	189	-	189	서고307호 (08.9.11)	흑석 2구역
기정	②	공공공지	흑석동 97-2번지일대	373	-	373	서고제307호 (08.9.11)	흑석 2구역
기정	③	공공공지	흑석동 97-38번지일대	114	-	114	서고제307호 (08.9.11)	흑석 2구역
기정	⑤	공공공지	흑석동 339-3번지	491.6	-	491.6	서고제307호 (08.9.11)	흑석 6구역
기정	⑥	공공공지	흑석동 257번지일대	4,245.9	-	4,245.9	서고제307호 (08.9.11)	흑석 3구역
기정	⑦	공공공지	흑석동 198-52번지일대	96	-	96	서고제128호 (12.5.17)	지구단위 계획구역

☐ 녹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②	-	연결녹지	흑석동 339-2	3,011.2	-	3,011.2	서고제307호 (08.9.11)	흑석6구역
기정	①	-	완충녹지	흑석동 274	1,217.1	-	1,217.1	서고제196호 (12.7.26)	흑석11구역
기정	②	-	완충녹지	흑석동 269-3	1,040	-	1,040	서고제196호 (12.7.26)	흑석11구역
기정	③	-	완충녹지	흑석동 264-1	600	-	600	서고제196호 (12.7.26)	흑석11구역
기정	④	-	완충녹지	흑석동 140-1일대	2,269.6	-	2,269.6	서고제346호 (12.12.20)	흑석7구역
기정	①	-	경관녹지	흑석동 산88-14	3,474.3	-	3,474.3	서고제196호 (12.7.26)	흑석11구역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공공청사(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	흑석동 39-2번지일대	747.1	-	747.1	서고 제439호 (03.12.30)	주민센터 (흑석5구역)
기정	②	공공청사	-	흑석동 177-32번지일대	501.3	-	501.3	서고 제307호 (08.9.11)	파출소 (흑석7구역)
기정	③	공공청사	-	흑석동 173-63번지일대	861.2	-	861.2	서고 제307호 (08.9.11)	선거관리위원회 (흑석7구역)
기정	④	공공청사	-	흑석동 54-152번지일대	1,941	-	1,941	서고 제307호 (08.9.11)	통합동주민센터 (흑석2구역)
기정	⑤	공공청사	-	흑석동 272-3번지일대	700	-	700	서고 제196호 (12.7.26)	흑석11 구역

☐ 문화시설(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①	문화시설	-	흑석동 38-58 번지일대	750	-	750	서고 제196호 (12.7.26)	흑석11구역

☐ 학교시설(변경)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①	학교	초등 학교	흑석동245-1 번지일대	21,378 (32)	-	21,378 (32)	서고 제178호 (78. 4.26)	은로초교 흑석3,6,8,9구역
변경	②	학교	중학교	흑석동 86 번지일대	16,372 (2,000)	감) 36.0	16,336 (1,964)	서고 제193호 (73.12.20)	중대부중 흑석9구역
기정	③	학교	초등 학교	흑석동 233-2번지일대	12,883.1 (2,317.1)	-	12,883.1 (2,317.1)	서고 제197호 (97. 6.10)	중대부속초교 흑석8구역
기정	④	학교	대학	흑석동 221번지일대	176,787.3 (1,089.3)	-	176,787.3 (1,089.3)	서고 제178호 (76.10. 5)	중앙대 흑석2,6,8구역
변경	⑤	학교	-	흑석동 60번지일대	14,142.7 (13,182.2)	감) 95.2	14,047.5 (13,087.0)	서고 제307호 (08.9.11)	흑석4,9구역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학교	중학교	· 면적 감소 -면적 : 감) 36.0㎡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감소
⑤	학교	-	· 면적 감소 -면적 : 감) 95.2㎡	·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감소

☐ 사회복지시설(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①	사회 복지시설	-	흑석동54-235번지 일대	502	-	502	서고 제307호 (08.9.11)	흑석4구역
기정	②	사회 복지시설	-	흑석동173-52번지 일대	726.2	-	726.2	서고 제346호 (12.12.20)	흑석7구역
기정	③	사회 복지시설	-	흑석동257-10번지 일대	1,283	-	1,283	서고 제407호 (13.12.5)	흑석3구역
변경	④	사회 복지시설	노인 복지 시설	흑석동95-167번지 일대	1,000	증) 10.1	1,010.1	서고 제156호 (16.6.2)	흑석9구역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④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 면적증가 및 선형변경 - 면적 : 증) 10.1㎡	· 서측 4m도로 확폭 및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 도서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①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	흑석동 231-8번지 일대	1,435	-	1,435	서고 제307호 (08.9.11)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흑석8구역

라)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①	열공급 설비	-	흑석동 105번지 일대	12,209	-	12,209	서고 제307호 (08.9.11)	흑석1,2구역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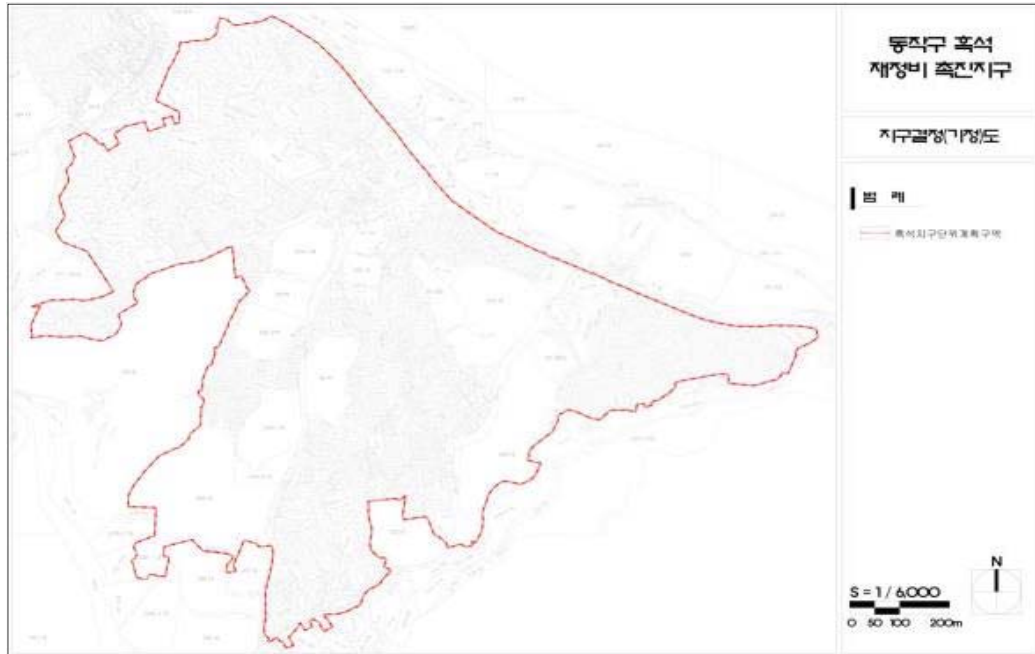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흑석 지구단위계획구역	흑석동 186-19번지 일대	26,841.0	-	26,841.0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5. 기타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관련 사항은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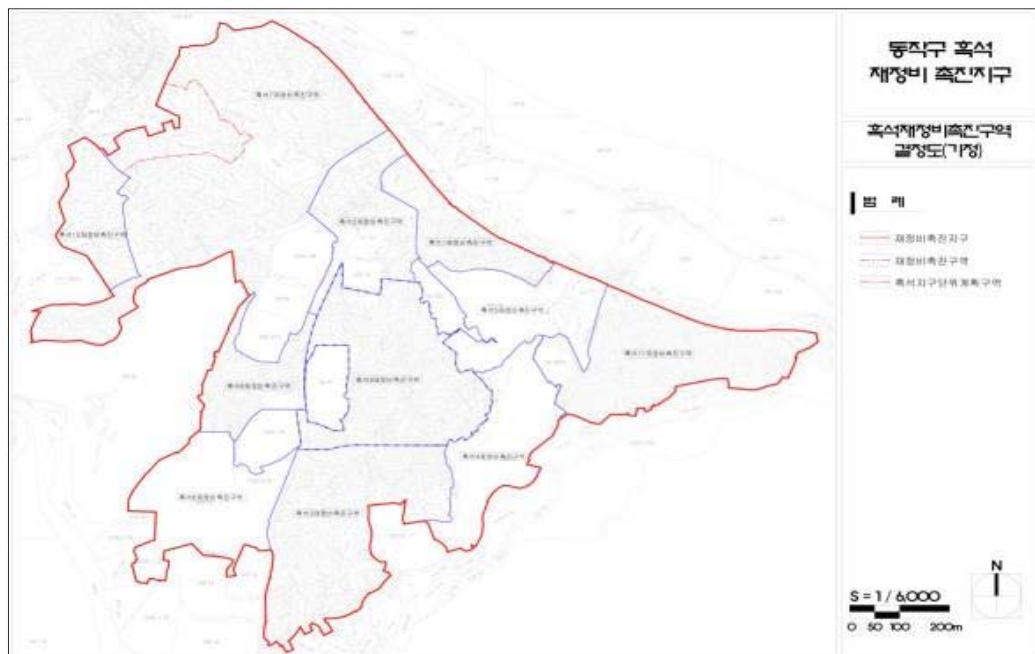
6.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및 동작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3) 및 동작구 도시개발과(☎02-820-926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결정도(기정)】 변경없음



【재정비촉진구역결정도(기정)】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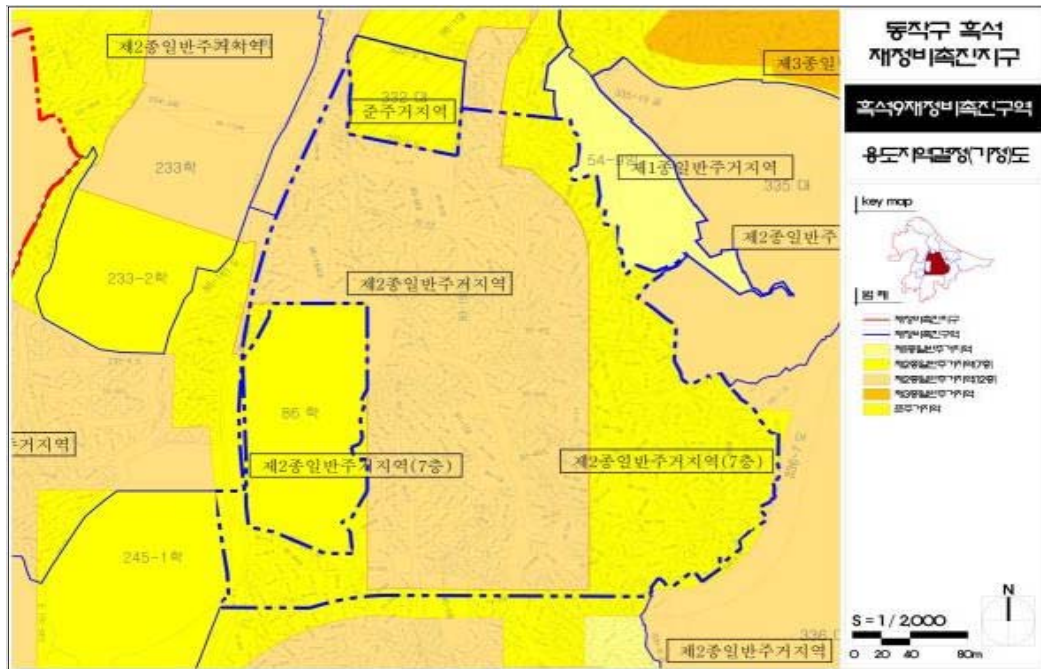
【흑석9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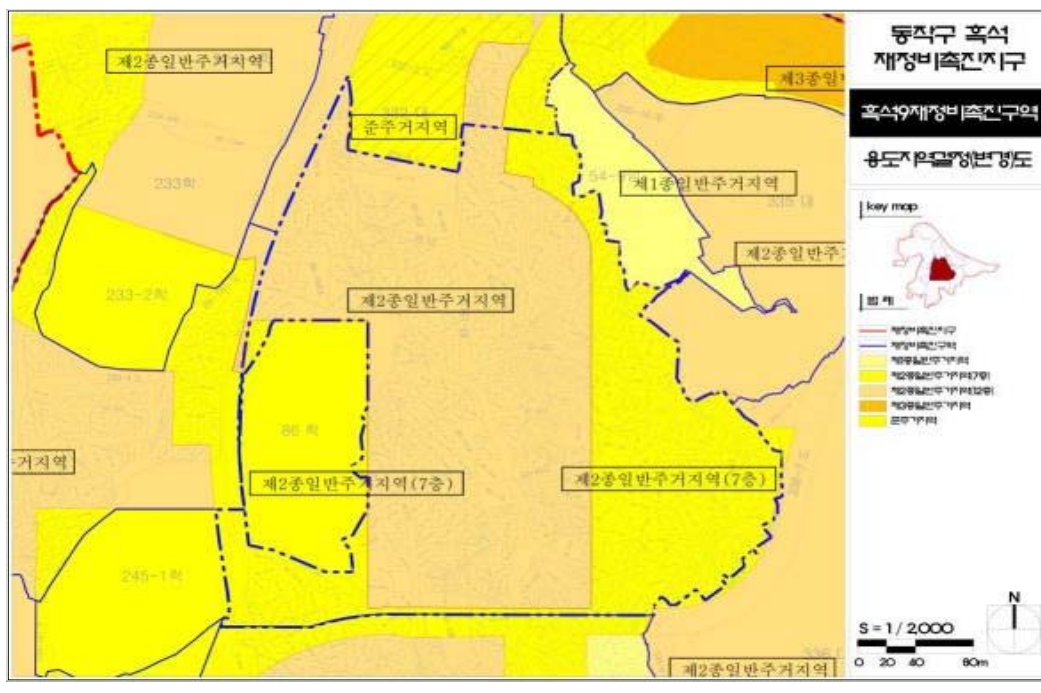
【흑석9 토지이용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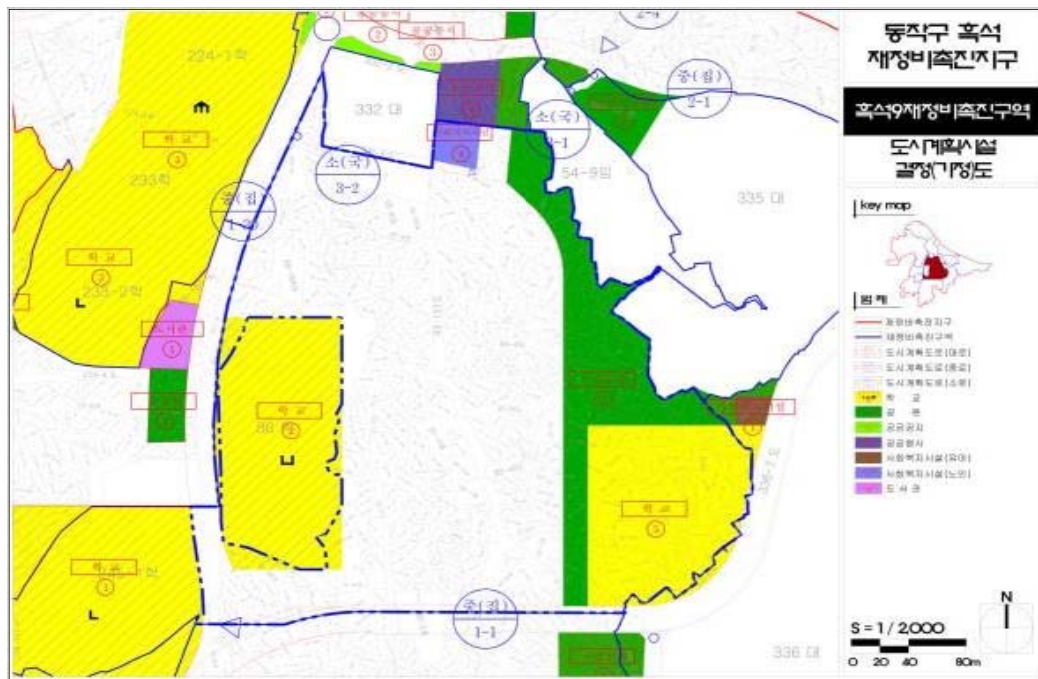
【흑석9 용도지역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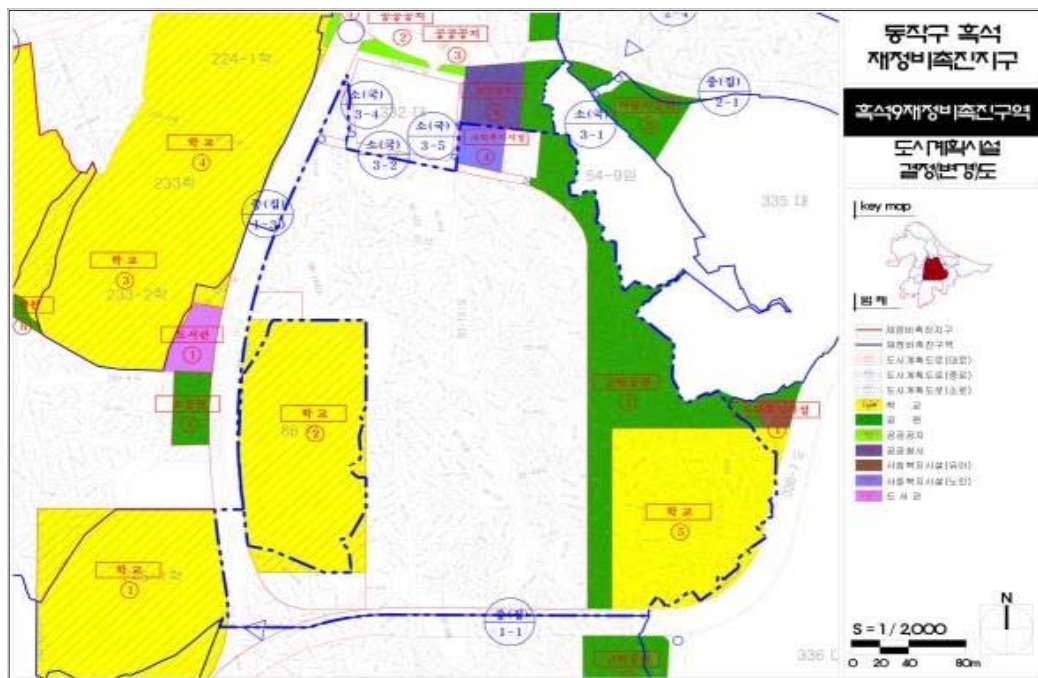
【흑석9 용도지역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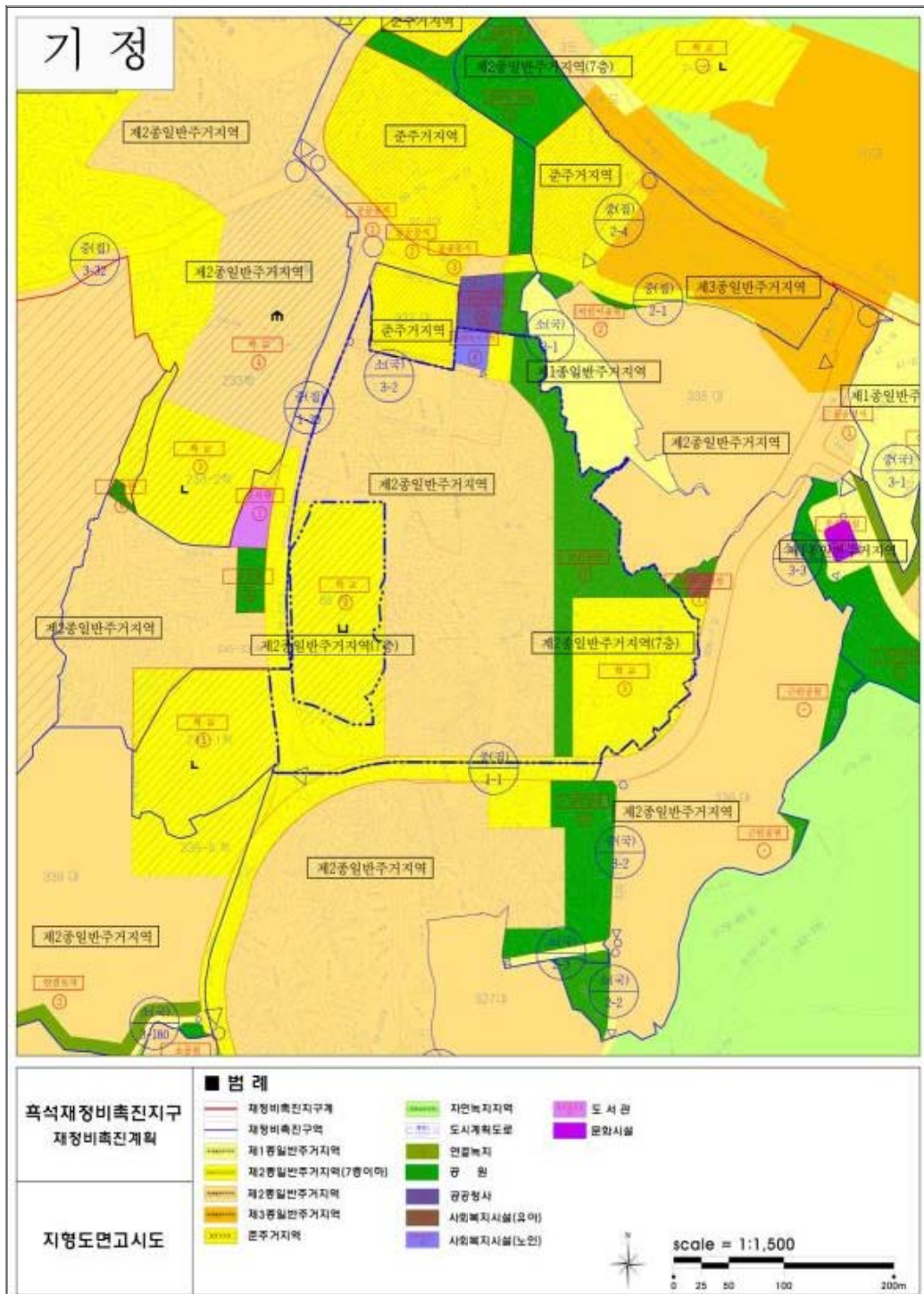
【흑석9 도시계획시설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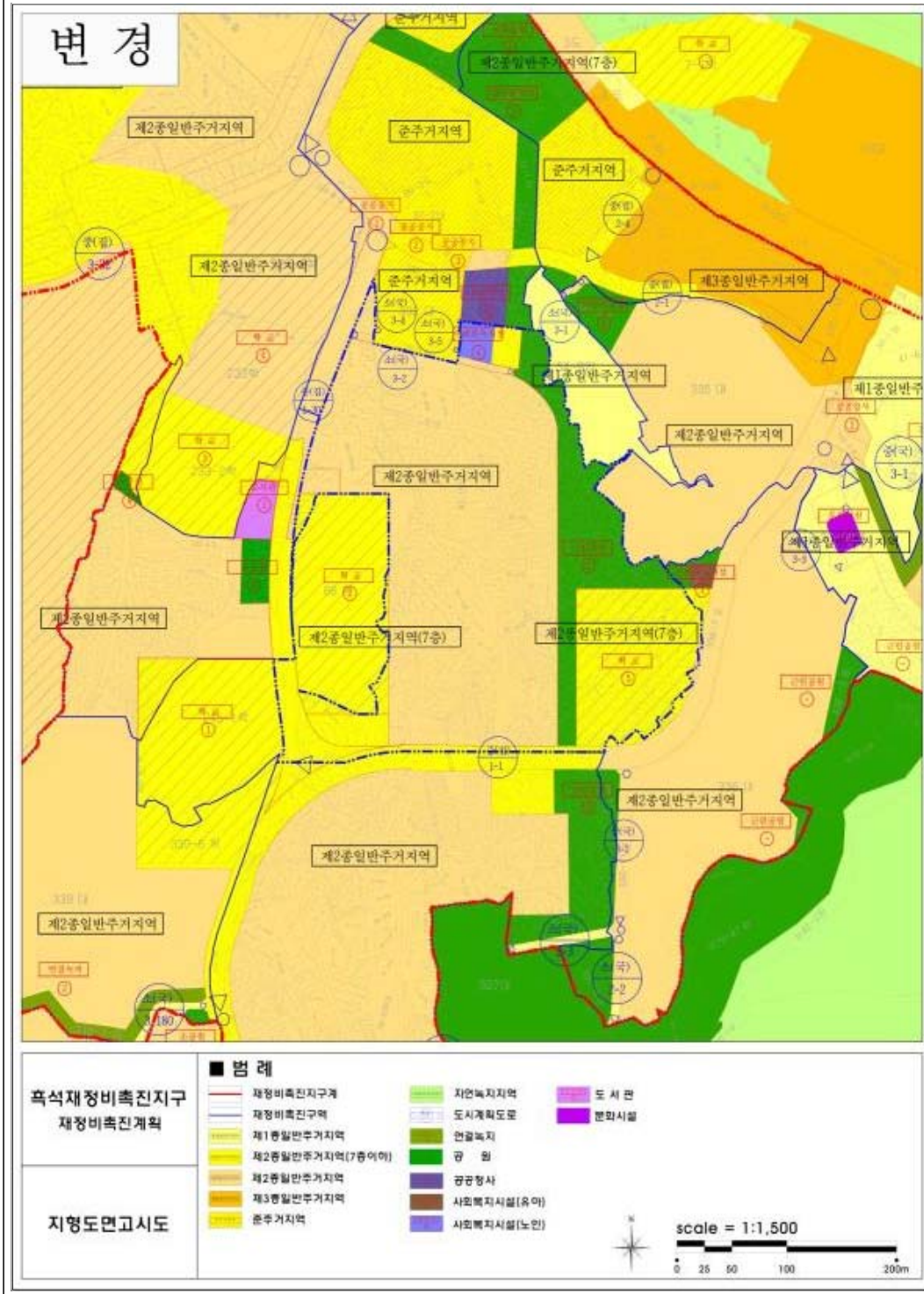
【흑석9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지형도면 고시도(기정)】



【지형도면 고시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대학교)

건설부고시 제124호(1970.03.1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5호(2017.3.9.)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일대 서울대학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일대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건축물 신·증축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학 교	대 학 (서울대학교)	관악구 신림동 산56-1 일대	3,895,659	-	3,895,659	건고 제124호 (1970.3.17)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구역계획 [변경 없음]

구역	구분	면적(㎡)	구역	구분	면적(㎡)
일반관리구역	①	129,725	외부활동구역	②	53,884
	③	236,586		④	145,853
	⑤	257,508		⑫	61,523
	⑧	77,618	상징경관구역	⑦	71,871
	⑨	80,790	소 계		333,131
	⑩	152,510	녹지보존구역	⑥	47,410
	⑪	147,616		⑭	2,313,069
	⑬	119,696	소 계		2,360,479
소계		1,202,049	합 계		3,895,659

(2) 밀도계획 (건폐율)

구분	밀도산정기준면적(㎡)	법정건폐율(%)	사용건폐율(%)		관리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제1종 일반주거지역	76,122	60.00	19.93	19.94	21.79	
자연녹지지역	1,623,783	20.00				
계	1,699,905	21.79				

※ 학교용지 면적(3,895,659㎡) 대비 법정건폐율 20.47%, 사용건폐율 8.70%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높이)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법정 용적률	사용용적률		계획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정	변경					
①	125.00	86.44	86.66	97.00	-	125.00	●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②	103.00	7.65	7.65	17.00	- 83.00	20.00	● 지표로부터 16m 이하	외부활동구역 (정문,대운동장 등)
③	100.00	90.12	90.12	88.00	-	100.00	●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산복도로 연결지 별도 적용(기준3)	-
④	100.00	-	-	-	- 100.00	-	-	외부활동구역 (국수봉)
⑤	101.00	116.25	116.25	143.00	+ 49.00	150.00	● 지표로부터 40m 이하 ● 산복도로 연결지 별도 적용	-
⑥	100.00	-	-	-	-	-	-	녹지보존구역
⑦	100.00	91.99	91.99	100.00	-	100.00	● 지표로부터 40m 이하	상징경관구역 (본관, 중앙도서관, 아크로폴리스, 규장각)
⑧	100.00	107.82	107.82	135.00	+ 50.00	150.00	● 지표로부터 40m 이하 ● 산복도로 연결지 별도 적용(기준3)	-
⑨	100.00	123.09	135.95	125.00	+ 50.00	150.00	●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⑩	100.00	118.25	118.25	144.00	+ 50.00	150.00	● 지표로부터 40m이하, 일부 구역 50m이하 (단, 표고 +40m 초과 건축시 별도심의를 통해 완화)	-
⑪	100.00	75.00	75.11	79.00	-	100.00	● 지표로부터 40m 이하 ● 녹지연접지 16~30m 이하	-
⑫	100.00	1.29	1.29	2.00	- 98.00	2.00	● 오픈스페이스 구역에 부합되는 높이 관리 : 표고 +16m이하	외부활동구역 (버들골)
⑬	100.00	94.13	94.13	94.00	-	100.00	● 지표로부터 16~40m 이하	-
⑭	100.00	0.063	0.063	-	캠퍼스지역 비오톱2등 급지 일부 이전	0.063	● 기존 건축물 개축 허용	녹지보존구역

(4) 변경 건축물 조서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면적(㎡)				층수 (지하)		비고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 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 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 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구 역	미래발전연구센터 → 우석경제관	-	-	2,000.00	1,384.09	-	-	6,000.00	5,980.17	-	-	4,800.00	5,095.30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5층	계획변경
9 구 역	대학신문사 → 농식품연구소 및 산학협력관	-	-	1,076.58	1,880.46	-	-	2,124.33	14,231.43	-	-	1,365.03	11,752.59	지하1층 지상2층	지하2층 지상7층	철거 후 신축
11 구 역	약학연구관	-	-	423.76	436.81	-	-	1,070.99	1,241.28	-	-	1,070.99	1,241.28	지상4층	지상4층	증 축
소계		-	-	3,500.34	3,701.36	-	-	9,195.32	21,452.88	-	-	7,236.02	18,089.17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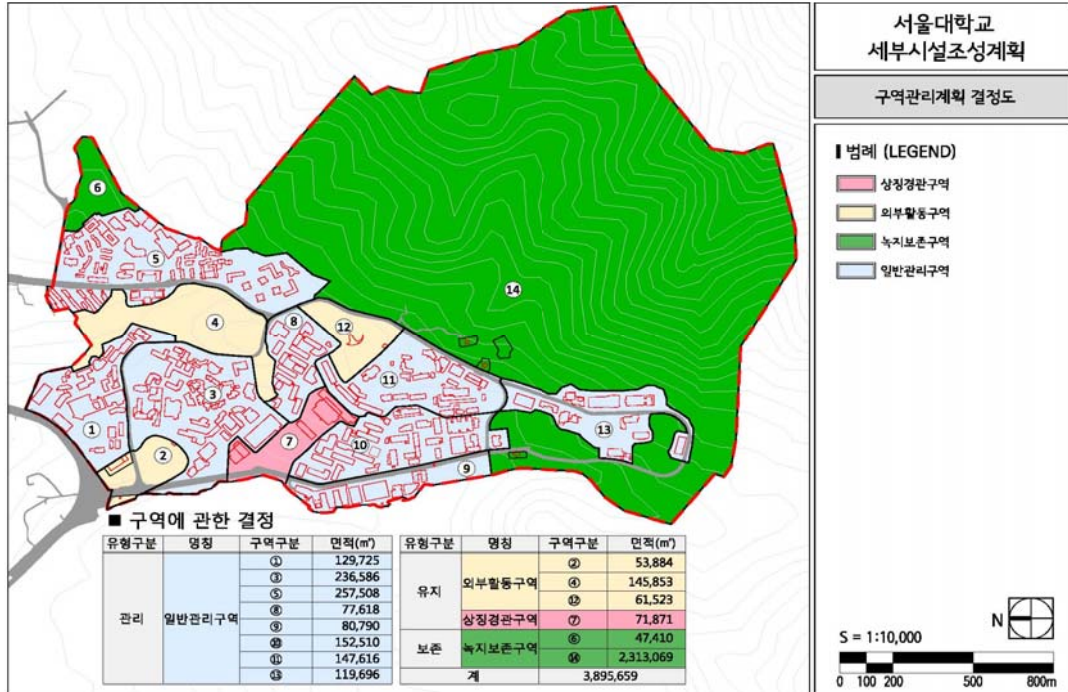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도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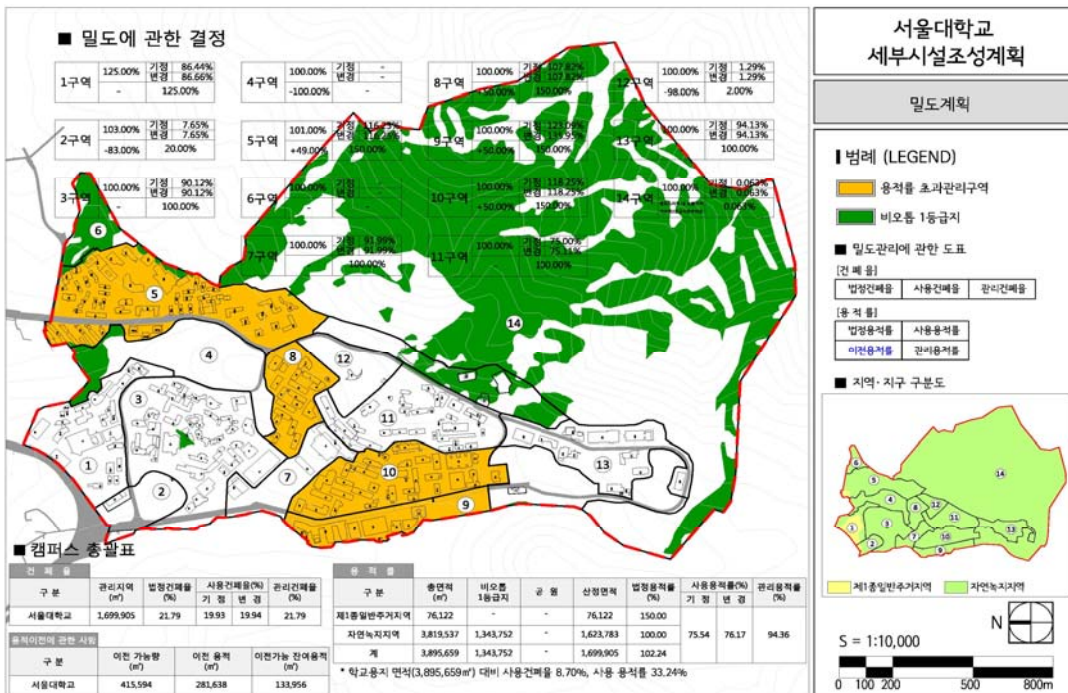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1) 및 관악구 도시계획과(☎ 879-6371)에 관계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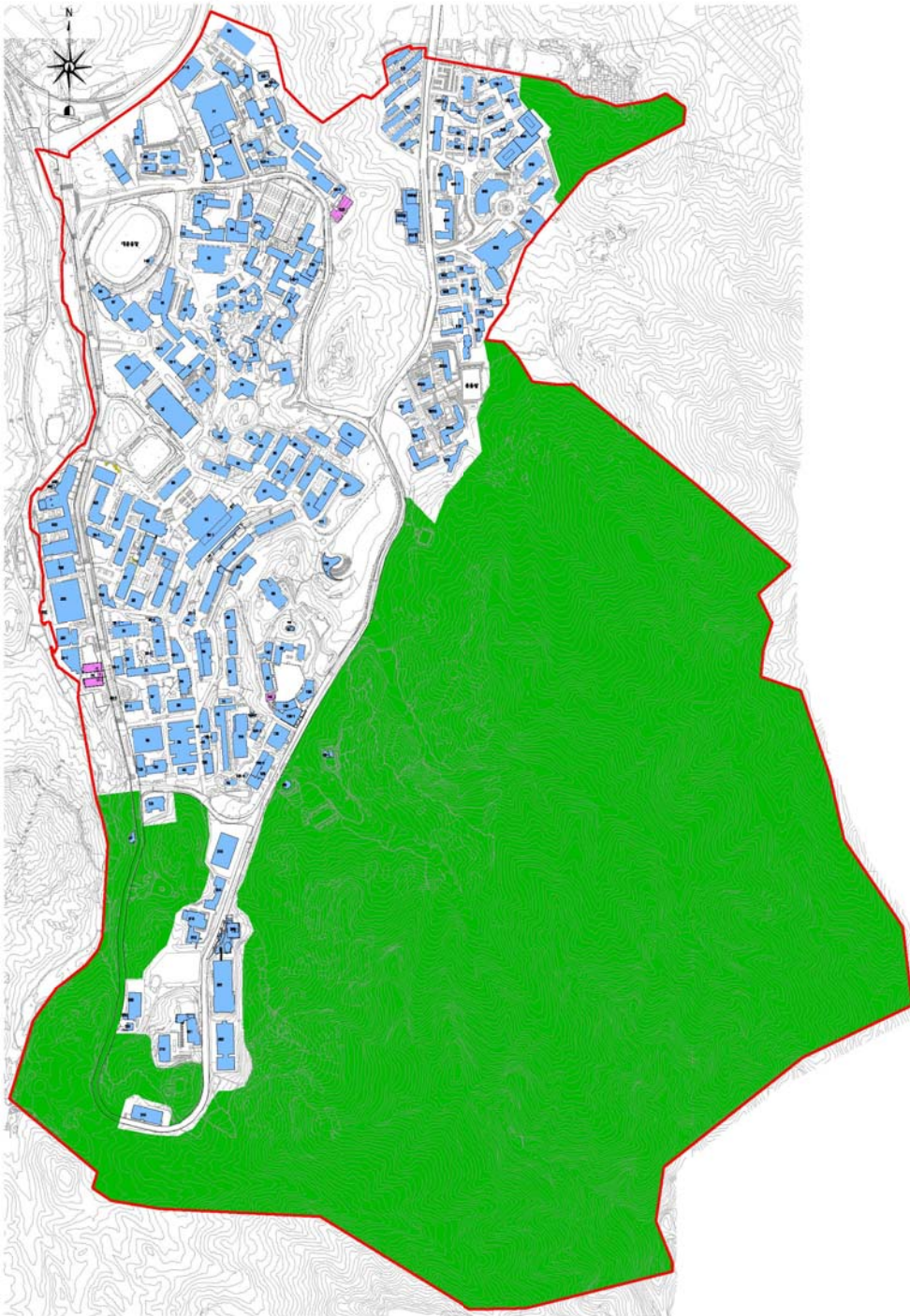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건폐율 · 용적률)



서울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도(변경)



서울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도(변경)

1.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

제안	제안일자	주요	결정	비고
제14호	2017.05.15	서울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도(변경)	결정	2017.05.15

2. 사업명 및 사업내용

구분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4. 사업명 및 사업내용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5. 사업명 및 사업내용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6. 사업명 및 사업내용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7. 사업명 및 사업내용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8. 사업명 및 사업내용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9. 사업명 및 사업내용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10. 사업명 및 사업내용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11. 사업명 및 사업내용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12. 사업명 및 사업내용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13. 사업명 및 사업내용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14. 사업명 및 사업내용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15. 사업명 및 사업내용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16. 사업명 및 사업내용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17. 사업명 및 사업내용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구분명	구분명	구분내용	구분위치	구분면적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7호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498호(1971.8.1.)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05호(2014.8.28.)로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된 광진구 능동로 216 일대 능동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여 교통약자층에게 숲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앵무마을, 기차동산 등 미사용 시설을 녹지로 복원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일대

3. 면 적 : 560,552㎡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2133-2032) 및 공원조성과(☎2133-2071)에 각각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표

가. 위 치 : 광진구 능동18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영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영 (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560,552.00	224,129.97	72	24,209.20	52,550.69	670	560,552.00	220,926.82	72	24,209.20	52,550.69	668	
어린이 대공원지구	536,088.50	214,536.33	60	22,609.53	49,527.06	666	536,088.50	211,333.18	60	22,609.53	49,527.06	664	
어린이 회관지구	24,463.50	9,593.64	12	1,599.67	3,023.63	4	24,463.50	9,593.64	12	1,599.67	3,023.63	4	
시설율 (법정40%)	(224,129.97 / 560,552.00) × 100 = 39.98 %						(220,926.82 / 560,552.00) × 100 = 39.41 %						
건폐율 (법정20%)	(24,209.20 / 560,552.00) × 100 = 4.32 %						(24,209.20 / 560,552.00) × 100 = 4.32 %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총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기 반 시 설	합 계	560,552.00	224,129.97	72	24,209.20	52,550.69	670	560,552.00	220,926.82	72	24,209.20	52,550.69	668	
	소 계	65,527.13	65,527.13					64,107.84	64,107.84					
	도 로	52,856.77	52,856.77					51,437.48	51,437.48					
	광 장	12,670.36	12,670.36					12,670.36	12,670.36					
조경시설	17,509.29	17,509.29					6	17,509.29	17,509.29				6	
휴양시설	1,594.04	1,594.04	4	236.56	236.56			1,594.04	1,594.04	4	236.56	236.56		
유희시설	29,912.66	29,912.66	4	847.44	1,560.72			29,912.66	29,912.66	4	847.44	1,560.72		
운동시설	24,071.39	24,071.39	10	1,262.05	2,686.01	1		23,271.93	23,271.93	10	1,262.05	2,686.01	4	
교양시설	60,282.05	60,282.05	31	17,220.41	41,556.69	28		59,447.65	59,447.65	31	17,220.41	41,556.69	26	
편익시설	22,457.21	22,457.21	15	3,074.14	4,726.11	26		22,457.21	22,457.21	15	3,074.14	4,726.11	26	
관리시설	2,029.20	2029.20	8	1,568.60	1,784.60	606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녹지.기타	336,422.03							339,625.18						
그밖의 시설 (동물놀이터)	747.00	747.00						747.00	747.00					

1. 조성계획 총괄표 (어린이대공원지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계		536,088.50	214,536.33	60	22,609.53	49,527.06	666	536,088.50	211,333.18	60	22,609.53	49,527.06	664	
기반 시설	소 계	63,930.60	63,930.60					62,511.31	62,511.31					
	도 로	51,260.24	51,260.24					49,840.95	49,840.95					
	광 장	12,670.36	12,670.36					12,670.36	12,670.36					
조경시설		17,445.39	17,445.39				6	17,445.39	17,445.39				6	
휴양시설		1,579.84	1,579.84	4	236.56	236.56		1,579.84	1,579.84	4	236.56	236.56		
유흥시설		29,912.66	29,912.66	4	847.44	1,560.72		29,912.66	29,912.66	4	847.44	1,560.72		
운동시설		16,657.00	16,657.00	2	167.00	167.00	1	15,857.54	15,857.54	2	167.00	167.00	1	
교양시설		59,777.43	59,777.43	27	16,715.79	41,052.07	27	58,943.03	58,943.03	27	16,715.79	41,052.07	25	
편익시설		22,457.21	22,457.21	15	3,074.14	4,726.11	26	22,457.21	22,457.21	15	3,074.14	4,726.11	26	
관리시설		2,029.20	2,029.20	8	1,568.60	1,784.60	606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녹지.기타		321,552.17						324,755.32						
그밖의 시설 (동물놀이터)		747.00	747.00					747.00	747.00					

2. 시설조서(어린이대공원지구)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기 반 시 설	계			63,930.60	63,930.60							62,511.31	62,511.31						
	도로	가	능동 18	44,862.92	44,862.92						가	능동 18	42,383.26	42,383.26					
	산책로	나	"	6,397.32	6,397.32						나	"	7,457.69	7,457.69					
	광장	다	"	12,670.36	12,670.36						다	"	12,670.36	12,670.36					
	전입광장	다-1	"	(4,427.00)	(4,427.00)						다-1	"	(4,427.00)	(4,427.00)					
	빛의광장	다-2	"	(4,445.38)	(4,445.38)						다-2	"	(4,445.38)	(4,445.38)					
	판타지놀러자	다-3	"	(1,146.08)	(1,146.08)						다-3	"	(1,146.08)	(1,146.08)					
	육각정광장	다-4	"	(2,281.90)	(2,281.90)						다-4	"	(2,281.90)	(2,281.90)					
	이외음악당광장	다-5	"	(370.00)	(370.00)						다-5	"	(370.00)	(370.00)					
	계			17,445.39	17,445.39					6			17,445.39	17,445.39					6
조 경 시 설	연못 ①		능동 18	14,382.78	14,382.78					3	①	능동 18	14,382.78	14,382.78					3
	- 환경연못 ①-1		"	(5,061.78)	(5,061.78)					(1)	①-1	"	(5,061.78)	(5,061.78)					(1)
	- 생태연못 ①-2		"	(8,700.00)	(8,700.00)					(1)	①-2	"	(8,700.00)	(8,700.00)					(1)
	- 생태계류 ①-3		"	(621.00)	(621.00)					(1)	①-3	"	(621.00)	(621.00)					(1)
	분수대 ②		"	1,137.95	1,137.95					3	②	"	1,137.95	1,137.95					3
	-디지털분수 ②-1		"	(706.50)	(706.50)					(1)	②-1	"	(706.50)	(706.50)					(1)
	- 캐스케이드1 ②-2		"	(178.00)	(178.00)					(1)	②-2	"	(178.00)	(178.00)					(1)
	- 캐스케이드2 ②-3		"	(253.45)	(253.45)					(1)	②-3	"	(253.45)	(253.45)					(1)
	화단 라		"	1,400.25	1,400.25						라	"	1,400.25	1,400.25					
	정원 ④		"								④	"							
- 놀이마당 ④-1		"								④-1	"								
- 깃대원 ④-2		"								④-2	"								
- 숲대원 ④-3		"								④-3	"								
- 장승원 ④-4		"								④-4	"								
실계천		"	524.41	524.41							"	524.41	524.41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휴 양 시 설	계			1,579.84	1,579.84		4	236.56 236.56			1,579.84	1,579.84		4	236.56 236.56				
	육각정	1	능동 18	445.00	445.00	R.C	3	223.34 223.34		1	능동 18	445.00	445.00	R.C	3	223.34 223.34			
	- 육각정 1	1-1	"	(210.00)	(210.00)	R.C	(1)	(99.17) (99.17)		1-1	"	(210.00)	(210.00)	R.C	(1)	(99.17) (99.17)			
	- 육각정 2	1-2	"	(210.00)	(210.00)	R.C	(1)	(99.17) (99.17)		1-2	"	(210.00)	(210.00)	R.C	(1)	(99.17) (99.17)			
	- 육각정 3	1-3	"	(25.00)	(25.00)	R.C	(1)	(25.00) (25.00)		1-3	"	(25.00)	(25.00)	R.C	(1)	(25.00) (25.00)			
	군자정	2	"	39.00	39.00	R.C	1	13.22 13.22		2	"	39.00	39.00	R.C	1	13.22 13.22			
	섬 터		"	135.84	135.84						"	135.84	135.84						
	아영장		"	960.00	960.00						"	960.00	960.00						
	계	계			29,912.66	29,912.66		4	847.44 1,560.72		계		29,912.66	29,912.66		4	847.44 1,560.72		
	소 계	소계	능동18	1,432.15	1,432.15		4	847.44 1,560.72		소계	능동18	1,432.15	1,432.15		4	847.44 1,560.72			
놀이 동 산	매 표 소	5	"	136.08	136.08	R.C	1	136.08 136.08		5	"	136.08	136.08	R.C	1	136.08 136.08			
	과학오락관	7	"	287.89	287.89	R.C	1	287.89 565.16		7	"	287.89	287.89	R.C	1	287.89 565.16			
	- 과학오락관	7-1		(225.66)	(225.66)			(225.66) (225.66)		7-1		(225.66)	(225.66)			(225.66) (225.66)			
	- 임체영상관	7-2		(225.66)	(225.66)			(225.66) (171.01)		7-2		(225.66)	(225.66)			(225.66) (171.01)			
	- 화장실 3	7-3		(62.23)	(62.23)			(62.23) (168.49)		7-3		(62.23)	(62.23)			(62.23) (168.49)			
	사무실	8	능동 18	332.75	332.75	R.C	1	332.75 729.88		8	능동 18	332.75	332.75	R.C	1	332.75 729.88			
	유형의나라	45	"	90.72	90.72	R.C	1	90.72 129.60		45	"	90.72	90.72	R.C	1	90.72 129.60			
	쉼터(아외무대)	46	"	584.71	584.71					46	"	584.71	584.71						
	소 계	소계		22,518.22	22,518.22					소계		22,518.22	22,518.22						
	스윙거	⑧	능동 18	176.63	176.63	철골				⑧	능동 18	176.63	176.63	철골					
공작 물	화전목마	⑨	"	86.55	86.55	철골				⑨	"	86.55	86.55	철골					
	화전목마	⑩	"	66.44	66.44	철골				⑩	"	66.44	66.44	철골					
	키디리타 (미니카)	⑪	"	176.00	176.00	철골				⑪	"	176.00	176.00	철골					
	탱크전차	⑫	"	757.19	757.19	철골				⑫	"	757.19	757.19	철골					
	범 퍼 카	⑬	"	254.34	254.34	철골				⑬	"	254.34	254.34	철골					
	디노기차	⑭	"	392.24	392.24	철골				⑭	"	392.24	392.24	철골					
	캐니발 코 너	⑮	"	69.75	69.75	철골				⑮	"	69.75	69.75	철골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 회 시 설	공 작 물	⑩	"	762.54	762.54	레일					⑩	"	762.54	762.54	레일					
		⑪	"	157.50	157.50	레일					⑪	"	157.50	157.50	레일					
		⑫	"	86.59	86.59	철골					⑫	"	86.59	86.59	철골					
		⑬	"	346.70	346.70	철골					⑬	"	346.70	346.70	철골					
		⑭	"	87.92	87.92	철골					⑭	"	87.92	87.92	철골					
		⑮	"	82.68	82.68	철골					⑮	"	82.68	82.68	철골					
		⑯	"	40.00	40.00	철골					⑯	"	40.00	40.00	철골					
		⑰	"	2,377.89	2,377.89	철골					⑰	"	2,377.89	2,377.89	철골					
		⑱	"	178.69	178.69	철골					⑱	"	178.69	178.69	철골					
		㉑	"	422.42	422.42	철골					㉑	"	422.42	422.42	철골					
		㉒	"	285.27	285.27	철골					㉒	"	285.27	285.27	철골					
		㉓	"	1,658.65	1,658.65	철골					㉓	"	1,658.65	1,658.65	철골					
		㉔	능동 18	264.87	264.87	철골					㉔	능동 18	264.87	264.87	철골					
		㉕	"	61.83	61.83	철골					㉕	"	61.83	61.83	철골					
		㉖	능동 18	225.03	225.03	철골					㉖	능동 18	225.03	225.03	철골					
		㉗	"	106.80	106.80	철골					㉗	"	106.80	106.80	철골					
		㉘	"	343	343	철골					㉘	"	343	343	철골					
		㉙	"	255	255	철골					㉙	"	255	255	철골					
		㉚	"	358	358	콘크리트					㉚	"	358	358	콘크리트					
		㉛	"	12.34	12.34	철골					㉛	"	12.34	12.34	철골					
놀 이 터	소 계	기 타		12,425.36	12,425.36								12,425.36	12,425.36						
		소 계	능동 18	5,962.29	5,962.29					소계	능동 18	5,962.29	5,962.29							
		문수놀이마당	11	"	1,660.76	1,660.76					11	"	1,660.76	1,660.76						
		감성놀이마당	12	"	4,301.53	4,301.53					12	"	4,301.53	4,301.53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안 보 시 설	계	계	능동 18	16,657.00	16,657.00		2	167.00	167.00	1	계	능동 18	15,857.54	15,857.54		2	167.00	167.00	1			
	축구장	13-1	"	(8,212.00)	(8,212.00)						13-1	"	(8,212.00)	(8,212.00)								
	헬스파크	14	"	5,117.00	5,117.00						14	"	4,317.54	4,317.54								
	- 헬스파크1	14-1	"	(4,345.00)	(4,345.00)						14-1	"	(3,545.54)	(3,545.54)								
	- 헬스파크2	14-2	"	(227.00)	(227.00)						14-2	"	(227.00)	(227.00)								
	- 헬스파크3	14-3	"	(320.00)	(320.00)						14-3	"	(320.00)	(320.00)								
	- 헬스파크4	14-4	"	(225.00)	(225.00)						14-4	"	(225.00)	(225.00)								
	미니축구장	15	"	750.00	750.00						15	"	750.00	750.00								
	실외테니스장	44	"	1,588.44	1,588.44						44	"	1,588.44	1,588.44								
	실내테니스장-1	44-1	"	(794.22)	(794.22)						44-1	"	(794.22)	(794.22)								
	실내테니스장-2	44-2	"	(794.22)	(794.22)						44-2	"	(794.22)	(794.22)								
편 의 시 설	계	계	능동 18	22,457.21	22,457.21		15	3,074.14	4,726.11	26	계	능동 18	22,457.21	22,457.21		15	3,074.14	4,726.11	26			
		소계		22,384.41	22,384.41		15	3,074.14	4,726.11	20	소계		22,384.41	22,384.41		15	3,074.14	4,726.11	20			
	판매시설	25	능동 18	1,955.37	1,955.37		3	940.03	940.03		25	능동 18	1,955.37	1,955.37		3	940.03	940.03				
	- 카페테리아	25-1	"	(818.85)	(818.85)	R.C	(1)	(383.89)	(383.89)		25-1	"	(818.85)	(818.85)	R.C	(1)	(383.89)	(383.89)				
	- 휴내음카페테리아	25-2	"	(640.34)	(640.34)	R.C	(1)	(340.14)	(340.14)		25-2	"	(640.34)	(640.34)	R.C	(1)	(340.14)	(340.14)				
	- 복합판매시설	25-3	"	(496.18)	(496.18)	R.C	(1)	(216.00)	(216.00)		25-3	"	(496.18)	(496.18)	R.C	(1)	(216.00)	(216.00)				
	안내센터	26	"	717.70	717.70	R.C	1	636.50	636.50		26	"	717.70	717.70	R.C	1	636.50	636.50				
	화 장 실	27	"	1,579.04	1,579.04		10	853.31	845.45		27	"	1,579.04	1,579.04		10	853.31	845.45				
	- 화장실 2	27-1	"	(95.12)	(95.12)	R.C	(1)	(95.12)	(95.12)		27-1	"	(95.12)	(95.12)	R.C	(1)	(95.12)	(95.12)				
	- 화장실 3	27-2	"	(34.71)	(34.71)	조적	(1)	(34.71)	(34.71)		27-2	"	(34.71)	(34.71)	조적	(1)	(34.71)	(34.71)				
	- 화장실 6	27-3	"	(94.02)	(94.02)	R.C	(1)	(94.02)	(94.02)		27-3	"	(94.02)	(94.02)	R.C	(1)	(94.02)	(94.02)				
- 화장실 7	27-4	"	(69.30)	(69.30)	R.C	(1)	(69.30)	(69.30)		27-4	"	(69.30)	(69.30)	R.C	(1)	(69.30)	(69.30)					
- 화장실 9	27-5	"	(70.71)	(70.71)	R.C	(1)	(70.71)	(70.71)		27-5	"	(70.71)	(70.71)	R.C	(1)	(70.71)	(70.71)					
- 화장실 11	27-6	"	(65.86)	(65.86)	R.C	(1)	(65.86)	(65.86)		27-6	"	(65.86)	(65.86)	R.C	(1)	(65.86)	(65.86)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편 의 시 설	- 화장실 13	27-7	"	(36.20)	(36.20)	조적	(1)	(36.20)	(36.20)	27-7	"	(36.20)	(36.20)	조적	(1)	(36.20)	(36.20)	
	- 화장실 17	27-8	"	(49.59)	(49.59)	조적	(1)	(49.59)	(49.59)	27-8	"	(49.59)	(49.59)	조적	(1)	(49.59)	(49.59)	
	- 복합화장실	27-9	"	(526.63)	(526.63)	R.C	(1)	(188.58)	(188.58)	27-9	"	(526.63)	(526.63)	R.C	(1)	(188.58)	(188.58)	
	- 코끼리화장실	27-10	"	(536.90)	(536.90)	R.C	(1)	(149.22)	(141.36)	27-10	"	(536.90)	(536.90)	R.C	(1)	(149.22)	(141.36)	
	팔 각 당	28	"	644.30	644.30	R.C	1	644.30	2,304.13	28	"	644.30	644.30	R.C	1	644.30	2,304.13	
	주 차 장	29	"	17,488	17,488					29	"	17,488	17,488					4
	정 문	29-1	능동 18	(5,159.00)	(5,159.00)				(2)	29-1	능동 18	(5,159.00)	(5,159.00)					(2)
	후 문	29-2	"	(7,155.00)	(7,155.00)				(1)	29-2	"	(7,155.00)	(7,155.00)					(1)
	후 문	29-3	"	(5,174.00)	(5,174.00)				(1)	29-3	"	(5,174.00)	(5,174.00)					(1)
	간이판매시설(정문)		"	(31.36)	(31.36)				8		"	(31.36)	(31.36)					8
교 양 시 설	간이판매시설(후문)		"	(31.36)	(31.36)				8		"	(31.36)	(31.36)					8
	공작물	소계		72.80	72.80				6	소계		72.80	72.80					6
	음 수 대	㉗	능동 18	72.80	72.80				6	㉗	능동 18	72.80	72.80					6
	공중전화	㉘	"	(9.70)	(9.70)				(1)	㉘	"	(9.70)	(9.70)					(1)
	의 자	㉙	"	(1,952.00)	(1,952.00)				(1)	㉙	"	(1,952.00)	(1,952.00)					(1)
	휴 지 통	㉚	"	(300.00)	(300.00)				(1)	㉚	"	(300.00)	(300.00)					(1)
	계	계		59,777.43	59,777.43		27	16,715.79 41,052.07	26	계		58,943.03	58,943.03		27	16,715.79 41,052.07	25	
		소계		702.36	702.36				21	소계		702.36	702.36					21
	통 상	㉛	능동 18	579.36	579.36				12	㉛	능동 18	579.36	579.36					12
	기 념 비	㉜	"	123.00	123.00				9	㉜	"	123.00	123.00					9
시 설		소계		59,075.07	59,075.07		27	16,715.79 41,052.07	5	소계		58,240.67	58,240.67		27	16,715.79 41,052.07	4	
	야외음악당	16	능동 18	7,662.23	7,662.23	RC+ 철골	4	1,664.99 2,193.28		16	능동 18	7,662.23	7,662.23	RC+ 철골	4	1,664.99 2,193.28		
	야외음악당	16-1	"	(7,327.60)	(7,327.60)	RC+ 철골	(1)	(1,395.05) (1,926.10)		16-1	"	(7,327.60)	(7,327.60)	RC+ 철골	(1)	(1,395.05) (1,926.10)		
	옥외화장실 1	16-2	"	(112.70)	(112.70)	R.C	(1)	(89.98) (89.06)		16-2	"	(112.70)	(112.70)	R.C	(1)	(89.98) (89.06)		
	옥외화장실 2	16-3	"	(112.51)	(112.51)	R.C	(1)	(89.98) (89.06)		16-3	"	(112.51)	(112.51)	R.C	(1)	(89.98) (89.06)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 양 시 설	옥외화장실 3	16-4	"	(109.42)	(109.42)	R.C	(1)	(89.98)	(89.06)		16-4	"	(109.42)	(109.42)	R.C	(1)	(89.98)	(89.06)	
	식 물 원	17	"	1,600.00	1,600.00	R.C	1	1,598.00	2,492.00		17	"	1,600.00	1,600.00	R.C	1	1,598.00	2,492.00	
	동 물 사	18	"	28,180.54	28,180.54		16	5,334.39	6,333.06	3	18	"	27,346.14	27,346.14		16	5,334.39	6,333.06	2
	열대동물사	18-1	"	(1,007.00)	(1,007.00)	R.C	(1)	(565.15)	(998.15)		18-1	"	(1,007.00)	(1,007.00)	R.C	(1)	(565.15)	(998.15)	
	물 세 장	18-2	"	(1,229.00)	(1,229.00)	조적	(1)	(468.67)	(468.67)		18-2	"	(1,229.00)	(1,229.00)	조적	(1)	(468.67)	(468.67)	
	어린이동물원	18-3	"	(2,373.67)	(2,373.67)		(3)	(226.20)	(226.20)		18-3	"	(2,373.67)	(2,373.67)		(3)	(226.20)	(226.20)	
	대동물관	18-4	"	(4,247.35)	(4,247.35)	R.C	(1)	(1,082.14)	(1,162.26)		18-4	"	(4,247.35)	(4,247.35)	R.C	(1)	(1,082.14)	(1,162.26)	
	완송이동산	18-5	"	(1,552.02)	(1,552.02)	"	(1)	(507.79)	(507.79)		18-5	"	(1,552.02)	(1,552.02)	"	(1)	(507.79)	(507.79)	
	소맹수사	18-6	"	(357.13)	(357.13)	"	(1)	(126.79)	(126.79)		18-6	"	(357.13)	(357.13)	"	(1)	(126.79)	(126.79)	
	맹 금 사	18-7	"	(184.75)	(184.75)	"		-	-	(1)	18-7	"	(184.75)	(184.75)	"		-	-	(1)
	조식수 사파리	18-8	"	(60.00)	(60.00)	조적	(1)	(60.00)	(60.00)		18-8	"	(60.00)	(60.00)	조적	(1)	(60.00)	(60.00)	
	사슴전시장	18-9	"	(375.72)	(375.72)	"	(3)	(81.00)	(81.00)		18-9	"	(375.72)	(375.72)	"	(3)	(81.00)	(81.00)	
	수서동물사	18-10	"	(1,129.31)	(1,129.31)	R.C	(1)	(355.89)	(483.19)		18-10	"	(1,129.31)	(1,129.31)	R.C	(1)	(355.89)	(483.19)	
	조식전시장	18-11	"	(1,500.00)	(1,500.00)						18-11	"	(1,500.00)	(1,500.00)					
	동물공연장	18-12	"	(3,170.10)	(3,170.10)	SRC	(1)	(1,501.36)	(2,123.01)		18-12	"	(3,170.10)	(3,170.10)	SRC	(1)	(1,501.36)	(2,123.01)	
	동물명원	18-13	"	(656.50)	(656.50)	조적	(1)	(263.40)	(263.40)		18-13	"	(656.50)	(656.50)	조적	(1)	(263.40)	(263.40)	
	행무마을	42	"	(834.40)	(834.40)					(1)									
	기타(관람통로)	18-14	"	(9,407.59)	(9,407.59)					(1)	18-14	"	(9,407.59)	(9,407.59)					(1)
	낙타사육장	18-15	"	(96.00)	(96.00)	조적	(1)	(96.00)	(96.00)		18-15	"	(96.00)	(96.00)	조적	(1)	(96.00)	(96.00)	
	시민안전체험관	19	"	1,795.20	1,795.20	R.C	1	1,795.20	5,441.00	1	19	"	1,795.20	1,795.20	R.C	1	1,795.20	5,441.00	1
인형전시장	20	능동 18	365.00	365.00	R.C	1	365.00	365.00		20	능동 18	365.00	365.00	R.C	1	365.00	365.00		
숲속체험장	21	"	707.08	707.08						21	"	707.08	707.08						
숲속체험시설	22	"	1,063.69	1,063.69						22	"	1,063.69	1,063.69						
전시장	23	"	4,320.00	4,320.00	R.C	1	1,461.93	3,346.79		23	"	4,320.00	4,320.00	R.C	1	1,461.93	3,346.79		
전시벽	㉔	"	6.00	6.00						㉔	"	6.00	6.00						
유강원	24	"	424.56	424.56						24	"	424.56	424.56						
어린이교통체험관	35	"	3,000.00	3,000.00	R.C	1	450.00	450.00	1	35	"	3,000.00	3,000.00	R.C	1	450.00	450.00	1	
서울키즈센터	36	"	6,600.00	6,600.00	RC+ 철골	1	3,367.18	19,543.44		36	"	6,600.00	6,600.00	RC+ 철골	1	3,367.18	19,543.44		
아리수홍보관	37	"	3,350.77	3,350.77	RC+ 철골	1	679.10	887.50		37	"	3,350.77	3,350.77	RC+ 철골	1	679.10	887.50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관 리 시 설	계	계		2,029.20	2,029.20		8	1,568.60	1,784.60	606	계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소계		1,704.60	1,704.60		8	1,488.60	1,704.60		소계		1,704.60	1,704.60		8	1,488.60	1,704.60				
	정 문	30	능동18	432.00	432.00	R.C	1	216.00	432.00		30	능동18	432.00	432.00	R.C	1	216.00	432.00				
	후 문	31	"	31.92	31.92	R.C	1	31.92	31.92		31	"	31.92	31.92	R.C	1	31.92	31.92				
	구의문	32	"	31.92	31.92		1	31.92	31.92		32	"	31.92	31.92		1	31.92	31.92				
	투고압 변전실	33	"	396.00	396.00	R.C	1	396.00	396.00		33	"	396.00	396.00	R.C	1	396.00	396.00				
관 리 시 설	영선반창고	34	"	420.00	420.00	경량 철골	1	420.00	420.00		34	"	420.00	420.00	경량 철골	1	420.00	420.00				
	수목관리실	36	"	320.67	320.67	조적	1	320.67	320.67		36	"	320.67	320.67	조적	1	320.67	320.67				
	수처리시설	37	"	59.13	59.13	조적	1	59.13	59.13		37	"	59.13	59.13	조적	1	59.13	59.13				
	공원초소(능동문)	49	"	12.96	12.96	R.C	1	12.96	12.96		49	"	12.96	12.96	R.C	1	12.96	12.96				
	공 작 물	소계		324.60	324.60			80.00	80.00	606	소계		174.60	174.60			80.00	80.00	606			
	올타리 담장		능동 18							1		능동 18							1			
	안 내 판		"							140		"						140				
	가 로 등		"							460		"						460				
	고압변전실	㉑	"	94.60	94.60					4	㉑	"	94.60	94.60					4			
	음악분수제어실	38	"	80.00	80.00			80.00	80.00	1	38	"	80.00	80.00			80.00	80.00	1			
부 지 및 기 타	기차동산	39	"	150.00	150.00																	
	계			321,552.17													324,755.32					
	잔 디 발	마	능동18	50,836.45							마	능동18	50,836.45									
	녹 지 대	바	"	78,412.09							바	"	81,615.24									
	수 림 대	사	"	192,303.63							사	"	192,303.63									
그 밖 의 시 설	동물 놀이터		능동18	747.00	747.00							능동18	747.00									

3. 도로조서 (어린이대공원지구)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8,178.70	51,403.19				
변경					8,762.14	49,840.95				
당초		소 계			684.00	17,369.04				
변경					684.00	14,889.38				
당초	대로	3	1	25~61	562.00	13,226.45	후문진입로	판타지 플라자	후문지구계	
변경		3	1	25~61	562.00	10,746.79	후문진입로	판타지 플라자	후문지구계	
당초		3	2	24~50	122.00	4,142.59	정문진입로	정 문	빛의광장	
당초		소 계			4,803.69	27,493.88				
변경					4,803.69	27,493.88				
당초	소로	2	1	8	443.20	3,545.60	중앙로	빛의광장	팔각당	
당초		3	1	6	684.80	4,458.00	놀이마당, 외곽순환	빛의광장	판타지플라자	
당초		3	2	6	871.00	5,226.00	생태연못, 순환	정문진입로	판타지플라자	
당초		3	3	4	633.00	2,532.00	숲속체험장 순환	축구장	동물원	
당초		3	4	6	74.00	444.00	대동물관	팔각당	대동물관 동쪽	
당초		3	5	5	138.02	690.10	동물원, 카페테리아	어린이 동물원	동물공연장	
당초		3	6	6	474.00	2,844.00	식물원, 동물원	전시장	팔각당	
당초		3	7	6	75.00	450.00	능동문 진입로	주차장	놀이마당	
당초		3	8	5	240.00	1,200.00	구의문 진입로	구의문	사슴전시장	
당초		3	9	5	232.00	1,160.00	동물공연장	광나루길	동물공연장	
당초		2	3	10	125.00	1,250.00	전시장	전시장	전시장	
당초		3	10	5	93.00	465.00	수목관리실	구의문	수목관리실	
당초		3	11	5	232.00	1,160.00	관리동선	후문주차장	후문진입로	
당초		3	12	4	123.02	492.08	육각정	식물원	낙타사육장	
당초		3	13	4	57.00	228.00	카페테리아	식물원	카페테리아	
당초		3	14	4	143.00	572.00	놀이마당	중앙로	생태숲	
당초		3	15	4	45.00	180.00	영선반창고	중앙로	영선반창고	
당초		3	16	6	57.25	343.50	야외음악당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당초		4	17	4	26.60	106.40	야외음악당	김동인동상	김동인동상	
당초		4	18	4	36.80	147.20	야외음악당	분수놀이마당	김동인동상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소 계			2,691.01	6,540.27				
변경					3081.45	7,457.69				
당초	산책로	4	1	3	150.00	450.00	산책로	중앙로	숫대원	
당초		4	2	2.3	140.70	323.61	산책로	후문진입로	숲속체험장 순환로	
당초		4	3	3	305.01	915.03	산책로	전시장	팔각당	
당초		4	4	3	214.00	642.00	산책로	숫대원	어린이동물원	
당초		4	5	3	150.00	450.00	산책로	화장실	조만식동상	
당초		4	6	3	120.00	360.00	산책로	흙내음 카페테리아	조만식동상	
당초		4	7	3	124.02	372.06	산책로	놀이마당	놀이마당	
당초		4	8	3	75.03	225.09	산책로	놀이마당	중앙로	
당초		4	9	3	87.00	261.00	산책로	놀이마당	놀이마당	
당초		4	10	3	54.00	162.00	산책로	분수놀이 마당	생태계류	
당초		4	11	2.3	68.20	156.86	산책로	후문진입로	숲속체험장 순환로	
당초		4	12	2	70.91	141.82	산책로	전시장	야외공연장	
당초		4	13	2	52.00	104.00	산책로	육각정	녹지	
당초		4	14	2	42.00	84.00	산책로	야외공연장	생태연못	
당초		4	15	2	28.20	56.40	산책로	부지외곽	외곽순환로	
당초		4	16	2	22.30	44.60	산책로	부지외곽	숲속체험장 순환로	
당초		4	17	1.8	168.07	302.53	산책로		외곽순환로	
당초		4	18	1.8	44.99	80.98	산책로	생태숲산책로	생태숲산책로	
당초		4	19	1.8	24.24	43.63	산책로	부지외곽	생태숲산책로	
당초		4	20	1.5	95.30	142.95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당초		4	20	1.5	28.83	43.25	산책로	산책로	아리수홍보관	
당초		4	21	1	358.56	358.56	산책로	구의문	동물병원	
변경		4	21	1~2	392	427.48	산책로	구의문	동물병원	
당초		4	22	1	50.80	50.80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당초		4	23	4	96.40	385.60	산책로	김동인동상	야외공연장	
당초		4	24	4	71.30	285.20	산책로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당초		4	25	2	49.15	98.30	산책로	환경연못	육각정	
당초		4	26	0	-	-	산책로	조만식동상	수목관리실	
변경		4	26	1.5~3	357	848.5	산책로	조만식동상	수목관리실	

4. 조성계획 총괄표 (어린이회관지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계	24,463.5	9,593.64	12	1,599.67	3,023.63	4	24,463.5	9,593.64	12	1,599.67	3,023.63	4	
기반시설	1,596.53	1,596.53					1,596.53	1,596.53					
조경시설	63.90	63.90					63.90	63.90					
휴양시설	14.20	14.20					14.20	14.20					
운동시설	7,414.39	7,414.39	8	1,095.05	2,519.01	3	7,414.39	7,414.39	8	1,095.05	2,519.01	3	
교양시설	504.62	504.62	4	504.62	504.62	1	504.62	504.62	4	504.62	504.62	1	
녹지.기타	14,869.86						14,86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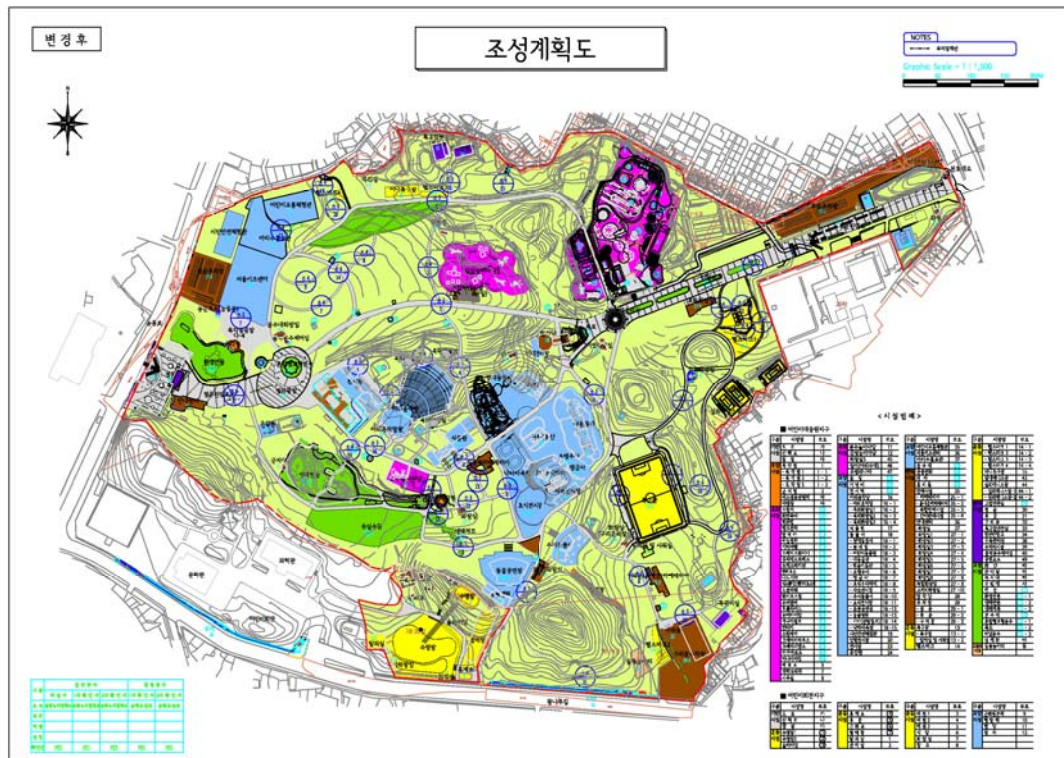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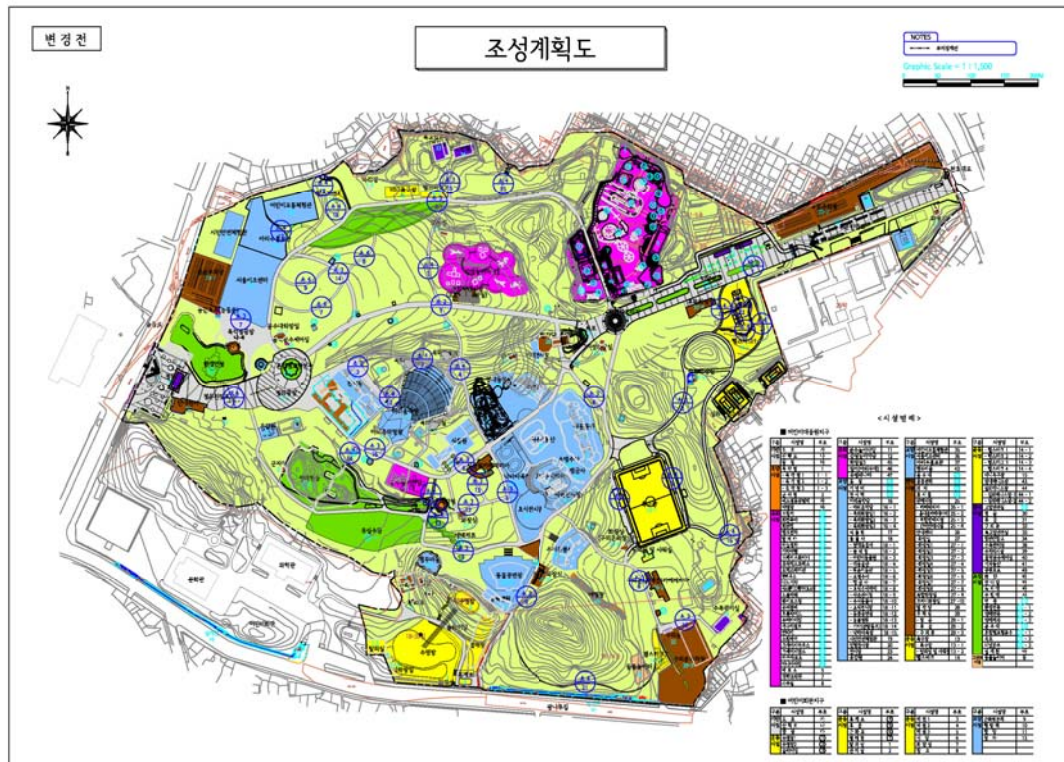
5. 시설조서 (어린이회관지구)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기반 시설	계			1,596.53	1,596.53								1,596.53	1,596.53						
	도 로	가	능동18	1,450.74	1,450.74						가	능동18	1,450.74	1,450.74						
	산책로	나	"	145.79	145.79						나	"	145.79	145.79						
조 경 시 설	계	계		63.90	63.90						계		63.90	63.90						
	벽 천	소계	능동18	63.90	63.90						소계	능동18	63.90	63.90						
휴 양 시 설	계	계		14.20	14.20						계		14.20	14.20						
	기로휴게공간	소계	능동18	14.20	14.20						소계	능동18	14.20	14.20						
온 통 시 설	계	계		7,414.39	7,414.39		8	1,095.05	2,519.01	3	계		7,414.39	7,414.39		8	1,095.05	2,519.01	3	
	(건 축 물)	소계	능동18	1,095.05	1,095.05		8	1,095.05	2,519.01		소계	능동18	1,095.05	1,095.05		8	1,095.05	2,519.01		
	탈의실	1	"	705.96	705.96	RC	1	705.96	1,330.09		1	"	705.96	705.96	RC	1	705.96	1,330.09		
	관 리 실	2	"	73.06	73.06	조적	1	73.06	872.89		2	"	73.06	73.06	조적	1	73.06	872.89		
	매 점 1	3	"	82.31	82.31	목조	1	82.31	82.31		3	"	82.31	82.31	목조	1	82.31	82.31		
	매 점 2	4	"	26.78	26.78	목조	1	26.78	26.78		4	"	26.78	26.78	목조	1	26.78	26.78		
	매 점 3	5	"	42.64	42.64	파이프 주	1	42.64	42.64		5	"	42.64	42.64	파이프 주	1	42.64	42.64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안 동 동 시 설	식 당	6	"	132.89	132.89	파이프 조	1	132.89	132.89		6	"	132.89	132.89	파이프 조	1	132.89	132.89			
	화 장 실	7	"	21.49	21.49	목조	1	21.49	21.49		7	"	21.49	21.49	목조	1	21.49	21.49			
	창 고	8	"	9.92	9.92	목조	1	9.92	9.92		8	"	9.92	9.92	목조	1	9.92	9.92			
	(공작물)	소계			6,319.34	6,319.34				3 소계			6,319.34	6,319.34					3		
	수영장 1	①	"	3,421.04	3,421.04	-	-	-	-	①	"	3,421.04	3,421.04	-	-	-	-	-	-		
	수영장 2	②	"	798.3	798.3	-	-	-	-	②	"	798.3	798.3	-	-	-	-	-	-		
	슬라이딩	③	"	-	-	FRP	-	-	-	1 ③	"	-	-	-	FRP	-	-	-	-	1	
	휴게소	④	"	100.0	100.0	조립	-	-	-	1 ④	"	100.0	100.0	조립	-	-	-	-	-	1	
	후문	⑤	"	-	-	철제	-	-	-	1 ⑤	"	-	-	철제	-	-	-	-	-	1	
	셀매보드장	⑦	"	2,000.0	2,000.0	-	-	-	-	⑦	"	2,000.0	2,000.0	-	-	-	-	-	-		
	계	계			504.62	504.62		4	504.62	504.62	1 계		504.62	504.62		4	504.62	504.62	1		
교 양 시 설	(건축물)	소계	능동18	504.62	504.62		4	504.62	504.62		소계	능동18	504.62	504.62		4	504.62	504.62			
	근화원본체	9	"	247.21	247.21	RC	1	247.21	247.21		9	"	247.21	247.21	RC	1	247.21	247.21			
	행랑채	10	"	169.95	169.95	RC	1	169.95	169.95		10	"	169.95	169.95	RC	1	169.95	169.95			
	별당	11	"	71.46	71.46	목조	1	71.46	71.46		11	"	71.46	71.46	목조	1	71.46	71.46			
	정자	12	"	16.0	16.0	목조	1	16.0	16.0		12	"	16.0	16.0	목조	1	16.0	16.0			
	(공작물)	소계								1 소계									1		
	근화교	⑥	"	-	-	R.C	-	-	-	1 ⑥	"	-	-	R.C	-	-	-	-	1		
	누지 및 기타		능동18	14,869.86							능동18	14,869.86									

6. 도로조서(어린이회관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총 점	비고
당초	합 계				279.41	1,596.53				
변경					279.41	1,596.53				
당초	소로	소 계			242.96	1,450.74				
변경					242.96	1,450.74				
당초		3	가	6	242.96	1,450.74	어린이회관, 수영장, 내부도로	어린이회관	수영장 후문	
당초	산책로	소 계			36.45	145.79				
변경					36.45	145.79				
당초		3	나	4	36.45	145.79	수영장내부 도로	수영장 1	수영장 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8호

서울특별시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장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위탁할 업무의 내용	수탁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2. 건설기술진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한국 건설 기술 관리 협회	도상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14

2. 행정사항

- 가.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은 건설기술용역업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나. 서울특별시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0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9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호(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1-397호(2011.12.29.), 제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2016.04.21.), 제2016-148호(2016.05.26.), 제2016-233호(2016.08.04), 제2016-269호(2016.09.01), 제2016-285호(2016.09.08), 제2016-360호(2016.11.10), 제2016-379호(2016.11.17.), 제2017-13호(2017.01.12.)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	830,190.0	증) 263	830,453.0	

※ 휘경3구역 측량결과 반영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원	· 측량 단순오차 변경 - 면적 830,190.0㎡ → 830,453.0㎡ (증 263㎡)	· 휘경3구역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년도 : 2022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

- 1) 기본방향 (변경없음)
- 2) 개발방향 (변경없음)
- 3) 주요 지표 설정 : 변경

구 분		현 황	계 획		비 고
인구 및 가구	인구	38,073 인	기정	39,118인	•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변경	39,136 인	
	세대수	17,385 세대 (2.19인/세대)	기정	16,941세대 (2.30인/세대)	•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세대수 현황 - 1인 세대 : 46.2% - 2인 세대 : 17.3%
			변경	16,949세대 (2.30인/세대)	
	주택호수	7,885호	기정	16,941호	•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소형주택 추가에 따른 주택호수 증가
			변경	16,949호	
기반시설	도로	15.8%	16.2%		•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 휘경3구역 도로 24㎡ 증가
	공원녹지	0.3% (세대당 0.2㎡)	7.6% (세대당 3.72㎡)		• 중앙공원(1개소), 어린이공원(4개소), 소공원(4개소), 연결녹지, 철도변완충녹지 • 휘경3구역 녹지 184㎡ 증가
교육시설	초등학교	1개소	1개소		• 신설 1개소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공공편익시설	공공청사	4개소	3개소		• 휘경1동 동사무소 준치 • 건강증진센터 이전 설치 (이문3-1구역) • 휘경3구역 공공공지 13㎡ 증가
	복합커뮤니티 센터	—	4개소		• 생활권단위별 노인복지, 유아보육, 주민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설치 • 휘경3구역 사회복지시설 5㎡ 증가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830,190.0	증) 263	830,453.0	100.0	-
주거 용지	소 계	458,605.3	증) 37	458,642.3	55.2	-
	공동주택	440,023.8	증) 37	440,060.8	53.0	중앙·삼익·금호(사업완료) 포함
	주상복합	11,621.5	-	11,621.5	1.4	KCC 웰츠타워 등
	종교시설	6,960.0	-	6,960.0	0.8	7개
근생 용지	소 계	105,733.0	-	105,733.0	12.7	-
	상업업무	105,733.0	-	105,733.0	12.7	신이문·이문·회기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65,851.7	증) 226	266,077.7	32.1	-
	도 로	134,300.2	증) 31	134,331.2	16.2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철 도	44,218.5	-	44,218.5	5.3	-
	공 원	33,552.0	-	33,552.0	4.1	-
	녹 지	29,432.0	증) 177	29,609.0	3.6	연결녹지, 철도변 완충녹지
	학 교	8,000.0	-	8,000.0	1.0	신설(초등학교 1개교)
	복합커뮤니티센터	7,776.0	증) 5	7,781.0	0.9	4개소
	공공청사등	5,183.0	증) 13	5,196.0	0.6	공공청사, 광장, 공공공지, 방수설비
	주 차 장	3,390.0	-	3,390.0	0.4	지하주차장1개소(1,175㎡)

※ 단순오차 면적 변경 : 도로(증 7㎡), 녹지(감 7㎡)

※ 회경3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2) 인구·주택수용계획 : 변경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6,941	증) 8	16,949	39,118	증) 18	39,136	-
촉진구역	소 계	12,360	증) 8	12,368	28,428	증) 18	28,446	-
	60㎡ 이하	6,602	증) 7	6,609	15,185	증) 16	15,201	미취사가구 수용 - 20㎡(200호), 30㎡(100호)
	60㎡~85㎡	4,587	증) 1	4,588	10,550	증) 2	10,552	-
	85㎡ 초과	1,171	-	1,171	2,693	-	2,693	-
존치구역	소 계	4,581	-	4,581	10,690	-	10,690	-
	단독주택	3,065	-	3,065	7,185	-	7,185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1,516	-	1,516	3,505	-	3,505	존치건축물

※ 변경사유 : 회경3구역 건축심의 결과반영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 세대당 인구 2.3인 적용(미취사가구 수용주택 별도 적용)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 분		개소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5	15,776.0	증) 5	15,781.0	-
교육시설	초등학교	1	8,000.0	-	8,000.0	-
문화·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4	7,776.0	증) 5	7,781.0	-

※ 회경3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개소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9	62,977	증) 184	63,161	
공원	소계	9	33,552	-	33,552	
	근린공원	1	11,924	-	11,924	
	어린이공원	4	12,701	-	12,701	
	소공원	4	8,927	-	8,927	
녹지	소계	10	29,425	-	29,609	
	연결녹지	5	12,463	-	12,463	
	완충녹지	5	16,962	증) 184	17,146	

※ 회경3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촉진지구	830,190.0	증) 263	830,453.0	100.0	
촉진구역	574,534.0	증) 263	574,797.0	69.2	
이문1구역	144,964.0	-	144,964.0	17.5	
이문3구역	157,814.0	-	157,814.0	19.0	결합개발 구역
이문3-1구역	136,573.0	-	136,573.0	16.5	역세권
이문3-2구역	21,241.0	-	21,241.0	2.5	구릉지
이문4구역	151,388.0	-	151,388.0	18.2	
회경1구역	12,915.0	-	12,915.0	1.6	정비구역 기지정
회경2구역	43,329.0	-	43,329.0	5.2	
회경3구역	64,124.0	증) 263	64,387.0	7.7	
존치지역	255,656.0	-	255,656.0	30.8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지구단위 계획구역	소 계		185,615.0	—	185,615.0	22.4	
	①		29,567.0	—	29,567.0	3.6	신이문지구단위계획
	②		67,183.0	—	67,183.0	8.1	이문지구단위계획
	③		88,865.0	—	88,865.0	10.7	회기지구단위계획
	소 계		70,041.0	—	70,041.0	8.4	
	⑤		4,877.0	—	4,877.0	0.6	웰츠타워(주상복합) 등
	⑥		12,993.0	—	12,993.0	1.6	이문로
	⑦		11,776.0	—	11,776.0	1.4	중앙하이츠 아파트
	⑧		17,118.0	—	17,118.0	2.1	경원선
	⑨		8,446.0	—	8,446.0	1.0	삼익아파트
	⑩		1,319.0	—	1,319.0	0.1	빗물펌프장(방수설비)
	⑪		7,228.0	—	7,228.0	0.9	중앙선
	⑫		6,284.0	—	6,284.0	0.7	기타 존치건축물

※ 회경3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830,190.0	증) 263	830,453.0	100.0	—
주거지역	소 계	819,331.0	증) 263	819,594.0	98.7	—
	1종일반주거지역	21,241.0	—	21,241.0	2.6	—
	2종(7층)일반주거지역	126,140.0	증) 205	126,345.0	15.2	—
	2종일반주거지역	391,835.0	증) 5	391,840.0	47.2	—
	3종일반주거지역	152,089.0	증) 53	152,142.0	18.3	—
	준주거지역	128,026.0	—	128,026.0	15.4	—
상업지역	소 계	10,859.0	—	10,859.0	1.3	—
	일반상업지역	10,859.0	—	10,859.0	1.3	—

※ 회경3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구 역 명		면적(㎡)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시설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유상매입시설	순부담면적
			①	②	③	④	①-②-③-④
합계	기정	574,534.0	151,531.0	26,495.0	8,354.0	—	116,682.0
	변경	574,797.0	151,757.0	26,495.0	8,354.0	—	116,908.0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144,964.0	28,627.0	—	—	—	28,627.0

구 역 명	면적(㎡)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시설 ①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시설 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157,814.0	37,893.0	3,662.0	1,596.0	-	32,635.0
이문3-1	136,573.0	37,893.0	3,662.0	1,596.0	-	32,635.0
이문3-2	21,241.0	-	-	-	-	-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151,388.0	48,185.0	12,014.0	5,782.0	-	30,389.0
회경1재정비촉진구역	12,915.0	1,864.0	563.0	-	-	1,301.0
회경2재정비촉진구역	43,329.0	14,564.0	6,371.0	260.0	-	7,933.0
회경3재정비촉진 구역	기정	64,124.0	20,398.0	3,885.0	716.0	15,797.0
	변경	64,387.0	20,624.0	3,885.0	716.0	16,023.0

※ 회경3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

구 분	전체 세대수	임 대 주 택 (장기전세주택)							
		합계	20㎡	30㎡	30~40㎡이하	40~50㎡이하	50~60㎡이하	60~85㎡이하	85㎡초과
이문1	2,904	511	-	-	251	205	55	-	-
이문3	4,031	1,308(682)	122	100	225(125)	522(268)	79(29)	238(238)	22(22)
이문3-1	3,879	1,308(682)	122	100	225(125)	522(268)	79(29)	238(238)	22(22)
이문3-2	152	-	-	-	-	-	-	-	-
이문4	2,442	458	100	50	103	164	41	-	-
회경1	299	51	-	-	21	23	7	-	-
회경2	900	174(25)	-	-	70	61	34(16)	7(7)	2(2)
회경3	기정	1,784	413(150)	-	219(113)	111(4)	83(33)	-	-
	변경	1,792	413(150)	-	231(114)	98(3)	84(33)	-	-
합 계	기정	12,360	2,915(857)	222	150	889(238)	1,086(272)	299(78)	245(245)
	변경	12,368	2,915(857)	222	150	901(239)	1,073(271)	300(78)	245(245)

주) ()는 장기전세주택

※ 변경사유 : 회경3구역 건축심의 결과반영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기타 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 : 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회경3구역 외 변경없음)

가) 회경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대	64,124	증)263	64,387	-

※ 변경사유 : 휘경3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2) 정비계획

①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64,124	증) 263	64,387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5,458	증) 226	15,684	24.4	－
	도 로	3,965	증) 24	3,989	6.2	－
	녹 지	7,205	증) 184	7,389	11.5	－
	공공공지	788	증) 13	801	1.2	－
	사회복지시설b	2,300	증) 68	2,368	3.7	건축물기부채납
	사회복지시설c	1,200	감) 63	1,137	1.8	건축물기부채납
택 지 (획지)	소 계	48,666	증) 37	48,703	75.6	－
	7-1	48,666	증) 37	48,703	75.6	－

※ 변경사유 : 휘경3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②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 로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42	15~20	집산 도로	427 (80)	휘경2동 42-4번지	휘경동 139-27번지	일반 도로		건고 46 (1976.4.7)	
기정	중로	2	143	15	집산 도로	200	휘경동 101-10번지	휘경동 175-4번지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3	10~12 (12)	국지 도로	200 (149)	휘경동 154-8번지	휘경동 146-127번지	일반 도로	-	서고2007-496 (' 08.1.7)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축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 휘경3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도로면적 변경

■ 녹 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㉔	녹지	완충녹지	휘경동 194-1일원	7,205	증) 184	7,389	서고2007-496 (' 08.1.7)	

※ 변경사유 : 휘경3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녹지㉔ 변경

■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㉕	공공공지	휘경동 104-9 일원	788	증) 13	801	서고2007-496 (' 08.1.7)	

※ 변경사유 : 휘경3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공공공지㉕ 변경

■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㉞	사회복지시설	휘경동 100-35 일원	2,300	증) 68	2,368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변경	㉟	사회복지시설	휘경동 100-41 일원	1,200	감) 63	1,137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 변경사유 : 휘경3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시설㉖,㉗ 변경

③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 변경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휘경3 재정비	64,124	-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대	526	-	-	526	-	-
변경	촉진구역	64,387	-	-		526	-	-	526	-	-

■ 건축시설계획 : 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1)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평균	최고																															
회경3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64,124	7-1	기정	48,666	동대문구 회경동 165-58번지 일대	기정	145,61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300 이하	-	35층이하 (118m이하)																									
				변경	48,703		변경	146,103																														
	변경	64,387	7-2	기정	2,300	동대문구 회경동 100-35번지 일대	3,200		사회복지시설b	60이하	200 이하	-	-																									
				변경	2,368																																	
			7-3	기정	1,200	동대문구 회경동 100-41번지 일대	1,287	사회복지시설c	60이하	200 이하	-	-																										
				변경	1,137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총세대수 : 1,784세대 (임대 263세대, 장기전세 150세대) ● 규모별 건설비율 <table><tr><th>구분(전용면적)</th><th>합계</th><th>분양주택</th><th>임대주택</th><th>장기전세주택</th></tr><tr><td>합계</td><td>1,784(100.0%)</td><td>1,371</td><td>263</td><td>150</td></tr><tr><td>60㎡이하</td><td>1,524(85.4%)</td><td>1,111</td><td>263</td><td>150</td></tr><tr><td>60~85㎡이하</td><td>260(14.6%)</td><td>260</td><td>-</td><td>-</td></tr><tr><td>85㎡초과</td><td>-</td><td>-</td><td>-</td><td>-</td></tr></table>												구분(전용면적)	합계	분양주택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합계	1,784(100.0%)	1,371	263	150	60㎡이하	1,524(85.4%)	1,111	263	150	60~85㎡이하	260(14.6%)	260	-	-	85㎡초과	-	-	-	-
		구분(전용면적)	합계	분양주택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합계	1,784(100.0%)	1,371	263	150																																
		60㎡이하	1,524(85.4%)	1,111	263	150																																
		60~85㎡이하	260(14.6%)	260	-	-																																
		85㎡초과	-	-	-	-																																
		변경	● 총세대수 : 1,792세대 (임대 263세대, 장기전세 150세대) ● 규모별 건설비율 <table><tr><th>구분(전용면적)</th><th>합계</th><th>분양주택</th><th>임대주택</th><th>장기전세주택</th></tr><tr><td>합계</td><td>1,792(100.0%)</td><td>1,379</td><td>263</td><td>150</td></tr><tr><td>60㎡이하</td><td>1,531(85.4%)</td><td>1,118</td><td>263</td><td>150</td></tr><tr><td>60~85㎡이하</td><td>261(14.6%)</td><td>261</td><td>-</td><td>-</td></tr><tr><td>85㎡초과</td><td>-</td><td>-</td><td>-</td><td>-</td></tr></table>												구분(전용면적)	합계	분양주택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합계	1,792(100.0%)	1,379	263	150	60㎡이하	1,531(85.4%)	1,118	263	150	60~85㎡이하	261(14.6%)	261	-	-	85㎡초과	-	-	-
	구분(전용면적)		합계	분양주택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합계		1,792(100.0%)	1,379	263	150																																
	60㎡이하		1,531(85.4%)	1,118	263	150																																
	60~85㎡이하		261(14.6%)	261	-	-																																
	85㎡초과		-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물 형태 및 배치에 관한계획																																					

주1) 인공지반(데크)설치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주) ()는 장기전세주택

※ 변경사유 : 회경3구역 건축심의 반영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1)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④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⑤ 임대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임대	장기전세		
기정	휘경3재정비 촉진구역내	48,666	-	25,864	106세대(5.9%)	113세대(6.3%)	40㎡이하	
					107세대(6.0%)	4세대(0.2%)	40~50㎡이하	
					50세대(2.8%)	33세대(1.9%)	50~60㎡이하	
					-	-	60~85㎡이하	
					-	-	85㎡초과	
					전체 : 263세대(14.7%)	전체 : 150세대(8.4%)		
변경	휘경3재정비 촉진구역내	48,703	-	25,915	117세대(6.6%)	114세대(6.3%)	40㎡이하	
					95세대(5.2%)	3세대(0.2%)	40~50㎡이하	
					51세대(2.8%)	33세대(1.8%)	50~60㎡이하	
					-	-	60~85㎡이하	
					-	-	85㎡초과	
					전체 : 263세대(14.7%)	전체 : 150세대(8.4%)		

주1) 세대수 항목의 ()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 변경사유 : 휘경3구역 건축심의 반영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 : 휘경3구역외 변경없음

19) 신이문 생활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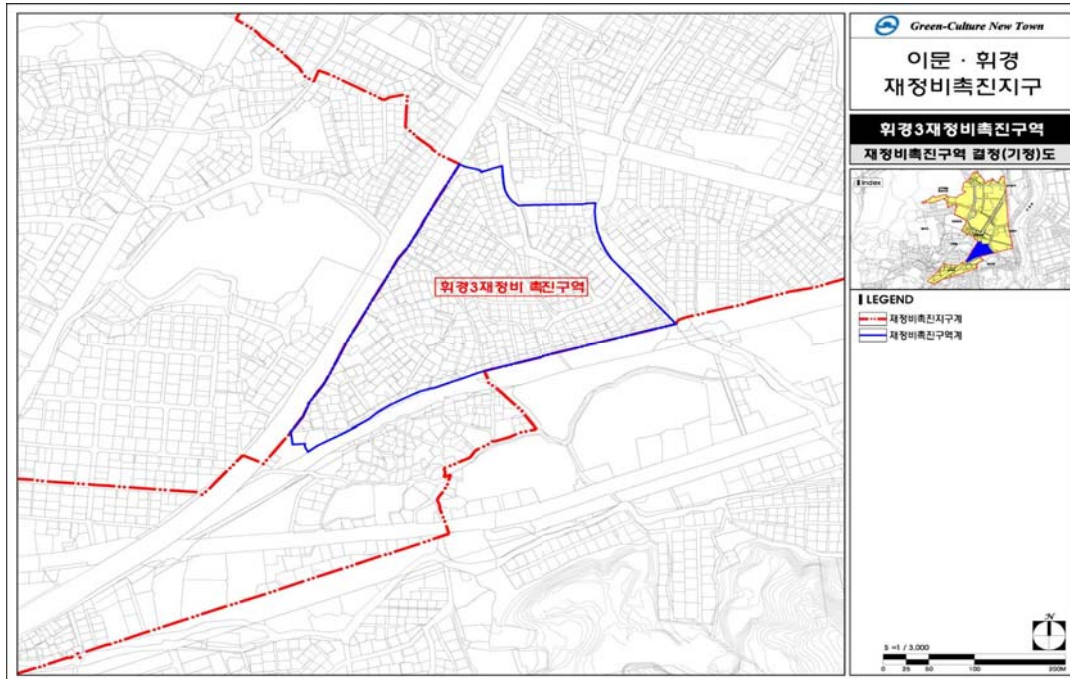
20) 이문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1)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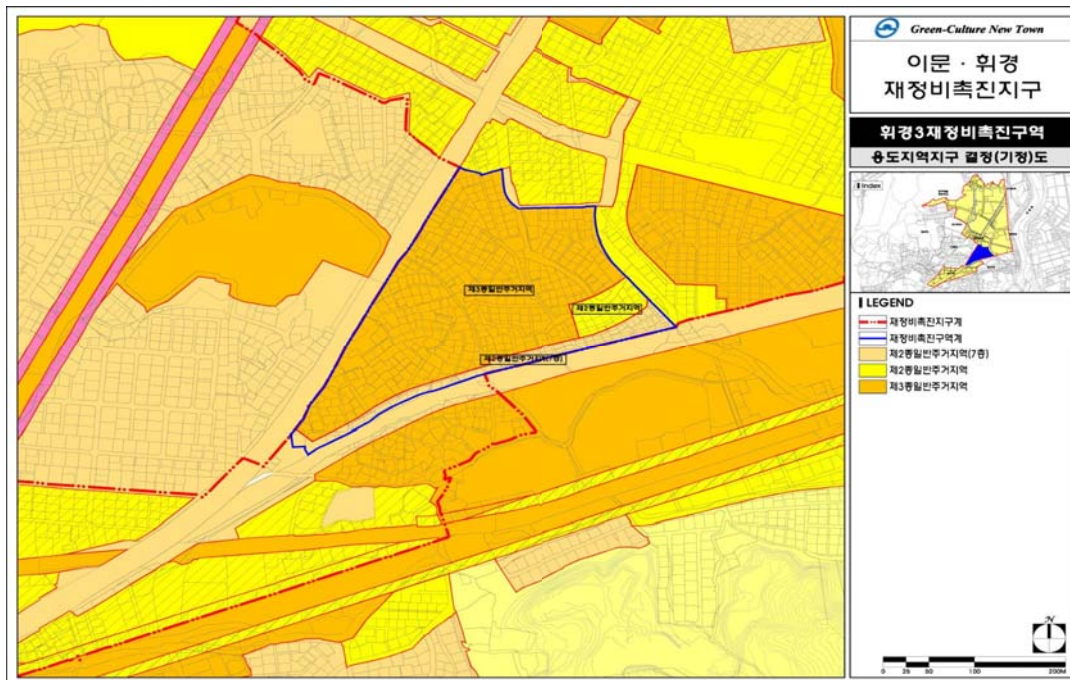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계획 내용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도서」에 명시6. 관계 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도
서」 참조 : 생략 (비치한 도서와 같음)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8) 및 동대문
구 도시계획과(☎02-2127-4389)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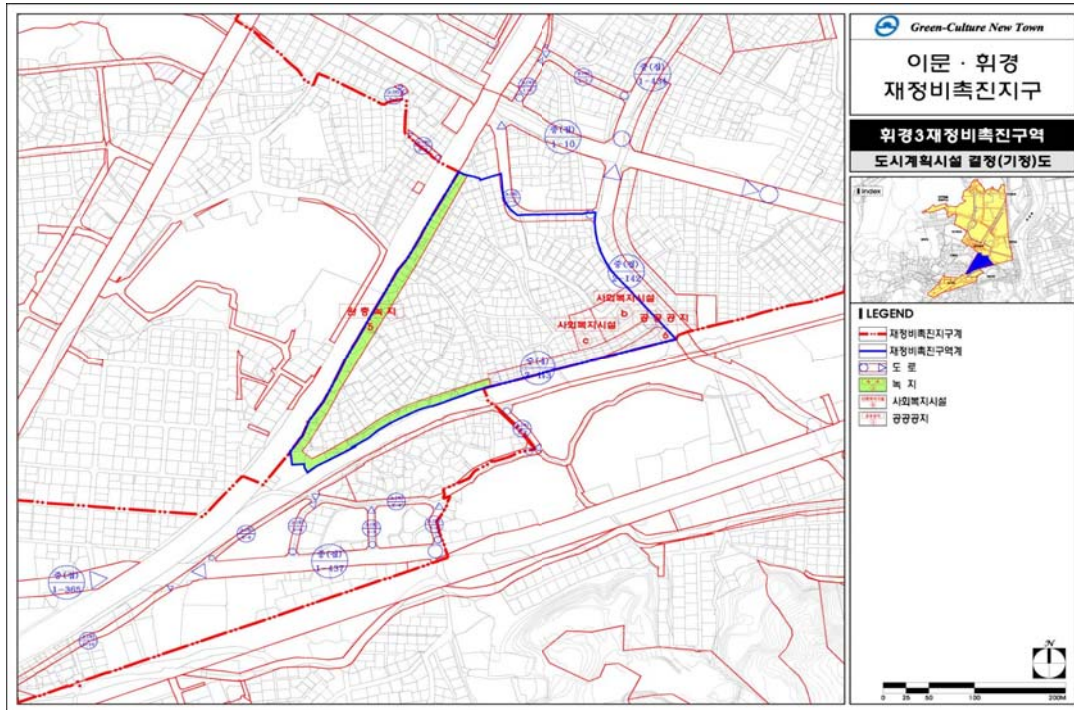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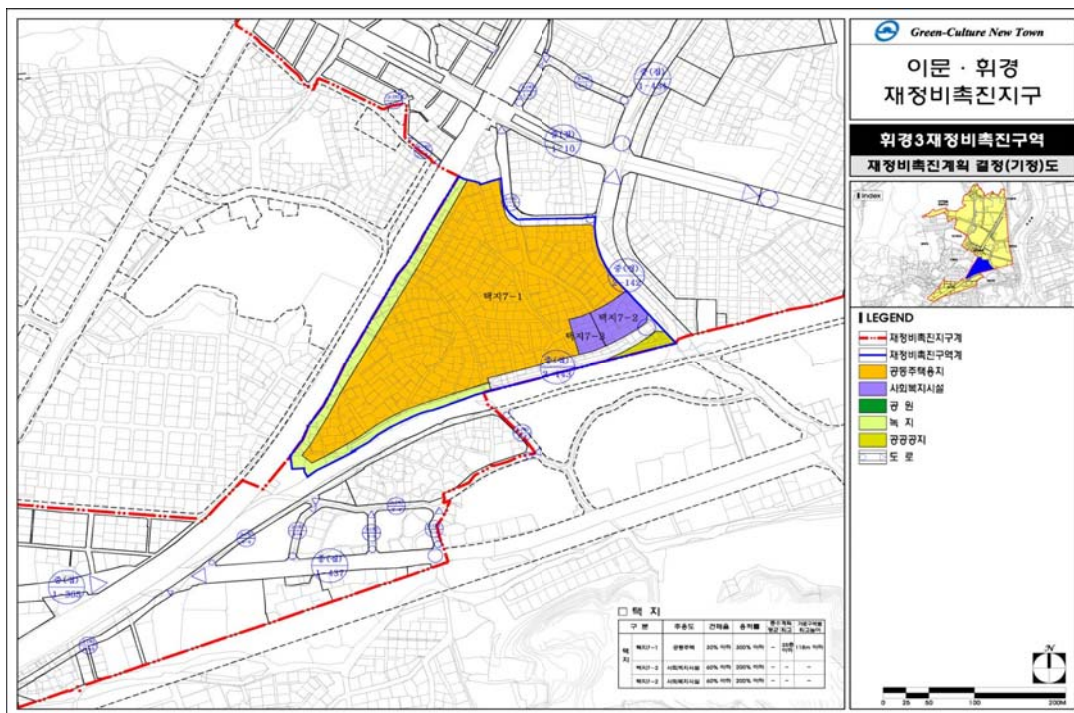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0호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8호('08.05.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08-80호('08.11.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6호('08.11.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29호('11.5.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49호('12.9.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03호('16.7.14)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답십리18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답십리18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 변경 없음

구분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전농·답십리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동대문구 전농1,4동 답십리1,3,5동 일대	813,150.5	-	813,150.5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 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 없음
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813,150.5	-	813,150.5	100.00	
주택 용지	소 계	476,459.6	증)51.0	476,510.6	58.6	
	단독/다가구/다세대	100,298.0	-	100,298.0	12.3	
	공동주택	313,929.9	증)51.0	313,980.9	38.6	
	근린생활	20,210.7	-	20,210.7	2.5	
	복합용도	42,021.0	-	42,021.0	5.2	
상업 업무	소 계	30,974.0	감)51.0	30,923.0	3.8	
	상업/업무/복합	30,974.0	감)51.0	30,923.0	3.8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공공시설	소 계	295,801.9	—	295,801.9	36.4	
	도 로	164,992.8	—	164,992.8	20.3	
	광 장	4,367.0	—	4,367.0	0.5	
	공원/녹지/공공공지	47,089.9		47,089.9	5.8	
	순환보행로	7,817.0	—	7,817.0	1.0	
	학 교	60,108.4	—	60,108.4	7.4	
	공공청사	3,209.1	—	3,209.1	0.4	
	문화복지	7,937.6	—	7,937.6	1.0	
	기 타	280.1	—	280.1	0.1	
종교시설		9,915.0	—	9,915.0	1.2	

※ 변경사유 : 답십리18재정비촉진구역 도로선형 변경과 이에 따른 획지 면적 변경

- 2) 인구 · 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생략)
-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생략)
-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생략)
- 5) 교통계획(변경없음, 생략)
- 6) 경관계획(변경없음, 생략)
-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생략)
- 8)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촉진지구		813,150.5	—	813,150.5	100.0	
촉진구역		453,640.2	증) 51	453,691.2	55.8	
	전농7구역	151,792.4	—	151,792.4	18.7	
	전농8구역	93,697.0	—	93,697.0	11.5	
	답십리12구역	7,039.9	—	7,039.9	0.9	
	답십리16구역	145,767.9	—	145,767.9	17.9	
	답십리18구역	55,343.0	증) 51	55,394.0	6.8	
존치지역		359,510.3	감) 51	359,459.3	44.2	
존치정비 구역	전농도시환경	21,665.0	—	21,665.0	2.7	
존치관리 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기타	337,845.3	감) 51	337,794.3	41.5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453,640.2	증) 51.0	453,691.2	
전농7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51,792.4	-	151,792.4	
전농8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3,697.0	-	93,697.0	
답십리12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039.9	-	7,039.9	
답십리16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45,767.9	-	145,767.9	
답십리18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576.0	-	2,576.0	
	제2종일반주거지역	52,767.0	증) 51.0	52,818.0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생략)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생략)

12)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생략)

13) 기타 계획(에너지순환, 방재, 정보화,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 (변경없음, 생략)

14)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생략)

1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생략)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답십리18구역 외 변경없음)

가. 답십리18재정비촉진구역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 · 감	변경	
변경	답십리18 재정비촉진구역	동대문구 답십리동 98번지 일대	55,343	증) 51	55,394	

(2)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55,343	증) 51	55,394	10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16,412	－	16,412	29.6	
	도 로	7,433	－	7,433	13.4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공 원	1,722	-	1,722	3.1	소공원
	녹 지	1,692	-	1,692	3.1	연결녹지
	문화시설	2,989	-	2,989	5.4	
	학 교	2,576	-	2,576	4.6	
택 지 (획지)	소 계	38,931	증) 51	38,982	70.4	
	택지1 (1-1, 1-2)	38,931	증) 51	38,982	70.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답십리18 재정비촉진구역	계	1,009	3,027	임대주택 172세대 포함
	40㎡ 이하	71		
	40㎡~50㎡	73		
	50㎡~60㎡	277		
	60㎡~85㎡	548		
	85㎡ 초과	40		

(3)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55,343	증) 51	55,394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576	-	2,576	4.6
제2종일반주거지역	52,767	증) 51	52,818	95.3

(4)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변경)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시점	종점			
기정	중로	2	443	16	집산	300	전농동 295-215	답십리동 238-3	답십리동 103-5	08.05.29 (서고시178호)	-
기정	소로	3	1	6	국지	330	답십리동 439-56	답십리동 242-41	답십리동 99-15	08.05.29 (서고시178호)	243-8~243-17구간 선형 변경
변경	소로	3	1	6	국지	330	답십리동 439-56	답십리동 242-41	답십리동 99-15	-	
기정	대로	3	10	25 (25→28)	보조 간선	1,100 (40)	마장동	전농동 광 장	전농 로타리	36.12.26 (총고시722호)	(구역내 3m확폭)
기정	대로	3	130	25 (25→28)	보조 간선	2,100 (72)	오스카극장 동측	전농동 광 장	동대문 중학교	78.5.1 (서고시187호)	(구역내 3m확폭)

나)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결정조서(변경없음)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기정	공 원	소공원	전농동 295-486번지 일대	1,722	-	1,722	08.05.29 (서고시 178호)	-
기정	녹지(1)	연결녹지	답십리동 104-2번지 일대	453	-	453	"	-
기정	녹지(2)	연결녹지	답십리동 236-29번지 일대	1,239	-	1,239	"	-

다)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학교녹지)결정조서(변경없음)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문화시설	-	전농동 309-8번지 일대	2,989	-	2,989	08.05.29 (서고시 178호)	-
기정	학 교	초등학교	전농동 306번지 일대	19,147	-	19,147	92.07.24 (서고시252호)	-

(5)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증(감)	변경							
변경	답십리18 재정비촉진 구역	55,343	증) 51	55,394	답십리동 98번지 일대	379	-	-	-	379	-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위치	연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답십리18 재정비 촉진구역	55,343	택지1 (1-1,1-2)	38,931	답십리동 98번지 일대	160,00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53.6%이하 (210%)	평균 18층 이하
변경		55,394	택지1 (1-1,1-2)	38,982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1,009세대 [임대172세대(17.05%)] - 주택건설 60㎡이하 : 421세대(41.72%) 60~85㎡이하 : 548세대(54.32%) 85㎡초과 : 40세대(3.96%) - 임대주택: 172세대(전체세대수의 17.05%) 40㎡ 이하 : 71세대(임대주택의 41.28%) 40~50㎡이하 : 73세대(임대주택의 42.44%) 50~60㎡이하 : 28세대(임대주택의 16.28%)								
건축물 높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70m이하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남측 대지경계선(답십리길)에서부터 건축한계선 18m지정 ○ 전농초등학교 경계선에서부터 건축한계선 6m지정 ○ 기타도로변에서부터 건축한계선 6m지정								

※ 획지면적 변경사유 : 도로선형 변경과 이에 따른 획지 면적 변경

다) 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없음)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기존세대수	정비사업에 따른 건립 세대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1,145세대	1,009세대 (감) 136

라)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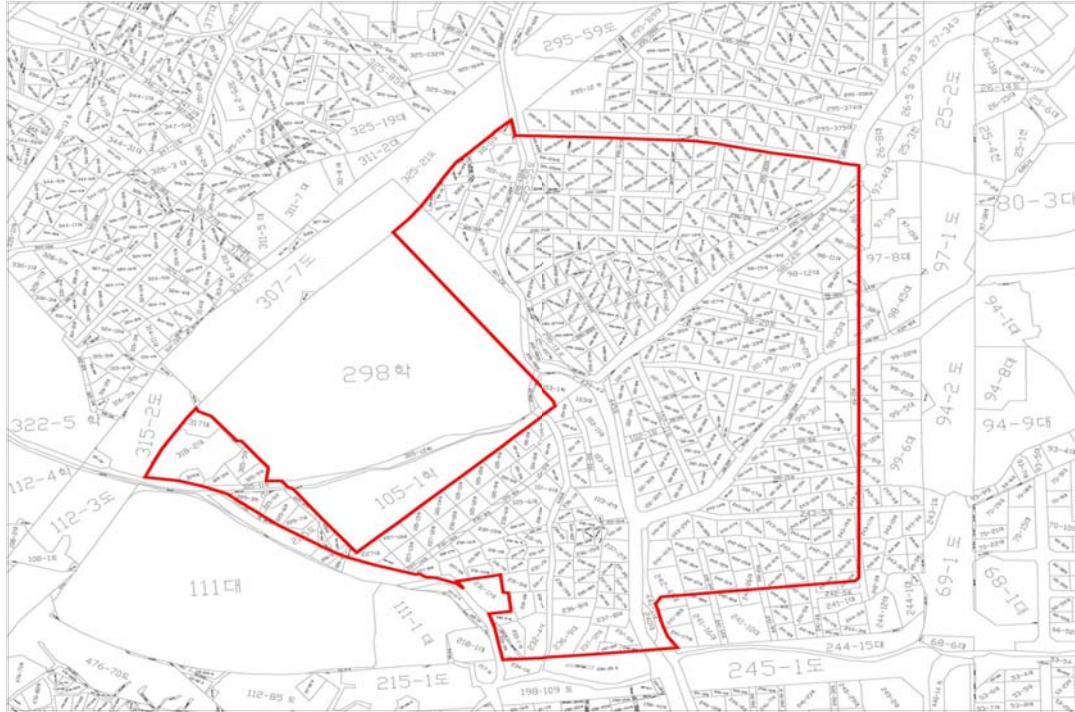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연면적(㎡)	세대수 및 규모	비 고
답십리18 재정비촉진 구역내	별도획지로 구분하지 않음	1	15,000이하	- 임대주택 : 172세대 (전체세대수의 17.05%) 40㎡ 이하 : 71세대 40~50㎡ 이하 : 73세대 40~60㎡ 이하 : 28세대	

5. 답십리18재정비촉진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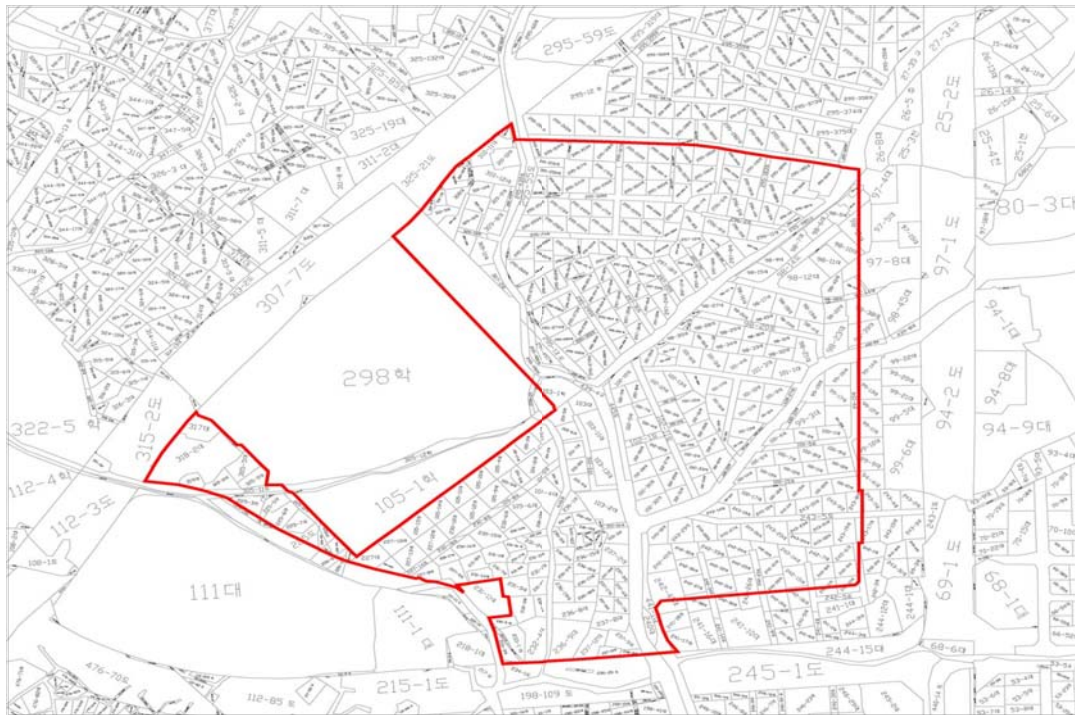
6.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8) 및 동대문
구 도시계획과 (☎02-2127-4578)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첨부 : 지형도면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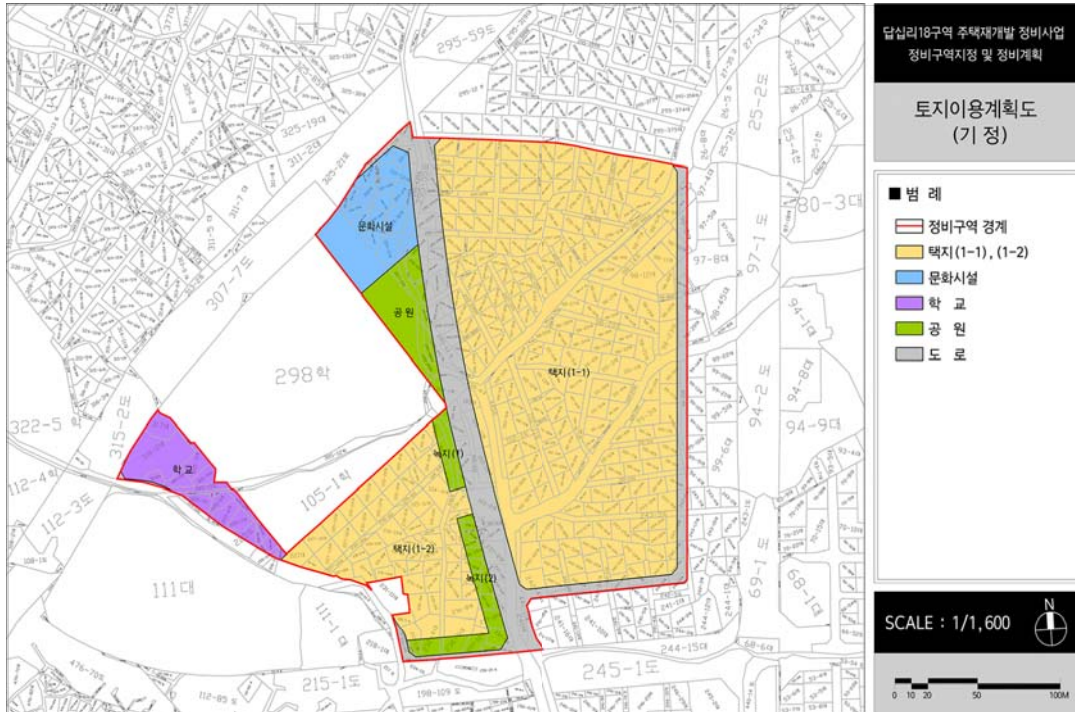
■ 촉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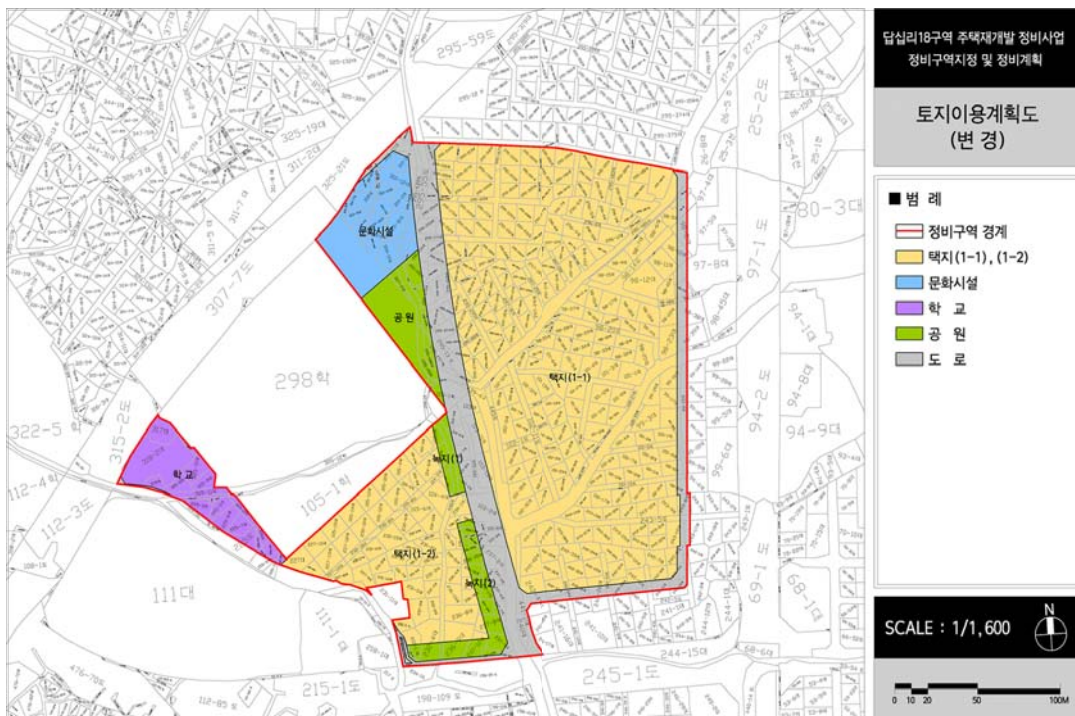
■ 촉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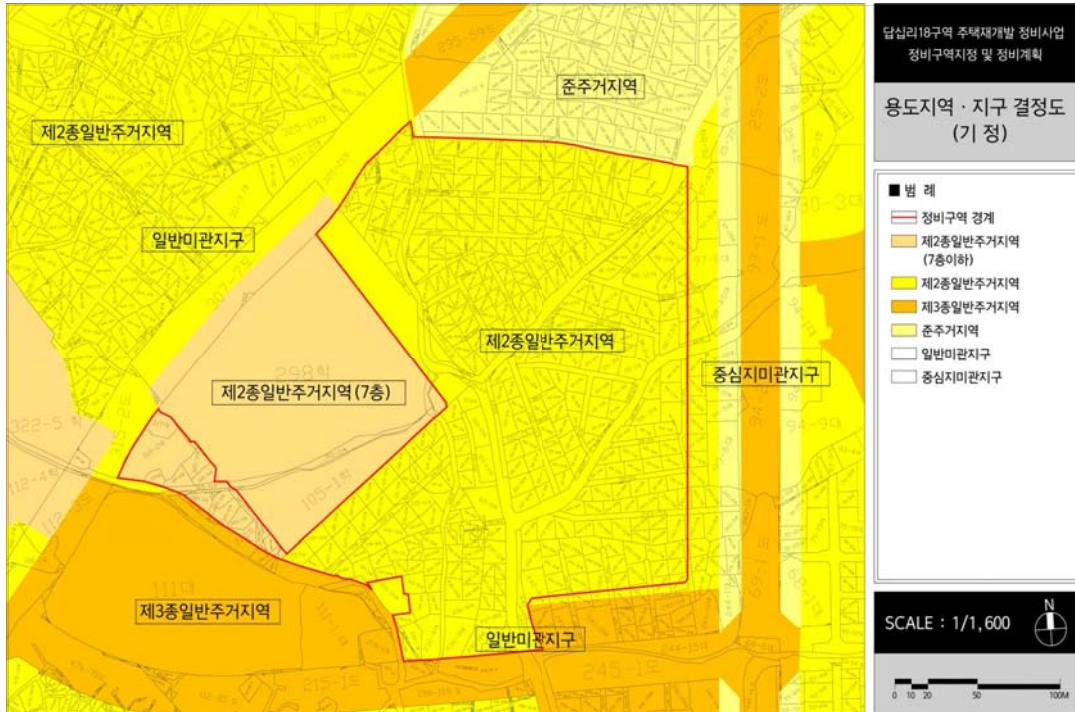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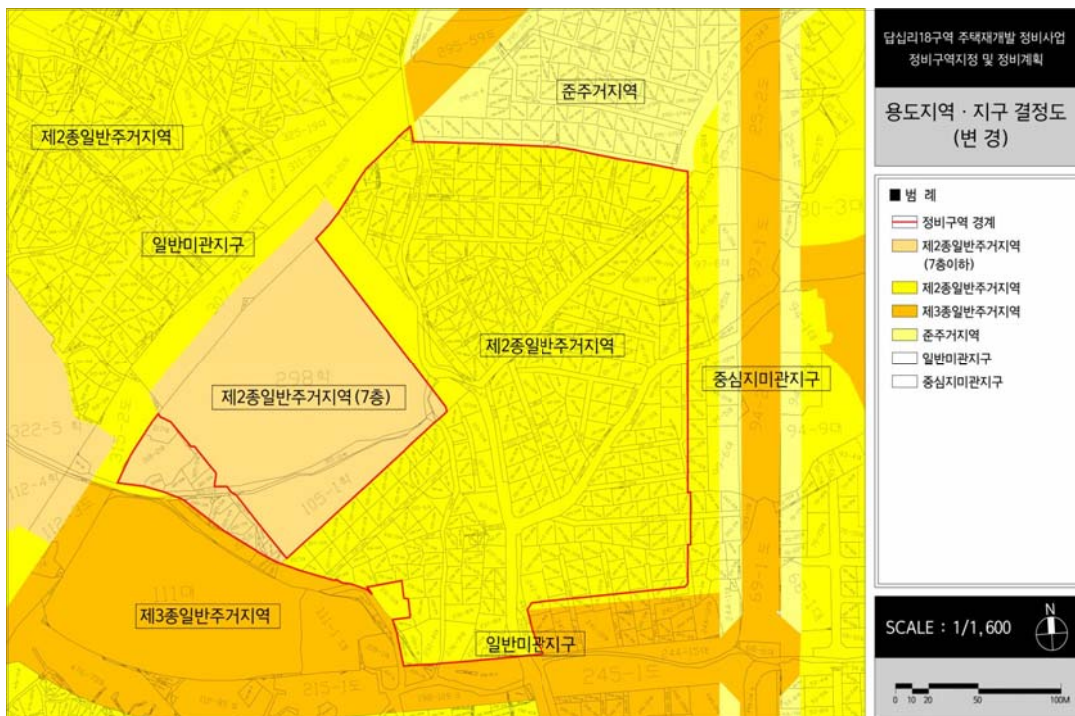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기정)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1호

하수처리 재이용수 급수공사비 고시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1항에 따라 하수처리 재이용수 급수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급수공사비 정액공사비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건축연면적 85㎡ 미만(건당) : 600,000원

나. 건축연면적 85㎡ 이상 ~ 150㎡ 미만 : 600,000원 + 85㎡초과면적 × (㎡당 8,000원)

다. 건축연면적 150㎡~500㎡미만(건당) : 1,120,000원 + 150㎡초과면적 × (㎡당 3,000원)

라. 건축연면적 500㎡~2,000㎡미만(건당) : 2,170,000원 + 500㎡초과면적 × (㎡당 1,000원)

마. 건축연면적 2,000㎡~7,000㎡미만(건당) : 3,670,000원 + 2,000㎡초과면적 × (㎡당 800원)

바. 건축연면적 7,000㎡이상 : 7,670,000원 + 7,000㎡초과면적 × (㎡당 350원)

※ 건축연면적 : 전체 건축연면적에서 재처리수를 사용하지 않는 층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 신청 후 납입고지로 공사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02-2133-3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2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3호(2017.4.27.)로 고시한 바 있는“『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기재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부칙 제5조 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지정(결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서울특별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나. 위치 :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다. 면적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반포 아파트지구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1,528,426.5㎡	증) 20,498.1㎡	1,548,960.6㎡	

2. 주요 변경내용(반포아파트지구 1주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 가. 한강변 공공성 강화 및 보행환경개선[지하도로(지하공공보도시설) 3개소 설치]을 위해 반포대로, 올림픽대로 및 완충녹지 일부 정비구역 편입하여 구역면적 변경
- 나. 통합재건축에 따른 주택용지 변경 및 서울반포우체국 이전 설치를 위해 주택용지 일부를 주구중심으로, 서울반포우체국 이전 부지에 남서울교회 선교관 시설설치를 위해 공공청사 용지 일부를 종교용지로 용도변경
- 다. 통합재건축에 따른 일부 도로 폐지 및 지정 완충녹지와 통합하여 일부 완충녹지로 변경
- 라. 단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확폭(15m → 20m) 및 가·감속차로 추가조성
- 마. 반포대로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소공원을 통합하여 위치변경
- 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신반포로 변에 공공청사 설치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로써 공공서비스 제공
- 사. 가로활성화, 지역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

3.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1) 지구 면적표

(단위 : m²)

구분	합계	1주구	2주구	3주구
변경 전	1,528,426.5m ²	217,992.8m ²	388,886.8m ²	921,546.9m ²
변경 후	1,548,960.6m ²	238,490.9m ²	388,886.8m ²	921,546.9m ²
비고	증) 20,498.1m ²	증) 20,498.1m ²	“변경 없음”	“변경 없음”

2)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	면적(㎡)	비율 (%)	
합계		1,528,426.50	100.0	1,548,924.60	100.0	증) 27,498.1㎡
주거 용지	소계	942,131.16	61.6	941,061.26	60.8	감) 1,069.9㎡
	주택용지	942,131.16	61.6	941,061.26	60.8	감) 1,069.9㎡
중심 시설 용지	소계	94,798.60	6.2	95,852.30	6.2	증) 1,053.7㎡
	지구중심	37,698.50	2.5	37,698.50	2.4	변경 없음
	주구중심	22,912.10	1.5	23,965.80	1.6	증) 1,053.7㎡
	분구중심	34,188.00	2.2	34,188.00	2.2	변경 없음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계	481,295.14	31.5	501,161.74	32.3	증) 19,866.6㎡
	도로용지	224,617.34	14.7	228,184.54	14.7	증) 3,567.2㎡
	공원용지	56,568.50	3.7	56,568.50	3.6	변경 없음
	녹 지	59,138.00	3.9	72,549.70	4.7	증) 13,411.7㎡
	광 장	972.90	0.1	972.90	0.1	변경 없음
	학교용지	131,617.60	8.6	131,617.60	8.5	변경 없음
	공공청사	8,380.80	0.5	8,944.40	0.6	증) 563.6㎡
	문화시설	-	-	2,324.10	0.1	증) 2,324.1㎡
기타	소계	10,201.60	0.7	10,849.30	0.7	증) 647.7㎡
	종교용지	10,201.60	0.7	10,849.30	0.7	증) 647.7㎡

나) 주구별 토지이용계획

- 1주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	면적(㎡)	비율 (%)	
합계		217,992.8	100.0%	238,490.9	100.0%	증) 20,498.1㎡
주거 용지	소계	128,181.4	58.8%	127,111.5	53.3%	감) 1,069.9㎡
	주택용지	128,181.4	58.8%	127,111.5	53.3%	감) 1,069.9㎡
중심 시설 용지	소계	14,761.9	6.8%	15,815.6	6.6%	증) 1,053.7㎡
	지구중심	—	—	—	—	변경 없음
	주구중심	7,391.5	3.4%	8,445.2	3.5%	증) 1,053.7㎡
	분구중심	7,370.4	3.4%	7,370.4	3.1%	변경 없음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계	70,649.9	32.4%	90,516.5	38.0%	증) 19,866.6㎡
	도로용지	22,157.2	10.2%	25,724.4	10.8%	증) 3,567.2
	공원용지	8,127.4	3.7%	8,127.4	3.4%	변경 없음
	녹 지	—	—	13,411.7	5.6%	증) 13,411.7㎡
	학교용지	39,167.0	18.0%	39,167.0	16.4%	변경 없음
	공공청사	1,198.3	0.5%	1,761.9	0.7%	증) 563.6㎡
	문화시설	—	—	2,324.1	1.0%	증) 2,324.1㎡
기타	소계	4,399.6	2.0%	5,047.3	2.1%	증) 647.7㎡
	종교용지	4,399.6	2.0%	5,047.3	2.1%	증) 647.7㎡

- 2주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 3주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나. 건축물 규제사항 : 변경

1) 용도규제 : 변경

구분	건축범위	
	기정	변경
지구중심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의 규모계획내용 및 주변 도시계획현황과 주거 및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변경 없음
주구중심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한다)	변경 없음
분구중심	· 일용품(식품, 일용잡화)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변경 없음
주택용지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운동시설(건축물을 수반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관리용시설, 공급처리시설,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변경 없음
학교용지	· 학교시설	변경 없음
공원용지	· 공원시설	변경 없음
도로용지	· 도로시설	변경 없음
녹지	· 녹지관련시설	변경 없음
광장	· 광장관련시설	변경 없음
공공청사	· 공공청사	변경 없음
종교시설	· 종교시설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변경 없음
문화시설	-	· 문화시설

※ 주 1) 상기 건축물의 용도규제사항은 해당 용도지역의 관련법규 상 허용하는 용도범위 내에서 적용

2) 학교보건법상 제6조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의 상대 및 절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불허

- 2) 건축선의 지정 : 변경
- 1주구(변경)
 - ▶ 건축한계선
 - 반포대로변 : 6m 이격
 - 신반포로19길변 : 6m 이격
 - 북측 완충녹지변 : 6m 이격
 - 그 외 :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3m 이격
 - 2주구(변경 없음)
 - 3주구(변경 없음)
- 3) 건폐율 규제 : 변경 없음
- 4) 용적률 규제 : 변경 없음
- 5) 세대밀도 : 변경 없음
- 6) 건축물의 높이 : 변경 없음
- 7)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 변경 없음
- 8) 주택용지안의 녹지규제 : 변경 없음
- 9) 주택규모규제(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 : 변경 없음

다. 중심시설 및 기타 건축물 계획 : 변경

- 1) 지구중심 : 변경 없음
- 2) 주구중심 : 변경
- 주구중심 구분 및 면적

구 분	계		1주구		2주구		3주구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변경전	4	22,912.1	1	7,391.5	2	7,277.5	1	8,243.1	
변경후	6	23,965.8	3	8,445.2	2	7,277.5	1	8,243.1	
비고	증)2개소	증)1,053.7	증)2개소	증)1,053.7	-	-	-	-	

※ 주택용지 일부[반포동 1-24번지(508.3㎡), 반포동 1-55번지(545.4㎡)]를 주구중심으로 변경

-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설소, 단란주점 제외),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한다)

- 층수 : 5층 이하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 법적용적률(조례)이하

3) 분구중심 : 변경 없음

4) 기타건축물 : 변경

구 분	면적(㎡)	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종교시설	10,849.3	5	50%이하	해당용도지역 법정용적률(조례)이하	변경 (면적변경)
공공청사	8,944.4	5	관련 법규에 따름		변경 (면적변경 및 1개소 신설)
문화시설	2,324.1	5	관련 법규에 따름		신설

라.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마. 경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바. 기존건축물 처리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사. 사업시행계획 : 변경 없음

4.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내용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대	147,969.5	증)20,498.1	168,467.6	

나. 정비계획 변경 내용

1) 용도지역 : 변경 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47,969.5	증)20,498.1	168,467.6	100.0	정비구역 편입하여 구역면적 변경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47,969.5	증)19,124.4	167,093.9	99.2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증)1,373.7	1,373.7	0.8	-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47,969.5	증)20,498.1	168,467.6	100	-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20,298.4	증)16,978.9	37,277.3	22.1	-
	도로용지	16,359.3	증)3,567.2	19,926.5	11.8	- 통합재건축에 따른 일부 도로 폐지(감 5,770.3㎡) 및 지정 완충녹지와 통합하여 일부 완충녹지로 변경 (감 2,518.3㎡) - 단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확폭(15m → 20m) - 가감속차로 추가조성(1,782.6㎡)
	공원용지	3,939.1	-	3,939.1	2.3	- 반포대로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소공원을 통합하여 위치변경
	녹 지	-	증)13,411.7	13,411.7	8.0	- 한강변 공공성 강화 및 보행환경 개선[지하도로(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을 위해 완충녹지 일부 편입 (13,411.7㎡)
	소 계	127,671.1	증)3,519.2	131,190.3	77.9	-
획지	주택용지	120,300.7	감)1,069.9	119,230.8	70.8	- 통합재건축에 따른 주택용지 변경 및 서울반포우체국 이전 설치를 위해 주택용지 일부를 주구중심으로 용도변경
	분구중심	7,370.4	-	7,370.4	4.4	-
	주구중심	-	증)1,053.7	1,053.7	0.6	- 서울반포우체국 이전 설치를 위해 주택용지 일부를 주구중심으로 용도변경 (증 1,053.7㎡)
	문화시설	-	증)2,324.1	2,324.1	1.4	-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2,324.1㎡) 설치(가로활성화, 지역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
	공공청사	-	증)1,211.3	1,211.3	0.7	-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신반포로변에 공공청사(1,211.3㎡) 설치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로서의 공공서비스 제공
	소 계	127,671.1	증)3,519.2	131,190.3	77.9	-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35	40 ~ 44	주간선 도로	6,600 (483)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용산구 서빙고동 (반포대교북단)	일반 도로	-	2010.04.22	반포대로
변경	광로	3	35	40 ~ 44	주간선 도로	6,600 (483)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용산구 서빙고동 (반포대교북단)	일반 도로	-	2010.04.22	지하도로1(지하공공보도시설) 중복결정(면적:356.2㎡)
기정	대로	2	29	30	주간선 도로	3,500 (123)	서초구 반포동 (이수교차로)	서초구 반포동 (강남대로)	일반 도로	-	1984.11.07	신반포로
변경	대로	2	29	30	주간선 도로	3,500 (123)	서초구 반포동 (이수교차로)	서초구 반포동 (강남대로)	일반 도로	-	1984.11.07	지하도로3 (지하공공보도시설) 중복결정 (면적:122.3㎡)
기정	중로	2	10	15	집산 도로	466 (466)	반포동 1-21	반포동 116-1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4-419호 (2004.12.27)	신반포로19길
변경	중로	1	468	20	집산 도로	475 (475)	반포동 1-21	반포동 116-1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4-419호 (2004.12.27)	
기정	중로	3	5	12	국지 도로	253 (253)	반포동 4-14	반포동 1-1	일반 도로	-		
폐지	중로	3	11	12	국지 도로	200 (200)	반포동 1-5	반포동 1-8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4-419호 (2004.12.27)	
기정	중로	3	16	10	국지 도로	247 (247)	반포동 2-8	반포동 1-1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1	17	10	국지 도로	340 (340)	반포동 1-8	반포동 116-1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4-419호 (2004.12.27)	
폐지	소로	2	24	8	국지 도로	108 (108)	반포동 1-8	반포동 1-13	특수 도로	-	서고시 제2004-419호 (2004.12.27)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소로	2	25	8	국지 도로	198 (198)	반포동 2-1	반포동 1-8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4-419호 (2004.12.27)	
신설	중로	1		20	특수 도로	103 (103)	반포동 1-13	반포동 115-2	지하 도로	-		지하도로1(지하공공보도시설) 광로3-35(356.2㎡), 소공원⑤(1,585.5㎡)완충녹지 ①(53.8㎡)와 중복결정
신설	중로	1		20	특수 도로	92 (92)	반포동 115-4	반포동 115-6	지하 도로	-		지하도로2(지하공공보도시설) 완충녹지①(617.3㎡)와 중복결정
신설	소로	3		7.5	특수 도로	17 (17)	반포동 1-11	반포동 1-12	지하 도로	-		지하도로3(지하공공보도시설) 대로2-29(122.3㎡)와 중복결정

※ ()는 구역 내 사항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광로 3-35호선	광로 3-35호선	확폭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완화차로(가감속차로) 추가조성(1,782.6㎡) - 광로3-35호선 : 지하도로1(지하공공보도시설) 중복결정(356.2㎡) - 대로2-29호선 : 지하도로3(지하공공보도시설) 중복결정(122.3㎡)
대로 2-29호선	대로 2-29호선	확폭	
중로 2-10호선	중로 1-468호선	확폭	- 단지 진 · 출입로 확보를 위해 확폭(15m → 20m)
중로 3-11호선	-	폐지	- 통합재건축에 따른 일부 도로 폐지(감 5,770.3㎡)
소로 1-17호선	-	폐지	
소로 2-24호선	-	폐지	- 통합재건축에 따라 차량진출입 기능이 불필요한 소로2-25 및 현재 일부 녹지공간으로 사용 중인 소로2-24를 폐지하고 기정 완충녹지와 통합하여 완충녹지로 변경(감 2,518.3㎡)
소로 2-25호선	-	폐지	
-	중로 1- 호선	신설	- 한강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하도로1,2,3(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
-	중로 1- 호선	신설	
-	소로 3- 호선	신설	

나) 공간시설

- 공원

○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⑤	1-1	소공원	반포동 1-1	1,500.0	증)2,439.1	3,939.1	서고시 제2004-419호 (2004.12.27)	소공원1-2와 통합 및 위치변경 지하도로1(지하공공보도시설) 중복결정(면적1,585.5㎡)
폐지	⑥	1-2	소공원	반포동 1-8	2,439.1	감)2,439.1	-	서고시 제2004-419호 (2004.12.27)	소공원1-1과 통합 및 위치변경

○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유
⑤	소공원 1-1	- 소공원 1-2와 통합 후 위치 변경 - 면적 증가 : 1,500.0㎡ → 3,939.1㎡ (증 2,439.1㎡)	- 반포대로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소공원1-1과 소공원 1-2를 통합하여(3,939.1㎡) 북동측 각각부로 위치변경
⑥	소공원 1-2	- 폐지	

-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①	녹지	완충 녹지	반포동 115-4	-	증)13,411.7	13,411.7	-	- 완충녹지는 북측 공공보행통로 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완만 하게 조성하며, 둔덕의 지반 고는 +21.0 이하로 조성 - 지하도로1(지하공공보도시설) 중복결정(면적53.8㎡) - 지하도로2(지하공공보도시설) 중복결정(면적617.3㎡)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녹지	- 면적 변경 0㎡ → 13,411.7㎡ (증 13,411.7㎡)	- '한강변관리기본계획' 과의 정합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해 완충녹지 일 부 편입(증 10,893.4㎡) - 통합재건축에 따라 차량진출입 기능이 불필요한 소로2-25 및 현재 일부 녹지공간으로 사용 중인 소로2-24를 폐지하고 기정 완충녹지와 통합하 여 완충녹지로 변경(증 2,518.3㎡)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③	공공청사	공공청사	반포동 1-23	-	증) 1,211.3㎡	1,211.3㎡	-	-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공공청사	면적 : 1,211.3㎡	-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신반포로변에 공공청사(1,211.3㎡) 설 치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로서의 공공서비스 제공

- 문화시설(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	반포동 1-1	-	증) 2,324.1	2,324.1	-	-

○ 문화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문화시설	- 면적 : 2,324.1㎡	-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분		기준근거	기준(㎡)	계획(㎡)	비고
부대시설	관리 사무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 그 면적이 100㎡ 이상을 초과할 경우 100㎡ 로 설치 가능	157.3㎡ 이상	226.6㎡	
	총괄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 1,000세대 이상의 경우, 500㎡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 한 면적에 1.25배한 면적 - 포함 시설 (500세대 이상의 경우) :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도서관	8,115㎡ 이상	14,967.1㎡	주민공동시설 (건축물) 전체면적
주민 공동 시설 (실내)	경로당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 1,500세대 이상의 경우, 500㎡ 이상	500㎡ 이상	526.5㎡	-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 1,500세대 이상의 경우, 725㎡ 이상	725㎡ 이상	3,625.0㎡	200인 (1개소) 300인 (1개소)
	작은 도서관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 1,500세대 이상의 경우, 298㎡ 이상	298㎡ 이상	1,437.0㎡	-
	기타 주민 공동시설	-	-	4,951.5㎡	공공개방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실내 운동시설 (피트니스)	-	-	4,427.1㎡	
주민 공동 시설 (실외)	어린이 놀이터	-	2,597.2	2,600.0㎡	옥외
	주민 운동시설	-	-	2,200.0㎡	옥외

- ※ 1. 공공개방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로 계획
2. 공공개방시설에 대한 상세내용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신반포 3차·경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68,467.6	-	-	반포동 1-1번지 일원	32	-	-	32	-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 한	
변경	신반포 3차·경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68,467.6	A-1	119,230.8	반포동 1-1 일대	주택 용지	20 이하	230 이하	281.34 이하	299.95 이하	110m 이하 / 35층 이하 [한강연접 첫 주동 높이 48m 이하 / 10-15층 이하] (피로티 포함)
			B-1	7,370.4	반포동 1-26 일대	분구 중심	5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C-2	508.3	반포동 1-24 일대	주구 중심	5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C-3	545.4	반포동 1-55 일대	주구 중심	5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D-1	2,324.1	반포동 1-19 일대	문화시 설	관련 법규에 따름			5층 이하	
			E-2	1,211.3	반포동 1-23 일대	공공청 사	관련 법규에 따름			5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 : 632세대 (임대 135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60㎡~85㎡ : 1,254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 초과 : 1,110세대									
심의완화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에 따 른 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반포대로변 : 6m 이격 - 신반포로19길변 : 6m 이격 - 북측 완충녹지변 : 6m 이격 - 그 외 :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3m 이격									
기타사항		▶ 공개공지 - 공개공지(침상형) 1개소 지정(위치지정) ▶ 공공보행통로 - 대상지 중앙부 동서방향 지상형 1개소 지정 - 대상지 북측 완충녹지변 지상형 1개소 지정 - 신반포로19길변 남북방향 지상형 1개소 지정 - 반포대로변 공공보행통로(지상·지하통로형) 1개소 지정 - 지정된 위치에서 30m 범위 내에서 폭 6m 이상의 직선형, 또는 곡선형으로 조성 ▶ 대지조성계획 - 단지 내부의 대지레벨은 +13.3m ~ +18.0m로 조성 - 대상지 서측 도로(신반포로19길) 경계부는 단지(+15.0m ~ +18.0m)와 도로(+11.6m ~ +13.3m)간의 단차에 따른 옹벽발생이 되지 않도록 공공개방시설의 미배치 구간은 대지레벨을 완만하게 조성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등 건축계획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다) 용적률 산정

구 분	산정내용				
	정비구역면적	획지(주택용지)면적	계획정비기반시설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토지이용계획			토지	건축물(환산부지면적)	
	168,467.6㎡	119,230.8㎡	40,812.7㎡	3,274.4㎡	23,605.2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 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토지+건축물)면적(40,812.7㎡ + 3,274.4㎡) -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23,605.2㎡) = 20,481.9㎡ ▶ 순부담 비율 : 토지(12.61%) + 건축물(2.40%) = 15.01%				
건축물 기부채납	• 공공청사 - 연면적 : 5,040㎡, 토지 : 1,211.3㎡ - 환산부지 면적 = 공사비(동청사(주민자치센터) : 2,000㎡ 초과 규모 적용) × 연면적 ÷ 부지가액 = 2,352,000(원/㎡) × 5,040㎡ ÷ 19,915,129(원/㎡) = 595.2㎡ • 지역예술교육센터(문화시설) - 연면적 : 7,070㎡, 토지 : 2,324.1㎡ - 환산부지 면적 = 공사비(문화예술회관/문화집회시설 : 4,000~10,000㎡ 규모 적용) × 연면적 ÷ 부지가액 = 2,755,000(원/㎡) × 7,070㎡ ÷ 19,915,129(원/㎡) = 978.0㎡ • 지하도로1(지하공공보도시설)(반포대로-한강공원 연결) - 연면적 : 1,317.0㎡ - 환산부지 면적 = 공사비(2016년 문정철처벌리 임시연결통로 공사비 참조) ÷ 부지가액 = 14,000,000(원/㎡) × 1,317.0㎡ ÷ 19,915,129(원/㎡) = 925.8㎡ • 지하도로2(지하공공보도시설)(신반포로19길-한강공원 연결) - 연면적 : 1,017.5㎡ - 환산부지면적 = 공사비(한강공원 나들목 낙천정 공사비 참조) ÷ 부지가액 = 14,000,000(원/㎡) × 1,017.5㎡ ÷ 19,915,129(원/㎡) = 715.2㎡ • 지하도로3(지하공공보도시설)(고투물 연결통로 개선) - 연면적 : 85.6㎡ - 환산부지 면적 = 공사비(2016년 문정철처벌리 임시연결통로 공사비 참조) ÷ 부지가액 = 14,000,000(원/㎡) × 85.6㎡ ÷ 19,915,129(원/㎡) = 60.2㎡ ※ 1) 환산부지면적(㎡) = $\frac{\text{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text{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2) 공공청사, 지역예술교육센터(문화시설) 공사비 :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2015] 적용 3) 부지가액(원/㎡) : 2016년 기준 공시지가 가중평균 2배 적용 (9,957,564.5원/㎡ × 2 = 19,915,129원/㎡) 4) 건축물 기부채납 면적 등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 기준(허용)용적률 = 230.0%(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 적용) = 기준(허용)용적률(%) × (1+1.3×α) = 기준(허용)용적률(230.0%) × (1+1.3×0.171706) = 281.34%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95% 이하 (⇒ 건축계획(안)의 용적률 299.95%)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대상지 주위의 주요 조망축에서의 경관이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방지를 위하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계획	
환경보 전	환경영 향	• 다량의 건축폐기물 발생 예상	
	영향 대책	• 사업시행이전에 보존가치 있는 수목에 대해 조사하고 이식 등 대책 수립 • 건축폐기물은 사업시행 시 저감방안 마련	
재난방 지	화재	• 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인 방재계획 작성 및 시행	
	수해	• 구역 내 우수구역 및 주변지역의 우수체계를 검토하고, 지구내부로의 우수유입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계획 및 시설설비체계 구축	
	교통	•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단지 내 동선체계 구축 • 비상시 보행자 동선이 비상도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사업 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을 날부터 4년 이내	신반포3차,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 2,433세대 계획 : 2,996세대 (증) 563세대	6:4재건축 적용

※ 주구중심(C-2, C-3)은 신반포3차·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별도로 개발사업 시행

※ 세대수는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반경 200m 이내에 계성초등학교, 신반포 중학교, 달위치칼리지, 영생유치원 위치	계획시	-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 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추후 교통영향 분석시 스쿨존 계획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공사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공사시 학생 및 교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소음·진동발생 저감 대책] -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및 공법의 선정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제33조)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와 ‘소음진동규제법(제49조2)’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를 사용 - 전달경로에서의 방지대책 - 공사 시 방음벽을 학교 주변에 설치하여 소음저감 효과를 높임 -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현장 방음대책 - 항타기, 굴삭기 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이동식 방음벽 또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저감 효과를 높임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적(㎡)	획지 구분		비고
			위치	면적(㎡)	
소 계		131,190.3	－	131,190.3	－
획지	A-1	119,230.8	반포동 1-1 일대	119,230.8	주택용지
획지	B-1	7,370.4	반포동 1-26 일대	7,370.4	분구중심
획지	C-2	508.3	반포동 1-24 일대	508.3	주구중심
획지	C-3	545.4	반포동 1-55 일대	545.4	주구중심
획지	D-1	2,324.1	반포동 1-19 일대	2,324.1	문화시설
획지	E-2	1,211.3	반포동 1-23 일대	1,211.3	공공청사

10)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비고(연면적)
			전용	공급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로19길10 (반포동1-1)일원	119,230.8㎡	135	59.98㎡	82.48㎡	계획 : 11,134.8㎡ (기준 : 11,094.4㎡ 이상)

○ 산출근거

구분		산출근거	용적률(%) 면적(㎡)	비고
기준(허용)용적률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230.0%	
정비계획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1+1.3× α)	281.34%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
		= 230.0% x (1+1.3×0.171706)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299.95%	
소형 주택 면적 산정	용적률 증가분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18.6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3
		= 299.95% - 281.34%		
	증가된 용적률의 50%	= 18.61% × 50%	9.305%	
	의무연면적	• 계획대지면적 × 증가용적률의 1/2 이상	11,094.4㎡ 이상	
= 119,230.8 × 9.305%				
재건축소형주택 확보 계획		• 계획 연면적 = 82.48㎡ × 135세대	11,134.8㎡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재건축소형주택계획의 세대수 및 세대규모 등 건축계획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 인가 시 변경가능

5. 2017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사항

1. 대상지 북측 완충녹지는 북측 공공보행통로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완만하게 조성하고, 금회 상정(안)과 같은 방음 식재를 계획하되, 한강조망이 가능한 지점을 조성할 것
2. 준공 이후 올림픽대로변 방음벽 설치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림픽 대로에 연접한 주동은 방음에 대한 성능기준을 강화하여 향후 건축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하고, 준공단계에서 총족여부를 확인할 것
3. 대상지 서측 도로(신반포로19길) 경계부는 단지(+15.0m~+18.0m)와 도로(+11.6m~+13.3m)간의 단차에 따른 옹벽발생이 되지 않도록 공공개방시설의 미배치구간은 대지레벨을 완만하게 조성할 것
4. 향후 건축·교통심의시 단지 내 비상 차량동선계획은 회차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효한 동선계획으로 조정할 것
5. 향후 공공개방시설계획의 일반시민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금회 상정안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위탁운영 관련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조합(임주자대표회의)간의 구체적인 협약 등 추가 마련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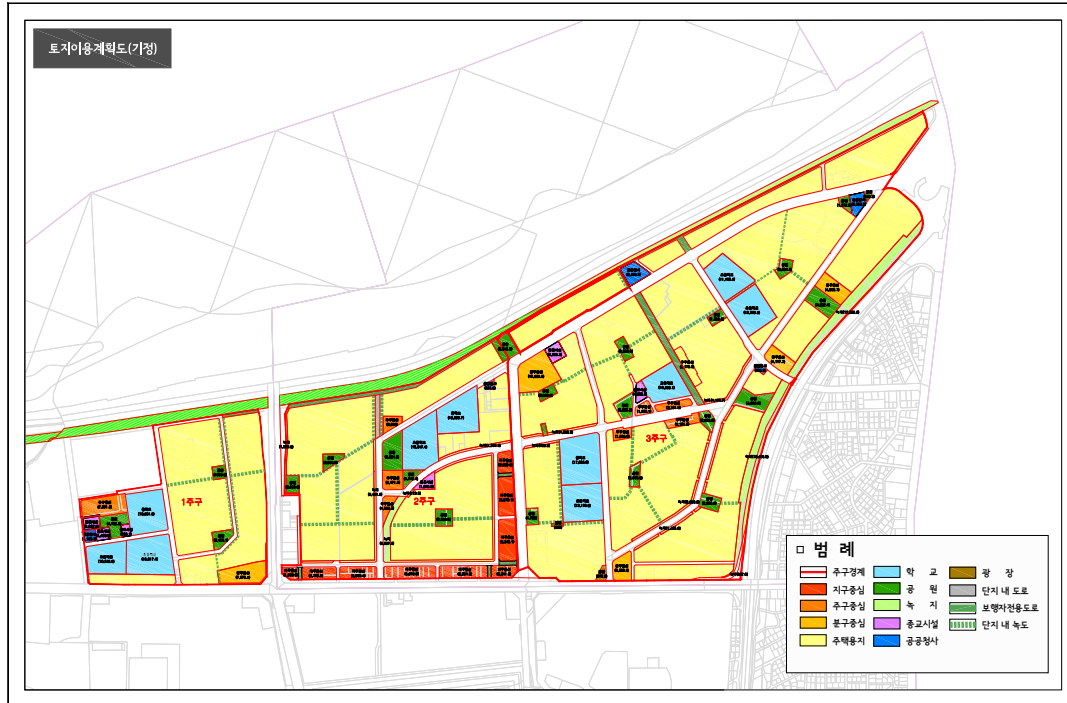
※ 특별건축구역 적용을 전제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수립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비치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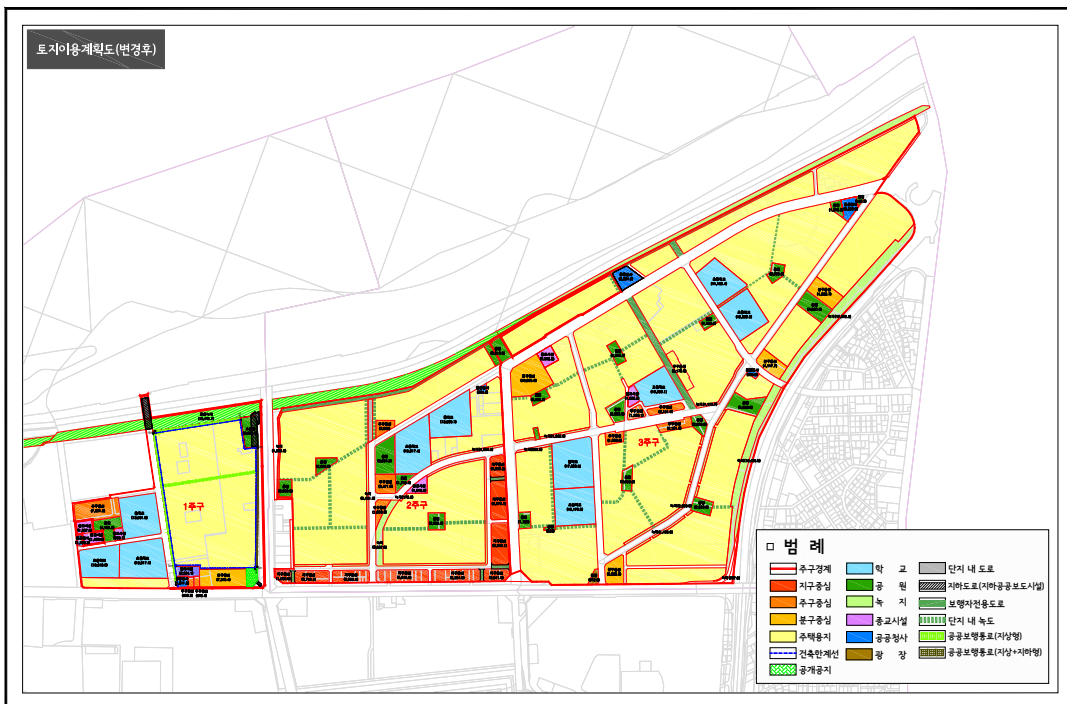
7.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7) 및 서초구 주거개선과(☎02-2133-734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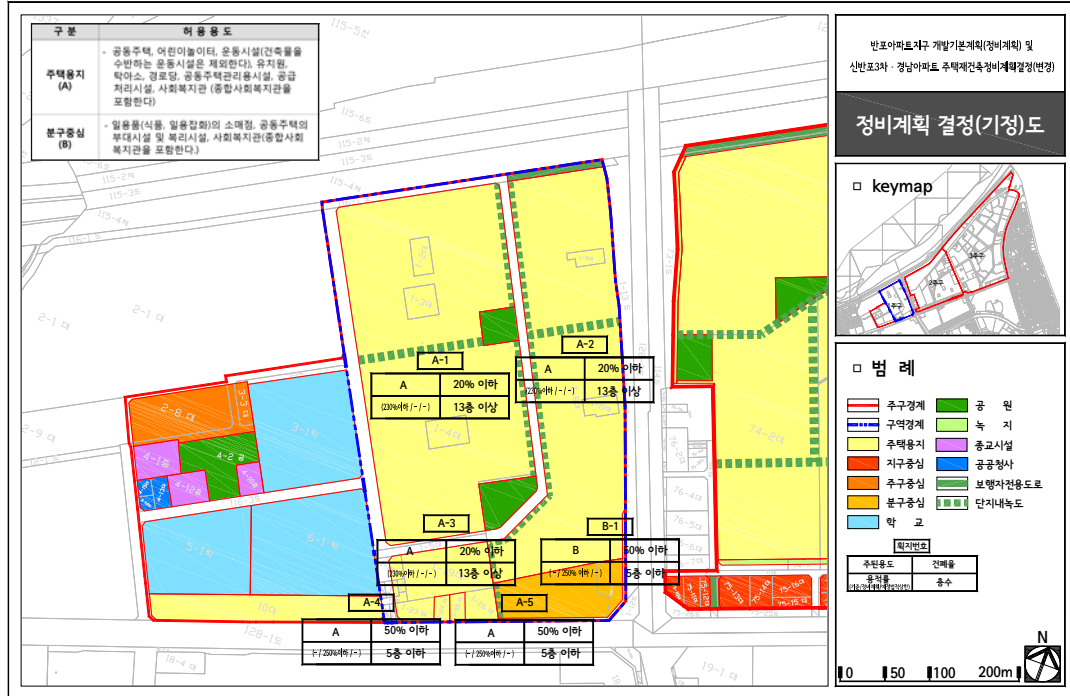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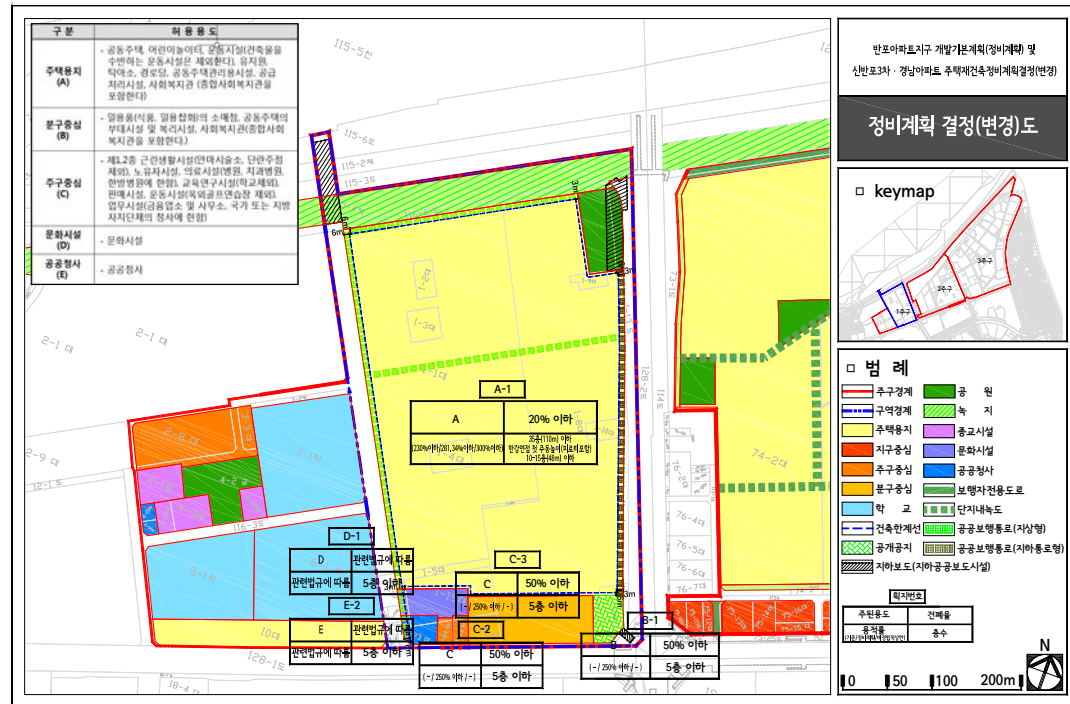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결정(기정)도]



[정비계획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3호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의3 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 1개 구역(고덕1지구)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

☐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고덕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강동구 고덕1동 501번지일대	125,630.6	2010. 12. 2. (서고시2010-441호)
변경	해 제			

☐ 정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합 계		125,630.6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0,047.0	23.9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 사회복지시설은 부지 및 건물포함 • 순부담(인센티브 부여) 산정 제외 면적 : 18,988.1㎡ - 대체조성(무상귀속) 면적 : 12,571.5㎡ *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폐도 면적 50% - 기존 존치공원 : 6,416.6㎡
		도 로	6,360.6	5.1	
		공 원	14,357.4	11.4	
		연결녹지	4,133.6	3.3	
		사회복지시설	5,195.4	4.1	
	택지 (획지)	소 계	95,583.6	76.1	
		공동주택	94,230.9	75.0	
		종교시설	668.8	0.5	
		유 치 원	683.9	0.6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 정 법적상한	
기정	획지1	94,230.9	고덕1동 501 일대	공동주택	30 이하	192.08	249.86	93.2m 이하 평균 18층 이하 (최고 29층)
	획지2	668.8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4층 이하
	획지3	683.9		유 치 원	60 이하	200 이하		4층 이하
	획지4	5,195.4		사회복지시설	60 이하	150 이하		4층 이하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 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4. 지형도면(해제) : 첨부 도면과 같음

5. 구역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 실효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
- 실효일 : 고시일

6.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9)와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02-3425-597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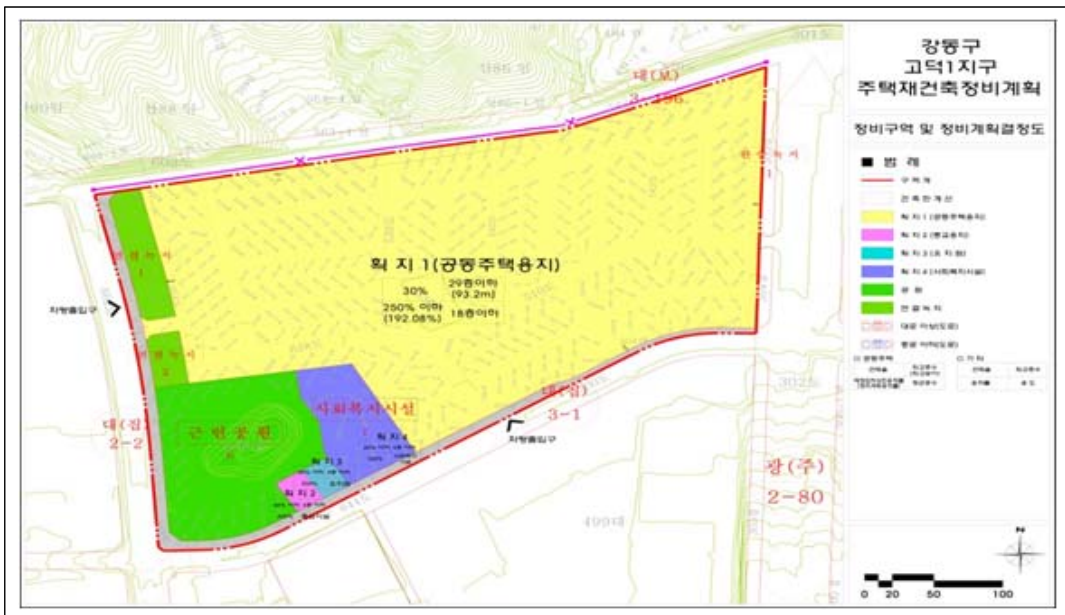
붙임

정비구역 해제 도면

- 고덕1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위치도(강동구 고덕1동 501번지 일대)



- 정비구역도(해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4호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고시 제2016-14호(2016.01.14.)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강동구고시 제2017-29호(2017.03.09.)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시공고 제2017-5597호(2017.04.13.)로 열람공고한 '광로2-5호선(천호대로)'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둔촌동,명일동,상일동 일원

1) 시 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산 25-4(생태공원교차로)

2) 종 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94-4(서울시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사업

2) 명 칭 :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사업

다. 사업의 규모

1) 내 용 : 도로확장

2) 규 모 : 폭 50~93m, 연장 1,940m, 변경면적 29,309㎡(당초 : 28,474㎡)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2) 준공일 : 2019.03.19.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02-2133-80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둔촌동	산88-1	임	1,496	485	산88-3	임	485	403	-82	공	서울특별시				본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2	둔촌동	산88	임	4,114	1,209	산88-2	임	1,186	1,186	-23	김호수	청주시 봉명동 1141				본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3	둔촌동	산91	임	36	36	산91	임	36	36		구예순외9인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294	국	남양주세무서	입류	변경없음
4	둔촌동	산87	임	343	343	산87	임	343	343	-29	주정대외3인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54	공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입류	변경없음
5	둔촌동	산86	임	31,120	1,212	산86-1	임	1,193	1,183		공	서울특별시				본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6	둔촌동	산85	공	220	86	산85-1	공	87	69	-17	공	서울특별시				본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7	둔촌동	558	공	5,902	1,191	558-10	공	1,172	626	-565	공	서울특별시				본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8	둔촌동	산78	공	4,432	562	산78-1	공	285	285	-19	공	서울특별시				본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9	둔촌동		산78-2	공	258	258					공	서울특별시				
10	둔촌동	산77	공	1,073	800	산77-1	공	754	754	-46	공	서울특별시				본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11	둔촌동	557-3	공	37	37	557-3	공	37	37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2	둔촌동	557-4	공	93	93	557-4	공	93	93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3	둔촌동	557	전	3,018	581	557-5	전	559	559	-22	정명숙	강남구 방배동 807-10				본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14	둔촌동	557-2	전	9	9	557-2	전	9	9		방희정외 2인	서울송파구잠실동 223-14 402호	국	역삼세무서	입류	변경없음
15	둔촌동	557-1	전	13	13	557-1	전	13	13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6	둔촌동	산76	임	16,767	531	산76-1	임	100	100	128	직산조씨이조 참판진상지적 계손종친회	서울 강동구 길동 305-3				본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17	둔촌동					산76-2	임	559	559		직산조씨이조 참판진상지적 계손종친회	서울 강동구 길동 305-3				
18	둔촌동	산75	임	582	582					-582						산72-1 합병으로 인한 해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계	
19	문촌동	산79	임	6,942	51	산79-1	임	51	51		김영욱외9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86 강선마을 1607-602					변경없음
20	문촌동	산73	공	1,601	1,337					-1,337							산72-1 합병으로 인한 해제
21	문촌동	산74-1	임	186	186	산74-1	임	186	186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22	문촌동	산74	임	3,545	522	산74-3	임	547	547	35	이성웅	서대문구 신영동 111-2					본 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23	문촌동	산74	임			산74-2	임	10	10		이성웅	서대문구 신영동 111-2					본 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24	문촌동	산72	공	171	171	산72-1	공	2,127	2,127	1,956	공	서울특별시					산75, 산73 합병
25	문촌동	산71	임	284	217	산71-1	임	251	251	34	문종웅	성동구 구의동 257-6					본 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26	문촌동	산70	임	2,196	282	산70-1	임	309	309	27	이삼순외1인	서울 송파구 방이동 154-3 위너스아파트 2-601					본 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27	문촌동	산69	공	159	159	산69	공	159	159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28	문촌동					산74	임	2,988	14	14	이성웅	서대문구 신영동 111-2					금회추가
29	문촌동					산88	임	2,928	99	99	공	서울특별시					금회추가
30	문촌동					산86	임	29,927	242	242	공	서울특별시					금회추가
31	문촌동					산72	공	227	143	143	공	서울특별시					금회추가
32	문촌동					산77	공	319	292	292	공	서울특별시					금회추가
33	문촌동					산78	공	3,889	268	268	공	서울특별시					금회추가
34	문촌동					산76	임	16,108	11	11	직산조세이조 참판진상지직 계순종친회	서울 강동구 길동 305-3					금회추가
35	문촌동					산79	임	6,891	8	8	김영욱외9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86 강선마을 1607-602					금회추가
36	상일동	435-1	천	3,445	58	435-1	천	3,445	58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37	상일동	359-3	도	19,870	57	359-3	도	19,870	57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조감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8	상일동	367-5	전	1,300	154	367-5	전	1,300	공	서울특별시 서울강남구역삼동 679					변경없음 본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39	상일동	443-5	주	3,001	641	443-12	주	634	(주)지에스 스칼텍스	서울강남구역삼동 679					본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40	상일동	443-8	주	921	330	443-13	주	331	(주)지에스 스칼텍스	서울강남구역삼동 679					본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41	상일동	443-9	답	945	229	443-14	답	226	정대호	강남구도곡동 467-18 우성캐릭터빌A 1907					본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42	상일동	442-13	답	1,089	237	442-20	답	233	박진철외 2인	서울송파구신천동 7-18 롯데캐슬골드 102-1903					본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43	상일동	442-1	대	330	299	442-18	대	299	박진철외 2인	서울송파구신천동 7-18 롯데캐슬골드 102-1903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15-4	변경없음
44	상일동	442-8	답	28	28	442-8	도	28	당초 변경 공	당초 변경 강동구					지목,소유자변경
45	상일동	441-4	답	2	2	441-4	도	2	당초 변경 공	당초 변경 강동구					지목,소유자변경
46	상일동	441-5	도	132	52	441-7	도	49	당초 변경 공	당초 변경 강동구					본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47	상일동	435-3	도	198	74	435-10	도	71	당초 변경 공	당초 변경 강동구					본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48	상일동	436-17	대	122	120	436-17	도	99	당초 변경 공	당초 변경 강동구					지목,소유자변경
49	상일동	436-7	답	494	87	436-21	대	33	주명순외 1인	서울시 초량구 동일동 139다길 5	한국특수 수강장 (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 77번길 52(학장동)	근저당권		지목변경
50	상일동	436-9	대	117	117	436-23	대	171	주명순	중랑구중화동 309-32	한국특수 수강장 (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로 77번길 52(학장동)	근저당권		본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51	상일동	436-8	답	781	387	436-22	답	384	김정은외 1인	경기도광주군동부광산 98					본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52	상일동	431-3	답	1,714	171	431-10	답	167	김정근외 1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89 올림픽서수기자촌아파트 317-507	하나 은행 (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근저당권 ,지상권		본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53	상일동	431-4	대	191	191	431-4	대	191	이원우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240 2동 1202호(신동아아파트)	하나 은행 (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이매동지점)	근저당권		변경없음
54	상일동	430-5	답	826	390	430-7	답	389	임광순외 2인	상일동 430-5	구천새 마을금 고	서울 강동구 하일동 351-3	근저당권		본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55	상일동	428-4	대	330	197	428-9	대	194	194	-3	원갑연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93 105동 1301 호(가락쌍용아파트)	한국민은 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상일동지점)	근저당권	분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56	상일동					428-2	답	8	8	8	신동수	상일동 428-1				당초누락	
57	상일동	428-5	대	1,110	999	428-10	대	990	990	-9	박정현	강남구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105-707				분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58	상일동	432-1	답	1,629	65	432-14	답	65	65		이종환	서울 강동구 둔촌동 546신성은하수아파트 101-1208				변경없음	
59	상일동	360-10	도	1,405	528	360-12	도	514	514	-14	국	국토해양부				분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60	상일동	427-11	잡	201	108	427-13	잡	108	108		공	강동구				변경없음	
61	상일동	427-10	잡	27	25	427-10	잡	27	27	2	최광수	의정부시용현동 38 그랜드A 102-406				면적정정	
62	상일동	427-6	도	9	9	427-6	도	9	9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63	상일동	425-2	천	3,295	873	425-15	천	852	852	-21	공	서울특별시				분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64	상일동	426-10	천	129	129	426-10	천	129	129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65	상일동	389	도	93,281	2,777	389-3	도	2,777	2,777	6	국	국토교통부				분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66	상일동	362-6	답	1,636	681	362-8	답	686	686	5	이재환	하남시창우동 520 은행쌍용A 116-1103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 지상권	분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67	상일동	12-3	도	25,841	134	12-10	도	136	136	2	국	국토해양부				분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68	상일동	399-6	구	226	135	399-11	구	134	134	-1	공	서울특별시				분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69	상일동	423	대	264	145	423-4	대	142	142	-3	이재환	하남시창우동 520 은행쌍용A 116-1103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길동지점)	근저당권	분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70	상일동	443-11	답	21	21	443-11	답	21	21		공	강동구				변경없음	
71	상일동	441-6	답	138	138	441-6	도	138	138		당초 변경 공	당초 변경 하남시 강동구				지목, 소유자변경	
72	상일동	442-11	대	115	115	442-9	대	42	42	-73	공	강동구				분할측량에 따른면적정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73	상일동	442-14	차	175	2	442-21	차	2		박진철외2인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8롯데캐슬골드 102-193	송파농업협동 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15-4	근저 당권	변경없음
74	상일동	442-9	답	45	12	442-22	답	11	-1	당초 변경 공 내공사	당초 변경 하남시 진주시 충의로 19				분할축량에 따른 면적조정
75	상일동	436-10	대	8	7	436-24	대	7		조남식	중랑구 중화동 309-32	한국특수형강 (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일로77번길 52(학정동)	근저 당권	변경없음
76	상일동	436-16	대	79	79	436-16	도	79		당초 변경 공	당초 변경 하남시 강동구				지목, 소유자변경
77	상일동	436-15	답	130	130	436-15	도	130		당초 변경 공	당초 변경 하남시 강동구				지목, 소유자변경
78	상일동	431-5	답	107	107	431-5	도	107		당초 변경 공	당초 변경 하남시 강동구				지목, 소유자변경
79	상일동	431-8	대	121	121	431-8	대	121		김정근외1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317-507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을지로1가)	근저 당권	변경없음
80	상일동	431-7	대	7	7	431-7	대	7		당초 변경 공	당초 변경 하남시 강동구				소유자변경
81	상일동	431-6	답	36	36	431-6	도	36		당초 변경 공	당초 변경 하남시 강동구				소유자변경
82	상일동	431-9	대	18	18	431-9	대	18		김정근외1인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317-507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을지로1가)	근저 당권	변경없음
83	상일동	430-6	답	27	27	430-6	도	27		당초 변경 공	당초 변경 하남시 강동구				지목, 소유자변경
84	상일동	8-2	도	15,208	1,585	8-4	도	1,625	40	국	국토해양부				분할축량에 따른 면적조정
85	상일동	427-9	잡	141	77	427-12	잡	77		권영숙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청학리 350-1 청학주공A 603-1804	서울경기양주 철산산업협동 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92(천호동)	근저 당권	변경없음
86	상일동	432-5	답	370	5	432-16	답	5		공	하남시				변경없음
87	상일동	432-2	답	1,043	141	432-15	답	138	-3	공	하남시				분할축량에 따른 면적조정
88	상일동	428-6	대	122	122	428-6	대	122		공	하남시				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관 계	
89	상일동	360-8	잡	24	24	360-8	잡	24	24		공	하남시					변경없음
90	상일동	360-3	잡	496	496	360-3	잡	496	496		공	하남시					변경없음
91	상일동	427-3	잡	347	347	427-3	잡	347	347		공	하남시					변경없음
92	상일동	428-8	대	288	288	428-8	대	288	288		공	하남시					변경없음
93	상일동	427-4	잡	3	3	427-4	잡	3	3		공	하남시					변경없음
94	상일동	432-12	답	312	13	432-17	답	13	13		공	하남시					변경없음
95	상일동	400-1	답	3,844	706	400-3	답	730	730	24	김학선	성동구송정동 73-21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96	상일동	402-4	잡	9	9	402-4	잡	9	9		임용완 외 1인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301					변경없음
97	상일동	403-2	전	5,135	259	403-12	전	260	260	1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37-2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98	상일동	403-8	도	1,289	1,187	403-13	도	1,255	1,255	68	국	국토해양부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99	상일동					399-9	구	31	31	31	공	강동구					당초 누락
100	상일동	12-2	도	17,639	78	12-2	도	17,639	78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01	상일동					산10-5	임	132	132	132	박종희 외 1인	서울강동구 상일동 20-1					당초 누락
102	상일동					산8-9	임	22	22	22	허정산	강남구포이동 72					당초 누락
103	상일동	산10-7	도	57	57	산10-7	도	57	57		국	국토해양부					변경없음
104	상일동					436-25	대	22	22	22	공	서울특별시					금회 추가
105	상일동					436-18	대	12	12	12	공	서울특별시					금회 추가
106	상일동					442-11	도	73	73	73	공	강동구					금회 추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 계	
107	상월동	399-6	구	226	61	399-11	구	134	61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08	상월동	423	대	264	104	423-4	대	142	104		이재환	하남시창우동 520 은행쌍용A 116-1103	종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길동지점)	근저당 권	변경없음
109	상월동	400-1	답	3,844	706	400-3	답	730	730	24	김학선	성동구송정동 73-21				부합측량에 따른 면적조정
110	상월동	402-4	잡	9	9	402-4	잡	9	9		임용문외 1인	경기도하남시망월동 301				변경없음
111	상월동	403-2	전	5,135	259	403-12	전	260	260	1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37-2	하남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하남시 덕평동 733(역말지점)	근저당 권, 지 상권	부합측량에 따른 면적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5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에서 지정된 용산구 이태원동 225번지 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에 의거 해제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 2개소 (6.9ha)

○ 용산구 이태원동 225번지 일대 (5.3ha)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A	9	이태원2 동	225	5.3	170%	3층/5층 이하	60%	1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면 개발	2004. 6. 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 강북구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1.6ha)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A	1	미아2동	791-2599	1.6	190%	5층이하	60%	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면 개발	2004. 6. 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2. 해제사유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위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12조에 따라 2012.2.1.)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관할 구청장이 주민공람 등 해제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 해제 함.

3. 해제도면 : 붙임과 같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02-2133-7187) 및 관할 구청에(용산구 주택과:02-2199-7363, 강북구 디자인건축과:02-901-689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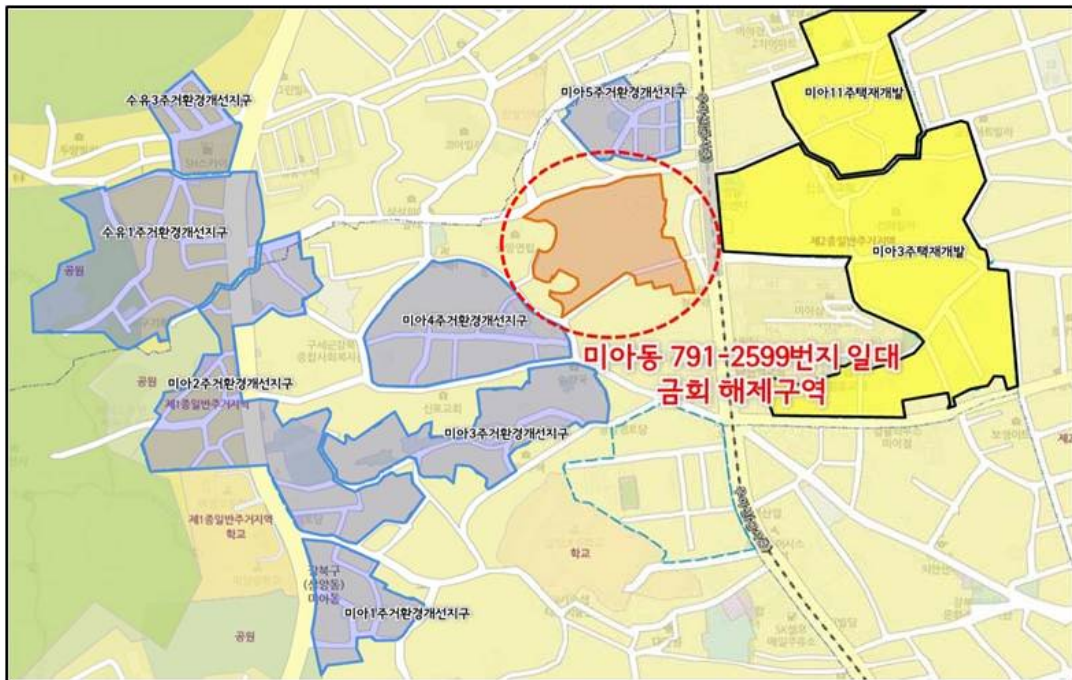
붙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도면

- 용산구 이태원동 225번지 일대 (5.3ha)



- 강북구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1.6ha)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6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4호(2008.08.28)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어, 송파구고시 제2008-54호(2008.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0호(2011.04.07), 제2011-98호(2011.04.21), 제2011-112호(2011.05.06), 제2011-259호(2011.09.08), 제2011-420호(2011.12.29), 제2012-7호(2012.1.12), 제2012-115호(2012.05.10), 제2012-191호(2012.07.26), 제2013-190호(2013.06.20), 제2013-446호(2013.12.26), 제2014-378호(2014.11.06), 제2014-422호(2014.12.11) 및 제2017-55호(2017.02.2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등 고시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5조 규정에 의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송파구 거여1·2동, 마천1·2동 일원	1,043,843.2	-	1,043,843.2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거여·마천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유 :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 목표연도: 2029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1,043,843.2	-	1,043,843.2	100.0
촉진지구	주거용지	소 계	691,293.2	증) 3,832.0	695,125.2	66.59
		공동주택	361,210.6 (27,964.0)	증) 3,832.0 (-)	365,042.6 (27,964.0)	37.97 (2.68)
		준주거	9,699.0	-	9,699.0	0.93
		종교용지	7,274.9	-	7,274.9	0.70
		택시차고지	3,060.0	-	3,060.0	0.29
		대 지	-	-	-	-
		존치관리	310,048.7	-	310,048.7	29.7
	정비기반시설용지	소 계	352,550.0	감) 3,832.0	348,718.0	33.41
		도 로	214,594.4	증) 2,896.0	217,490.4	20.84
		공 원	47,609.7	감) 6,428.0	41,181.7	3.94
		녹 지	11,740.7	감) 4,171.0	7,569.7	0.73
		광 장	2,635.8	-	2,635.8	0.25
		하 천	28,059.9	감) 2,248.0	25,811.9	2.47
		학 교	22,448.4	-	22,448.4	2.15
		문화체육시설	-	-	-	-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16,129.3	감) 599.0	15,530.3	1.49
		공공공지	7,289.9	-	7,289.9	0.70
		주차장	2,041.9	-	2,041.9	0.20
		공용버스차고지	-	증) 5,218.0	5,218.0	0.50
		유치원	-	증) 300.0	300.0	0.03
		보육시설	-	증) 1,200.0	1,200.0	0.11

2) 인구·주택 수용계획 : 변경 (46,042인 / 12,791호)

○ 총괄현황 : 변경

주택유형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685	증) 106	12,791	45,757	증) 285	46,042	2.69인 적용
사업구역	소 계	9,770	증) 106	9,876	26,281	증) 285	26,566	
	60㎡이하	4,770	감) 207	4,563	12,831	감) 557	12,274	
	60~85㎡이하	4,298	증) 107	4,405	11,562	증) 287	11,849	
	85㎡초과	702	증) 206	908	1,888	증) 555	2,443	
존치지역		2,915	-	2,915	19,476	-	19,476	2.56인 적용

○ 구역별 현황 : 변경

구 분			현황 (호)	기 정(호)				변 경(호)			
				분 양	임 대	존 치	계	분 양	임 대	존 치	계
합 계			8,885	7,908	1,862	2,915	12,685	8,073	1,843	2,915	12,791
재정비 촉진 구역	거여2	1지구	1,096	1,577	368	－	1,945	1,577	368	－	1,945
		2지구	809	972	227	－	1,199	972	227	－	1,199
	마천시장		13	185	－	－	185	185	－	－	185
	마천1		1,381	2,205	480	－	2,685	2,205	480	－	2,685
	마천3		1,698	1,887	480	－	2,367	2,052	421	－	2,473
	마천4		573	1,082	307	－	1,389	1,082	307	－	1,389
	존치관리구역			1036	－	－	2,915	2,915	－	－	2,915
지구편입 (거여새마을, 마천성당)			1,136	－	－	－			－		
마천2구역			743	－	－	－			－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

○ 교육시설 : 변경

학 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914.4	증) 300.0	23,214.4	
마천초등학교	마천동 183-4일대	10,921.0	－	10,921.0	
남천초등학교	마천동 67일대	11,993.4	－	11,993.4	
유치원	마천동 363-6일대	－	증) 300.0	300.0	마천3구역(신설)

○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 변경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3,419.2	감) 599.0	22,820.2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거여동 195-1일대	3,254.3	-	3,254.3	• 기정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시설 복합화 - 거여2동주민센터 존치 - 치안센터, 아동보육, 노인, 여성복지 복합화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거여동 128-18일대	4,386.0	-	4,386.0	• 마천2동주민센터, 우체국, 치안센터, 소방파출소 - 아동보육, 노인, 여성복지 복합화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천동 211-45일대	2,788.0	-	2,788.0	• 인성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시설 복합화 -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시설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천동 361-16일대	5,701.0	감) 599.0	5,102.0	• 청소년활동시설 및 여성취업센터, 아동보육 등 여성복지시설
공공공지	거여동 198-17 (거여2구역)	1,467.0	-	1,467.0	• 공공공지
공공공지 (미래공공용지)	거여동 41-4 (거여2구역)	5,639.9	-	5,639.9	• 공공공지 → 개발수요 발생시 공공시설로 개발
공공공지	마천동 156-312일대 (마천1구역)	183.0	-	183.0	• 공공공지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

○ 공원 : 변경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7,609.7	감) 6,428.0	41,181.7	12개소
근린 공원	소 계		34,361.0	감) 13,138.0	20,611.0	2개소
	향유근린공원	거여동 200-4일대	10,569.0	-	10,569.0	
	나무그늘근린공원	마천동 331-1일대	13,750.0	감) 13,750.0	-	
	솔향근린공원	마천동 199-3일대	10,042.0	-	10,042.0	
어린이 공원	소 계		10,608.0	감) 6,983.0	3,625.0	4개소
	두레어린이공원	마천동 364-5일대	7,058.0	감) 6,983.0	75.0	
	용마공원	마천동 45	1,500.0	-	1,500.0	현황공원
	개미공원	거여동 29	1,500.0	-	1,500.0	현황공원
	-	거여동 28-7	550.0	-	550.0	현황공원
소공원	소 계		2,640.7	증) 13,693.0	16,945.7	6개소
	1	거여동 181-143일대	1,139.7	-	1,139.7	
	2	마천동 327-7일대	1,501.0	-	1,501.0	
	3	마천동 363-2일대	-	증) 591.0	591.0	
	4	마천동 364-8일대	-	증) 5,420.0	5,420.0	
	5	마천동 276일대	-	증) 7,682.0	7,682.0	
	6	마천동 586일대	-	증) 612.0	612.0	

○ 녹지 : 변경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740.7	감) 4,171.0	7,569.7	6개소
경관녹지	마천동 162-17일대	3,236.0	-	3,236.0	
경관녹지	마천동 199-9일대	651.0	-	651.0	
경관녹지	마천동 207-2일대	2,596.0	감) 1,571.0	1,025.0	마천3구역 계획변경
경관녹지	마천동 325-17일대	2,261.0	감) 2,261.0	-	마천3구역 계획변경
경관녹지	마천동 329-22일대	452.0	감) 339.0	113.0	마천3구역 계획변경
경관녹지	마천동 376-13일대	2,108.0	-	2,108.0	
연결녹지	거여동 35-7일대	436.7	-	436.7	

5) 교통계획 : 변경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IV장, 교통성검토)에 명시

6) 경관계획 : 변경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V장, 경관성검토)에 명시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변경

○ 주택재개발사업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거여2	C	거여동	202	16.0ha	230%	-	60%	1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기정	마천1	C	마천동	194-1	17.2ha	210%	-	60%	2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구역 취소
기정	마천3	C	마천동	283	13.4ha	210%	-	60%	2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구역 취소
변경	마천3	C	마천동	283	13.4ha	210%	-	60%	3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기정	마천4	C	마천동	323	6.1ha	210%	-	50%	3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주1) 1단계 : 2008년부터, 2단계 : 2010년부터, 3단계 : 2012년부터

주2) 용적률, 건폐율, 층수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름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구성비(%)	사업방식	비 고
촉진지구			—	1,043,843.2	100.0	—	—
촉진 구 역	소 계			536,341.80	51.4	—	5개소
	거여2 구역	1지구	거여동 180일대	98,453.7	9.4	주택재개발	—
		2지구	거여동 234일대	61,850.1	5.9	주택재개발	—
	마천시장구역		마천동 140-3일대	9,757.0	0.9	시장재건축	—
	마천1구역		마천동 194-1일대	171,798.0	16.5	주택재개발	취소
	마천3구역		마천동 283일대	133,830.0	12.8	주택재개발	—
	마천4구역		마천동 323일대	60,653.0	5.8	주택재개발	—
존치 관 리 구 역	소 계			507,501.40	48.6	—	5개소
	존치시설		—	118,739.4	11.4	—	—
	마천성당		마천동 93-5일대	163,480.0	15.7	—	—
	거여새마을		거여동 549일대	123,282.0	11.8	—	—
	마천2구역 (마천지구단위계획)		마천동 183일대 (마천동 307-43일대)	84,728.0 (12,485.0)	8.1 (1.2)	—	—
	거여2지구단위계획		거여동 37일대	17,272.0	1.7	—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당 초	변 경	변경후	
계		1,043,843.2	-	1,043,843.2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8,207.0	감) 40,945	87,262.0	8.4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277,923.0	감) 70,640	207,283.0	19.9
	제2종일반주거지역	344,206.6	증) 111,585	455,791.6	43.6
	제3종일반주거지역	260,398.6	-	260,398.6	24.9
	준주거지역	33,108.0	-	33,108.0	3.2

가) 거여2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나) 마천시장구역(시장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다) 마천1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라) 마천3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당 초	변 경	변경후	
계		133,830	-	133,830	100.0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	58,909	감) 40,945	17,964	13.4
	2종(7층)일반주거	74,921	감) 70,640	4,281	3.2
	2종일반주거	-	증) 111,585	111,585	83.4

※ 변경사유 :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마) 마천4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 : 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상한(%)	평균/최고층수	최고높이 (m)	
거여 2구역	1지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30.0	275.0이하	26이하/33이하	123이하	재정비촉진구역
	2지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30.0	277.1이하	26이하/33이하	123이하	재정비촉진구역
마천시장구역		복합용도	60이하	-	400.0이하	15이하/15이하	60이하	재정비촉진구역
마천1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0	236.4이하	22이하/28이하	106이하	존치정비구역 (구역취소)
마천3구 역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0	262.1이하	19이하/32이하	119이하	존치정비구역
	변경		60이하	210.0	270.5이하	22이하/25이하	119이하	재정비촉진구역
마천4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10.0	300.0이하	30이하/33이하	123이하	재정비촉진구역

주) 최고높이는 건축물 높이임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가) 축진지구 기반시설

구 분		면 적 (㎡)			비율(%)
		기 정	증 감	변 경	
재정비축진지구		1,043,843.2	-	1,043,843.2	100.0
기 반 시 설	소 계	352,550.0	감) 3,832.0	348,718.0	33.41
	도 로	214,594.4	증) 2,896.0	217,490.4	20.84
	공 원	47,609.7	감) 6,428.0	41,181.7	3.94
	녹 지	11,740.7	감) 4,171.0	7,569.7	0.73
	광 장	2,635.8	-	2,635.8	0.25
	하 천	28,059.9	감) 2,248.0	25,811.9	2.47
	학 교	22,448.4	-	22,448.4	2.15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16,129.3	감) 599.0	15,530.3	1.49
	공공공지 (미래공공용지)	7,289.9	-	7,289.9	0.70
	주차장	2,041.9	-	2,041.9	0.20
	보육시설	-	증) 1,200.0	1,200.0	0.11
	유치원	-	증) 300.0	300.0	0.03
	자동차정류장	-	증) 5,218.0	5,218.0	0.50

나)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

구 분	거여2	마천시장	마천1	마천3	마천4	존치지역	지구전체	
							면적	구성비
면 적	160,303.8	9,757.0	171,798.0	133,830.0	60,653.0	507,501.4	1,043,843.2	100.0
합 계	46,992.3	2,588.0	56,107.0	42,845.0	15,167.0	185,018.7	348,718.0	33.41
도 로	23,666.9	2,588.0	36,294.0	17,332.0	10,033.0	127,576.5	217,490.4	20.84
공 원	11,708.7	-	9,881.0	13,693.0	1,501.0	4,398.0	41,181.7	3.94
녹 지	436.7	-	2,134.0	-	2,108.0	2,891.0	7,569.7	0.73
광 장	2,123.8	-	512.0	-	-	-	2,635.8	0.25
하 천	-	-	613.0	-	-	25,198.9	25,811.9	2.47
학 교	-	-	2,104.0	-	-	20,344.4	22,448.4	2.15
문화체육	-	-	-	-	-	-	-	-
공공시설	1,949.3	-	4,386.0	5,102.0	1,525.0	2,568.0	15,530.3	1.49
공공공지 (미래공공용지)	7,106.9 (5,639.9)	- (-)	183.0 (-)	- (-)	- (-)	- (-)	7,289.9 (5,639.9)	0.70 (0.54)
주 차 장	-	-	-	-	-	2,041.9	2,041.9	0.20
보육시설	-	-	-	1,200.0	-	-	1,200.0	0.11
유치원	-	-	-	300.0	-	-	300.0	0.03
자동차정류장	-	-	-	5,218.0	-	-	5,218.0	0.50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

구분	도정법주)에 의한 임대주택건설				도촉법에 의한 추가임대주택건설								심의기준주)에 의한 추가임대주택건설				합 계					
					임대주택건설				장기전세(shift) 건설													
	소계	40㎡ 이하	40~ 50㎡	50~ 60㎡	소계	40㎡ 이하	40~ 50㎡	50~ 60㎡	소계	40㎡ 이하	40~ 50㎡	50~ 60㎡	60~ 85㎡	소계	40㎡ 이하	40~ 50㎡	50~ 60㎡	소계	40㎡ 이하	40~ 50㎡	50~ 60㎡	60~ 85㎡
거여2	474	238	180	56	63	29	27	7	-	-	-	-	-	58	26	25	7	595 (19%)	293 (49%)	232 (39%)	70 (12%)	- (0%)
마천1	451	224	181	46	19	9	8	2	-	-	-	-	-	10	4	4	2	480 (17%)	237 (50%)	193 (40%)	50 (10%)	- (0%)
마천3	315	315	-	-	69	69	-	-	-	-	-	-	-	37	37	-	-	421 (17%)	421 (100%)	- (0%)	- (0%)	- (0%)
마천4	158	70	74	14	-	-	-	-	132	26	61	9	36	17	8	7	2	307 (22%)	104 (34%)	142 (46%)	25 (8%)	36 (12%)
합계	1,398	847	435	116	151	107	35	9	132	26	61	9	36	122	75	36	11	1,803	1,055	567	145	36

주) 도정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 도촉법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심의기준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 (서울시)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사업기간			해 당 구 역	비 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기정	1단계	2008	2010. 12이후	2014. 6	거여2구역, 마천시장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단계	2010	2012. 12이후	2016. 6	마천1구역, 마천3구역	
변경	3단계	2011	2021년 경	2024년 경	마천3구역	
기정	3단계	2011	2018. 12이후	2021. 6	마천4구역	

주1) 일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이 각 단계의 총량 범위내에서 관리하고 이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또는 해당구역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함

주2) 총량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별도 운용기준을 정함 (예 : 4,000세대가 넘지 않는 범위 내)

15)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 변경없음

16)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17)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8)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9) 기타계획(특성화계획, 기타계획) : 변경없음

20)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거여2구역 : 변경없음

나) 마천시장구역 : 변경없음

다) 마천1구역 : 변경없음

라) 마천3구역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정비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비 율(%)	비 고
		기정 (구역지정 취소 전)	변경	변경후		
총 계		133,830	—	133,830	100.0	
정비 기반 시설	소계	46,677	감) 3,832	42,845	31.9	
	도로	14,436	증) 2,896	17,332	13.0	시설기부채납
	공원	20,121	감) 6,428	13,693	10.1	시설기부채납
	녹지	4,171	감) 4,171	—	—	
	하천	2,248	감) 2,248	—	—	
	공공시설	5,701	감) 599	5,102	3.8	시설기부채납
	보육시설	—	증) 1,200	1,200	0.9	시설기부채납
	유치원	—	증) 300	300	0.2	시설기부채납
	자동차정류장	—	증) 5,218	5,218	3.9	시설기부채납
택 지	소계	87,153	증) 3,832	90,985	68.0	
	5-1	48,478	감) 2,053	46,425	34.7	공동주택
	5-2	38,183	증) 5,885	44,068	32.9	공동주택
	5-3	492	—	492	0.4	종교시설

(나) 용도지역 변경계획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3,830	—	133,830	100.0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	58,909	감) 40,945	17,964	13.4
	2종일반주거(7층)	74,921	감) 70,640	4,281	3.2
	2종일반주거	—	증) 111,585	111,585	83.4

※ 변경사유 :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	23	집산도로	353	마천동 227	마천동 267-17	일반도로		2001.2.28	마천 국민임대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275	마천동 267-17	마천동 271-85	일반도로		2001.2.28	마천 국민임대
변경	대로	3	2	25	보조 간선도로	1,768 (339)	마천동 산15-1	마천동 323-200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A	20	보조 간선도로	151	마천동 32-3	마천동 267-19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B	20	보조 간선도로	862	마천동 203-2	마천동 277-23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A	4	특수도로	345	마천동 363-7	마천동 202-9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B	4	특수도로	355	마천동 329-3	마천동 364-2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소로	2	5	8	국지도로	420	마천동 330-44	마천동 287-7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14	8	국지도로	154	마천동 75-5	마천동 154-1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64	4	국지도로	236	마천동 275-1	마천동 277-8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66	6	국지도로	178	마천동 273-5	마천동 329-31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67	4	국지도로	72	마천동 572	마천동 57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68	4	국지도로	61	마천동 572	마천동 57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69	4	국지도로	201	마천동 572	마천동 57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70	4	국지도로	9	마천동 572	마천동 57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71	4	국지도로	10	마천동 572	마천동 57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72	6	국지도로	196	마천동 271-33	마천동 283-17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73	6	국지도로	82	마천동 283-27	마천동 372-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74	4	국지도로	90	마천동 211-63	마천동 283-106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75	6	국지도로	547	마천동 200-52	마천동 278-37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76	4	국지도로	20	마천동 372-2	마천동 372-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77	6	국지도로	108	마천동 372-2	마천동 372-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78	4	국지도로	57	마천동 372-2	마천동 372-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79	4	국지도로	18	마천동 364-5	마천동 364-5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80	3	국지도로	34	마천동 364-5	마천동 364-5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81	6	국지도로	110	마천동 283-75	마천동 283-75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82	4	국지도로	74	마천동 372-2	마천동 372-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83	4	국지도로	61	마천동 372-2	마천동 372-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84	3	국지도로	14	마천동 369-11	마천동 369-11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85	3	국지도로	13	마천동 368-34	마천동 368-3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86	3	국지도로	33	마천동 368-33	마천동 368-33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87	3	국지도로	29	마천동 368-32	마천동 368-3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88	3	국지도로	19	마천동 368-31	마천동 368-31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89	4	국지도로	29	마천동 372-2	마천동 372-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90	3	국지도로	35	마천동 363-13	마천동 363-13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91	4	국지도로	56	마천동 372-2	마천동 372-2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92	6	국지도로	99	마천동 372-2도	마천동 372-2도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93	3	국지도로	20	마천동 362-28	마천동 362-28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94	3	국지도로	22	마천동 362-29	마천동 362-29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95	3	국지도로	31	마천동 362-27	마천동 362-27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01	4	국지도로	36	마천동 212-18	마천동 215-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102	6	국지도로	189	마천동 215-3	마천동 357-33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03	3	국지도로	27	마천동 357-37	마천동 357-37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04	4	국지도로	124	마천동 215-4	마천동 215-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05	4	국지도로	89	마천동 215-4	마천동 215-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06	3	국지도로	27	마천동 357-34	마천동 357-3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07	4	국지도로	18	마천동 372-1	마천동 372-1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08	2	국지도로	12	마천동 358-27	마천동 358-27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09	2	국지도로	11	마천동 358-28	마천동 358-28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10	2	국지도로	12	마천동 358-29	마천동 358-29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11	3	국지도로	10	마천동 359-38	마천동 359-38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12	3	국지도로	31	마천동 359-37	마천동 359-37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13	3	국지도로	26	마천동 359-36	마천동 359-36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14	3	국지도로	13	마천동 359-35	마천동 359-35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15	3	국지도로	23	마천동 359-39	마천동 359-39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16	4	국지도로	38	마천동 215-4	마천동 215-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17	3	국지도로	17	마천동 355-24	마천동 355-2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18	3	국지도로	23	마천동 355-25	마천동 355-25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19	3	국지도로	23	마천동 355-26	마천동 355-26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20	3	국지도로	14	마천동 354-38	마천동 354-38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21	3	국지도로	13	마천동 354-37	마천동 354-37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22	3	국지도로	20	마천동 354-36	마천동 354-36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123	3	국지도로	22	마천동 354-35	마천동 354-35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24	3	국지도로	32	마천동 354-34	마천동 354-3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25	3	국지도로	23	마천동 354-33	마천동 354-33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폐지	소로	3	163	4	국지도로	37	마천동 372-1	마천동 372-1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마천3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임

□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③	주차장	노외주차장	마천동 365-1 일대	1,903	감) 1,903	-	송고73호 (2000.11.1)	
폐지	④	주차장	노외주차장	마천동 367-1 일대	748	감) 748	-	송고73호 (2000.11.1)	
폐지	⑤	주차장	노외주차장	마천동 214, 215 일대	2,513	감) 2,513	-	송고73호 (2000.11.1)	
폐지	-	주차장	노외주차장	마천동 376-31	373.8	감) 373.8	-	송고7호 (02.2.15)	

□ 자동차정류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주차장	마천동331-1 일대	-	증) 5,218	5,218	-	공영버스차 고지

□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5호선)	강서구 방화동	마천동 370, 226	L=52,300 (175)	-	L=52,300 (745)	건고 151 (91.3.25)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마천3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임

☐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원	소공원	마천동 363-2일대	-	증) 591.0	591.0		
신설	B	공원	소공원	마천동 364-8일대	-	증) 5,420.0	5,420.0		
신설	C	공원	소공원	마천동 276일대	-	증) 7,682.0	7,682.0		
신설	D	공원	소공원	마천동 586일대	-	증) 612.0	612.0		
폐지	①	공원	근린공원	마천동 331-1일대	13,750.0	감) 13,750.0	-	서고 98호 (11.4.21)	
폐지	③	마천1공원	어린이공원	마천동 360일대	343.9	감) 343.9	-	서고 228호 (78.5.23)	
폐지	⑤	마천3공원	어린이공원	마천동 570-8일대	65	감) 65	-		

☐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④	공공청사	-	마천동 570-4일대	602	증) 4,500	5,102	송고31호 (94.6.28)	청소년센터, 여성취업센터, 아동 및 여성복지시설 등

☐ 하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①	하천	성내천	마천동 200	오금동 171	-	2,387 (1,173)	22~47.5 (22)	-	서고236호 (89.5.18)	
기정	-	하천	성내천	마천동 227-37	마천동 200-32	-	-	-	-	서고457호 (89.10.14)	
기정	-	하천	성내천	마천동 330-7	마천동 277-23	-	90	10	-	서고457호 (89.10.14)	
기정	②	하천	성내천	마천동 277-49	마천동 202-18	-	934	12~22	-	서고98호 (11.4.21)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마천3재정비 촉진구역	133,830	-	-	송파구 마천동 283번지 일대	652	-	-	652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가구 /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 (지하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명칭	면적 (㎡)					촉진계획	예정 법적상한		
신규	획지1	46,425	송파구 마천동 283번지 일대	390,971.17 (145,199.0)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 설	17.79 이하	270.49 이하	300.0 이하	119m 이하	25층 이하
	획지2	44,068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총세대수 : 2,473세대									
	구분(전용면적)			세대수(세대)		구성비(%)		비고		
	합 계			2,473		100.0				
	분양	소 계		2,052		83.0				
		60㎡이하		669		27.1				
		60㎡~85㎡		979		39.6				
		85㎡초과		404		16.3				
	임대	소 계		421		17.0				
		40㎡이하		345		13.9				
		40㎡~50㎡		-		-				
		50㎡~60㎡		76		3.1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1.3X(순부담면적X기준용적률)/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 210 + (1.3 X 19,102 X 210) / (133,830 - (42,845 + 6,296)) = 270.5% ※ 순부담면적 : 19,102㎡ (건축물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6,296㎡ 포함) ※ 계획기반시설면적 : 42,845㎡(부지면적) + 6,296㎡(시설면적) = 49,14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도로 및 대지경계 : 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 3m지정 ○ 중로1-A호선 변 : 도로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 6m지정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주택재개발사업	2021년	주택재개발조합	-	-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연면적(㎡)	세대규모(전용면적)	세대수	비고
마천3 재정비 촉진구역	-	-	40㎡이하	345세대(13.9%)	-
			40~50㎡이하	-	
			50~60㎡이하	76세대(3.1%)	
			소 계	421세대 (17.0%)	

마) 마천4구역 : 변경없음

21) 존치지역의 관리계획 : 변경없음

22)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중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하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권자가 별도 결정·고시한다.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6.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및 송파구 주거재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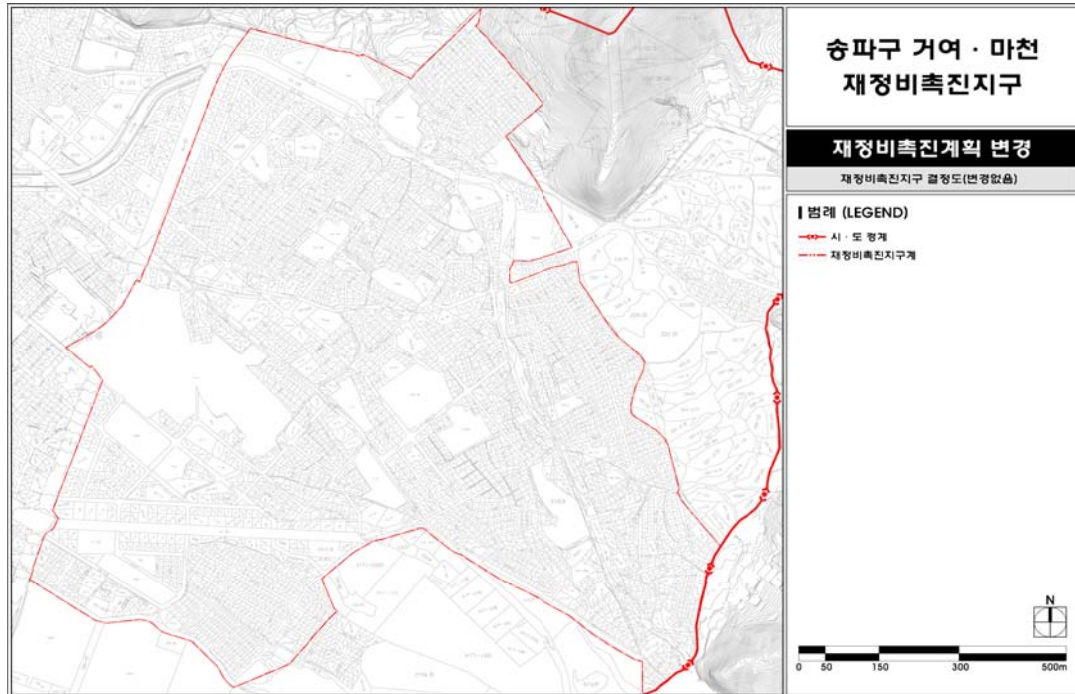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2) 및 송파구 주거재생과(☎ 02-2147-289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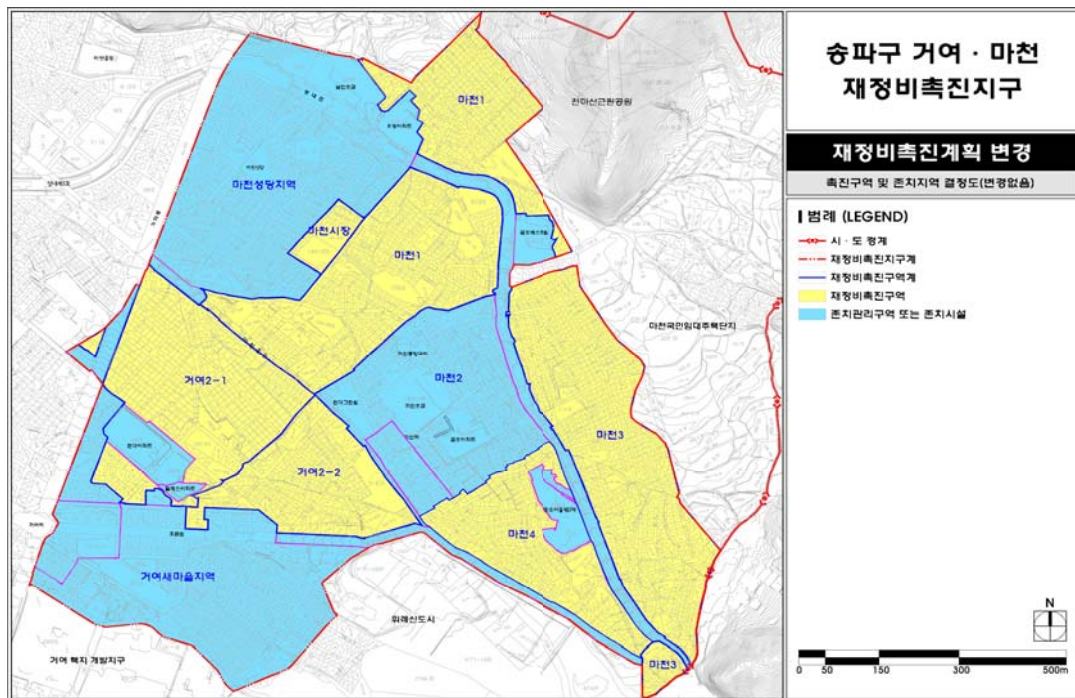
※ 마천1재정비촉진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소송 일부 패소('14.03.13)된 구역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현재 진행(송파구)중이므로, 본 고시 조서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붙임 :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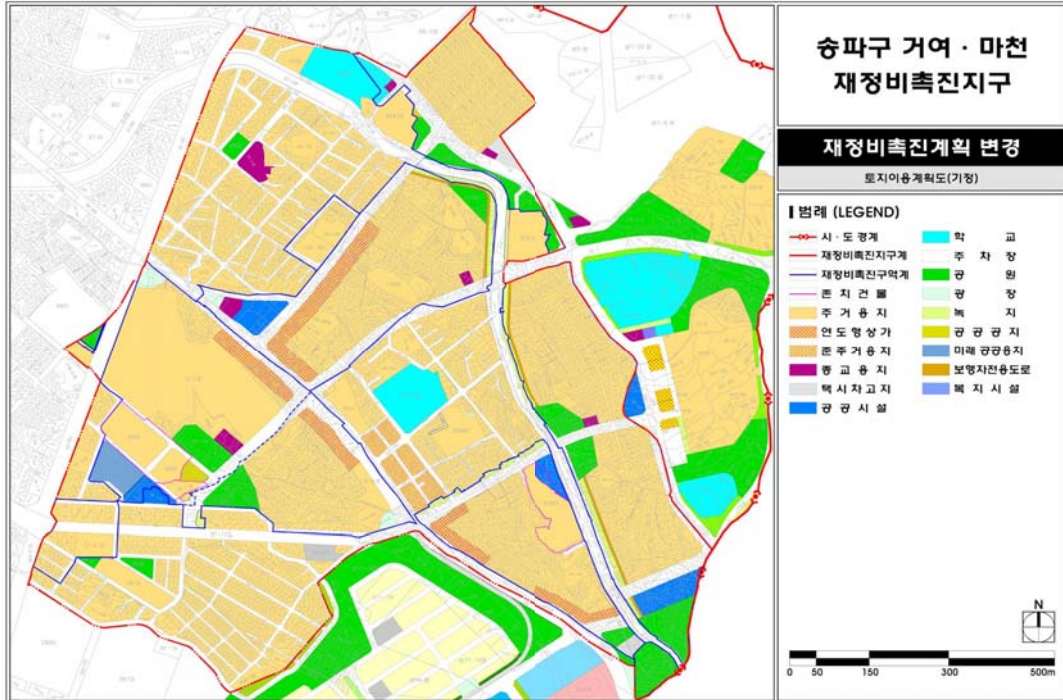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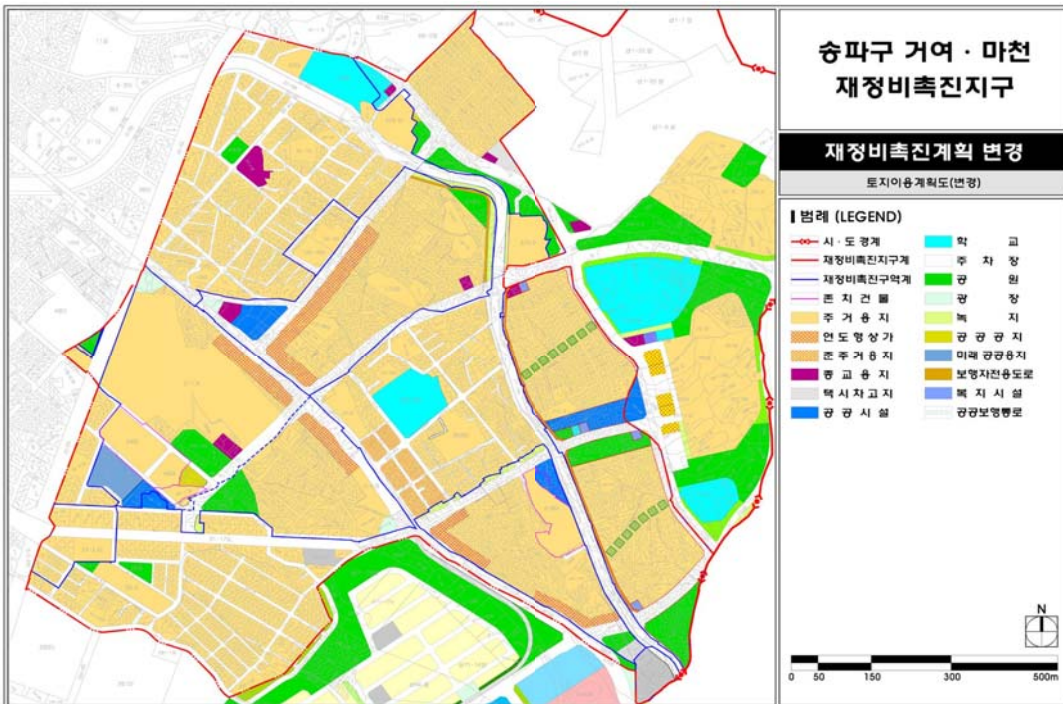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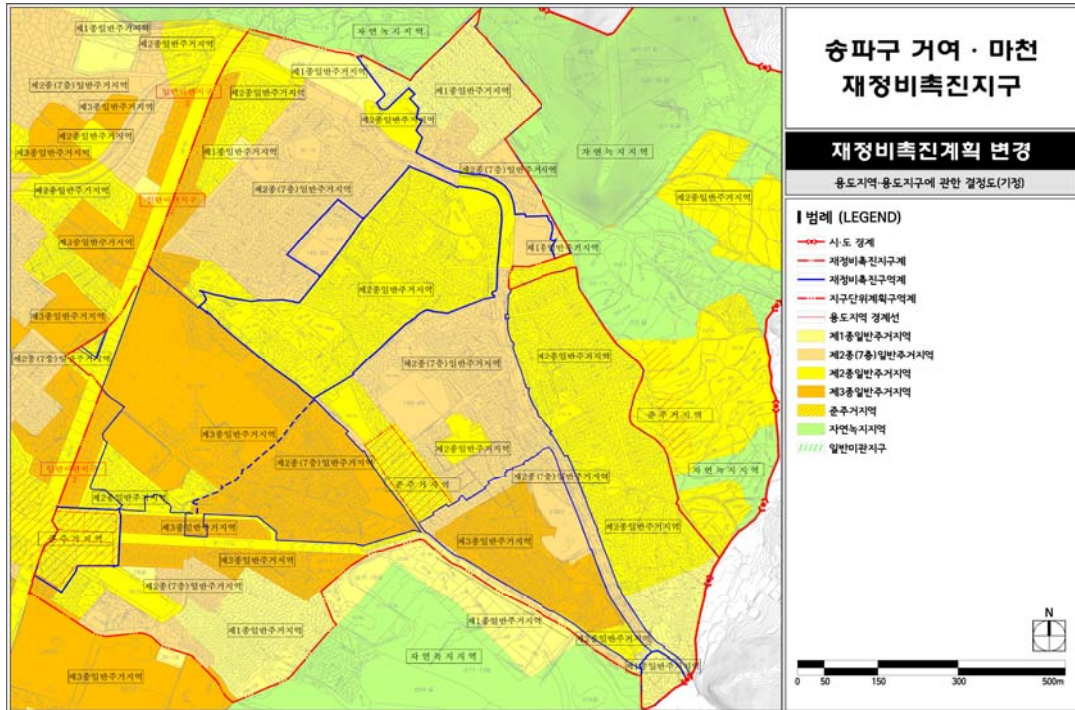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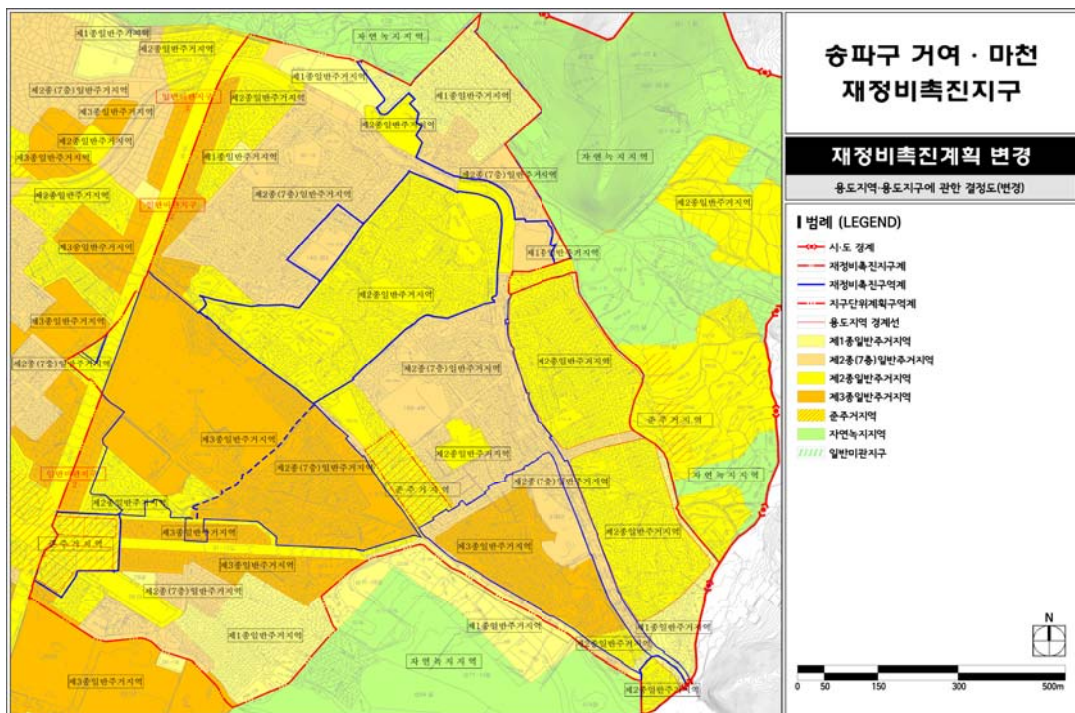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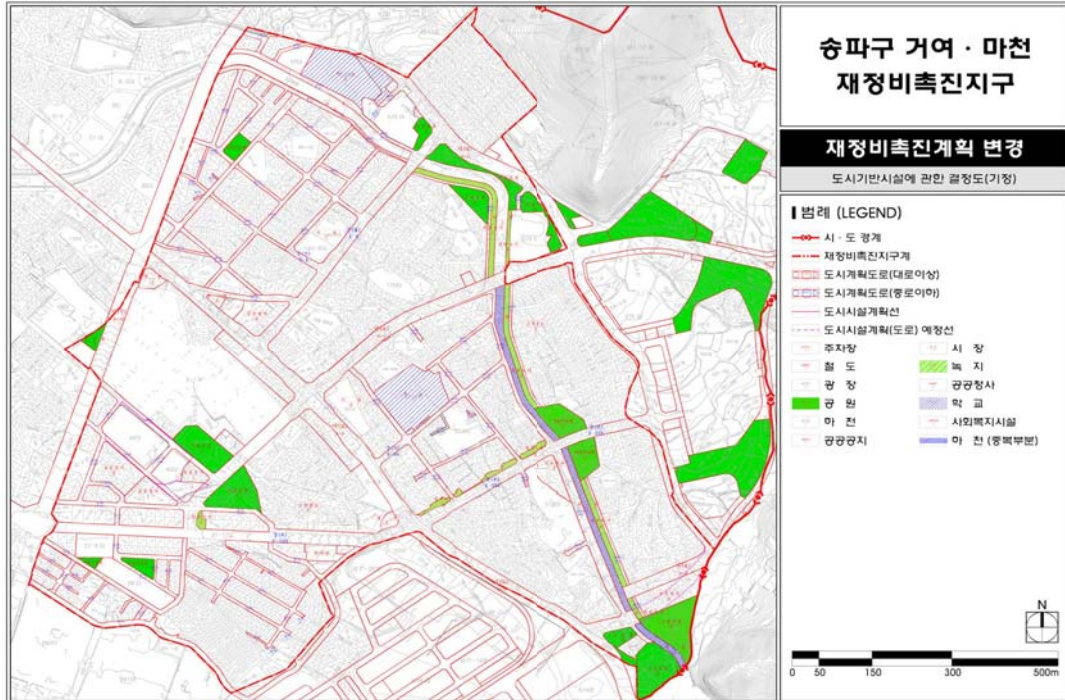
□ 용도지역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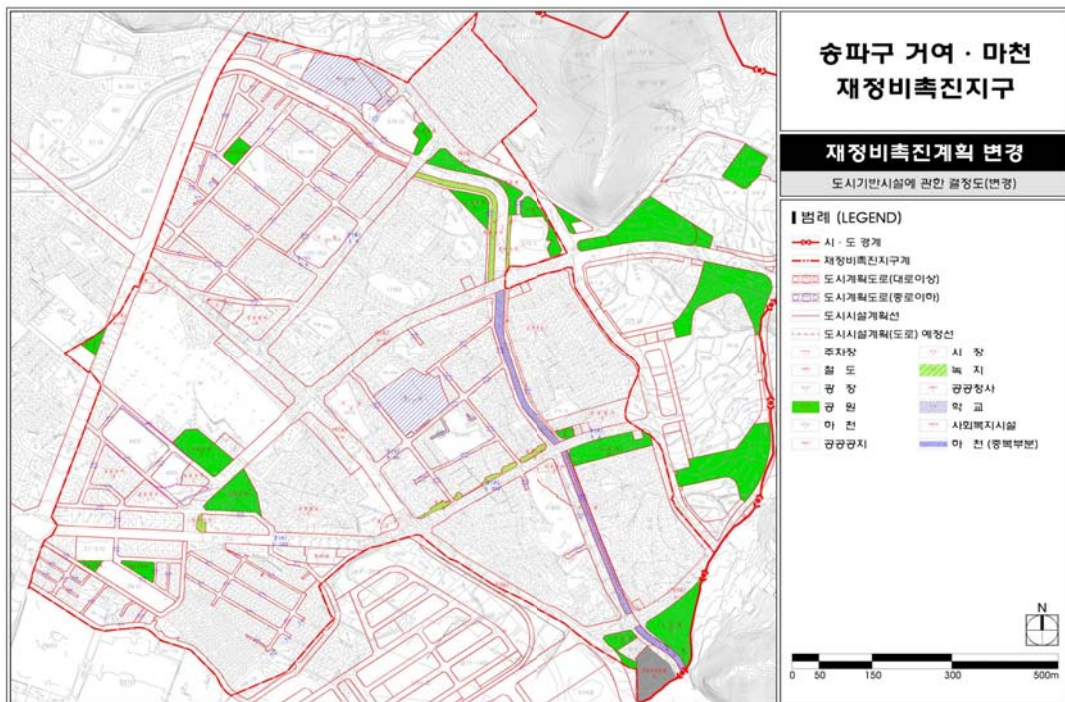
□ 용도지역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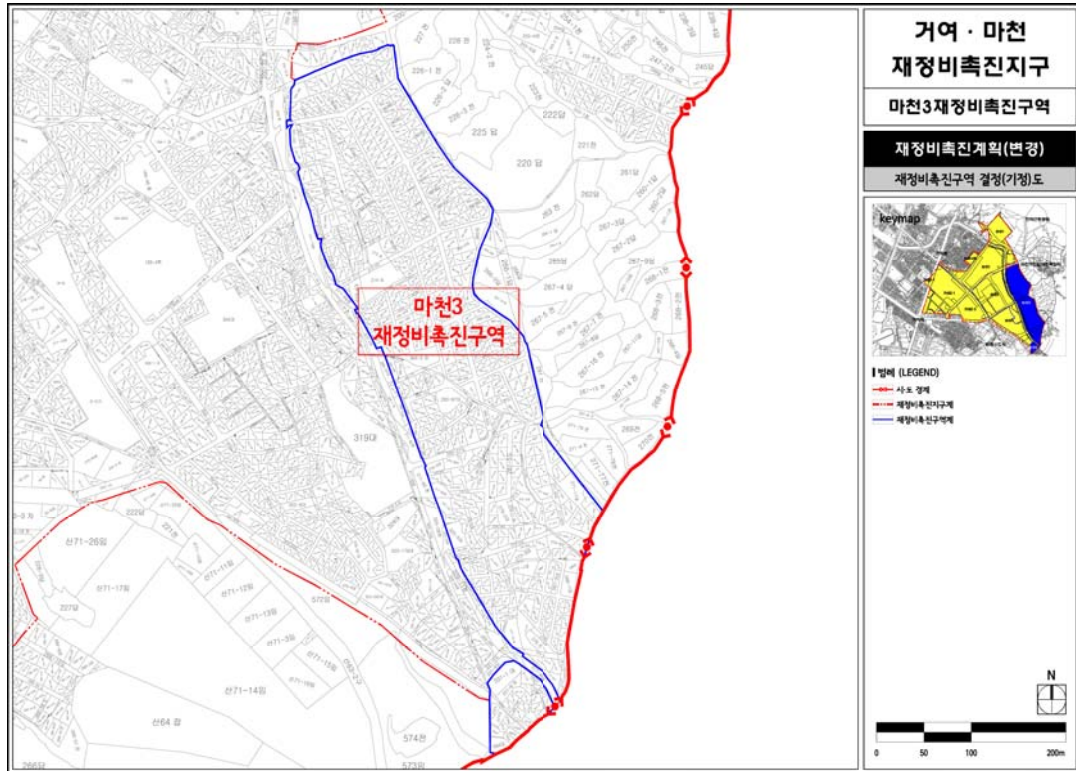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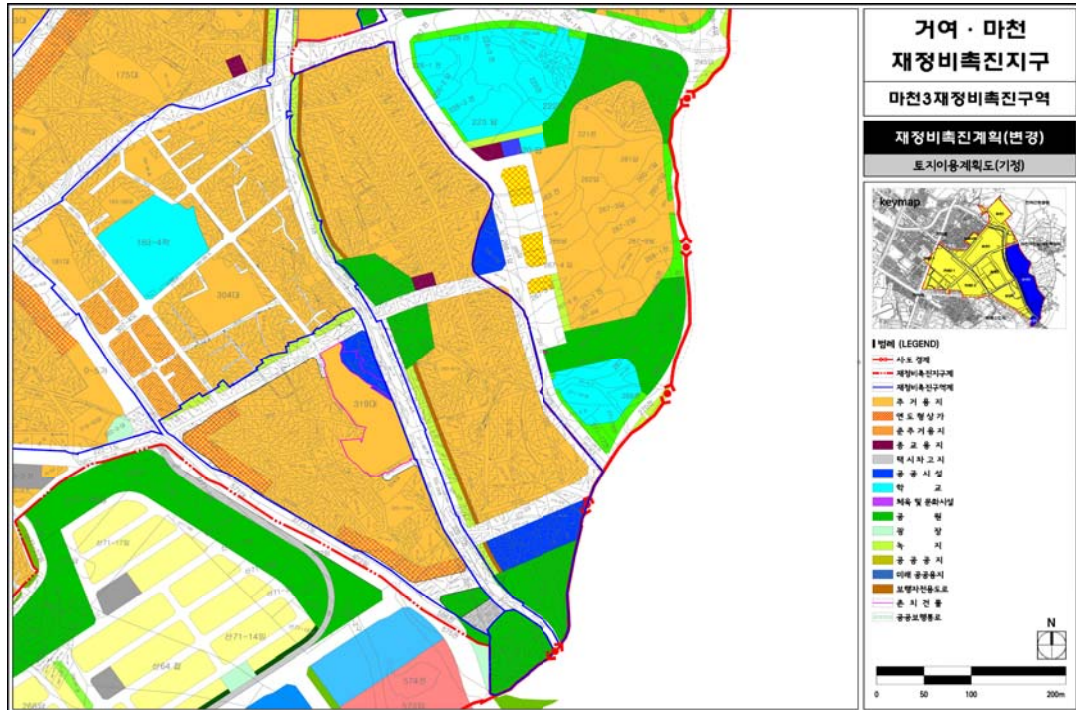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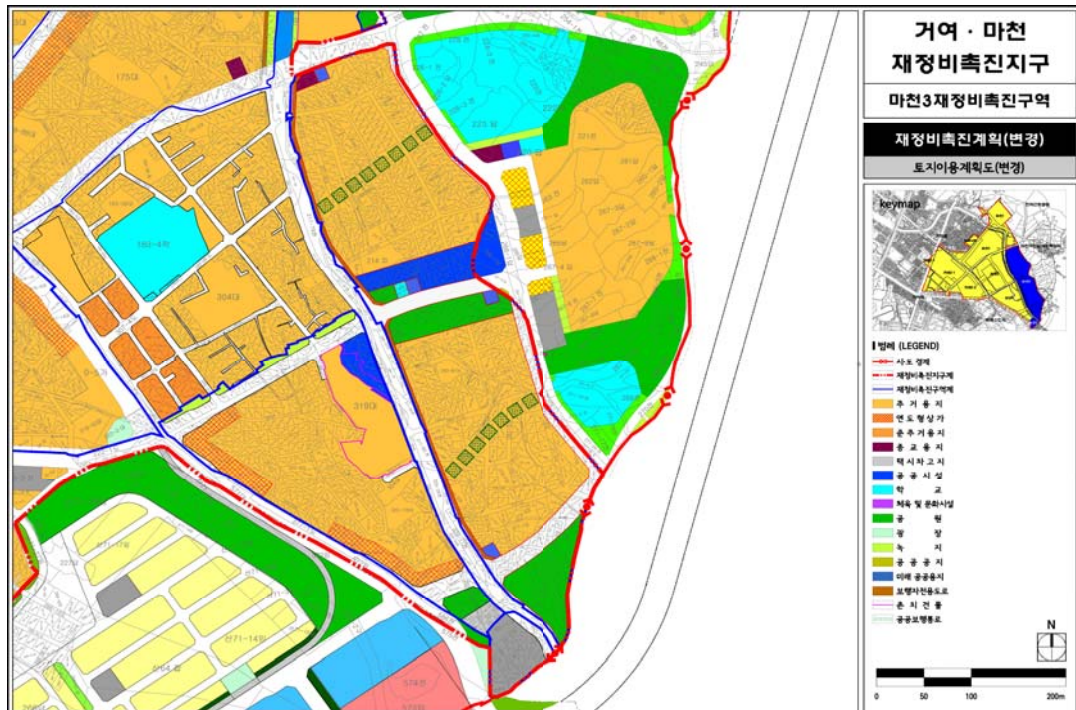
□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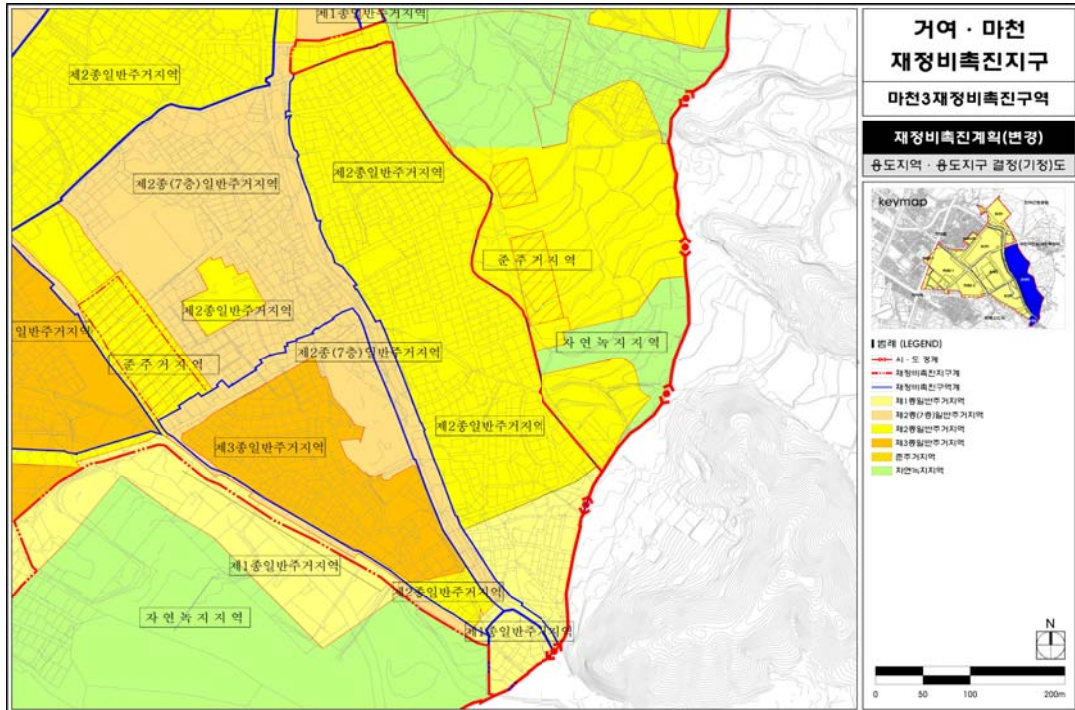
□ 마천3구역 토지이용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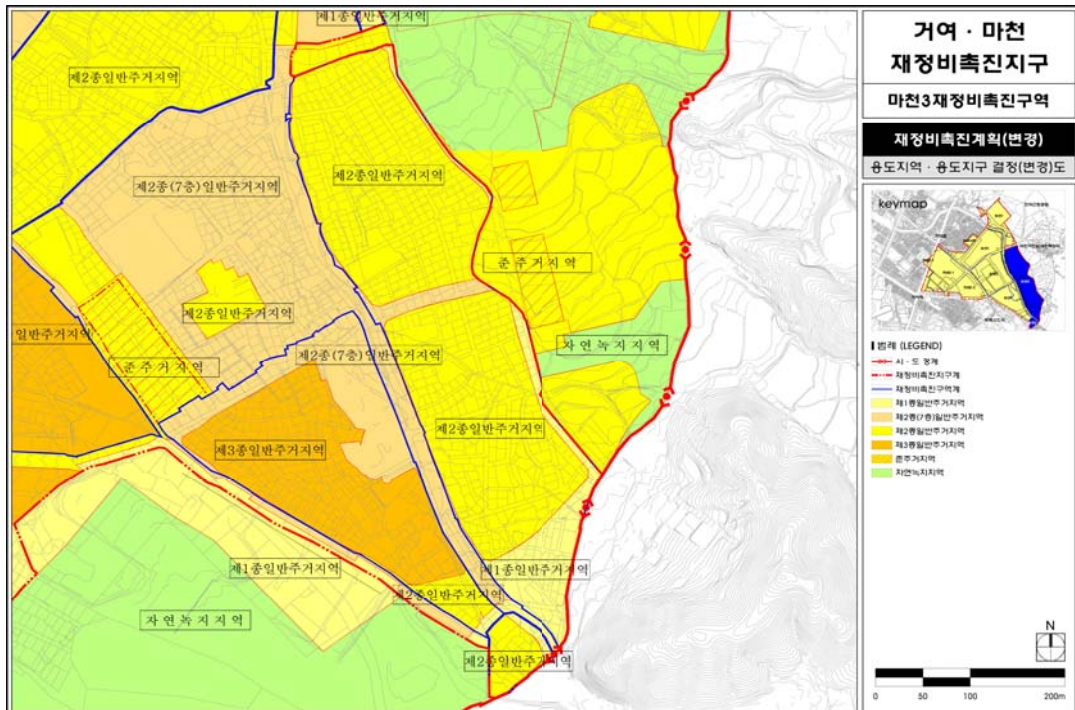
□ 마천3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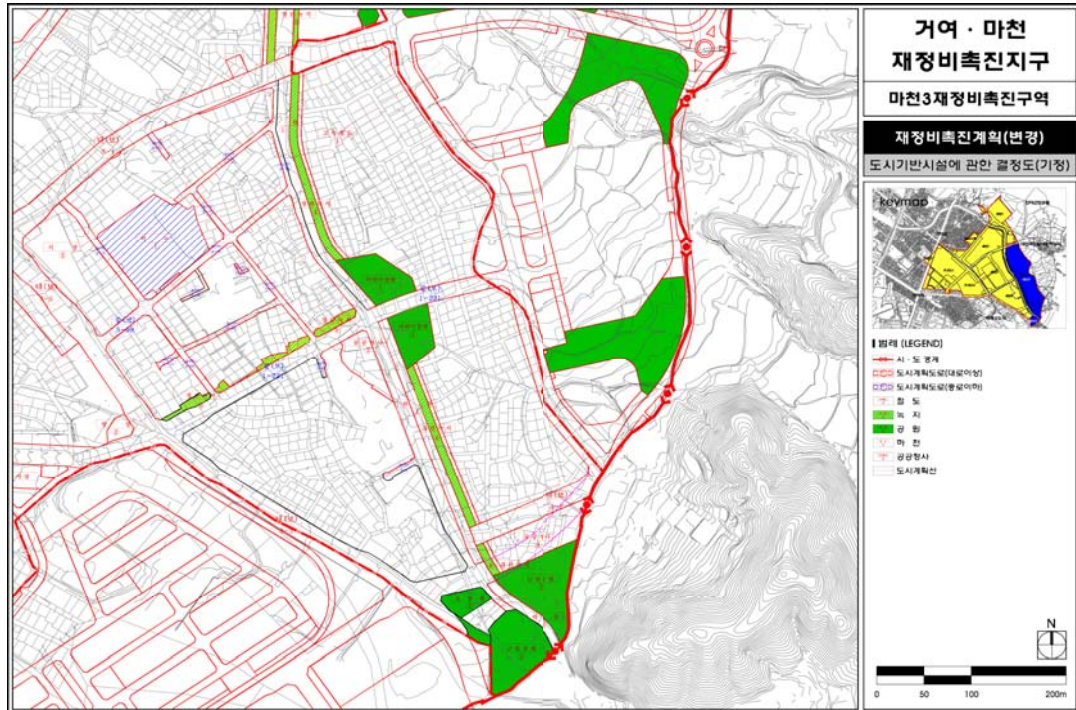
□ 마천3구역 용도지역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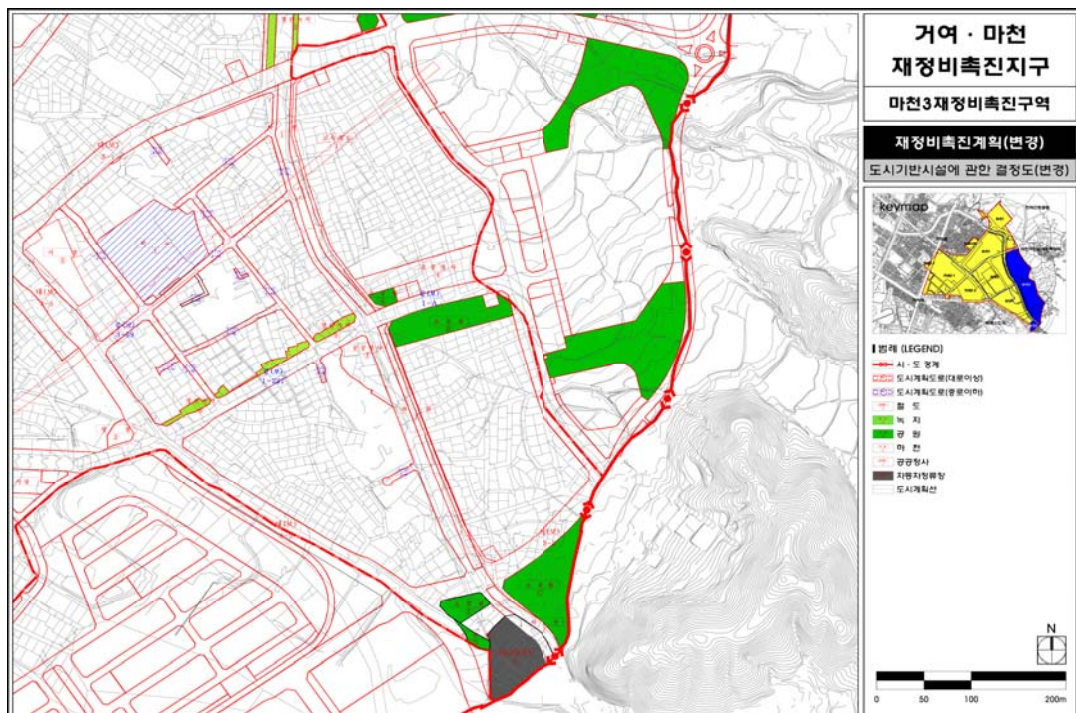
□ 마천3구역 용도지역결정(변경)도



□ 마천3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기정)도



□ 마천3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7호

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강북구, 중구 등 관내 신규 조성한 공원과 공원명과 위치 불일치로 이용 시민의 혼란을 야기한 공원에 대하여 부시장 방침 110325호-행정과(1995.3.20)에 의거 그 명칭을 제·개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장

1. 공원(소공원)명칭 제정내역

연 번	구 분	위 치	규모(㎡)	제정 공원명칭	비고(기존명칭)
1	소공원	송중동 1364-1	427	미(美)	강북6구역
2	소공원	송중동5-15	1,923	어울림	미아4구역

2. 공원(어린이·소공원)명칭 개정내역

연 번	구 분	위 치	규모(㎡)	개정 공원명칭	비고(기존명칭)
1	어린이공원	서대문구 북가좌2동 325-20	793	해담는	가재울
2	어린이공원	서대문구 남가좌동 123	9,840	가재울	가재
3	소공원	의주로1가 44-2	1,039	경찰기념	의주로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38) 및 서대문구 푸른도시과(☎02-330-8646), 강북구 푸른도시과(☎02-901-6934), 중구 공원녹지과(☎02-3396-585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8호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189호(2015.12.10.)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가. 지역의 명칭 :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요

지 역 명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종로구 종로1,2,3,4가동 중구 광희동, 을지로동 일대	439,356.4㎡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가. 계획의 명칭 :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계획의 목표 : 보행으로 연결되는 도심 창의제조산업 혁신처로 재탄생

- 산업재생 :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도심 창의산업에 중심으로 육성
- 보행재생 : 보행중심공간으로 도심 내 대표 명소화 공간 조성
- 공동체재생 : 주민 삶의 방식과 역사를 존중하는 도시재생 추진

다.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1)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2) 도시재생사업 및 재원조달계획

- 마중물 사업

사 업 명		사업비			
단위사업	세부단위사업	계	국비	지방비	
				시비	구비
세운상가군 주변 보행네트워크 구축	• 역사도심과 연계된 보행네트워크 기본계획 수립	2	-	2	
세운메이커스 큐브 및 세운협업지원센터 운영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공간관리 및 운영, 파트너십 구축 등	69	-	69	
거점공간 조성 및 전략기관 유치	• 세운상가 옥상중정·지하보일러실, 아세아전자상가 등 거점공간 조성 • 시립대, (사)씨즈,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셜리빙랩, 신 직업연구소 유치	47	-	47	
2단계 구간 주변지역 산업고도화	• 도심형 인쇄산업 고도화, 미래산업 인프라 확충 및 앵커시설 인쇄거리 활성화 및 문화시설 도입, 기부채납된 앵커시설 거점공간 조성(6-4-21구역, 세운4구역, 6-3-4 연구시설 등)	3	-	3	
주체형성	• 다시세운시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9	-	9	
역량강화	• 세운상가는 대학, 청소년 기술대안학교 등	8	-	8	
협동사업	• 주민이 기획하고 시행하는 주민협력 사업 지원	29	-	29	
소 계		167	-	167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자체사업

사업명		사업비			
단위사업	세부단위사업	계	국비	지방비	
				시비	구비
세운상가군 1단계구간 공공공간 조성	• 다시세운 광장 조성 및 광복횡단보도 조성, 공중보행교 설치, 데크 정비 및 메이커스큐브 설치	471	-	471	
세운상가군 2단계구간 공공공간 조성	• 공중보행교, 데크 신설, 남산 보행로 연결	370	-	370	
소 계		841		841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파급효과

부문	사업명	사업내용	파급효과
산업 재생	세운메이커스 큐브 및 세운협업지원센터 운영	• 프로그램 기획/운영 공간관리/ 운영, 파트너쉽 구축	• 잠재력 발현 및 외부 성장동력 연결을 통한 창의제조산업 혁신지로 조성 • 주민주도 재생사업 동력마련을 위한 인적 인프라 강화
	거점공간 조성 및 전략기관 유치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셜리빙랩, 신직업연구소, 시립대학교, (사)씨즈 유치 • 세운상가 옥상, 세운상가 중정, 세운상가 지하 보일러실 등에 대한 거점공간 조성	• 주민 유희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 도입으로 관광객 유도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 • 젊은층 유입을 유도해 활력과 혁신의 성장동력 추진
	2단계 구간 주변지역 산업고도화	• 도심형 인쇄산업 고도화, 미래산업 인프라 확충 및 앵커시설 • 인쇄거리 활성화 및 문화시설 도입 • 기부채납된 앵커시설 거점공간 조성(6-4-21구역, 세운4구역, 6-3-4 연구시설 등)	• 산업고도화 영역을 통해 도심산업 및 인쇄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
보행 재생	세운상가군 1단계구간 공공공간 조성	• 다시세운 광장 조성 및 광복 횡단보도 조성 • 공중보행교 설치, 데크 정비 및 메이커스큐브 설치	• 다시세운광장 조성을 통한 야외공연, 플리마켓, 전시 등 다양한 시민참여행사 개최, 지역 내 방문객 유입 기대 • 공중보행교 신설 및 대림상가에서 을지로 지하상가까지의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신설을 통한 주민의 편의성 향상, 동서보행축 연결
	세운상가군 2단계구간 공공공간 조성	• 공중보행교, 데크 신설, 남산 보행로 연결 • 거점공간 설치	• 남북을 연결하는 세운상가 일대 보행축과 동서 보행축 연결 • 종묘~남산까지 이어지는 보행연결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입 증대 기대효과
	세운상가군 주변 보행네트워크 구축	• 역사도심과 연계된 보행네트워크 기본계획 수립	•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재생을 통한 입체도시로서의 가치 회복

부문	사업명	사업내용	파급효과
공동체 재생	주체형성	• 주민협의체, 문화예술인, 기술장인 등 다시세운시민협의회 구성	• 주민참여 공동체 재생사업을 통한 주민주도형 지역 활성화 실현
	역량강화	• 세운상가는 대학, 청소년 기술 대안학교 등	• 세운상가일대 장인들의 기술과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결합해 지역 문제 해결 • 상가경영, 협업조직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 및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 • 기술장인의 경쟁력 향상 • 수리를 배우고 싶은 청년들과의 연결고리역할
	협동사업	• 주민이 기획하고 시행하는 주민공모사업 등	• 주민공감대 증대 및 상생과 발전의 주민주도 재생기반 마련 • 주민의견 수렴의 적극적인 이행으로 인한 공공의 신뢰 및 공감대 형성

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정비

구분	위치	면적(㎡)	내용	비고
신설	세운상가 옥상	1,700㎡	• 지역 내 환경개선 및 시민들을 위한 휴게 공간 조성	
	세운상가 중정(5F)	700㎡	• 거점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	
	세운상가 지하실	165㎡		
	대림상가 중앙 옥상 (6F)	730.3㎡	• 지역 내 환경개선 및 시민들을 위한 휴게 공간 조성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 후	최초결정일
변경	2-126	집산 도로	종로3가 32-3일대 (세운상가서측)	면적(㎡)	-	증)5,193.4	5,193.4	건설부고시 제151호 (91.3.25)
				길이(m)	-	증)295.1	295.1	
				폭(m)	-	증)12.9~14.5	12.9~14.5	
				높이(m)	-	증)23.0~31.5	23.0~31.35	
변경	2-127	집산 도로	을지로4가 250 일대 (세운상가동측)	면적(㎡)	-	증)5,257.3	5,257.3	건설부고시 제232호 (77.12.1)
				길이(m)	-	증)296.5	296.5	
				폭(m)	-	증)12.9~14.5	12.9~14.5	
				높이(m)	-	증)22.7~31.5	22.7~31.15	

마. 예산 집행 계획

사업 유형	사 업 명	연도 및 사업비(억원)							비고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1008	2	41	202	312	234	217	
마중물 사업	세운상가군 주변 보행네트워크 구축	2	-	-	2	-	-	-	
	세운메이커스 큐브 및 세운협업지원센터 운영	69	-	-	7	20	21	21	
	거점공간 조성 및 전략기관 유치	47	-	5	10	-	24	8	
	2단계 구간 주변지역 산업고도화	3	-	-	-	3	-	-	
	주체형성	9	-	-	3	2	2	2	
	역량강화	8	-	-	2	2	2	2	
	협동사업	29	-	-	7	10	6	6	
소 계		167	-	5	31	37	55	39	
지자체 사업	세운상가군 1단계구간 공공공간 조성	471	2	36	171	262	-	-	
	세운상가군 2단계구간 공공공간 조성	370	-	-	-	13	179	178	
소 계		841	2	36	171	275	179	178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평가 및 환류 추진
- 성과분야 및 평가지표 설정은 사회·문화적 분야, 경제적 분야, 물리·환경적 분야의 분야별로 설정
- 평가지표 측정방법은 설문조사, 현장조사, 계측조사, 통계조사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측정

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 없음

아.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조직의 운영

구분	추진주체	역할
행정·정책지원기관	서울시, 자치구(종로구, 중구)	• 행정·정책 수립 및 지원
거버넌스·전략조직	세운협업지원센터	• 도시재생/산업재생의 거버넌스와 전략기획 역할 • 행정/정책지원기관과 파트너십그룹을 연계
파트너십 그룹	기술혁신 그룹, 현장산업 그룹, 교육·문화 그룹, 인큐베이팅 그룹	• 전략적인 파트너십 그룹으로 현장의 위킹 그룹의 활동/ 사업을 촉진하는 역할
위킹 그룹	리빙랩 참여그룹, 세운상가 입주그룹, 외부 혁신그룹, 정책적 지원그룹	• 세운상가군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현장 주체들로 혁신활동/사업의 추진체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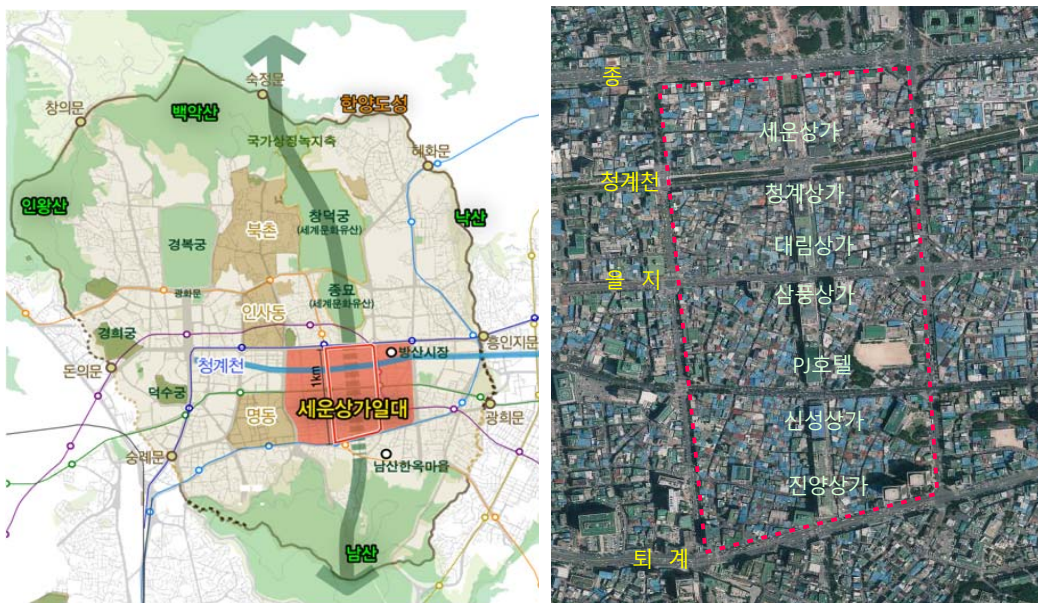
○ 공동체 활성화 방안

- 다시세운시민협의회 운영, 역량강화 및 협동사업 지원 등

3. 관련서류 열람

관련서류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02)2133-8498)에 비치 및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 치 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9호
2017년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2017년도 제1차 지방세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2. 대 상 : 건축물 등 21,963호(건)
 - ※ 건축물 21,837호, 기타물건 126건(차량 80, 기계장비 22, 항공기 2, 레저시설 13, 회원권 9)

○ 변경결정 현황

구 분	합 계	수시조정 내용				기타
		신규	삭제	인상	인하	
합 계	21,963	90	-	19	21,845	9
건축물(호)	21,837	-	-	-	21,837	-
기타물건(건)	126	90	-	19	8	9
차량	80	47	-	17	7	9
기계장비	22	21	-	-	1	-
항공기	2	2	-	-	-	-
레저시설	13	11	-	2	-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9	9	-	-	-	-

※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세부내역 불입

3. 변경고시 내역 및 세부사항 열람

해당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부서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시가표준액 변경 상세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주소) https://finance.seoul.go.kr/statutory_standard_price#list/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불입
1. 2017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1부.
 2. 2017년도 차량,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1부.
 3. 2017년도 항공기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1부.
 4. 2017년도 레저시설(옥외오락시설)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1부.
 5. 2017년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1부.

붙임 1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대 상】 : 건축물 21,837호(상가 19,854, 오피스텔 1,983)

○ 조정내역(인하 21,837)

(단위 : 천원)

연번	구별	물 건 소재지	시가표준액 (변경 전)			시가표준액 (변경 후)			지수 및 가감산율 (변경 전)				지수 및 가감산율 (변경 후)				조사 시가	시가 표준 비율 (%)	결정 비율 (%)
			토지	건물	합계	토지	건물	합계	구조	용도	위치	가감	구조	용도	위치	가감			
※ 세부내역 : 서울시 홈페이지 「2017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참조																			

(홈페이지주소) https://finance.seoul.go.kr/statutory_standard_price#list/1

「2017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찾아가기)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서비스 ⇒ 세금 ⇒ 세금 ⇒ 세금자료실 ⇒ 시가표준액표(건물, 기타)

「2017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붙임 2

차량,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 차량(승용, 이륜): 총 80건

○ 시가표준액 변경(24건)

(단위 : 천원)

연번	차종	제작회사	명칭	형식	시가표준액 (당초)	시가표준액 (변경)	비고
1	승용	HONDA	Pilot	-	44,636	49,636	인상
2	이륜	KR MOTORS	BEAVER125(비버125)	HY125F1	2,250	1,809	인하
3	이륜	KR MOTORS	BEAVER125DLX (비버125DLX)	HY125DLX	1,595	1,955	인상
4	이륜	S&T MOTORS	BEAVER125(비버125)	HY125F1	1,495	1,809	인상
5	이륜	S&T MOTORS	BEAVER125DLX (비버125DLX)	HY125DLX	1,595	1,955	인상
6	이륜	S&T MOTORS	BEAVER125F1 (비버125F1)	-	1,855	1,809	인하
7	이륜	HARLEY-DAVIDSON	HARLEY-DAVIDSON XG750	XG750	9,000	10,000	인상
8	이륜	HARLEY-DAVIDSON	HARLEY-DAVIDSON XL883L	XL883L	12,363	12,727	인상
9	이륜	HARLEY-DAVIDSON	HARLEY-DAVIDSON XL883N	XL883N	16,000	16,091	인상
10	이륜	HARLEY-DAVIDSON	HARLEY-DAVIDSON XL1200CX	XL1200CX	19,090	19,545	인상
11	이륜	HARLEY-DAVIDSON	HARLEY-DAVIDSON FXDB103	FXDB103	20,909	21,364	인상

연번	차종	제작회사	명칭	형식	시가표준액 (당초)	시가표준액 (변경)	비고
12	이륜	HARLEY-DAVIDSON	HARLEY-DAVIDSON FXDL103	FXDL103	23,272	21,818	인하
13	이륜	HARLEY-DAVIDSON	HARLEY-DAVIDSON FLSTN	FLSTN	26,818	26,364	인하
14	이륜	HARLEY-DAVIDSON	HARLEY-DAVIDSON FLSTFB	FLSTFB	26,363	25,455	인하
15	이륜	HARLEY-DAVIDSON	HARLEY-DAVIDSON FLSS	FLSS	29,090	29,273	인상
16	이륜	HARLEY-DAVIDSON	HARLEY-DAVIDSON FLHR	FLHR Road King	31,818	32,727	인상
17	이륜	HARLEY-DAVIDSON	HARLEY-DAVIDSON FLHXS	FLHXS	32,727	31,818	인하
18	이륜	HARLEY-DAVIDSON	HARLEY-DAVIDSON FLHTK	FLHTK	41,818	42,273	인상
19	이륜	HARLEY-DAVIDSON	HARLEY-DAVIDSON FLHTKL	FLHTKL	42,727	42,273	인하
20	이륜	HARLEY-DAVIDSON	HARLEY-DAVIDSON FLTRXS	FLTRXS	32,727	33,636	인상
21	이륜	HARLEY-DAVIDSON	HARLEY-DAVIDSON FXSE	FXSE	40,909	41,364	인상
22	이륜	DUCATI MOTOR HOLDING S.P.A	MULTISTRADASPIKESPE AK(멀티스트라다S파익스피 크)	-	33,545	35,000	인상
23	이륜	KAWASAKI	W800	EJ800A	11,220	11,800	인상
24	이륜	KAWASAKI	VN900CLASSIC	VN900B	11,220	12,000	인상

○ 신규 도입(47건)

(단위 : 천원)

연번	차종	제작회사	명칭	형식	시가표준액 (신규)
1	승용	현대	그랜저IG2.2디젤모던A/T	-	30,500
2	승용	현대	그랜저IG2.2디젤프리미엄A/T	-	31,591
3	승용	현대	그랜저IG2.4모던A/T	-	27,773
4	승용	현대	그랜저IG2.4프리미엄A/T	-	28,864
5	승용	현대	그랜저IG3.0익스클루시브A/T	-	32,273
6	승용	현대	그랜저IG2.4모던베이직(렌터카)A/T	-	23,636
7	승용	현대	그랜저IG3.0모던베이직(렌터카)A/T	-	24,636
8	승용	현대	그랜저IG3.0LPI모던A/T	-	25,909
9	승용	현대	그랜저IG3.0LPI익스클루시브A/T	-	29,955
10	승용	HONDA	CR-V4WDEX-L	-	35,727
11	승용	HONDA	CR-V4WDTouring	-	39,091
12	승용	HONDA	HR-V	-	29,000
13	이륜	HARLEY-DAVIDSON	HARLEY-DAVIDSON FLSTF	-	24,545
14	이륜	DUCATI MOTOR HOLDING S.P.A	MULTISTRADA1200ENDUROTOURINGRED(멀티스트라다1200엔듀로투어링레드)	-	32,455
15	이륜	DUCATI MOTOR HOLDING S.P.A	MULTISTRADA1200ENDUROTOURINGGRE Y(멀티스트라다1200엔듀로투어링그레이)	-	32,727
16	이륜	DUCATI MOTOR HOLDING S.P.A	MULTISTRADA1200ENDUROTOURINGWHIT E(멀티스트라다1200엔듀로투어링화이트)	-	32,727
17	이륜	DUCATI MOTOR HOLDING S.P.A	MONSTER797Red (몬스터797레드)	-	13,182
18	이륜	DUCATI MOTOR HOLDING S.P.A	MONSTER797Dark/White (몬스터797다크/화이트)	-	13,455
19	이륜	DUCATI MOTOR HOLDING S.P.A	MONSTER1200RRED (몬스터1200RRED)	-	25,909
20	이륜	DUCATI MOTOR HOLDING S.P.A	MONSTER1200RBLACK (몬스터1200RBLACK)	-	26,182

연번	차종	제작회사	명칭	형식	시가표준액 (신규)
21	이륜	DUCATI MOTOR HOLDING S.P.A	SUPERSPORTRED	-	18,000
22	이륜	DUCATI MOTOR HOLDING S.P.A	SUPERSPORTSRED	-	20,455
23	이륜	DUCATI MOTOR HOLDING S.P.A	SUPERSPORTSWHITE	-	20,727
24	이륜	SUZUKI	DL650A(V-STROM650)	-	10,445
25	이륜	SUZUKI	RMX450Z	-	10,636
26	이륜	SUZUKI	RM-Z450	-	9,909
27	이륜	SUZUKI	RM-Z250	-	9,000
28	이륜	SUZUKI	DR-Z70	-	2,900
29	이륜	SUZUKI	LT A750XP(위장칼라)	-	15,445
30	이륜	SUZUKI	LT A750XP	-	14,991
31	이륜	SUZUKI	LT A400F(위장칼라)	-	11,809
32	이륜	SUZUKI	LT A400F	-	11,355
33	이륜	SUZUKI	LT-F250	-	6,318
34	이륜	KAWASAKI	NINJA H2	ZXT00X	36,000
35	이륜	KAWASAKI	ZX-10R	ZXT00S	20,800
36	이륜	KAWASAKI	ZX-10RR	ZXT00Z	24,000
37	이륜	KAWASAKI	ZX-6R	ZX636F	14,200
38	이륜	KAWASAKI	Z1000SX	ZXT00W	16,000
39	이륜	KAWASAKI	Z1000	ZRT00H	15,000
40	이륜	KAWASAKI	Z1000 R EDITION	ZRT00J	17,000
41	이륜	KAWASAKI	ZZR1400	ZXT40J	20,400
42	이륜	KAWASAKI	1400GTR	ZGT40E	20,800
43	이륜	KAWASAKI	Z125 PRO(2016년 모델)	BR125H	3,600
44	이륜	KAWASAKI	VN1700 VOYAGER	VNT70B	23,545
45	이륜	KAWASAKI	NINJA 650 ABS	EX650K	8,800
46	이륜	KAWASAKI	Z650 ABS	ER650H	8,100
47	이륜	KAWASAKI	VERSYS-X 300 ABS TOURER	LE300A	7,600

○ 명칭 변경(5건)

(단위 : 천원)

연번	차종	제작회사	명칭 (당초)	명칭 (변경)	형식	시가표준액
1	승용	현대	아이오니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AE5CF7-B	20,073
2	승용	현대	아이오니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AE5CF8-A-O	24,312
3	승용	현대	아이오니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AE5CF8-A-S	23,154
4	승용	현대	아이오니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AE5CF8-B-O	23,657
5	승용	현대	아이오니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AE5CF8-B-S	23,324

○ 차종 및 시가표준액 변경(3건)

(단위 : 천원)

연번	차종 (당초)	차종 (변경)	제작회사	명칭	형식	시가표준액 (당초)	시가표준액 (변경)	비고
1	승용	이륜	HARLEY-DA VIDSON	HARLEY-DAVI DSON FLS	FLS	24,545	22,727	차종 변경, 인하
2	승용	이륜	HARLEY-DA VIDSON	HARLEY-DAVI DSONFXSB	FXSB	28,181	29,091	차종 변경, 인상
3	승용	이륜	HARLEY-DA VIDSON	HARLEY-DAVI DSON FLHXSE	FLHXSE	50,000	50,455	차종 변경, 인상

○ 형식 및 시가표준액 변경(1건)

(단위 : 천원)

연번	차종	제작회사	명칭	형식	시가표준액 (당초)	시가표준액 (변경)	비고
1	이륜	HARLEY-DA VIDSON	HARLEY-DAVIDS ON FXDF103	FXDF103	23,272	23,455	형식 변경, 인상

□ 기계장비(기중기, 굴삭기, 로더): 총 22건

○ 시가표준액 변경(1건)

(단위 : 천원)

연번	품종명	제작회사	기종명	시가표준액 (당초)	시가표준액 (변경)	비고
1	기중기	TADANO	ATF110G-5	1,288,000	1,000,000	인하

○ 신규 도입(21건)

(단위 : 천원)

연번	품종명	제작회사	기종명	시가표준액 (신규)
1	굴삭기	두산인프라코어	DX55-5K	67,270
2	굴삭기	두산인프라코어	DX55MT-5K	69,490
3	굴삭기	두산인프라코어	DX140LC-5	126,220
4	굴삭기	두산인프라코어	DX140LCR-5	129,560
5	굴삭기	두산인프라코어	DX220LC-5	144,340
6	굴삭기	두산인프라코어	DX235LCR-5	153,220
7	굴삭기	두산인프라코어	DX300LC-5K	177,900
8	굴삭기	두산인프라코어	DX300LCE	211,100
9	굴삭기	두산인프라코어	DX380LC-5	251,110
10	굴삭기	두산인프라코어	DX530LC-5	355,570
11	굴삭기	두산인프라코어	DX55W-5K	81,380
12	굴삭기	두산인프라코어	DX140W-5K	145,660
13	굴삭기	두산인프라코어	DX210W-5	181,000
14	로더	두산인프라코어	DL200-5K	162,220
15	로더	두산인프라코어	DL250-5K	178,890
16	로더	두산인프라코어	DL300-5K	201,100
17	로더	두산인프라코어	DL350-5K	216,670
18	로더	두산인프라코어	DL400-5K	241,900
19	로더	두산인프라코어	DL400-5K CVT	246,330
20	로더	두산인프라코어	DL450-5K	295,220
21	로더	두산인프라코어	DL550-5K	363,760

붙임 3**항공기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 항공기 : 총 2건

○ 신규 도입(2건)

(단위 : 천원)

연번	제작회사	기종 및 형식	정원 (명)	최대이륙중량 (kg)	내용연수	시가표준액 (신규)
1	BOEING	B787-9	269	252,650	20	144,000,000
2	GULFSTREAM	G650ER	13	46,992	12	63,000,000

붙임 4**레저시설(옥외오락시설)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 레저시설 (옥외오락시설): 총 13건

○ 시가표준액 변경(2건)

(단위 : 천원)

연번	유원지명	시설물명	시가표준액 (당초)	시가표준액 (변경)	비고
1	서울 잠실 롯데월드	VR후렌치레볼루션	3,864,000	5,267,915	인상
2	서울 잠실 롯데월드	자이로드롭2VR	6,720,000	6,826,347	인상

○ 신규 도입(11건)

(단위 : 천원)

연번	유원지명	시설물명	시가표준액 (신규)
1	서울 은평 롯데월드키즈파크	키즈토리아	641,472
2	서울 은평 롯데월드키즈파크	서브마린 슬라이드	373,074
3	서울 은평 롯데월드키즈파크	산호 빌리지	1,258,374
4	서울 은평 롯데월드키즈파크	캡틴갤리온 해적선	276,894

연번	유원지명	시설물명	시가표준액 (신규)
5	서울 은평 롯데월드키즈파크	매직블록	95,313
6	서울 은평 롯데월드키즈파크	락 클라이밍	95,719
7	서울 은평 롯데월드키즈파크	범핑 피쉬	293,618
8	서울 은평 롯데월드키즈파크	머킹의 회전목마	322,879
9	서울 은평 롯데월드키즈파크	플라잉 웨일	651,813
10	서울 은평 롯데월드키즈파크	돌핀스핀	331,961
11	서울 잠실 롯데월드	플라이벤처	27,423,929

붙임 5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총 9건

○ 신규 도입(9)

(단위 : 천원)

연번	시군구	시설명	회원권구분	시가표준액 (신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펄스8	가족추가 (개인→2인)	25,200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펄스8	가족추가 (개인→3인)	52,200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펄스8	가족추가 (개인→4인)	78,100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펄스8	가족추가 (2인→3인)	27,000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펄스8	가족추가 (2인→4인)	52,900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펄스8	가족추가 (3인→4인)	25,900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펄스8	법인추가 (1인→2인)	28,700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펄스8	법인추가 (1인→3인)	55,800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펄스8	법인추가 (2인→3인)	27,1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2호

양동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9.)로 정비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380호(1978.11.30.)로 사업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671호(1984.11.20.)로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된 이후 서울특별시공고 제1995-27호(1995.10.10.)로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34호(2016.4.21.)로 정비계획 변경 지정된 양동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하고(리모델링에 따른 경미한 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없음)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양동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양동구역 제4-1지구 (CJ빌딩)	중구 남대문로5가 500번지	2,429.4	-	2,429.4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획 지	2,429.4	-	2,429.4	100.0	-

※ 1995.10.4. 재개발사업 완료시 무상귀속된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제외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429.4	-	2,429.4	100.0	-

다. 정비기반시설계획 (해당사항 없음)

※ 1995년 10월 4일 재개발사업 완료시 지구외 도로(4개필지) 부담완료 : 1,163.5㎡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 주	
변경	양동구역 제4-1지구	2,429.4	-	2,429.4	남대문로5가 500번지	1	-	1	-	-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또는m)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양동구역 제4-1지구	2,429.4	-	2,429.4	남대문로5가 500	업무	47 이하	615 이하	70 이하	-
변경	양동구역 제4-1지구	변경없음							84 이하	-

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기본방향 - 7017서울로 등 양동구역내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가로경관 형성 - 로비층 가로활성화 용도도입에 따른 가로경관 조성 - 전면부 보행공간 일체적 조성 ○도시경관계획 - 로비층 가로활성화 용도 전면배치, 경관향상 추진 - 전면부 보행공간 조성을 통한 보행네트워크 구성 - 기존 공개공지의 환경개선을 통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
환경보전	○공사 시 방진망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 정화장치 마련 ○공사폐자재 분리수거, 재활용 및 위탁처리 ○저소음, 저진동 건설기계사용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
재난방지	○건축법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화재방지를 위해 가능한 내연성, 불연성 건축자재 사용	-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따른 행위허가	2017년	CJ 주식회사	해당없음	-

사. 리모델링에 따른 공공기여방안(금회)

- 소월로변 CJ빌딩 전면도로부지의 보행로 입체적 재조성 및 7017서울로 연결보행공간의 입체적 보행네트워크 재조성에 대한 비용부담
- ※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등 협의는 별도 진행

3. 변경사유

- 양동구역4-1지구(CJ빌딩)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1994. 12. 6)이후 23년이 경과된 업무시설로 노후화된 건물의 환경개선 및 기능유치를 위한 리모델링과 함께 공공기여 방안으로 전면부 보행환경의 입체적 재조성을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7.5.17.)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함(정미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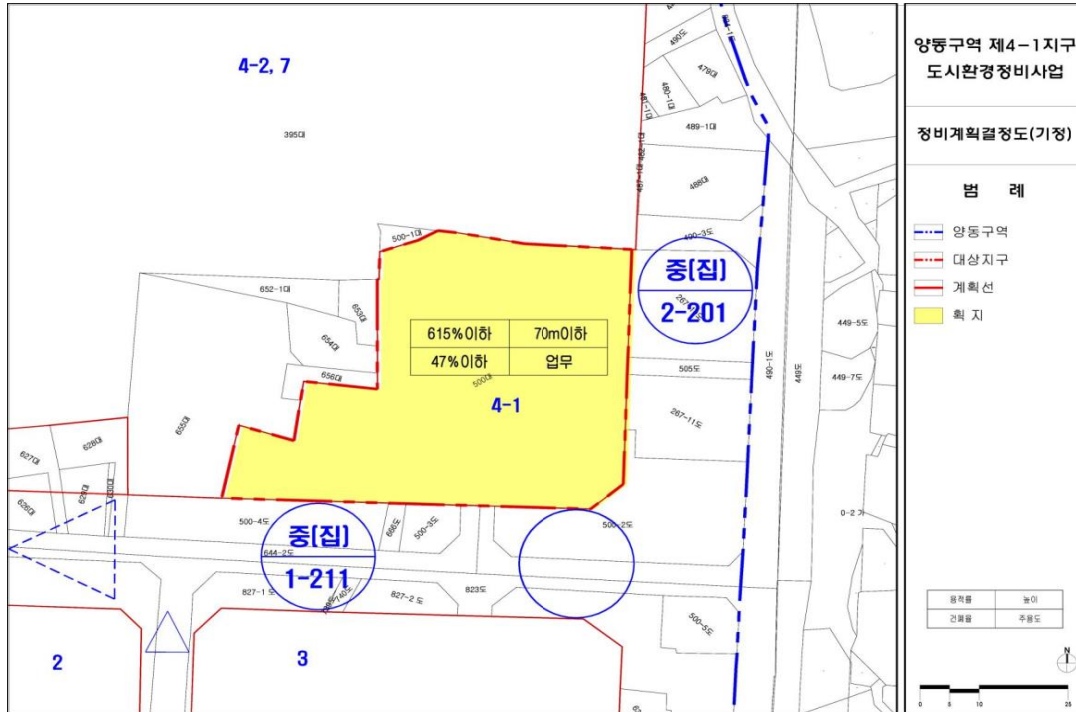
4.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결정도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도서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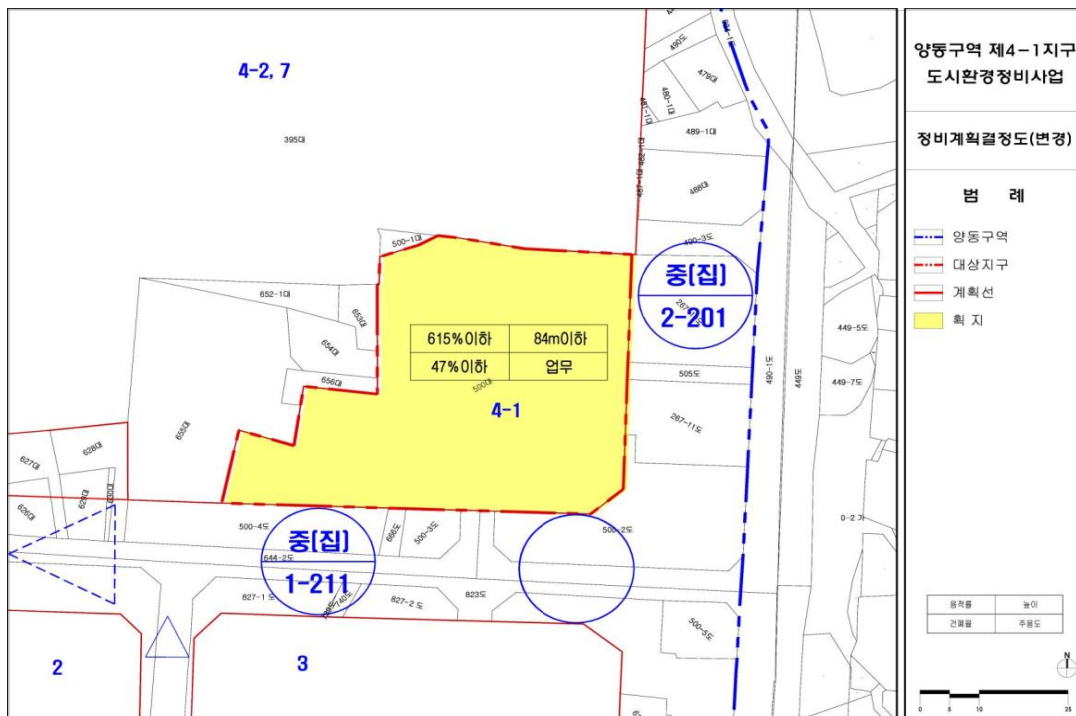
5.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02-2133-4635) 및 중구 도심재생과(☎ 02-3396-5774)에 관련서류 비치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tl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계획결정도(기정)



■ 정비계획결정도(변경)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258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 및 제11조(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세출외현금출납원인 등록 및 폐기 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 등록 및 폐기 직인 (사유: 직인분실로 인하여 신규제작)

구분	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비 고
등록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X1.8cm		신규제작
폐기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X1.8cm		분 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264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업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종합설계업 (E-1-111) 종합감리업 (S-1-465)	카페스 주식회사 (110111-5023520)	박진홍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3, 12,13층 (삼성동, 삼성빌딩)	2017.05.19

등록번호(업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문감리업 (S-2-505)	대원항업(주) (110111-1880891)	이승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43길 12	2017.05.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275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주식회사 에이치아이피
2. 대 표 자 : 연성모(1972.02.05.)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1006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10차)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19호
6. 등록일자 : 2017. 5.24.
7. 전화번호 : 02-2038-846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27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7-56	(사)미래노사발전연대 (대표 김홍진)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 125	- 노사활동으로 인한 산업 재해자 및 유가족, 외국 인 근로자 등 생계지원	500 (현금및물품)	전국	'17.5.25~ '18.5.20
						'17.5.25 ~ '19.5.20
2017-57	(사)한국국제경제학회 (대표 유재원)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 한국금융과 서비스산업 의 미래 주제로 정책세 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70 (현금)	전국	'17.5.25 ~ '17.12.15
						'17.5.25 ~ '18.1.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281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업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문설계업2종 (E-3-212) 전문감리업 (S-2-506)	(주)진양이앤씨 (110111-3032705)	이재돈	서울 강남구 언주로 30길 10, 917호(도곡동, 현대비전21빌딩)	2017.05.2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291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최해용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로135번길 **, ***호 (주안동)	일시: 2017-03-10 06:22 장소: 성산대교 남단램프 내용: 제한 총중량 4.4t 초과	처분일: 2017. 4. 26. 과태료: 25만 원 납기일: 2017. 6. 30.
강대식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1길 ***, **호 (임은동, *****)	일시: 2017-03-13 06:45 장소: 성산대교 남단램프 내용: 제한 총중량 8.0t 초과	처분일: 2017. 4. 26. 과태료: 80만 원 납기일: 2017. 6. 30.
노석태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16번길 *, ***호 (석남동)	일시: 2017-03-14 05:51 장소: 노들길 내용: 제한 높이 0.28m 초과	처분일: 2017. 4.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6. 30.
김민욱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신촌길 ***-** (죽산면)	일시: 2017-03-14 13:54 장소: 천왕동 동부제강 앞 내용: 제한 축하중 2.1t 초과	처분일: 2017. 4. 26. 과태료: 80만 원 납기일: 2017. 6. 30.
정진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두레로2길 **, ***호(부곡동)	일시: 2017-03-16 06:41 장소: 성산대교 남단램프 내용: 제한 총중량 4.2t 초과	처분일: 2017. 4. 26. 과태료: 25만 원 납기일: 2017. 6. 30.
정영호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51번길 **, 201동 ***호 (사우동)	일시: 2017-03-29 10:28 장소: 여의하류IC 내용: 제한 축하중 1.17t 초과	처분일: 2017. 4.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17. 6. 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동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 (개봉동)	일시: 2017-01-09 14:16 장소: 구로우체국 내용: 제한 높이 0.15m 초과	처분일: 2017. 2. 24.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4. 30.
이성표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349, ***동 ****호 (정왕동, 유천아파트)	일시: 2017-01-15 21:19 장소: 남부순환로 내용: 제한 폭 0.17m 초과	처분일: 2017. 2. 24.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17. 4. 30.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17. 6.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29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1. 업 체 명 : 주식회사 엔베스트
2. 대 표 자 : 박상일(1979.04.04.)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비동 1205호
(염창동, 우림블루나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20호
6. 등록일자 : 2017. 5.26.
7. 전화번호 : 02-6341-806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317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연번	부의 안건명	주관 부서
조례안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담당관
	2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보통신보안담당관
	3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생이모작지원과
	4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생협력과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과
	7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기획과
	8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경과
	9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지방재과
	10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관리담당관

구분	연번	부의 안건명	주관 부서
동의안	1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산관리과
	2	서울특별시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구 서울원스톱자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정책담당관
	3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의료정책과
	4	서울특별시 한강함상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한강사업본부
	5	서울특별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적경제담당관
	6	서울특별시 마포 마을활력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공동체담당관
	7	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공동체담당관
	8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정책담당관
	9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도봉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정책담당관
	10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희망복지지원과
	1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소상공인지원과
	12	서울특별시 면목동 마을공동체주택사업 시유지 출자 동의안	주택정책과
	13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일2지구 준주거1용지 서울리츠사업 출자 동의안	서울주택도시공사
	14	서울주택도시공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동의안	서울주택도시공사
	15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건립에 대한 동의안	체육진흥과
	16	서울특별시 동남어르신돌봄중사자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어르신복지과
의견 청취안	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취락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과
	2	2030 서울특별시 생활권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과
	3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송파구 잠실동 208-4 외 2필지)	임대주택과
	4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도봉구 쌍문동 103-6 외 1필지)	임대주택과
	5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중구 종림동 128-109 외 1필지)	임대주택과

서울특별시의회공고

◆ 서울특별시의회공고 제2017-106호

주식매각신고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및 제14조의 14와 같은법 시행령 제27조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의회의장

주식매각공개목록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진수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금액 (천원)	매각 일자	매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 수				
김준우 (자)	정다운	712	매각	3,717	2017.1.04	키움증권
김준우 (자)	에이티넘인베스트	4,800	매각	11,520	2017.1.12	키움증권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17-42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107(2016.11.17.)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25(2017.4.6.)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도로) 변경결정, 중구공고 제2017-294(2017.4.20)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회현동1가 203-4번지 일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중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사업
나) 명 칭 : 회현동 공공 복합시설 건립사업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가) 규모 : 지하3층/지상5층, 연면적 9,044.72㎡
나) 면적 : 2,388.8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신세계디에프 [서울시 중구 소공로 48, 3층,8층,12층 (회현동2가, 프라임타워)]
나) 서울시 중구청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그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조서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재생과(☎3396-575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별첨]

© 사업명 : 회현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사업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회현동1가 40-16	도	155.0	27.5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2	회현동1가 203-4	대	1,184.6	1,176.4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3	회현동1가 207-4	대	57.8	57.8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4	회현동1가 207-6	대	4.1	4.1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5	회현동2가 27-7	도	95.3	62.8	서울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6	회현동2가 67	도	72.7	21.5	국(건설부)	세종시 도문6로 11				
7	회현동2가 86-2	잡	405.5	405.5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8	회현동2가 86-3	잡	13.6	13.6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9	회현동2가 88-3	주	619.6	619.6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건 물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회현동1가 203-4	철골 구조	1층	195.02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보건본소청사				
			2층	268.60						

◆ 성동구고시 제2017-67호

성동구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189호(2015.12.10.)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성수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성 동 구 청 장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가. 지역의 명칭 :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요

지역명	유형	위치	면적	비고
성수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근린재생 일반형	성동구 성수1가 1·2동, 성수2가 1·3동 일원	886,560㎡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가. 계획의 명칭 :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계획의 목표

- 일터재생 -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경제재생
- 삶터재생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재생
- 쉼터재생 -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역사·문화재생
- 공동체 재생 - 주민간 상호협력을 통한 커뮤니티재생

※ 비전 : 더불어 희망을 만드는 장인의 마을 성수

다.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1)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4년간)

2) 도시재생사업 및 자원조달계획

- 마중물 사업 : 4개 핵심콘텐츠, 8개 사업

핵심콘텐츠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마중물사업 소개			10,000	-	9,000	1,000	-
일터재생	성장가도 산업혁신공간 조성사업	교각하부 컨테이너 15개소 설치 운영	1,000	-	900	100	-
	성장가도 교각하부 공간개선 사업	그래픽조명, 조형물, 사인시스템 설치	600	-	540	60	-

핵심콘텐츠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삶터재생	우리동네 안심길	도로포장, LED가로등, CCTV 설치	600	-	540	60	-
	생활자전거 순환길	자전거 순환길, 자전거 시설물 조성	500	-	450	50	-
섬터재생	지역문화 특화가로	가로포장, 사인시스템, 지역특화사업, 간판정비	1,100	-	990	110	-
공동체재생	성장도시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 등	1,700	-	1,530	170	-
	나눔공유센터 건립	온세대돌봄센터 및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3,400	-	3,060	340	-
	주민역량강화 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공모사업	1,100	-	990	110	-

○ 연계(협력)사업 : 4개 핵심콘텐츠 26개 사업

핵심콘텐츠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연계사업 소계			44,360	1,090	16,957	5,618	20,995
일터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완료)	지속가능 발전계획 수립	50	-	-	50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공임대점포 취득계획	공공임대점포 조성	1,282	-	682	600	-
	사회적경제 패션클러스터조성계획	패션기술창업학교, 디자인 경진대회 등	900	-	900	-	-
	사회적경제 특구 조성사업	소셜패션 상품 기획 및 개발 등	500	-	500	-	-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완료)	수제화 산업 지원	<3,230>	<770>	<2,270>	<190>	-
	지역경제 혁신센터 종합 운영 계획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	10,500	1,000	6,500	3,000	-
	어린이 씨티클라이밍	교각하부 씨티클라이밍 설치 운영	500	-	-	-	500

핵심콘텐츠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삶터재생	에코스쿨 조성(완료)	경동초 내부 에코스쿨 조성	80	-	80	-	-
	서울숲길 보행환경 개선지구 정비사업(완료)	홍보사인물, 방호울타리 등	393	-	300	93	-
	성수동 도시경관 사업(상원길)	상원길 보도 폭원 확장	1,200	-	600	600	-
	성수동 도시경관사업 (수제화거리)	성수이로 보도 정비	1,000	-	500	500	-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유흥공지를 활용한 녹지공간 확충	300	-	300	-	-
	무지개 창의놀이터 재조성 사업	안전한 공원 조성	250	-	250	-	-
	주거지 재생을 통한 에너지 재생사업 (심사)	에너지 효율증진 사업	(미정)	-	-	-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심사)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지원	(미정)	-	-	-	-
	가꿈주택 지원사업(심사)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지원	(미정)	-	-	-	-
	성수이로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 (완료)	자전거 노편 표시, 안내표지 설치	97	-	97	-	-
쉼터재생	언더스탠드에비뉴 조성 (완료)	언더스탠드에비뉴	10,200	-	-	-	10,200
	연무장길 주차장 건립	연무장길 주차타워	(23,200)	-	(23,200)	-	-
	연무장길 전선지중화 및 도로정비	전선지중화, 도로정비	(3,000)	-	(3,000)	-	-
	성수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성수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150	-	150	-	-
	서울속 마을여행 'hot place 성수' 거리트래킹	지역 고유자원 활용 마을여행 사업	48	-	40	8	-
	태조이성계 축제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행사	250	-	250	-	-
	2016 성동 디자인워크 (완료)	디자인을 테마로 네트워크 추진	68	11	-	57	-
공동체재생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건립	1,010	-	900	110	-
기타	공공복합청사 건립	1가2동 주민센터 공공복합 청사 건립	15,582	79	4,608	600	10,295

※ ()사업은 사업비가 미편성된 사업으로 연계사업 총계에서 제외함

※ < >사업은 2014년 이전에 사업완료되어 연계사업 총계에서 제외함

※ 향후 지자체,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파급효과(마중물 사업)

핵심콘텐츠	사업명	파급효과	비고
일터재생	성장가도 산업혁신공간 조성사업		
	사회적경제 패션산업 육성 공간	- 의류·수제화·가죽공예·패션 산업과 사회적경제·IT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산업 혁신 유도 - 기획·디자인·생산·홍보·판매 등 연계·지원을 통한 산업 고도화	
	Re-Up 공방	- 산업폐자원의 업사이클링을 통한 폐자원 활용 및 신규창업 활성화 - 방문객 체험공간 마련을 통한 관광자원 조성	
	청년혁신 공간	- 청년혁신가 및 기존 산업종사자간의 정보 교류 유도 - 청년창업 공간 조성을 통한 신규 창업 활성화	
	성수산업 홍보관	- 성수동 산업 홍보, 정보제공 - 소상공인간 정보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성장가도 교각하부 공간개선 사업		
	그래픽 디자인·경관조명	- 관문지역 경관개선을 통한 회색 산업지대 이미지 개선 - 지하철역 방문객 볼거리 제공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디지털 사인 시스템	지역홍보, 정보제공을 통한 방문객의 지역 내부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성수동 상징 조형물설치	- 지역 역사 유래 홍보를 통한 지역 자긍심 고취 - 지역의 볼거리 제공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삶터재생	우리동네 안심길		
	보행중심 도로포장	- 열악한 보행환경개선 및 안전하고 특색있는 가로 조성 - 특화가로와 연계 네트워크화	
	단절구간 보도개설	보행 연속성 확보를 통한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	
	LED 가로등 교체	주말·야간 공동화에 따른 범죄 불안요인 해소	
	CCTV설치	주말·야간 공동화에 따른 범죄 불안요인 해소	
	생활자전거 순환길		
	자전거 순환길 조성	- 부족한 자전거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자전거 이용량 증대·녹색교통 활성화 - 자전거 이용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자전거 시설물 설치 및 개량	-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 - 자전거 도난 사고 등 방지	

핵심콘텐츠	사업명	파급효과	비고
쉼터재생	지역문화 특화가로		
	특화가로 도로 포장	- 특화가로 연계 네트워크화로 서울숲·건대입구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 성수동 특화자원을 활용한 안전하고 특색있는 보행환경 조성	
	디지털 사인시스템 안내판	지역홍보, 정보제공을 통한 방문객의 지역 내부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간판정비 사업	특색 있는 가로 환경 제공을 통한 지역 매력도 증진	
	지역 특화 사업	- 주민참여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도시공간 창출을 통한 주민 애착도 및 자긍심 고취 - 자발적 공간 개선 주민활동 및 기반 마련	
공동체재생	성장도시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	- 지속가능한 지역 재생 공간 조성을 통한 자율적 주민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 보장 - 성수동 특화 브랜드 개발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청년창업지원, 인큐베이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나눔공유센터 건립		
	나눔공유센터 건립	- 온세대 문화·복지 기능 향상 - 주민+직장인 커뮤니티활성화 및 정보교류·협업기회 마련	
	주민역량강화 사업		
	도시재생아카데미 (성수배움터)	-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재생 사업 실행 기반 마련 - 마을리더, 주민활동가 양성 - 자율적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주민공동체 협동조합 육성	
	주민공모사업	- 주민 아이디어 실현을 통한 지역 애착도 증가 - 주민참여사업 발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실행 기반 마련	

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부문	사업명	내용	비고
공동 이용 시설	성장도시센터 건립	•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등을 집적한 신규 산업 및 공동체 육성 공간 조성	
	나눔 공유센터 건립	• 온세대 돌봄(유아~노인) 복지 공간 및 주민+직장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 공간 조성	

마. 예산 집행 계획

○ 마중물 사업

사업명		연도 및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0,000	1,000	4,618	2,655	1,727	
일터재생	성장가도 산업혁신공간 조성사업	1,000	-	1,000	-	-	
	성장가도 교각하부 공간개선 사업	600	-	600	-	-	
삶터재생	우리동네 안심길	600	-	600	-	-	
	생활자전거 순환길	500	-	-	289	211	
쉼터재생	지역문화 특화가로	1,100	-	600	289	211	
	성장도시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	1,700	1,000	700	-	-	
공동체재생	나눔공유센터 건립	3,400	-	620	1,770	1,010	
	주민역량강화 사업	1,100	-	498	307	295	

○ 연계(협력)사업

사업명		연도 및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4,360	11,707	13,888	7,724	11,041	
일터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완료)	50	-	50	-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공임대점포 취득계획	1,282	-	600	682	-	
	사회적경제 패션클러스터조성계획	900	-	700	200	-	
	사회적경제 특구 조성사업	500	-	140	200	160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완료)	<3,230>	-	-	-	-	
	지역경제 혁신센터 종합 운영 계획	10,500	8,090	790	1,620	-	
	어린이 씨티클라이밍	500	-	-	500	-	
살터재생	에코스쿨 조성(완료)	80	-	80	-	-	
	서울숲길 보행환경 개선지구 정비사업(완료)	393	-	393	-	-	
	성수동 도시경관 사업(상원길)	1,200	-	-	1,200	-	
	성수동 도시경관사업 (수제화거리)	1,000	-	-	1,000	-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300	-	-	300	-	
	무지개 창의놀이터 재조성 사업	250	-	-	250	-	
	주거지 재생을 통한 에너지 재생사업 (신청 후 심사)	(미정)	-	-	-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심사)	(미정)	-	-	-	-	
	가꿈주택 지원사업 (심사)	(미정)	-	-	-	-	
	성수이로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완료)	97	30	67	-	-	
쉼터재생	언더스탠드에비뉴 조성(완료)	10,200	-	10,200	-	-	
	연무장길 주차장 건립	(23,200)	-	-	-	-	
	연무장길 전선지중화 및 도로정비	(3,000)	-	-	-	-	
	성수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150	-	-	150	-	
	서울속 마을여행 'hot place 성수' 거리트래킹	48	-	-	48	-	
	태조이성계 축제	250	-	-	250	-	
	2016 성동 디자인위크(완료)	68	-	68	-	-	
공동체재생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1,010	-	-	1,010	-	
기타	공공복합청사 건립	15,582	3,587	800	314	10,881	

※ ()사업은 사업비가 미편성된 사업으로 연계사업 총계에서 제외함

※ < >사업은 2014년 이전에 사업완료되어 연계사업 총계에서 제외함

※ 향후 지자체,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 부문별 평가지표 구분 조사 실시(연 1회)
 - 행정지원·협업체계 구축·운영, 전문가 활용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활성화계획 보완 및 사업추진 성과 등의 목표에 대해 사업추진협의회 회의 개최 건수, 주민공모사업 실행 건수, 주민거주 만족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조사 실시
- 행정전담조직 등은 사업보완 등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없음

아.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조직의 운영

추진주체	역할	운영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기구)	- 사업추진 총괄 - 행정-주민간 협의 주체 - 의견 및 갈등 조정	- 센터장 1명 및 현장활동가(코디네이터) 4명 활동 - 총괄계획가(MP), 자문계획가(건축·경관, 사회적경제, 공동체) 비상근 자문활동 - 주민협의체, 행정조직 간 협의지원 및 사업실행 지원, 연계사업 요청
주민협의체 (소통기구)	- 주민의견 '소통창구' 및 참여확대 유도 - 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 전체 주민협의체 및 4개분과(주민, 소상공인,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 -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의 및 주민의견 전달 - 주민공모사업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사업추진협의회 (의사결정기구)	- 도시재생사업 의사결정 - 활성화사업 실행계획 협의 결정	-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자문계획가, 전담 조직 담당자, 주민협의체 회원들로 구성 - 사업의 실행 및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도시재생전담조직 (행정)	사업실행 행정지원	성동구 도시재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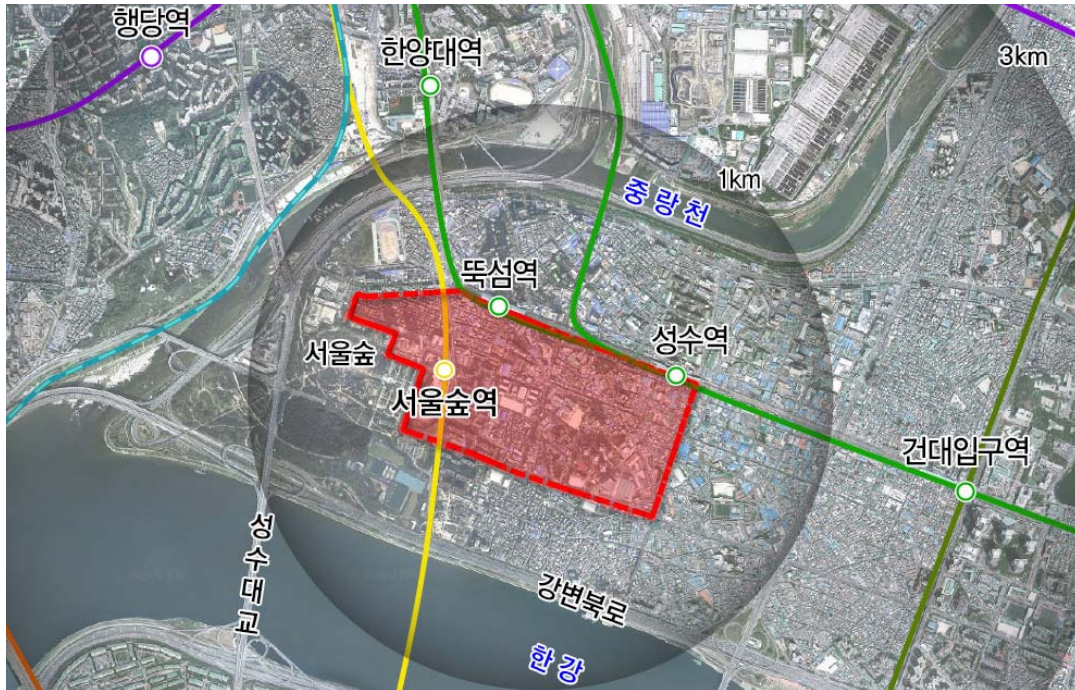
○ 공동체 활성화 방안

- 지역 활동가 육성,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주민참여 및 의사소통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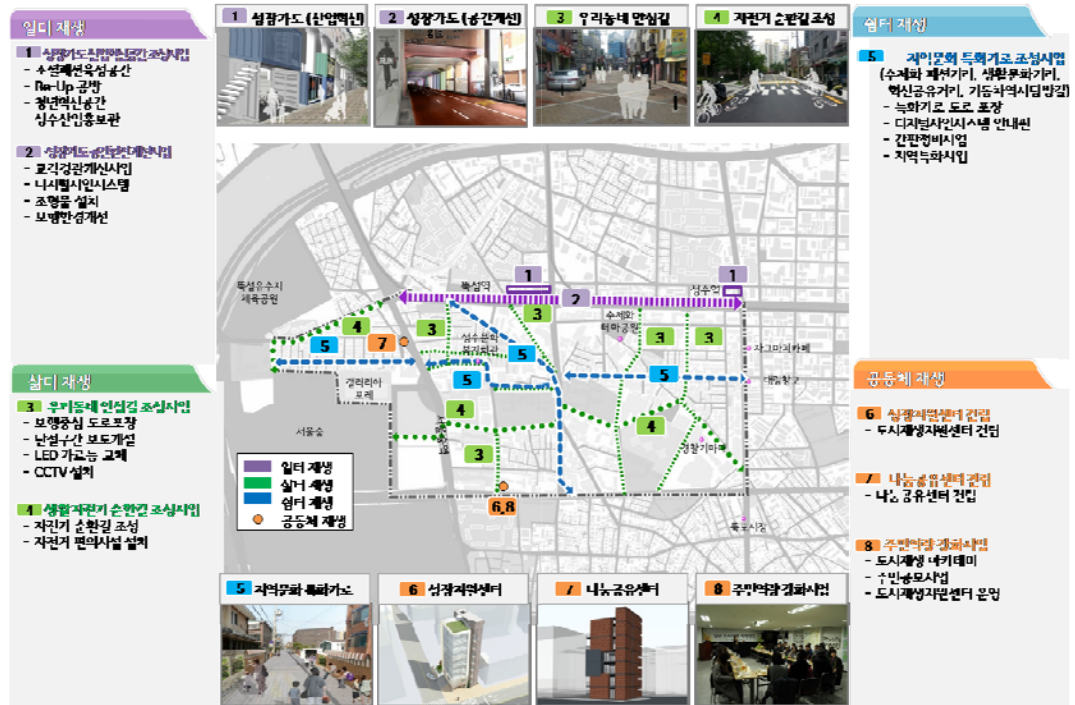
3. 관련서류 열람

관련서류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02-2133-7174), 성동구 도시재생과(☎02-2286-6602), 성수 도시재생지원센터(☎02-2286-7792)에 비치 및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광고)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 치 도]



[사업구상도]



◆ 동대문구고시 제2017-4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7-21호(2017.04.13)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7-454호(2017.05.11)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 열람공고된 이문동 170-127호 일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70-127호 일대

나. 사 업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다. 사 업 명 칭 :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라. 사 업 규 모 : 공공공지 조성 167㎡

마. 사업 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2)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사.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별첨

아. 개 재 방 법 : 시보게재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2127-4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토지 및 물건조서

토 지 조 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	이문동	170-127	대지	76	76	전용남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1길 27, 403동 1206호				
2	이문동	170-128	대지	35	35	동대문구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3	이문동	170-209	대지	56	56	송명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0, 101동 2503호				

별첨 2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	이문동 170-127	건물	벽돌조	49.12㎡	전용남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1길 27, 403동 1206호	김광수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70-127	임차인	
2	이문동 170-209	건물	연와조	49.12㎡	송명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0, 101동 2503호	박인택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70-209	임차인	
		수목	감나무 (R12)	1						
		수목	감나무 (R14)	1						

◆ 도봉구고시 제2017-66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초안산 근린공원 내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

1. 문화재청고시 제2002-14호(2002. 3. 9.)로 문화재 지정 결정되고, 문화재청고시 제2008-160호(2008. 12. 10.)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조정 결정되고, 문화재청고시 제2009-24호(2009. 4. 7.)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및 지형도면 정정 결정된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보호구역내에 편입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202-4 외 3필지에 대한 사유지 토지보상을 위하여 도봉구 공고 제2017-539호(2017. 5. 11.)로 열람공고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련 내용은 도봉구청 문화체육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6월 1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202-4외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초안산 근린공원 내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

다. 사업규모 : 8,500㎡

라.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마. 사업시행자

- 성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바.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조서

아. 고시방법 : 시보게재

자. 문의 : 도봉구청 문화체육과(☎2091-2262)

토지조서(2017년도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토지보상)

연번	소재지 (도봉구)	지번	지목	공 부 상 전체면적 (㎡)	편입 면적 (㎡)	2017년도 보상예상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8,500	8,500	8,500							
1	창동	산202-4	임	900	900	900	장은식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0길 ** (삼선동2가, 3층)					
							장은식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0길 ** (삼선동2가, 3층)	1/2				
							김선열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사회1길77번길 **	2.8/28				
2	창동	산203-7	임	1,700	1,700	1,700	장수교	서울 성북구 장월로32길 *--*(장위동)	2.8/28				
							장완영	서울 노원구 노원로 214, *동 ***호(하계동, 삼익아파트)	2.8/28				
							장재웅	서울 노원구 노원로 214, *동 ***호(하계동, 삼익아파트)	5.6/28				
3	창동	산204-4	임	2,600	2,600	2,600	이순용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우문덕길 5, ***동 ***호(하늘빛아파트)					

연번	소재지 (도·군·구)	지번	지목	공부상 전체면적 (㎡)	편입 면적 (㎡)	2017년도 보상대상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창동	산205-23	임	3,300	3,300	3,300	김영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90, ***동 ***호(장항동, 호수마을)		신안상호 저축은행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 (대치동)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오만순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596번길 18, ***동 ***호(신곡동, 드림벨리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정선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33, ***동 ***호(주엽동, 강선마을)	근저당권 설정	
							한상현				대구 달서구 정기로 242, ***동 ***호(감삼동, 우병드림시티)	근저당권 설정	
							김영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8길 **, ***호(청담동)	채무자	
							최유순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435, ***동 ***호(신천동, 파크리오)	채무자	
							유창열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산수로 *****	근저당권 설정	

◆ 노원구고시 제2017-54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노원구고시 제2017-44호(2017. 4. 20)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노원구공고 제2017-404호(2017. 4. 27)로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된 노원구 상계동 389-52 외 2필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교통지도과(☎2116-410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6월 1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389-52, 389-54, 389-55
2. 사업시행자
 - 가.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시행(주차장)
 - 나. 사업의 명칭 :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2단계)
4. 사업의 내용
 - 가. 면 적 : 199㎡
 - 나. 사업규모 : 지상 평면식주차장 약 10면(일반형 및 경형주차면)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참조

토 지 조 서

■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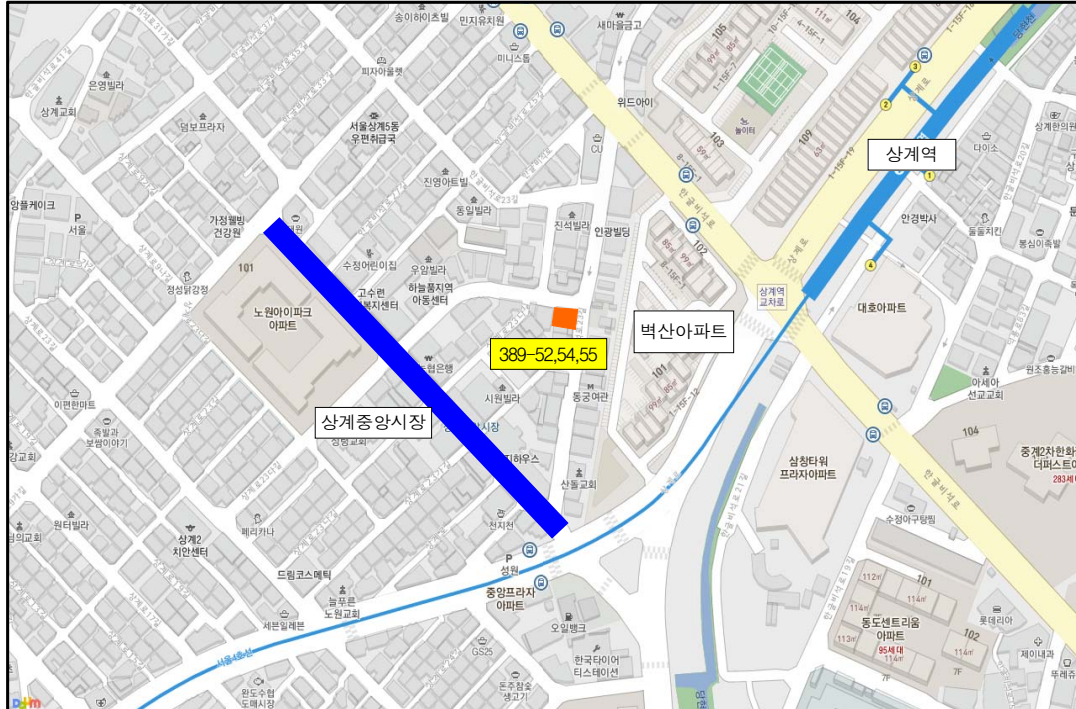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와 내용	
1	상계동 389-52	대	126	홍정선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길멜길 45-***	이심철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5-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2	상계동 389-54	대	40	조상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7길 **, 40*호	-	-	-	-	
3	상계동 389-55	대	33	"	"	-	-	-	-	
계			199			-	-	-	-	

별첨조서

□ 상계역 서측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2단계)

연번	소재지 지번	구조	규모	연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종류 와 내용	
1	상계동 389-52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 지붕	단층	52.2	홍정선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갈매길 45-**	이심철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5-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2	상계동 389-54	세멘조	단층	72.7	조상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7길 ** 40*호	-	-	-	
계				124.9		-	-	-	-	

< 위치도 >



< 현장사진 >



◆ 노원구고시 제2017-5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02호(2016.10.6)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노원구고시 제2017-32호(2017.3.16)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7-443호(2017.5.11)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한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6월 1일
노 원 구 청 장

■ 사업개요

-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1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 다. 사업규모 : 1,636㎡
- 라. 사업의 내용 : 토지 보상 등
- 마.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 사. 변경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중복 편입에 따른 사업지번·면적 변경
-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등 권리명세 : 별첨

■ 고시방법 : 시보게재

■ 열람장소 : 노원구청 공원녹지과(☎2116-3946, 노원구 노해로 437)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의 종류와 내용	
1	월계동 산1	임야	임야	5,056	1,000 (1,089.4/5,506)	1,300 (1,089.4/5,506)	이구영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716-36				
					1,000 (495.8/5,506)	1,300 (495.8/5,506)	전정남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21길 44, 단촌(쌍문빌라)	류미연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57번길 20(하동)	근저당권자	
					1,000 (3,470.8/5,506)	1,300 (3,470.8/5,506)	문영석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90, 3층(공릉동)				
2	월계동 산1-1	임야	임야	200	200 (90/1,590)	0	국현명	서울시 도봉구 창동 61				
					200 (1,439/1,590)	0	김연준	서울시 도봉구 창동 256-2				
3	월계동 746	전	나지	62	200 (61/1,590)	0	국(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읍6로 11				
4	월계동 747	전	나지	274	62	62	문영석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90, 3층(공릉동)				
5	월계동 746-3	철도용 지	일부도로	295	274	274	윤길자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378-1				
					100	0	국(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읍6로 11				

별첨 2

■ 사업명 :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관리의종류와 내용	
1	월계동 산1	사무실	컨테이너	32㎡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2	월계동 산1	사무실	컨테이너	32㎡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3	월계동 산1	사무실	컨테이너	18㎡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4	월계동 산1	창고	샌드위치 패널	6㎡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5	월계동 산1	바닥	시멘트	45㎡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6	월계동 산1	계단	목재/알루미늄	1개소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7	월계동 산1	가림막	비계/철판	22㎡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8	월계동 산1	가림막	비계/철판	40㎡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9	월계동 산1	배수로	침목	1식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10	월계동 산1	수도시설		1식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11	월계동 산1	화장실	간이	2개소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12	월계동 산1	사무집기		1식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13	월계동 산1	에어컨		1대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14	월계동 산1	난로	연탄/기름	4대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15	월계동 산1	가스렌지		1대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16	월계동 산1	가전제품		1식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별첨 조서

■ 사업명 :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종류와 내용	
17	월계동 산1	철골조		1식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18	월계동 산1	골재		1식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19	월계동 산1	시멘트		1식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20	월계동 산1	레미탈		1식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21	월계동 산1	특수시멘트		1식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22	월계동 산1	적벽돌		1식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23	월계동 산1	보도블럭		1식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24	월계동 산1	물통		1식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25	월계동 산1	경계석		1식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26	월계동 산1	페이로더		1대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27	월계동 산1	지게차		1대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28	월계동 산1	컨베이어벨트		2대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29	월계동 산1	영산홍	H0.5	2주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30	월계동 산1	아로니아	H0.5	35주	김성기	노원구 월계동 산1				

*김정평가 실시결과 물건의 내용 변동될 수 있음

◆ 노원구고시 제2017-5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02호(2016.10.6)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7-31호(2017.3.16)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7-444호(2017.5.11)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한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6월 1일
노 원 구 청 장

■ 사업개요

-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65-6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 다. 사업규모 : 2,294㎡
- 라. 사업의 내용 : 토지 보상 등
- 마.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 사. 변경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 이행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등 권리명세 : 별첨

■ 고시방법 : 시보게재

■ 열람장소 : 노원구청 공원녹지과(☎2116-3946, 노원구 노해로 437)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1	월계동 산65-6	임야	임야	1,585	1,585 (165/2,573)	전승기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602-254					
					1,585 (159/2,573)	최규식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19 한양아파트 1동502호					
					1,585 (139/2,573)	이국현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22-115					
					1,585 (139/2,573)	이광원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347-1					
					1,585 (139/2,573)	황완순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136					
					1,585 (139/2,573)	이정렬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136					
					1,585 (139/2,573)	이지숙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136					
					1,585 (165/2,573)	김순종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8-36					
					1,585 (165/2,573)	김지영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1가 96-14 우방오성타운 105-1701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와 내용	
1	월계동 산65-6	임야	임야	1,585	1,585 (159/2,573)	김의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26 성동마을엘지빌리3차 308-1503					
					1,585 (159/2,573)	홍정희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6-36 402호					
					1,585 (165/2,573)	김장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80-1 진산마을삼성7차@ 701-1004					
					1,585 (139/2,573)	박종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124 중앙구로하이츠@ 5-1105					
					1,585 (159/2,573)	김제인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6-36 402호					
					1,585 (165/2,573)	박용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 주공@ 101-1506					
2	월계동 산65-8	임야	임야	709	1,585 (139/2,573)	나유빈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0-5 대우로카운티@ 104-802					
					1,585 (139/2,573)	김희미자	서울시 강남구 도사대로 92길 10-0 대우로카운티@ 104-802					
					709	정혜승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71 현대4차@ 401-406		조철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70 금호@ 102-604	근저당권자	

별첨 조서

■ 사업명 :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월계동 산65-6	주거	벽돌조	55㎡	이훈	중랑구 신내로127, 909/1007(신내9단지@)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세입자
2	월계동 산65-6	창고	천막/골조	6㎡	이훈	중랑구 신내로127, 909/1007(신내9단지@)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세입자
3	월계동 산65-6	창고	판넬/골조	5㎡	이훈	중랑구 신내로127, 909/1007(신내9단지@)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세입자
4	월계동 산65-6	창고	천막/골조	15㎡	이훈	중랑구 신내로127, 909/1007(신내9단지@)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세입자
5	월계동 산65-6	바닥	시멘트	60㎡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6	월계동 산65-6	쌍크대		1개소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7	월계동 산65-6	가스렌지		1개소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8	월계동 산65-6	화장실		1개소	이훈	중랑구 신내로127, 909/1007(신내9단지@)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세입자
9	월계동 산65-6	수도시설		1식	이훈	중랑구 신내로127, 909/1007(신내9단지@)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세입자
10	월계동 산65-6	보일러	기름	1대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11	월계동 산65-6	난로	연탄	1대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12	월계동 산65-6	집기비품		1식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13	월계동 산65-6	가전제품		1식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14	월계동 산65-6	수납가구		1식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15	월계동 산65-6	LP가스		1개소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별첨조서

■ 사업명 :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6	월계동 산65-6	연탄		1식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17	월계동 산65-6	평상		1개소	이훈	중랑구 신내로127, 909/1007(신내9단지@)			
18	월계동 산65-6	장독대		1개소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19	월계동 산65-6	부추	농작물	1식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20	월계동 산65-6	감자	농작물	1식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21	월계동 산65-6	생강	농작물	1식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22	월계동 산65-6	시금치	농작물	1식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23	월계동 산65-6	파	농작물	1식	김순녀	노원구 월계동 산65-6			
24	월계동 산65-8	주거	벽돌조/합판	119㎡	정혜승	노원구 마들로5나길 17			
		이		하		여		백	

*감정평가 실시결과 물건의 내용 변동될 수 있음

◆ 은평구고시 제2017-50호

도시관리계획(불광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07.05)로 구역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3호(2011.04.28.)로 최종 변경 결정된 불광 지구단위계획 내 대조동 9-27 외 2필지(대조동 9-87, 12-6) 공동개발(지정)변경 제안사항에 대하여
2.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7.04.13.) 결과를 반영(2017.05.19. 제안자 조치계획서 제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불광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 내용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은 평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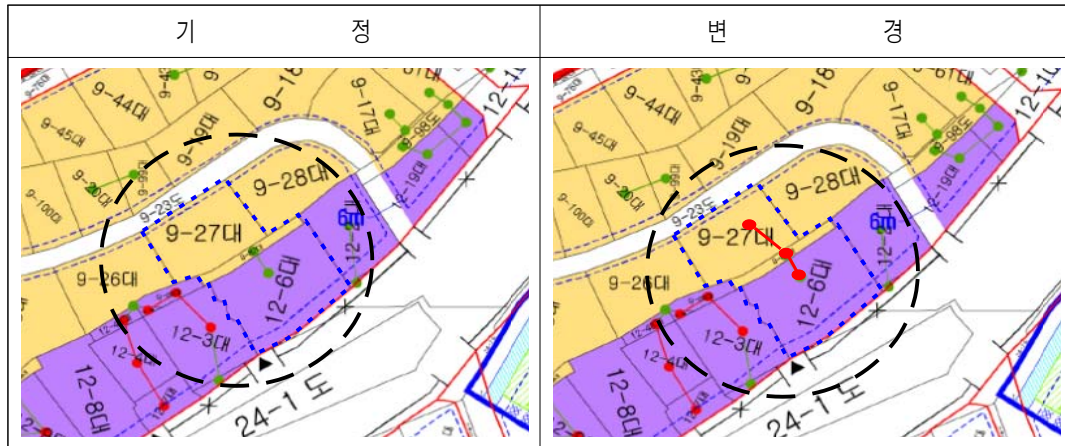
- 최대개발규모(1,500㎡) 범위 내 해당하는 공동개발(권장) 토지(대조동 9-87, 12-6)와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토지(대조동 9-27)를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여 공동개발(신축) 추진
- 변경내용 : 공동개발 권장(2필지) 및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1필지)
→ 공동개발 지정(3필지)

나. 도시관리계획(불광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 ○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대조동	9-27	251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9-87	46	• 공동개발 권장
		12-6	376	
변경	대조동	9-27	673	• 공동개발 지정
		9-87		
		12-6		

다. 도시관리계획(불광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마.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1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마포구고시 제2017-7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17-403호(2017.4.20.)로 열람공고한 창전동 42-15~395번지 외 5개소 및 염리동 89일대~139일대 1개소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마 포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연번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해제	소로	3류	-	6	국지도로	114	창전동 42-15	창전동 395	일반도로	-	

연번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2	해제	소로	3류	-	6	국지도로	114	창전동 42-16	창전동 42-15	일반도로	1972.08.11. (서고 제115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3	해제	소로	3류	-	6	국지도로	28	공덕동 3-50	아현동 405-1	일반도로	1964.01.24. (건설부 제768호)	
4	해제	소로	3류	-	6	국지도로	30	용강동 473-2	용강동 472-7	일반도로	1964.01.24. (건설부 제768호)	
5	해제	소로	3류	323	5	국지도로	68	염리동 81-48	염리동 81-90	일반도로	2015.05.21. (서고 제133호)	
6	해제	소로	3류	(2)	6	국지도로	60	염리동 98-65	염리동 105-8	일반도로	2015.05.21. (서고 제133호)	
7	기정	소로	2류	6	8	국지도로	214	염리동 89 일대	염리동 139 일대	일반도로	2015.05.21. (서고 제133호)	경미한 사항 변경
	변경	소로	2류	6	8	국지도로	214	염리동 89 일대	염리동 139 일대	일반도로	2015.05.21. (서고 제133호)	

2. 지형도면의 작성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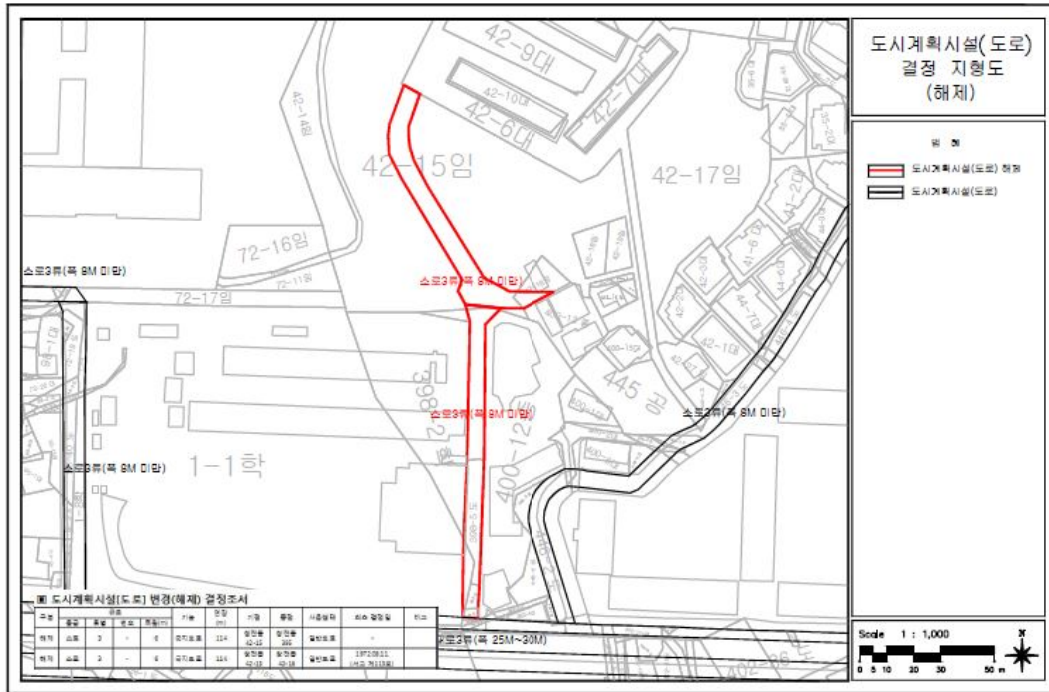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3153-935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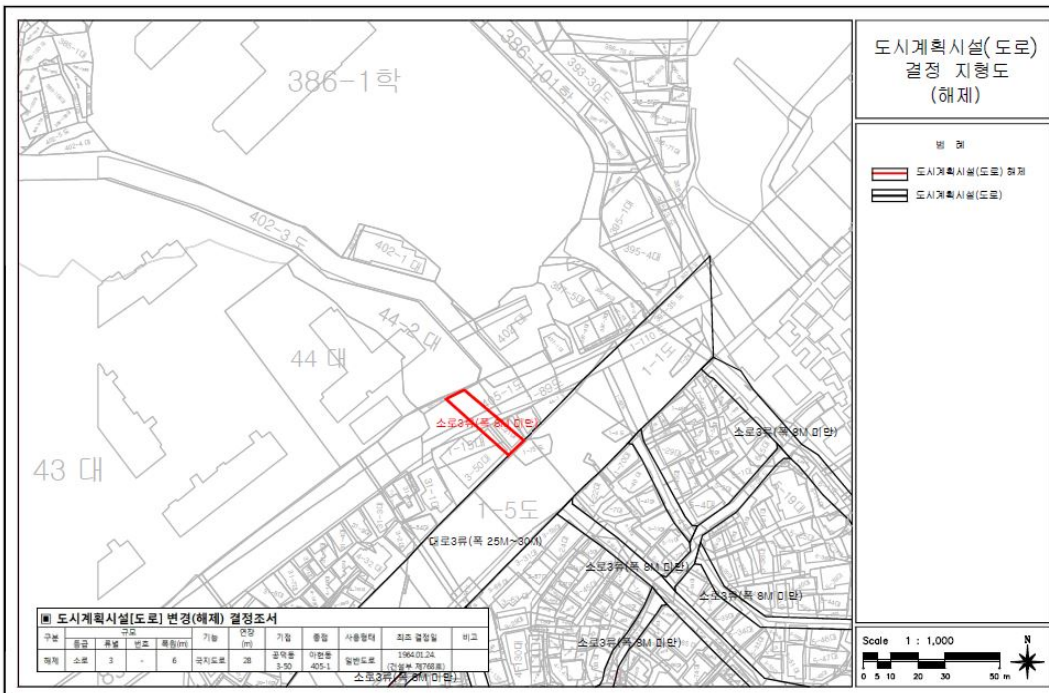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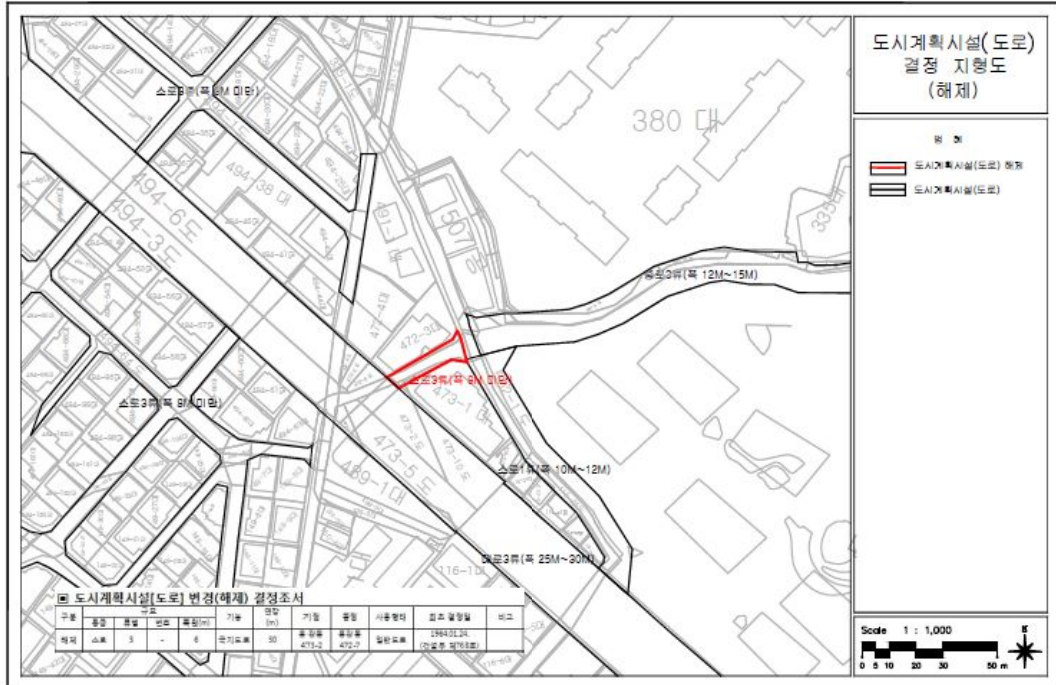
○ 해제 2개소 (창전동 42-15 ~ 395, 창전동 42-16 ~ 4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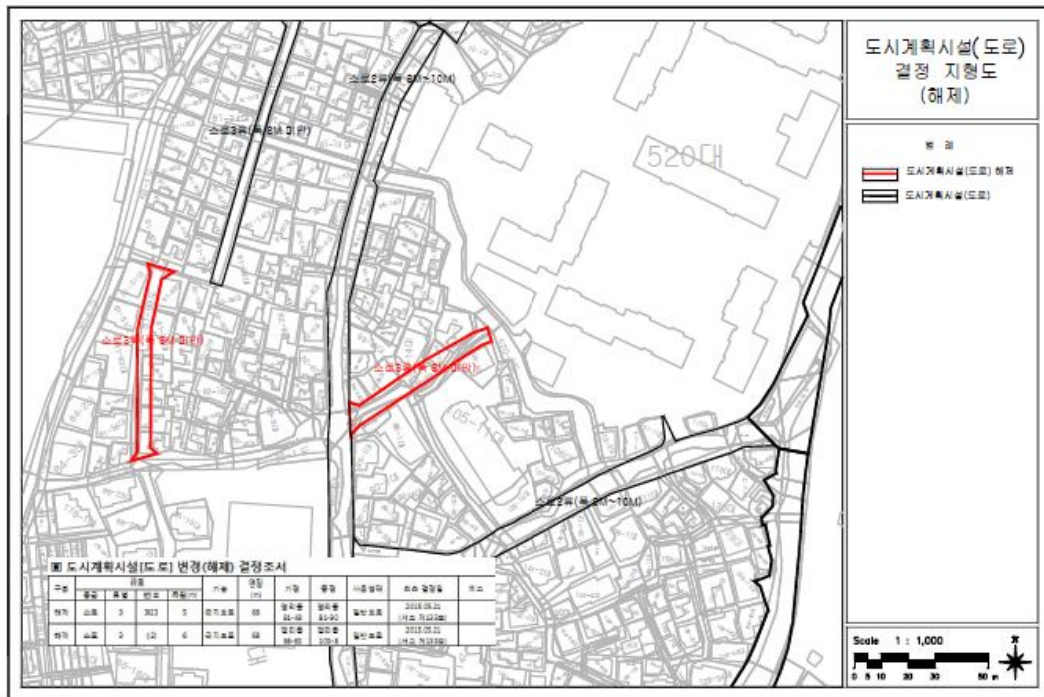
○ 해제 1개소 (공덕동 3-50 ~ 아현동 4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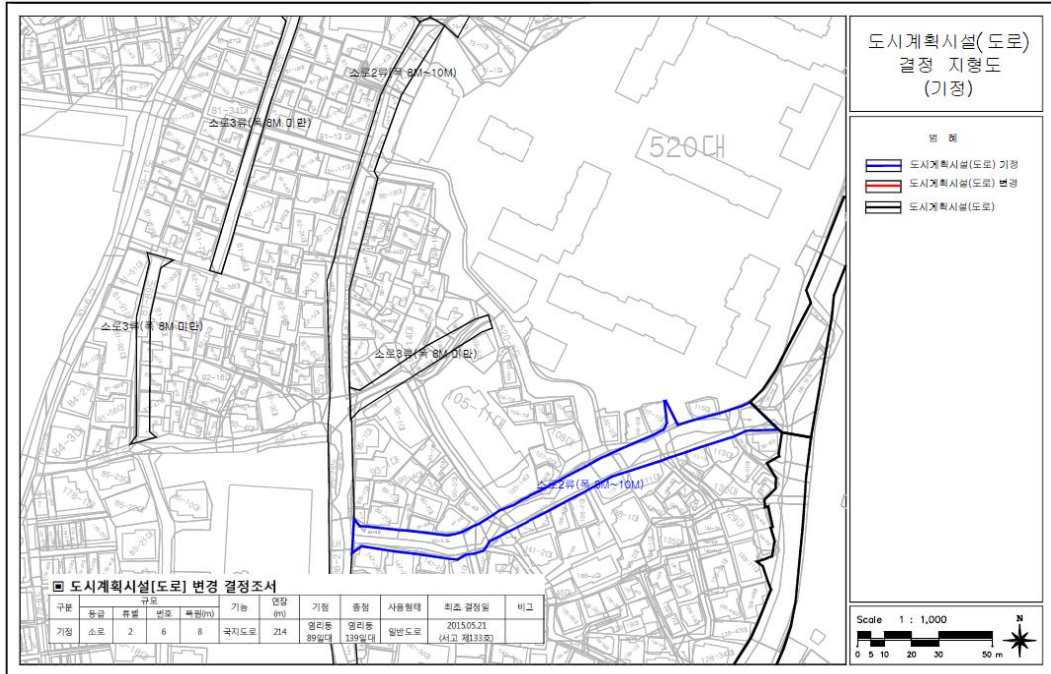
○ 해제 1개소 (용강동 473-2 ~ 4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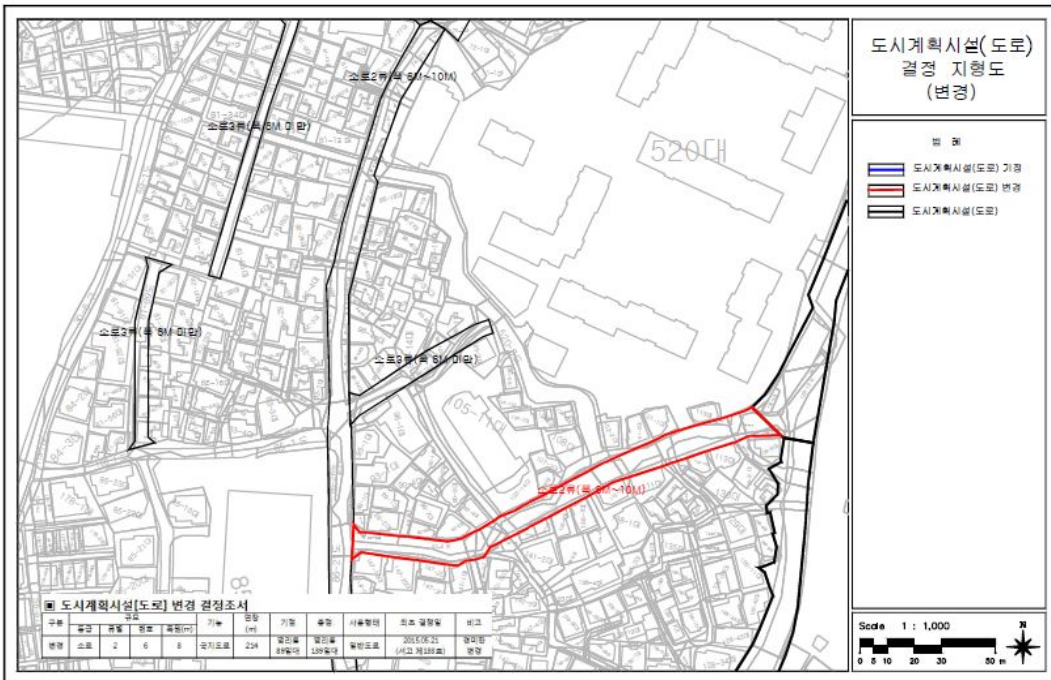
○ 해제 2개소 (염리동 81-48 ~ 81-90, 염리동 98-65 ~ 105-8)



- 변경 1개소 (염리동 89일대 ~ 139일대)
- 가정



- 변경



◆ 마포구고시 제2017-78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59호(1976.3.31.)로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87호(2015.7.2.)로 도시계획시설(녹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7-55호(2017.4.20.)로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마포구 성산동 산53-17일대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대하여,
2. 토지 분할에 따른 신규 지번 부여로 인한 동일 위치 내 지번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3153-9572)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6월 1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당 초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산53-17
- 변 경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산53-6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녹지) 사업
- 사업의 명칭 : 성산녹지 보상

다. 사업의 규모 : 1,000㎡(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마포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 12. 31.까지(변경없음)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변경없음)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공원녹지과, ☎02-3153-957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보상면적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분)
	동	번지					성명	주소(등기)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당초	계			23,847	1,000							
변경				1,000	1,000							
당초	성산	산53-17	임야	23,847	1,000	나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예루살렘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1				
변경	성산	산53-62	임야	1,000	1,000							

※ 성산동 산53-17 중 수목식재 등을 통한 녹지의 기능회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토지분할 후 새로운 지번인 성산동 산 53-62 부여

◆ 동작구고시 제2017-3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87호(1962.12.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1-66호(2011.3.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현충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6월 1일

동작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현충근린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산28-1 등 2필지
- 면 적 : 18,256㎡
- 내 용 : 토지보상 18,256㎡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바.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붙임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 820-9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19,464	18,256							
1	동작동 산28-1	임야	16,208	15,000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3길***, ***호(명일동)	천귀*	13967/21058				
					서울 강동구 명일로 172. ***동***호 (둔촌동, 둔촌푸르지오아파트)	안제*	7091/21058				
2	동작동 산16-1	임야	3,256	3,256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 가길 23 ***동 ***호 (본동래미안트윈파크)	고현*					

◆ 관악구고시 제2017-3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하여 관악구 공고 제2017-625호(2017.4.27.)로 주민의견을 청취한 관악구 남현동 산99-19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관 악 구 청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① 위치 : 남현동 산99-19번지 일대(사당역~남태령역 과천대로변)

② 면적 : 약 62,000㎡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① 서울시의 「과천대로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시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 ② 도시관리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절개지 낙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해소 및 난개발을 방지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행위

- 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② 다만,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 고시일 이전 허가, 승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청의 허가(신고)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
 - 기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 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보수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건축허가·신고
 - 2)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수선 및 재축
 - 3)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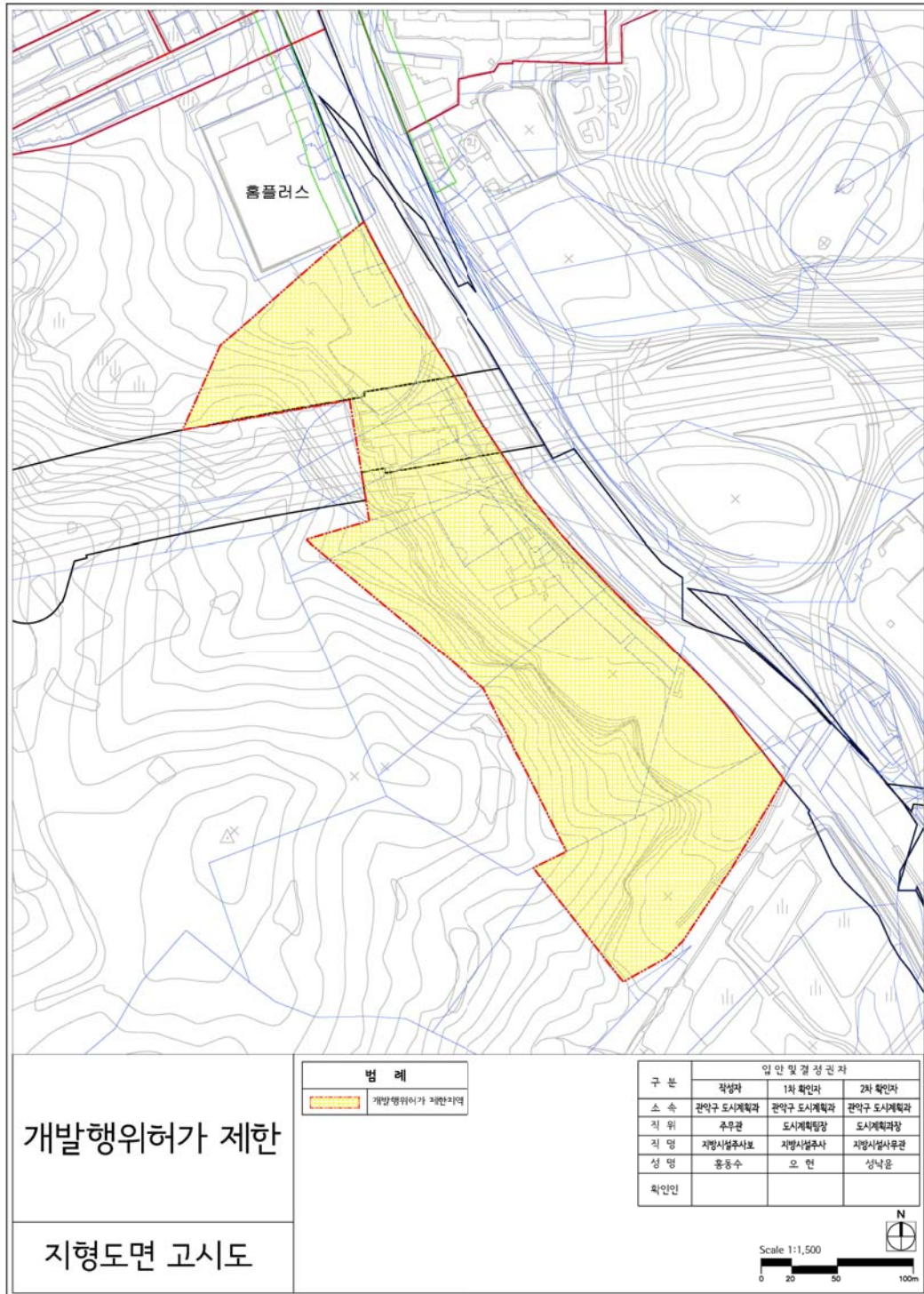
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다만 도시관리계획 고시일 다음날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은 해제됨.

마. 관계도면

- 개발행위허가제한 지형도면 고시도
 -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사항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악구청 도시계획과(☎02-879-6355)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고시 제2017-36호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20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관 악 구 청 장

1. 결정취지

-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악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복합화 시설을 건립하여 실내체육시설 등을 확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복합화 시설 중 청룡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관악구 봉천동 (청룡동) 920	-	2,646.62	2,646.62	-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 11,604㎡ 중 2,646.62㎡ 주차장 중복결정 (관악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없음)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학교	초등 학교	관악구 봉천동 (청룡동) 920	11,604	-	11,604 (변경없음)	1972. 1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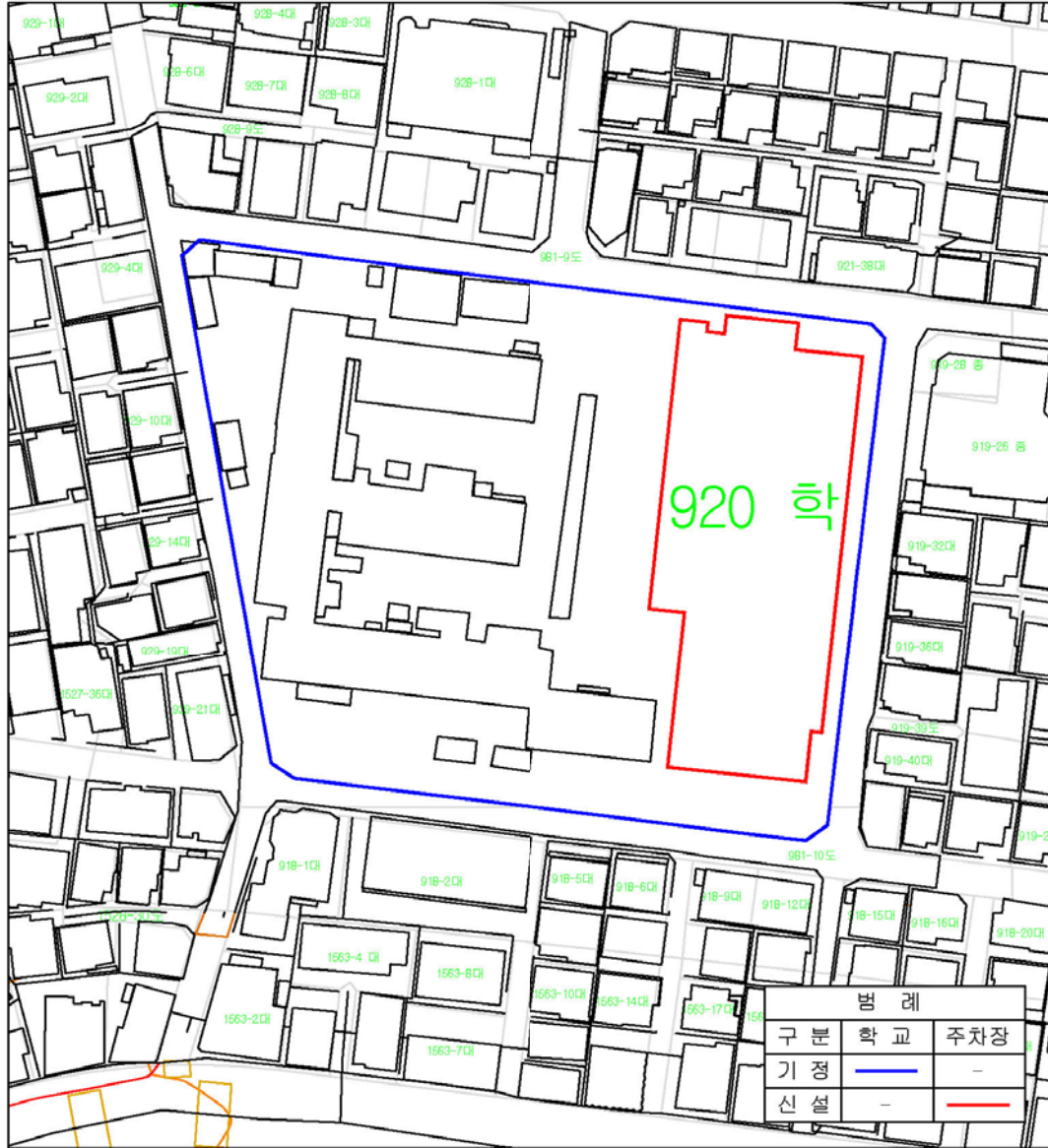
※ 기타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범위 변경없음(건폐율 30%이하, 용적률 120%이하, 층수 5층이하)

3. 관계도서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관계도서는 관악구 도시계획과(☎879-6363)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주차장) 변경 결정 지형도면

S = 1:1,000



범례		
구분	학 교	주 차 장
기 정	— (red line)	— (blue line)
신 설	— (blue line)	— (red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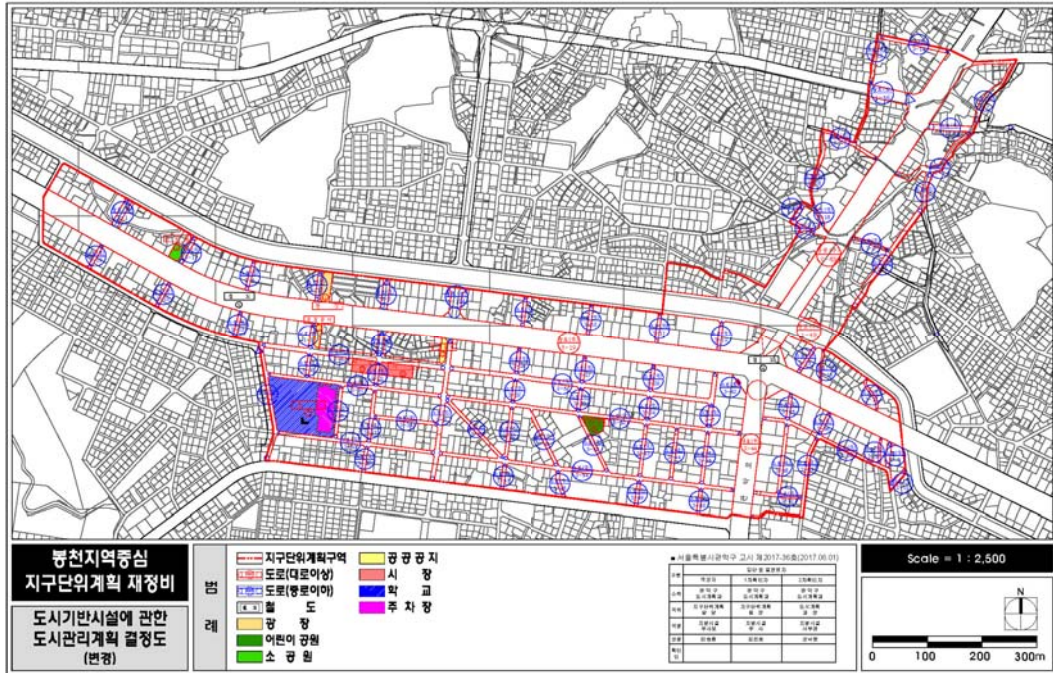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학 교	초등 학교	관악구 봉천동 920번지	11,604	-	11,604 (변경없음)	1972. 11.06.	
신설	-	주 차 장	-	관악구 봉천동 920번지	-	2,646.62	2,646.62	-	지하 중복결정 (관악초등학교 운동장지하)

건 물 용 용 적 륜 륜 이 비 고
30%이하 120%이하 5층이하 준주거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2017-36호 (2017년 6월 1일)

확인 및 결정권자	
확인자	직 지방시설사무관 성낙훈 (인)
확인자	직 지방시설주사 김진원 (인)
작성자	직 지방시설주사보 이승환 (인)

※ 기타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 범위 변경 없음



◆ 서초구고시 제2017-5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71호(1994.08.11)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최초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50호(1995.08.28)로 실시계획인가되고, 제9호(1997.2.25), 제30호(1998.6.15), 제3호(1999.1.11), 제85호(2004.10.30), 제51호(2005.6.23), 제51호(2007.9.27), 제20호(2010.4.15), 제103호(2014.8.14), 제134호(2014.11.6), 제61호(2015.5.21)호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서초구 반포동 118-3외 7필지 반포천복개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열람공고 생략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8-3외 7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 명칭 : 반포천 복개주차장 대수선 및 설계변경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내 용			비 고
지역, 지구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대지면적	25,024.50 m ²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5 층			
주 용 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변 경 전	변 경 후	증 · 감	
건축면적	20,311.36m ²	20,311.36m ²	+ 0.00m ²	
연 면 적	54,235.64m ²	54,235.64m ²	+ 0.00m ²	
용 적 륜 산정연면적	54,053.20m ²	54,053.20m ²	+ 0.00m ²	
건 폐 율	81.17%	81.17%	+ 0.00%	
용 적 율	216.00%	216.00%	+ 0.00m ²	
주차대수	계획 : 1,181대	계획 : 1,181대	-	
조 경	법정:3,753.68m ² (15.00%)	변경없음	+ 0.00m ²	
	계획:6,560.47m ² (26.21%)	6,409.21m ² (25.61%)	- 150.87m ²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센트럴시티 대표 박주형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3, 19-12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18년 3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변동사항 없음)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동사항 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고시 제2017-52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12('01.9.25)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2('16.6.23)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35호('16.12.2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원지동체육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6월 1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28번지 일대(변경 없음)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원지동체육공원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없음)
 - 가) 사업부지 면적 : 20,923㎡
 - 나) 시설면적 : 11,063㎡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가) 성 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변경 없음)
-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변경내용 : 옥외광고물 및 임목 지장물조서 추가)

붙 임 : 1. 조성계획도 1부.

2.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원지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	원지동	23-0	잡	14,834	3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2	원지동	26-0	전	3,093	1,74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3	원지동	26-1	대	298	222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4	원지동	26-2	대	132	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5	원지동	28-0	전	3,002	3,002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6	원지동	28-1	전	2,294	1,89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7	원지동	28-2	전	1,099	543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8	원지동	29-1	전	492	47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9	원지동	29-2	전	2,581	2,56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10	원지동	29-8	답	1,114	575		국(건설교통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체육공원조성사업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의 관리종류 및 내용	
11	원지동	32-0	전	5	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12	원지동	32-3	전	838	346		국(건설교통부)				
13	원지동	33-0	전	2,029	1,96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14	원지동	33-2	전	336	330		국(건설교통부)				
15	원지동	33-3	도	144	19		국(건설교통부)				
16	원지동	34-1	전	504	50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17	원지동	34-2	전	315	31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18	원지동	34-4	전	19	19		국(건설교통부)			지분 4분의3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지분 4분의1	
19	원지동	34-8	전	435	435		국(건설교통부)				
20	원지동	34-9	전	100	100		국(건설교통부)			지분 4분의3	
							국토해양부			지분 4분의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체육공원조성사업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 관리종류 및 내용	
21	원지동	34-10	전	496	6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22	원지동	34-12	도	261	131		국(건설교통부)				
23	원지동	34-13	전	85	29		국(건설교통부)			지분 4분의3	
							국토해양부			지분 4분의1	
24	원지동	35-3	답	3	3		국(건설교통부)				
25	원지동	35-9	답	10	10		국(건설교통부)				
26	원지동	35-10	답	1	1		국(건설교통부)				
27	원지동	35-11	전	247	27		국(건설교통부)				
28	원지동	35-13	도	135	13		국(건설교통부)				
29	원지동	35-14	답	129	32		국(건설교통부)				
30	원지동	38-0	전	293	293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체육공원조성사업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관리종류 및 내용	
31	원지동	38-3	전	303	303		국(건설교통부)				
32	원지동	38-4	전	855	39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33	원지동	38-6	전	26	17		국(건설교통부)				
34	원지동	38-7	도	261	145		국(건설교통부)				
35	원지동	39-0	전	245	24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36	원지동	39-1	전	473	2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37	원지동	산79-2	임	454	454		국(산림청)				
38	원지동	산79-3	임	1,100	1,100	서울시 서초구 역곡동 142	조영출				
39	원지동	산79-5	임	170	170		국(건설교통부)				
40	원지동	산79-6	임	15	1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체육공원조성사업

연번	위치		지목	공부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41	원지동	산79-9	임	904	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42	원지동	산79-11	임	1,373	1,339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43	원지동	산79-13	임	1,481	28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44	원지동	산79-14	임	1,016	78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45	원지동	산79-15	임	1,608	96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				
46	원지동	611-2	도	898	213		국(건설교통부)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체육공원조성사업

연번	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개소, 주)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	원지동	산79-3	목외 광고물	철 골	1개소	-	주식회사 에드21 두원산업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8층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2	원지동	산79-3	임목	R15~R80	79주	서울시 서초구 영곡동 142	조영출				

조성 계획도

원지동 체육공원

■ 범례

구분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규모/수량	비고
도로/주차장		계획	20,822	7,221	13	34.51%
		순계	5,981	2,130	-	
	1-1	도로(도시계획도로)	3,842	-	-	
	1-2	도로(산책로)	1,982	1,950	-	
운동시설		계획	974	974	-	
		순계	4,733	4,733	-	
	2-1	체육관	4,156	4,156	-	
	2-2	게이트볼장	373	373	-	
조경시설		계획	146	146	-	
		순계	75	75	-	
	3-1	과교하	77	77	2	
	3-2	공원사	181	181	10	
녹지		계획	136	136	-	
		순계	15	15	1	
	4-1	녹지	9,980	-	-	
		순계	9,980	-	-	



구 공 고

◆ 성동구공고 제2017-498호

응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8호(2016.10.13.)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응봉근린공원에 대하여,
2.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성 동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산9-1일대 응봉근린공원

나. 공원면적 : 674,687.6㎡

다. 조성계획 변경(안)

구 분	주 요 시 설	면 적(㎡)		비 고
		변경전	변경후	
계		674,687.6	674,687.6	
기 반 시 설	도로, 광장	66,132.07	66,262.98	증) 130.91㎡
조 경 시 설	화계, 화단 등	18,725.22	18,725.22	-
휴 양 시 설	휴게소, 경로당 등	7,647.67	7,647.67	-
유 희 시 설	놀이터	10,911.00	10,911.00	-
교 양 시 설	어린이집, 북카페 등	2,007.59	2,261.43	증) 253.84㎡
편 익 시 설	주차장, 화장실 등	2,910.00	2,910.00	-
운 동 시 설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24,196.15	23,796.15	감) 400㎡
관 리 시 설	관리사무실	1,801.15	1,960.35	증) 159.2㎡
도시농업시설	다랭이논	-	1,504.88	증) 1,504.88㎡
녹지·기타		540,356.75	538,707.92	감) 1,648.83㎡

라.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마.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성동구청 공원녹지과(☎2286-5654)

사.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공고 제2017-518호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7(2011.12.8)호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고, 2017년 제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5.10.)에서 수정가결된 자양동 2-6번지 일대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일
광진구청장

-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 450-7692)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위 공람장소
 라. 공람내용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건대입구 3-3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6일대	5,833.5	2011.12. 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7호)	
변경	건대입구 3-3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6일대	5,946.3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변경	건대입구 3-3지구 특별계획구역	자양동 2-6일대	5,946.3	주민개발의사의 합리적 반영을 통한 실현성제고를 위해 3-2지구에 일부 편입된 필지(2-6호(112.8㎡)) 포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위 치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5,946.3	-	5,946.3	100.0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자양동 2-6일대	5,946.3	감)5,946.3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양동 2-6일대	-	증)5,946.3	5,946.3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자양동 2-6일대	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5,946.3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유보된 사항으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시 용도지역 변경 (결정) 고시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 경 결정 고시함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결정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관계도면 : 생략(광진구청 도시계획과 열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바.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
정변경 및 3-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공고 제2017-57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변동 12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일
강 북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및 청소행정과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

•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378	-	4,378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378	감) 4,378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증) 4,378	4,378	100.0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북구 변동 122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4,378	50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2) 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폐기물 처리시설	중간 처분시설	강북구 변동 122번지 일원	-	증)4,378	4,378	-	오동 근린공원 중복결정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폐기물 처리시설	· 신설 - 면적 : 4,378㎡	· '97년 부터 운영 중인 오현적환장은 '북서울 꿈의 숲' 인근에 위치하여 공원의 경관을 저해하고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 강북구내 적환장 대체부지가 없어 기존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부 는 공원시설을 조성하여 '북서울 꿈의 숲' 경관 저해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마. 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901-6843) 및 청소행정과(☎ 901-6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공고 제2017-50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수락골전망쉼터) 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687호(1989.11.23.)로 공원조성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6호(2016.8.25.)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노원구고시 제2017-25호(2017.03.16)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수락산도시자연공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수락골전망쉼터 조성)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련서류는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44-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 칭: 수락산도시자연공원(수락골전망쉼터) 조성
 3) 사업내용: 토지보상
 다. 사업규모: 15,820㎡(당초 21,000㎡)
 라. 사업시행자: 노원구청장
 마.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변경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절차 이행 및 사업규모 변경
 사. 열람장소: 노원구청 공원녹지과(☎2116-3966)
 아.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자. 공고방법: 시보게재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별첨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수락산도시자연공원(수락골전망쉼터)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1	상계동 산44-3	임야	임야	108,897	21,000	15,820	이순열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15, 18동 1301호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해당없음	

◆은평구공고 제2017-70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 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02-351-740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6월 1일
 은 평 구 청 장

1.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단위 : m², 백만원)

시설별	시행기간											
	계			1단계(1~3년차)			2-1단계(4년이후)			2-2단계('21년이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계	118	279,334	187,221	2	30,130	1,713	3	3,438	3,036	113	245,766	182,472
도로	113	124,385	144,390	1	185	1,500	3	3,438	3,036	109	120,762	139,854
공원	5	154,949	42,831	1	29,945	213	-	-	-	4	125,004	42,618

2.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 별첨 참조

2.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단위 : 백만원)

사업·시설·부담		우선 순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관리번호	사업명(위치)	사업개요	면적 (㎡)	최초결정일	사업 기간	총사업 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투자	공공기여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도로	1	113800092	대조동 15-209 ~ 27-7	B=6m L=32m	185	2001-06-25	2018 ~ 2019	1500		1500													21년 이후
도로	2	113800020	대조동 91-19 ~ 89-92	B=6m L=118m	708	1969-01-18	2019 ~ 2020	1,000		1,000											1,000		
도로	3	113800043	녹번동 94-14 ~ 역촌지구	B=6m L=375m	2,250	1969-01-18	2020 ~ 2021	1,611		1,611												611	1,000
도로	4	113800058	녹번동 13 ~ 117-86	B=4m L=120m	480	1969-01-18	2019 ~ 2021	1,425		1,425											500	925	
도로	5	113800001	갈현동 252-1 ~ 67	B=8m L=270m	2,160	1969-01-18	2021 ~	2,170		2,170													2,170
도로	6	113800002	갈현동 6-4 ~ 9-30	B=8m L=110m	880	1969-01-18	2021 ~	715		715													715
도로	7	113800003	불광동 13-9 ~ 189	B=8m L=380m	3,040	1969-01-18	2021 ~	2,945		2,945													2,945
도로	8	113800004	응암동 76-2 ~ 42-7	B=8m L=436m	3,488	1969-01-18	2021 ~	1,601		1,601													1,601
도로	9	113800005	응암동 64-3 ~ 3	B=8m L=362m	2,896	1969-01-18	2021 ~	3,500		3,500													3,500
도로	10	113800006	응암동 1-3 ~ 36-49	B=8m L=333m	2,664	1969-01-18	2021 ~	150		150													150
도로	11	113800007	불광동 392-14 ~	B=6m	1,680	1969-01-18	2021 ~	650		650													650

사업·시설 부문	우선 순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관리번호	사업명(위치)	사업개요	면적 (㎡)	최초결정일	사업 기간	총사업 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국비	지방비			공기 채 업	민간 투자 기여					
											계	시비	구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2단계	
도로	12	113800008	400 불광동 359-3 ~ 421-2	L=280m B=6m L=133m	798	1969-01-18	~ 2021	669	669		669									21년 이후
도로	13	113800009	△3-144종점 ~ 불광동100	B=6m L=322m	1,932	1969-01-18	2021 ~	1,604	1,604		1,604									1,604
도로	14	113800010	불광동 434-4 ~ 91-10	B=6m L=322m	1,962	1969-01-18	2021 ~	2,687	2,687		2,687									2,687
도로	15	113800011	불광동 146 ~ 105-3	B=6m L=398m	2,388	1969-01-18	2021 ~	768	768		768									768
도로	16	113800012	불광동 346-2 ~ 346-30	B=6m L=92m	552	1969-01-18	2021 ~	523	523		523									523
도로	17	113800013	구산동322-316-6 (갈현동321-2-316-5)	B=6m L=130m	780	1969-01-18	2021 ~	767	767		767									767
도로	18	113800014	구산동361-380-4 (구갈현동361-380-4)	B=6m L=172m	1,032	1969-01-18	2021 ~	150	150		150									150
도로	19	113800015	구산동 185-1 ~ 178	B=6m L=141m	846	1969-01-18	2021 ~	272	272		272									272
도로	20	113800016	불광동 486-25 ~ 367-28	B=6m L=270m	1,656	1969-01-18	2021 ~	1,234	1,234		1,234									1,234
도로	21	113800017	불광동 345-52 ~ 353-68	B=6m L=115m	690	1969-01-18	2021 ~	759	759		759									759
도로	22	113800018	불광동 355 ~	B=4m	452	1969-01-18	2021 ~	176	176		176									176

사업·시설 부문	우선 순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관리번호	사업명(위치)	사업개요	면적 (㎡)	최초결정일	사업 기간	총사업 비	총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 채	공기 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시비										구비																																																																																																																																																																																																																																																																																																																																																																																																																																																																																																																																																																																																																																																																																																																																																																																																																																																																																																																																																																																																																																																																																																																																																																																																																																																																																																		

사업·시설 부문	우선 순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관리번호	사업명(위치)	사업개요	면적 (㎡)	최초결정일	사업 기간	총사업 비	총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투자	공공기여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84-2	L=160m			~																																																																																																																																																																																																																																																																																																																																																																																																																																																																																																																																																																																																																																																																																																																																																																																																																																																																																																																																																																																																																																																																																																																																																																																																																																																																																																																																		</

사업·시설 부문	우선 순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관리번호	사업명(위치)	사업개요	면적 (㎡)	최초결정일	사업 기간	총사업 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국비	지방법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투자	공공기여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후				
도로	47	113800050	증산동 73-2 ~ 신21-3	B=6m L=58m	348	1969-01-18	2021 ~	382					382												382
도로	48	113800051	응암동 427-56 ~ 419-71	B=6m L=224m	1,344	1969-01-18	2021 ~	1,105					1,105												1,105
도로	49	113800052	응암동 427-82 ~ 427-76	B=6m L=75m	450	1969-01-18	2021 ~	339					339												339
도로	50	113800053	응암동 349-3 ~ 239-15	B=6m L=230m	1,380	1969-01-18	2021 ~	1,124					1,124												1,124
도로	51	113800054	응암동 344-6 ~ 351-35	B=6m L=180m	1,080	1969-01-18	2021 ~	1,596					1,596												1,596
도로	52	113800056	불광동 290-58 ~ 304-8	B=4m L=182m	728	1969-01-18	2021 ~	963					963												963
도로	53	113800057	대조동 6-33 ~ 6-44	B=4m L=108m	432	1969-01-18	2021 ~	498					498												498
도로	54	113800059	구산동 147-7 ~ 159-4	B=8m L=210m	1,680	1969-01-18	2021 ~	700					700												700
도로	55	113800060	대조동 3-82 ~ 179-8	B=8m L=750m	6,000	1969-01-18	2021 ~	27,000					27,000												27,000
도로	56	113800061	응암동 195-11 ~ 198-87	B=8m L=44m	352	1969-01-18	2021 ~	161					161												161
도로	57	113800062	구산동339-1~361 (구갈현동341-1~363)	B=6m L=150m	900	1969-01-18	2021 ~	340					340												340

사업·시설 부문	우선 순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관리번호	사업명(위치)	사업개요	면적 (㎡)	최초결정일	사업 기간	총사업 비	총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공기 채	지방 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시비	구비																																																																																																																																																																																																																																																																																																																																																																																																																																																																																																																																																																																																																																																																																																																																																																																																																																																																																																																																																																																																																																																																																																																																																																																																																																																																																																	
도로	58	113800063	구산동 182 ~ 167	B=6m L=130m	780	1969-01-18	2021 ~	554	554																																																																																																																																																																																																																																																																																																																																																																																																																																																																																																																																																																																																																																																																																																																																																																																																																																																																																																																																																																																																																																																																																																																																																																																																																																																																																																					</

사업·시설 시설 부문		우선 순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관리번호	사업명(위치)	사업개요	면적 (㎡)	최초결정일	사업 기간	총사업 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 채	공기 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시비	구비											
도로	70	113800076	불광동 244-11 ~ 272-3	B=8m L=145m	1,160	1976-07-27	2021 ~	1,288	1,288		1,288													21년 이후	
도로	71	113800077	불광동 309 ~ 323-33	B=6m L=92m	552	1969-01-18	2021 ~	1,065	1,065		1,065														1,065
도로	72	113800078	구산동 192-1 ~ 201-4	B=6m L=195m	1,170	1978-11-08	2021 ~	423	423		423														423
도로	73	113800079	구산동 27-15	B=6m L=21m	126	1976-07-26	2021 ~	163	163		163														163
도로	74	113800080	신사동 271-5 ~ 262-8	B=6m L=210m	1,260	1979-01-18	2021 ~	1,135	1,135		1,135														1,135
도로	75	113800081	구산동317~355 (구갈현동317~355)	B=8m L=260m	2,080	1979-01-18	2021 ~	238	238		238														238
도로	76	113800082	신사동 241-3 ~ 238	B=6m L=183m	1,098	1981-04-07	2021 ~	665	665		665														665
도로	77	113800083	응암동 242-238 ~ 242-240	B=8m L=70m	560	1984-06-04	2021 ~	210	210		210														210
도로	78	113800085	응암동 225-191 ~ 216-3	B=6m L=160m	960	1987-11-20	2021 ~	680	680		680														680
도로	79	113800086	북변동 91-4 ~ 76-30	B=4m L=70m	280	1988-01-16	2021 ~	59	59		59														59
도로	80	113800087	불광동 24-3 ~ 산1-10	B=6m L=100m	600	1990-03-27	2021 ~	79	79		79														79
도로	81	113800088	대조동 15-55 ~ 15-35	B=6m L=72m	452	2001-06-25	2021 ~	440	440		440														440

사업·시설 부문	우선 순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관리번호	사업명(위치)	사업개요	면적 (㎡)	최초결정일	사업 기간	총사업 비	총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투자	공공기여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후																																																																																																																																																																																																																																																																																																																																																																																																																																																																																																																																																																																																																																																																																																																																																																																																																																																																																																																																																																																																																																																																																																																																																																																																																																																																																																															
도로	82	113800090	대조동 6-17 ~ 6-16	B=6m L=11m	98	2001-06-25	2021 ~	121	121	121																																																																																																																																																																																																																																																																																																																																																																																																																																																																																																																																																																																																																																																																																																																																																																																																																																																																																																																																																																																																																																																																																																																																																																																																																																																																																																																										

사업·시설 부문		우선 순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진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관리번호	사업명(위치)	사업개요	면적 (㎡)	최초결정일	사업 기간	총사업 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법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투자	공공기여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시비	구비																																																																																																																																																																																																																																																																																																																																																																																																																																																																																																																																																																																																																																																																																																																																																																																																																																																																																																																																																																																																																																																																																																																																																																																																																																																																																																																														

사업·시설 부문	우선 순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관리번호	사업명(위치)	사업개요	면적 (㎡)	최초결정일	사업 기간	총사업 비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국비	지방비			지방 채	공기 업	민간 투자 기여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시비	구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도로	105	113800120	응암동 589-34 ~ 589-20	B=6m L=124m	744	2007-03-08	2021 ~	641		641		641										21년 이후
도로	106	113800123	불광동 291-75 ~ 295-15	B=6m L=160m	960	2006-08-10	2021 ~	941		941		941										941
도로	107	113800129	남가좌동(사천교)~ 신도읍강메리 (중산동238-수색동 293-61)	B=34m(25m) L=2,400m(21m)	525	1963-12-24	2021 ~	648	10,000 (648)	10,000 (648)		10,000 (648)										648
도로	108	113800132	녹번동 153-39~153-16	B=6m L=94m	564	2006-03-09	2021 ~	3,500		3,500			3,500									3,500
도로	109	113800133	녹번동 144-21~144-60	B=3m L=23m	69	2006-03-09	2021 ~	124		124			124									124
도로	110	113800134	녹번동144-21~144-63	B=4m L=9m	36	2006-03-09	2021 ~	64		64			64									64
도로	111	113800135	구산동 178-21~182-5	B=8m L=150m	1,200	1969-01-18	2021 ~	780		780			780									780
도로	112	113800136	응암동 377-7~354-5	B=6m L=190m	1,140	2007-03-08	2021 ~	760		760			760									760
도로	113	113800137	신사동 171-4 ~ 신사동 192-1	B=10~16m L=242m	2,420	1969-01-18	2021 ~	1,164		1,164			1,164									1,164
공원	114	113800127	녹번동 85-1 외 15	-	29,945	1977-07-14	2018 ~ 2019	213		213			213						213			
공원	115	113800124	구산동 산48-7 일대	-	32,300	1977-07-14	2021 ~	9,735		9,735			9,735									9,735

사업·시설 시설 부문		우선 순위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진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관리번호	사업명(위치)	사업개요	면적 (㎡)	최초결정일	사업 기간	총사업 비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지방비 계	지방비 시비									지방비 구비	지방 채	공기 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후		
공원	116	113800125	녹번동 산40-1 일대	-	39,373	1977-07-14	2021 ~	17,467	17,467		17,467		17,467												17,467
공원	117	113800126	구산동산37-6일대 (구결원동산42-1 일대)	-	52,500	1977-07-14	2021 ~	13,577	13,577				13,577												13,577
공원	118	113800128	신사동 300-79, 5	-	831	1972-07-22	2021 ~	1,839	1,839				1,839												1,839

◆ 마포구공고 제2017- 5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하수도)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시고시 제2014-463호(2014. 12. 26)로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1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마포구 공고 제 2015-207호(2015.12.17)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마포구 노고산동 49-53호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1일

마 포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마포구 도화동 25-13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하수도)
 - 나. 명 칭 : 신촌상가 일대 특별계획구역 기반시설(도로,공원,하수도) 공사
3. 공사완료(준공) 내역
 - 가. 규 모

구 분		규 모	비 고
도 로	소로1-1	폭 10m, 연장 192.2m	일 반 도 로
	소로3-1	폭 6m, 연장 40.0m	보행자우선도로
	소로3-2	폭 6m, 연장 126.0m	보행자우선도로
	소로3-3	폭 6m, 연장 13.0m	보행자전용도로
공 원	노고산공원	A=1,510.2㎡	소공원
하수도	간선하수도	L=225.6m	하수암거 3.5×2.5@2연

- 나. 공사완료일 : 2017. 5. 1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신촌상가 주식회사 대표이사 현종훈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86
5. 관계도서 : 생략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공고 제2017-83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440호(1979.10.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어, 구로구 공고 제 2017-257호(2017.2.16)로 열람공고하여 구로구고시 제2017-37호(2017.3. 16)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2차)』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과(☎860-3124)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51-127~551-192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2차)

다. 사업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 폭8m, 연장5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토 지 조 서(변경)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2차)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구로동 551-236	대	28	28	신준호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192-1 안서대림이-편한세상201-606				모지번 551-127
2	구로동 571-96	대	32	32	권미자	구로구 새말로 31, 107동 1602호(구로동, 롯데아파트)				
					오세준	구로구 구로동 571-69 401호				
					육재만	구로구 구로동 571-69				
					나복찬	영등포구 구로동 571-69				
3	구로동 551-162	대	25	25	기획재정부					
4	구로동 551-237	대	17	17	기획재정부					무상귀속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5	구로동 551-235	대	226	226	기획재정부					무상귀속
6	구로동 551-238	대	1	1	기획재정부					
7	구로동 551-239	대	1	1	기획재정부					
8	구로동 551-233	대	26	26	이경애	구로구 새말로 31, 101동 702호(구로동, 롯데아파트)				모지번 551-105
9	구로동 551-192	대	15	15	표순기	구로구 구로중앙로32가길 47(구로동)				
10	구로동 551-228	대	29	29	구로구					
11	구로동 551-229	대	8	8	구로구					

물 건 조 서(변경없음)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2차)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구로동 551-127	창고	조적조	2	창고	신준호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192-1 안서대림이-편한세상201-606				분할지번 551-236
2	구로동 551-103	건물	시멘트블록조	19	주택	문상오	구로동 551-103				분할지번 551-162
3	구로동 551-105	건물	시멘트블록조	23	주택	이경애	구로구 새말로 31, 101동 702호(구로동, 롯데아파트)				분할지번 551-233

◆ 구로구공고 제2017-83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 2011-78호(2011.1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구로구공고 제 2017-505호(2017.03.23)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하여 구로구 고시 제2017-62호(2017.04.20)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한 『오류동 135-69 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편입토지의 분할측량 성과결과 반영을 위해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과(☎860-3127)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135-69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오류동 135-69호주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 폭8m, 연장26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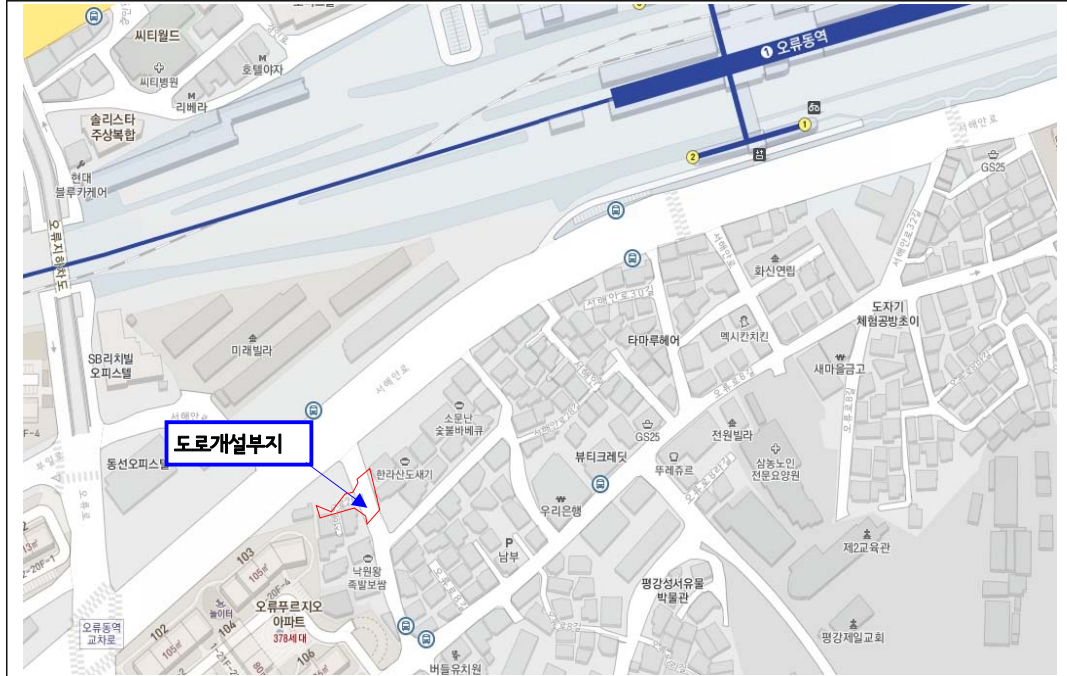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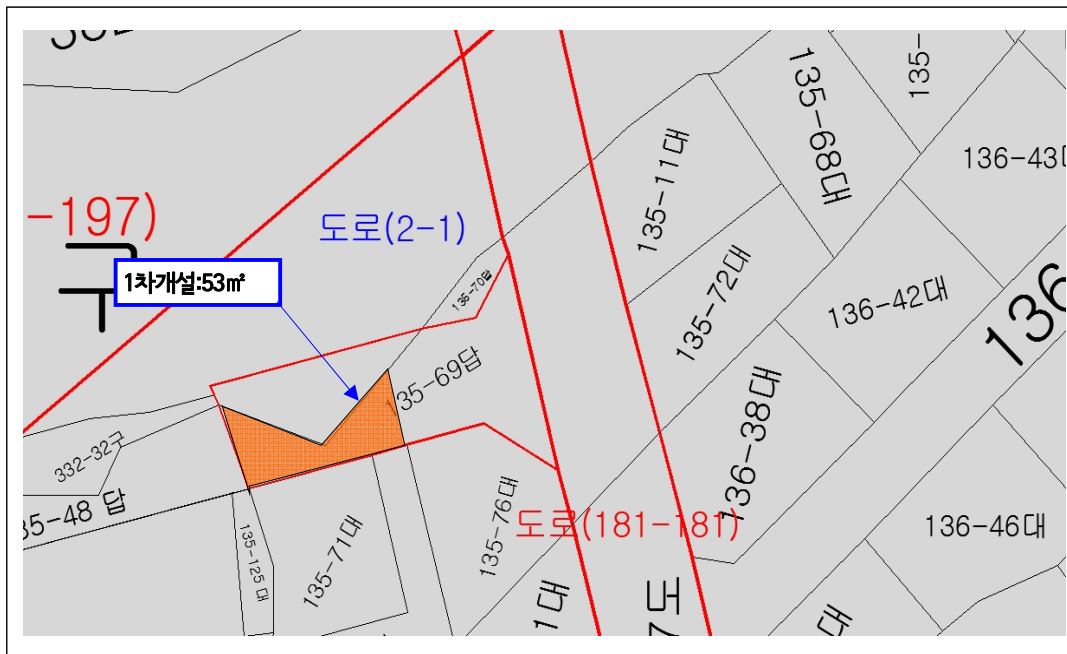
○ 사 업 의 명 칭 : 오류동135-69호주변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당초	오류동 135-69	답	344	53	이경훈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56-27호				
	변경	오류동 135-132	답	53	53	"	"				오류동 135-69

 위치도 및 현황사진(오류동135-69주변 도로개설)



지적분할(오류동135-132)





◆ 구로구공고 제2017-83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4호(1970.10.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고시되고, 구로구공고 제2017-502호(2017.03.23)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하여 구로구고시 제2017-61호(2017.04.20)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한 『오류동 6-8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편입토지의 분할측량 성과결과 반영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과(☎860-3127)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6-84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오류동 6-8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 폭4m, 연장25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 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토 지 조 서(변경)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오류동 6-8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당초										
1		오류동 6-284	대	23	23	허영준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48-53	구로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45	압류(징수과)	
2		오류동 6-328	대	22	22	심대식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158	오류1동 새마을금고	서울 구로구 오류동37-3	지상권	
3		오류동 6-166	대	106	5	심대식	"				
4		오류동 6-320	도	29	29	심대식	"				
5		오류동 6-198	대	169	50	안완수	서울시 영등포구 궁동198				
	변경										
1		오류동 6-284	대	23	23	허영준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48-53	구로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45	압류(징수과)	
2		오류동 6-328	대	22	22	심대식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158	오류1동 새마을금고	서울 구로구 오류동37-3	지상권	
3		오류동 6-166	대	101	-	심대식	"				
		오류동 6-359	대	5	5						
4		오류동 6-320	도	29	29	심대식	"				
5		오류동 6-198	대	119	-	안완수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6-63				
		오류동 6-360	대	5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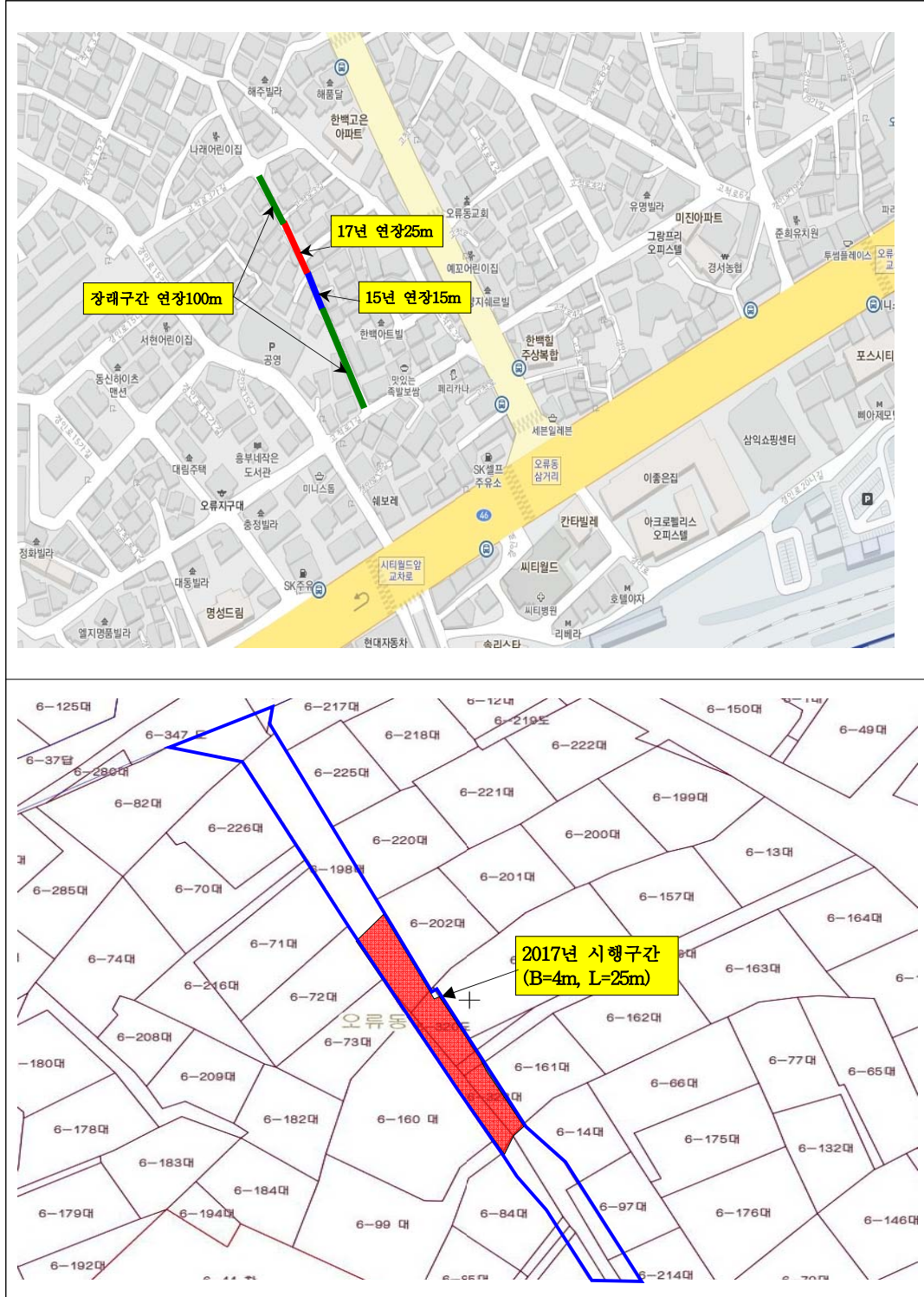
물 건 조 서(변경)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오류동 6-8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당초											
1		오류동 6-160	건물	시멘트블록조 및 판넬, 샷시	6	건물	백종환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38 105동204호(목동,목동 롯데캐슬위너 아파트)				
			보일러실	벽돌조 및 판넬	1	보일러실						
			대문	철제 및 대리석	1식	대문						
2		오류동 6-73	담장	벽돌조	1식	담장	김한섭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951-20 은광빌라2-001				
			대문	철제 및 대리석	1식	대문	박은주	경기도 용인시 축전동339 수지1차대진아파트106-805				
							김숙경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9-41				
							차찬모	서울시 도봉구창동814 대우그린아파트101-503				
3		오류동 6-158	담장	벽돌조	1식	담장	이영심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88-9삼성빌라401호				
4		오류동 6-220	보일러실	벽돌조	3	보일러실	조성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145-23 201호				
			옥상철계단	철제	1식	계단						
			계단	콘크리트	1식	계단						
			대문	철제 및 대리석	1식	대문						
			담장	벽돌조	1식	담장						
	변경											
1		오류동 6-160	건물	시멘트블록조 및 판넬, 샷시	6	건물	백종환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38 105동204호(목동,목동 롯데캐슬위너 아파트)				
			보일러실	벽돌조 및 판넬	1	보일러실						
			대문	철제 및 대리석	1식	대문						
2		오류동 6-73	담장	벽돌조	1식	담장	김한섭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5길25, 2동1호(도곡동,은광빌라)				20/96
			대문	철제 및 대리석	1식	대문	박은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19번길 8, 106동 109호 (석수동,석수경남아너스빌)				12/96
			화장실	시멘트블록조	1식	화장실	김숙경	서대문구 거북골로19길 7-6 (북가좌동)				32/96
			수목	감나무 외 1	2주	수목	차찬모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38, 111동 203호 (목동,목동롯데캐슬위너아파트)				32/96
3		오류동 6-158	담장	벽돌조	1식	담장	이영심	구로구 고척로1길 14-24(오류동)	강서신용 협동조합	강서구 내발산동7 19-5 1층 제8호		근저 당권

위치도 및 현황사진(오류동69-7~6-226)



 현황사진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2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74-1	선박 1척 (부선 1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7.05.26 ~ 2017.05.31	2017. 5.2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2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조양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33번길 6	서울시계 내 한강 (아라뱃길~ 당인리발전소)	선박 2척 (기선 1척 부선 1척)	당인리발전소 중량물 해상운송	2017.5.27. ~ 2017.5.30.	2017. 5.2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28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주)한국해양소년단 서울연맹 대표 부원찬
3. 점용자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35(봉천동)
4. 점 용 목 적 : 수상 훈련장
5. 점 용 면 적 : 총 629㎡(수상 훈련장 바지선 350, 도교 17.5 폰툰 261.5)
6. 점 용 기 간 : 2017. 05. 26. ~ 2020. 5. 25.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29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파라다이스 (대표 계획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6	한강대교 ~ 마포대교	동력선 2척 - 모터보트 1척 - 구조선 1척 무동력 3대 수상스키 1대 웨이크보드 1대 땅콩보트 1대	수상레저사업	2017.5.26. ~ 2017.10.31	2017. 5.2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30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길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선박 30척 (기선 10척, 부선 20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7.06.01. ~ 2017.06.30.	2017. 5.29.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31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사업본부장 (환경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원효대교 복단 상류 100m	1,000㎡	수생식물(미나리) 식재	2017.05.31.~ 2018.05.30.	2017. 5.29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9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영등포구 양화동~금천구 독산동 일원(서부간선도로)
 - 면 적 : <당초> 영구 335,303㎡, 일시 5,759㎡
 <변경> 영구 335,982㎡, 일시 7,31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 내 역 :

당 초	변 경
- 서부간선지하차도 연장 10.33km (소형차전용 대심도 병렬터널, 왕복 4차로) - 터널 1식(연장 7,902m, NATM공법) - 사중점부 구조물 1식(U-type L=280m, 개착Box L=810m) - 토공 1식	- 좌 동

5. 점용기간(공사기간) : 허가일~영구(허가일.~2021.03.15.)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00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주택도시공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92번지 일원
 - 면 적 : 영구 648㎡, 일시 17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한강연결 보행로 등 설치
 - 내 역 :
 - 한강연결 보행로(B=4.5m) L=73(전체 L=151m), 엘리베이터 1식
 - 조망용 데크(B=4.0m) L=40m
 - 데크로드(B=1.5m) L=34.6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허가일~2022.5.24.(허가일로부터 2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0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및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2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영등포구 양화동, 양천구 목동 일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 면 적 : <당초> 영구 40,929㎡, 일시 51,678㎡
<변경> 영구 40,929㎡, 일시 51,79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교량(월드컵대교 등) 설치
 - 내 역 :

당 초	변 경
<한강> - 월드컵대교(L=1,980m, B=31.4m) - 공사용 물양장 1개소, 작업장 및 야적장 1개소 - 사무실, 자체창고 등 이동식(컨테이너) 시설물 7동 - 복단접속교(MP5) 가시설(가축도 등) 및 작업장 조성 <안양천> - 공항로 연결램프(L=255m, B=6.95m)	<한강>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강교 선적을 위한 가시설물 (강교 대블럭 Load out 시설) <안양천> - 좌동

5. 점용기간(공사기간) : 허가일~영구(2010.6.29.~2019.4.8.)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